



낙태죄를폐지하라
모두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라

활동 아카이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7년 9월 28일 ~ 2021년 12월 31일

목차

Chapter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2017년 9월 28일 ~ 2019년 4월 11일

순번	활동	페이지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8
2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24
3	검은 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32
4	여성신문 연속기고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총10회)	41
5	성명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63
6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67
7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	75
8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76
9	국회토론회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	92
10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 상영 및 대중강연회 <전세계적 연대로 만들어 나가는 성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93
1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94
12	성명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 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106
13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미루지마라> 현수막 퍼포먼스	109
14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행동 기자회견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110
15	성명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117
16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국제행동의 날 맞이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	122

순번	활동	페이지
17	<낙태죄 폐지는 노동자의 요구!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배포	126
18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129
19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35
20	국제서명운동 <Abor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in South Korea now!>	136
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138
22	111주년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해시태그 #낙태죄폐지 운동	145
23	111주년 3.8 세계여성의날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146
24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 위헌촉구 1인시위(#100일시위) 참여자들의 이야기	164
25	집회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167
26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180
27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 집회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182

Chapter2. 대체입법 시한 2019년 4월 12일 ~ 2020년 12월 31일

순번	활동	페이지
2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188
29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206
30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 의미	209

순번	활동	페이지
31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	211
32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212
33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 맞이 손피켓 인증샷 캠페인	215
34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17
35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228
36	성과 재생산의 권리로 새로 쓰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231
37	카드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	232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34
39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236
40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서	244
41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제작 및 해시태그 액션	245
4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247
43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262
44	21대 국회 개원 맞이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264
45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입법과 정책 방향에 관한 모두를 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입장	266
46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275
47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284
4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286
49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299

순번	활동	페이지
50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302
51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청와대 앞 1인 시위	308
52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지금 참여해야 하는 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보내기	309
53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312
54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313
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326
56	형식적 의견수렴! 여성들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336
57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342
58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345
59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351
60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363
61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및 경찰조사규탄 릴레이 1인 시위 <‘낙태죄’ 폐지 하겠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364
62	‘낙태죄’ 폐지 촉구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374
63	‘낙태죄’ 폐지 촉구 온라인 액션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421
64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423
65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D-DAY 카운트다운> 1일 1카드뉴스	426
66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 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428
67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	430
68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카운트다운 파티	448

Chapter3.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순번	활동	페이지
69	'낙태죄' 없는 2021년 선포 및 신년인사 카드뉴스	451
70	'낙태죄' 폐지 활동가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탄원서	452
71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457
72	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473
73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475
74	성명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476
75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성명발표 <유산유도제는 필수약품이다>	479
76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절차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참고인 진술	481
7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날 기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502
78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506

[부록]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언론 대응 활동

Chapter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2017년 9월 28일 ~ 2019년 4월 11일

2017년 9월 8일 퍼포먼스



제목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

일시 : 2017년 9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내용 :

- 사회 :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 퍼포먼스 :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발언/대독)
- 현장 자유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주관 및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불꽃페미액션,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함께하는 단위 : 관악여성주의학회 달, 군포여성민우회, 녹색당, 동국대 여성주의네트워크 쿵광, 동북여성민우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인천여성민우회, 핑귄프로젝트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1

1996년 10월 23일. 그리고 같은 해 12월 20일. 나는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 둘을 가진 결혼 5년차. 빠듯한 벌이에 전세 대출금 이자를 갚느라, 양쪽 부모님 뒷바라지를 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보통의 부부’였습니다. 셋째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한밤중에만 들어와 아이들과 잠깐 눈 맞추고 쉬었지만, 저는 소위 독박육아와 직장생활로 지치고 또 지친 상태였습니다. ‘셋째까지 키울 수는 없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렇게 중절수술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의사

도 우리의 결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지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남편은 이번엔 괜찮다고 우기면서 피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고, 저는 또다시 ‘원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도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는 제 몸이 또 한 번의 임신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염려했고, 다른 선택을 고려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독박육아에, 이중노동에, 피임은 신경도 안 쓰는 남편을 둔 모든 기혼여성을 위해,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2

1979년 9월 15일. 나는 국가에서 원하는 복강경 피임 시술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 가난한 가정을 이뤘던 저는 이십대 초반이었고,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보건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족계획사업을 한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애 안 낳는 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애국이라고 했습니다. 뭘 수술 하라고, 약을 준다고, 그렇게 하면 세금을 덜 낸다는 등 집 구할 때 우선권을 준다는 등 동네에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남자들은 정관수술 받으면 예비군 훈련에서 빠주기도 했는데, 여자들이 보건소를 들락거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도 찾아와서 원하는 데다 무료라고 하길래 저도 배꼽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는 배가 너무 아프고 잘 낫지도 않는 염증 때문에 한참 고생했습니다.

그때 저희 고모도 루프 넣는 수술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골반에 감염이 돼서 말도 못하게 아팠다고 했고, 옆집 애기엄마는 복강경수술이 잘 안됐는지 그만 또 임신을 해서 낙태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보건소마다 수술 건수가 많을수록 국가에서 받는 돈도 많아져서, 제대로

설명도 없이 거의 반강제로 수술한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하고, 외국에서 검증도 안 끝내고 보내온 피임약을 막 썼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여자라고 국가가 이런 식으로 제 나라 국민을 막 다뤄도 되는가. 부잣집 가서도 이렇게 했을 것인가. 우리는 애 낳으려면 낳고, 낳지 말려면 안 낳아야 하는 도구인가. 낳으라는 지금이나, 낳지 말라던 그때나, 다 국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3

2017년 3월 29일 나는 임신과 낙태를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학생의 임신은 죄인가요?

올해 1월,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생리가 늦어졌는데 임신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임신테스트를 해 보라고 말을 해줬죠. 임신테스트기라는 게 있는지, 어디서 파는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성교육 받을 때도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요. 두 줄이 찢어요.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했어요. 이 이야길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떻게든 낙태 비용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도 남자친구도 낙태는 얼마인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죠.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었어요. 낙태는 불법이라는데, 그래도 한 오십만 원 쯤 있으면 하지 않을까 짐작만 했죠. 하지만 나도 남자친구도 고등학생인데, 오십만 원이 어디 적은 돈인가요. 결국 부모님에게 이야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맞았어요.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빠는 내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다며 나를 딸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도 며칠 뒤에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고 돈도 내줘서 낙태수술을 하기는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누구에게라도 하소연 하고 싶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괜한 짓이었어요.

며칠 뒤, 학교에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담임이 불러내서 자퇴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어요. 임신한 게 죄냐고, 낙태했다고 학교 다닐 권리도 없냐

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임신한 건 죄래요.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며 자퇴를 하래요. 자퇴 안 하면 제가 임신하고 낙태했던 걸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알리고 낙태는 불법이니까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할 거래요. 남자친구에게까지 피해 가지 않게 하려면 조용히 자퇴하래요.

어찌겠어요. 자퇴서 쓰고 나오는 길, 나는 죄 지은 거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임신은 보통 축하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학생이 임신하면 죄인인가요? 낳아 키울 여건이 안 되면 낙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낙태가 죄인가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4

2016년 3월 24일. 나는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을 만한 병원은 어디인지,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였습니

다.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수술방법으로, 달라는 대로 금액을 주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니 수술대 의자와 수술 도구에 바로 전 사람이 수술할 때 묻은 것 같은 피가 보였습니다. 순간, ‘소독 한 번 해달라고 부탁할까?’ ‘애 지우러 온 주제에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할까?’ ‘이런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왜 내가 내 돈 주고 수술을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어렵게 찾은 병원인데 수술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결국 아무것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저에게 수술방법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의료과정이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할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저는 출혈이 너무 심하고 길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검사를 위해 재방문하라는 병원의 문자를 받고도, 불결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떠올라 다시 그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했지만 임신중절은 불법인데 수술을 했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에겐 임신을 중단할 권리만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기본적인 권리도 없었습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5

2010년 9월 29일, 나는 HIV 감염인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과 동시에 죽음을 떠올렸기에 지난 10년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진을 받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치료제만 잘 복용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많은 감염인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확진과 동시에 죽음을 떠올렸는지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이른 생각은 이 병에 대해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감염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

이 되었고, 그 누군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부분은 바로 사랑, 결혼, 성적 만족감, 행복감이었습니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못 할 이유는 없지만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성적 만족감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으리라는 상상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 그리고 저를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저를 혐오하고 저를 내치는 이유가 바로 '문란한 성관계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감염 이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감염인도 적절한 조치를 하면 수직 감염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염내과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물론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극렬히 반대하였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

다. 그 상대방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저의 임신계획을 문제 삼으면서 친척들에게 제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함부로 알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사랑하는 상대와 그 가족이 저를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전히 저에게 성적인 낙인을 찍고, 어머니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6

2012년 12월 18일, 나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으로 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에게 모텔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생리가 나오지 않아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4주라고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인공임신중단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낙태죄'라는 법이 있어,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지만, 먼저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고소사실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며 수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불법 수술을 해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수술비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었고, 나에게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수술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면서 불법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 측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유산 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한 것 아니냐’며 고소사실확인서를 빨리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기소의견을 송치하고 나서야 인공임신중단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임신주수가 14주를 지나있었고 수술의 위험성이나 비용도 임신 초기에 비해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직전에는 “성폭력 피해가 아님이 밝혀질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가 낙태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당장 내 몸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7

2014년 6월 20일 나는 임신중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물 한 살 대학생입니다. 직접 나와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글을 대신 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낙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는 사귀지 얼마 후부터 틈틈이 섹스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고, 저는 섹스에 대해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요구를 미루고 미루던 중 하루는 남자친구와 키

스를 하고 애무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삽입을 시도했고, 저는 삽입은 안 되고 질입구에서 비비기만 하는 건 괜찮다고 그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생리를 할 때가 되었지만 생리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제서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쿠퍼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면 임신을 한다고 했던 성교육에서는 배워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전희를 통해 나오는 쿠퍼액에도 미량의 정자가 섞여 있으며 임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너무나 불안해졌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삽입도 안 했고 사정도 안 했으니 조금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눈치 보면서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웠지만,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준비하던 대학교, 꿈, 부모님, 학교생활 같은 것들이 떠올랐고 왜 지금, 왜 사정도 안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고등학생 임신부라는 손가락질과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한다는 불효, 대학이나 취업 같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 하게 된다는 걸 감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저는 낙태를 결심하게 됐습

니다.

그러나 겨우 인터넷을 뒤져서 나온 병원들에 전화해서 나이를 얘기하자 "부모님은 아시냐." "부모님 동의 없으면 수술 못 해준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정말정말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와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으로는 수술비의 절반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부모님 동의를 요구해서... 저는 당신들 딸이 섹스를 했고, 낙태를 한다는 사실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혈, 그런 거로도 임신이 돼?"라고 하면서 제가 낙태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동의해준 게 다였습니다. 낙태에 남자친구의 동의... 솔직히 말해서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 저는 제가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통해 얻은 결론을 왜 개한테 허락받아야 했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고민 끝에 아이를 낳겠다고 했으면 남자친구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8

2015년 4월 19일. 나는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일을 하고 있던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직장인인 동시에 가정주부이자 아이 양육자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하는 임신과 출산인 것처럼, 결혼과 출산이 의무인 것처럼 사회 속에서 세뇌되어왔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제도도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임신하는 동안 하혈, 임신성 당뇨, 아이 태동의 문제로 임신 내내 힘든 날을 보내고 양수가 터져 제왕절개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밤에도 아기에게 2시간마다 수유를 하려면 산모가 밤에 수면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야 한 시간 정도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체력과 지속되는 수면 부족은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고 집안 청소와 빨래에 하루종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동안 저의 끼니는 서서 잠깐 때우거나 패스트푸드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엄마의 의무라고 소리높이며 ‘맘충’이라는 단어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란 양육비에 자아실현이든 뭐든 상관없이 당장 돈을 벌이가 필요한 저는 휴직이 끝나고 직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직장에 복귀했을 때 아이가 아플 때 누가 돌보아줄지, 야근이 생기는 날, 출퇴근 시간이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육아에 대한 고민이 직장 복귀 준비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 여성을 직장에서 반길 리도 없습니다.

육아로 인해 돌아갈 직장이 없는 여성도 다수이며 전업주부의 입장이라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유지를 위한 생활비를 쓸 때에도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사치하는 것처럼 집안일을 하고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여전히 임신,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나 비용을 결혼한 여성 혹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전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9

2009년 7월 31일 나는 첫 출산을 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날 밤 양수가 터져서 5시간 진통해서 첫 출산을 한 날입니다.

저는 첫째를 임신하고 병원을 찾았을 때 그것도 대학병원이란 곳을 갔을 때 간호사가 절 보더니 너무도 당연하게 첫마디가 “아기 지우실 거죠?”였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내가 판단했을 때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였다면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마음대로 정해진 틀처럼 “낙태해야 할 몸, 낙태해선 안 될 몸”으로 규정지어놓고선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을 권리도, 낙태할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의 몸을 국가의 정책에 맞는 “생명권, 모성권”만을 주장하면서 누구에게는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몸, 또 다른 누구에게는 “우생학”을 주장하면서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낙태든, 임신이든, 출산이든, 양육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을 국가의 몸이 아니라 “여성”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갖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퍼포먼스_ 10명의 발언자들, 여성들의 경험을 증언하다 10

2017년 9월 28일, 나는 이 나라에서 장애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여년 전 국가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구를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이유로 피임과 낙태 수술을 강요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우생학적 사유 또는 유

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가 정한 '정상'적인 인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철저히 통제되어왔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관점에서 저는 운이 좋게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태아를 낳으면 안 되는 몸으로 규정된 장애여성입니다. 제가 성인의 나이가 되기 전까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장애가 유전될 수 있으니 아이를 낳지 말라”고, 그러나,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불과 몇 년 전과는 또 다르게 “너는 이제 장애가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타인에 의해 제 몸이 판단되고 강요되는 일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가가 장애를 낙태허용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결정한 낙태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국가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태가 불법화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 없음이 결국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를 결정하는 것 또한 장애여성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여성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자유발언_ 익명

저는 1998년에 낙태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간 만나면서, 그의 요구로 늘 콘돔 없이 성관계했고 이로 인해 마음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후 남자친구는 당연히 해야 할 문제를 해치웠다는 반응이었고,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콘돔 없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임신에 대한 공포, 낙태에 대한 죄책감 모두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라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만 독박 처벌하는 낙태죄를 시행하는 정부는 이런 책임감 없는 한국 남자와 무엇이 다른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저의 어머니도 낙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낙태한 사실을 결혼 후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5년 3월, 엄마는 임신하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태몽으로 소 꿈을 꾸었기 때문에, 집에서 낙태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엄마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엄마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부모와 큰 집에서 이래라저래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죄책감은 시부모도, 큰집도, 가족 등 그 누구도 아닌 엄마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할지 말지는, 시부모도 정부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당사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현장 자유발언2_ 익명

저는 성판매 여성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겠는 성 구매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원치 않았지만, 수술비용이 없었습니다. 성매매는 성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중절 수술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불안함과 하루하루 바뀌는 저의

신체 상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저 자신이었습니다.

성 판매 여성들은 성 구매자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콘돔을 하지 않으려는 남성들과 '협상'하거나, 요구를 거절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상담소에서는 계속해서 임신 중절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낙태되는 성 판매 여성들의 몸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가 정한 조건을 벗어나,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 자유발언3_ 익명

저는 논바이너리(Non-Binary: 자신을 전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 젠더로 정의하지 않는 사람. 여성과 남성의 스펙트럼 사이 어디쯤으로 자신을 정의) 트랜스젠더입니다.

2011년 초기, 임신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생리할 때마다 디스포리아(dysphoria: 트랜스젠더/젠더퀴어가 정신적 성별gender와 신체적 성별sex의 불일치로부터 느끼는 성적 불쾌감)를

느꼈던 저는…저의 임신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큰 혼란을 느꼈고, 제 몸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위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이제 너는 여성으로서 완전한 경험을 한 것’이라는 말도 들었으나…아닙니다. 저는 논바이너리입니다. 저는 여성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임신중절수술을 망설임 없이 택했고 그것은 저의 온전한 결정이었습니다. 언젠가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아예 임신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수술 후) 가임이 가능한 섹스를 한 뒤에는 늘 임신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아무리 콘돔을 써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임신을 지속하였다면, 저는 죽음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임신중절수술은 저의 목숨을 살리고, 제가 원하는 성별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낙태죄에 대해 전면 반대합니다.

▶ 기자회견문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낙태죄라는 썩은 뿌리, 적폐 청산을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는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을 지시하고, 강제 낙태를 허용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30년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가 만든 모자보건법은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없이 성평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을 구현하겠다 밝혔다. 후보자 시절 낙태죄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의견을 밝혔

지만 낙태죄는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100%의 피임법은 없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100%의 피임법은 없다. 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비의학적, 비과학적, 차별적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현 정부는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개인의 결정, 여성의 판단은 늘 한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실은 이에 대해 사회와 개인이 함께 고민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나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사회 부정의에 투쟁할 것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만이 실질적으로 임신중단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임신중단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심지어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4개국의 사례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모가 될 수 있는 권

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생명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 누군가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그래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를 무시하고 낙태와 가족계획을 강요하다가, 인구가 필요해지자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가는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했다. 낙태죄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것이 인권의 기초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 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단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이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불꽃페미액션,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함께하는 단위

관악여성주의학회 달, 군포여성민우회, 녹색당, 동국대 여성주의네트워크 쿵광, 동북여성민우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인천여성민우회, 팽귄프로젝트

2017년 11월 9일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일시 : 2017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진행 :

- 사회_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 발언
 - 노새(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최형숙(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이은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이유림(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연구원)
 - 이한본(민중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주관 및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불꽃페미액션,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천안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건강과대안,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불꽃페미액션, (사)탁틴내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성과재생산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펭귄프로젝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_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노새입니다. 민우회는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낙태죄 관련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에 접수된 임신중단 당사자의 두 분 사례를 대독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경험 사례입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후 총 네 번의 낙태를 했습니다. 처음 낙태는 첫아이 출산 이후 직장을 다니느라 어쩔 수 없었고, 그 이후 두 번은 시어른들이 낳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몰래 수술을 받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다시 임신했는데 쌍둥이였고, 한 명은 이미 자궁 속에서 사산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남편과 시어른들은 낳기를 바랐지만, 저는 이 아이까지 아이 셋을 키우는 것도, 자궁 상태도 걱정 되어 네 번째 낙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월급으로 여섯 식구가 빠

듯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IMF로 절반이나 줄어서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바란 건지, 그저 출산만 바라던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됐고, 스스로는 더 이상의 출산은 하지 않겠다 마음 먹었지만 남편이나 시어른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가 힘들어서 제가 자궁을 가졌단 사실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정관수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루프 시술을 받겠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말리더라구요. 그러면서 질외사정을 피임법으로 알고 덤비는데, 정관수술이 무서운 사람이 제가 네 번의 낙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대책 없이 낳기만 바라는 가족들, 피임법도 모르는 남편, 그 와중에 낙태가 죄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다음은 불법으로 판매되는 임신중단약을 구매하여 복용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임신중절약’을 구매했습니다. 수술해주는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처벌 때문에 수술에 대한 공포가 심해서였습니다. 약은 수술보다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었는데, 포장도 없이 작은 봉투에 달랑 몇 알 들어 있는 그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판매자 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을 복용한 후 저는 혼자 방 안에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며칠간 심한 출혈과 탈수 증상에 시달리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는 임신 확인 후 과로로 출혈을 겪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의사는 우선 축하한다는 말부터 건네면서 남자친구는 알고

있냐, 결혼할 사이냐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혼자 소파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두려워했던 수술의 충격을 결국은 겪게 되는구나 하며 우울했고, 몸조리도 잘 하지 못해서 지금도 임신초기 당시의 무릎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아플 때마다 제가 겪어야했던 과정, 거짓말들, 죄책감과 몸의 통증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불법 수술, 불법 약물, 낙인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여성들은 오롯이 혼자서 견뎌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을 넘겼다. 지난 해 한국 껄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도 이미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는 선언이자,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이다. 오늘 모인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생명이나 삶이 국가에 의해 선별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사회를 시작하기 위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권 대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몰아가는 구도에 반대한다. 대신 우리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한 채 생명을 선별하고 삶을 통제해 온 국가를 고발한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했으며, 현행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우생학적 조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오히려 낙태죄를 유지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부담없이 생명에 대한 선별과 통제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장애나 질병, 경제 조건,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성차별은 출산과 양육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임에도 이와 같은 사회 조건들을 개선하는 대신 여성에게만 그 선택의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 낙태죄의 실체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은 대립하는 권리가 아니다.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여성의 판단은 태아가 살아갈 삶의 조건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생명을 선별하고 삶의 조건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차별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임신중단율을 증가시킨다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임신중단율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도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예방하기 보다는 여성들을 고비용의 안전하지 못한 시술 환경으로 내몬다. 옷걸이나 초산 등으로 자가 낙태를 시도하거나, 시술 후 후유증이 발생해도 다시 병원을 찾아가지 못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한국에서도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임신중단 시술 병원 고발 이후 시술 비용이 치솟고 원정낙태가 증가했으며, 불법 복제 낙태약 밀반입이 시작되었다. 결국 2012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임신 23주째가 되어서야 겨우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가간 1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는 여성에게 낙태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관계유지를 강요하거

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등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100% 효과적인 피임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과 권력, 섹슈얼리티 위계 차이가 심각한 사회 조건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때문에 임신중단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고 시술이 음성화될수록 임신중단 시기는 늦어지고 그로 인한 위험은 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임신중단율은 더욱 증가한다. 2016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의 피임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일수록 임신중단율이 높으며, 합법화 된 지역보다 금지된 지역에서 임신중단율이 더 높다. 낙태죄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상담,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 낙태죄 폐지는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낙태죄 폐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많은 이들이 청와대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에, 일각에서는 당장 유지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공론화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공론화를 원치 않는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모두의 ‘삶’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낙태죄를 폐지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례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을 핑계로 공을 떠넘겨 버리는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 국가가 개인을 인구관리와 성적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보다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하라.

2017년 11월 9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불꽃페미액션,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명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8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천안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건강과대안,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불꽃페미액션, (사)탁틴내일,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성과재생산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정의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팽귄프로젝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행동하는의사회

2017년 12월 2일 집회/시위

제목 : 검은 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일시 : 2017년 12월 2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내용 :

- 사회_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자유발언대 I
 - 변예진(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앞(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행진(광화문 세종로 공원-경복궁역-자하문로-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 자유발언대 II
 - 윤정원(녹색병원 산부인과장)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처장)
 - 익명의 여성/시민들
- 행진(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자하문로-경복궁역-광화문 세종로 공원)
- 자유발언대 III
 - 노다혜(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유나(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 예원(페미당당 활동가, 페이스북 <성판매 여성 안녕들 하십니까> 2017년 11월 29일자 게시글 대독)
 -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익명의 여성/시민들

주관 및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불꽃페미액션, 성과

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주최 :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

발언문_ 변예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발랑 까진 년 혹은 순수한 소녀라는 이분법 깨자(페이지41) 참조

발언문_ 앞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앞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자보건법 상에는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입니다.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낙태가 허용되는데 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중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폭력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임신중단이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네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원치 않는 고소를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성폭력 아닌데 그냥 낙태하려고 고소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게 되기 십상이고, 심지어는 검사나 가해자에 의해 '무고'로 몰릴 위험에 처합니다.

둘째로 법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모자보건법 상 예외

조항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모두 '구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간, 준강간이라는 법적 용어는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수많은 무죄 판결을 통해 우리는 법원이 성폭력을 얼마나 좁게 해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겪는 성폭력은 그보다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벌어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따금 임신 중단에 관한 문의를 받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직접적으로 '성폭력은 아니었는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그 말은 신체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권력의 차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위치성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상대가 몰래 콘돔을 뺀 경우, 여성의 삶과 경험 속에서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 임신을 하게 되면 모자보건법 상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여성의 임신중단을 '낙태'죄라고,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주장처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인구 통제를 위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은 선별하겠다는 메시지이며, 강간 또는 준강간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및 임신중단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여성에게 지우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간접적으로 징벌하겠다는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더이상 여성의 경험을 협소한 법의 언어로 조각내지 말고 여성의 임신중단이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혜적으로 평가 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기 바랍니다.

발언문_ 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안녕하세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활동하는 유나입니다.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여성주의자들에게 낙태죄 폐

지가 왜 절실한지를 자유발언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중단 허용사유이지만, 성매매 과정에서의 임신중단은 불법입니다. 성매매 여성의 임신중절은 지원상담소에서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산 지원은 되는데 말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왜 임신을 하게 되는지, 왜 성구매자가 콘돔을 쓰지 않는지 이걸 구조적 젠더폭력으로 전혀 보지 않는 것이죠

성구매자들은 콘돔을 끼지 않습니다. 성판매자는 이를 협상하고 싶더라도 구매자를 성나게 하면 안 되는 을(乙)의 위치이기 때문에 구매자와 제대로 된 협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구매자는 우기면 그만이고, 여성들 스스로 구강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피임은 100%가 아닌데다가 구강피임약으로는 성병 예방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피임에만 의지하는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에게 임신은 먼 일이 아닙니다.

임신중단 불법은 성차별적입니다. 지금도 콘돔 없이 성구매를 하고 있을 남성은 임신중단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겪을 일이 아

니니까 콘돔 없이 성구매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임신중단이 불법이어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치 않는 임신, 책임질 수 없는 출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는 여성입니다. 남자중심적인 법/사회/문화/제도는 제 몸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 자기 몸의 경험을 주도하며 살 권한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낙태죄 폐지가 된다고 해서 성매매 과정에서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판매여성의 통제력이 성구매자에게 양도되는 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문제의 ‘해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는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겨졌던 임신, 출산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문제로 전환하는 계기,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독_ 페이스북 성판매 여성 안녕들 하십니까 2017년 11월 29일자 게시글

201*년 겨울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1*월이었나, 지인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산부인과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어요. 얘기를 듣고 산부인과에 가 진료를 받아보니 임신 3주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했지만 무사히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한 지인이 사실 자기도 그 이전 해에 임신중절을 해서 헛구역질 하는 거보고 혹시나 했다고,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며 수술했던 병원을 소개해줬습니다. 중절을 경험한 지인 덕에 중절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해매지 않아도 됐어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학생이고 경제적 능력은 없으니 중절해야지’ 흔들림 없이 바로 병원에 연락해 중절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하고 다음 날에 경과를 보러 병원에 다시 들려야 한다고 해서 아는 언니를 통해 서울에 있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도 구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마취 때문에 혼자 걷기 힘들 거라고 아는 언니가 병원에 같이 와줬어요. 남자친구의 민증과 수술동의서를 제출하고 십자모양의 수술대에 누

워 팔다리를 묶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끝난 후에는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와 언니들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었어요. 중절 수술하고 피가 흡수되도록 질에 붕대 뭉친 걸 넣어두는데 이견 의사가 꺼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체크하고 꺼내야 했어요. 11시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붕대를 빼냈습니다. 조금 아프긴 했지만 언니들이 고생했다고 토탕토탕해줬습니다.

이런 일을 부끄럽게 왜 공공연한 곳에 올리냐고 삭제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을 기록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임신중절 수술을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아는 분이 한의원을 하고 계셔서 중절 후에는 수족냉증이 올 수 있다고 몸 돌보라고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운이 좋았고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해 *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가 잃었다가 했습니다.

비몽사몽으로 입원과 진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고 설명을 이해하지 못 한 채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간호사가 체크해달라고 준 검사지 질문 중에는 ‘이전에 유산 혹은 중절 경험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고 저는 기혼여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답변이 제 몸에, 이후에 진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해하며 질문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채로 가만히 누워 항생제 주사를 맞는 게 고작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위염, 장염, 복막염, 골반염, 질염, 방광염까지 복부 전반에 염증이 퍼져있고 염증 수치가 높아 패혈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보러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오줌을 빼거나 부축을 받아야 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건을 물고 봐야했습니다. 소변을 보는 게 두려워서 참고 참다가 울면서 봤습니다.

결국 의사선생님에게 이게 지금 아픈 거에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절 경험이 있으며 중절하고 이후 임신을 막기 위해 미레나 시술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미레나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항생제 주사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병실을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팠던 이유는 아마 불법 임신 중절 - 성매매 경험으로 세균감염에 노출되어 있었고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미레나 시술을 받아 부작용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미레나 제거시술을 받은 뒤 차도를 보인 것으로 볼 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미레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보며 그랬던 게 아닐까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왜 아팠던 건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젊은 처녀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라며 비난했습니다. 연락을 끊었다가 입원동 의서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이 된 엄마는 “여자애가 이런 일로 병원에 오면 어떡하냐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미레나’, ‘자궁’, ‘성병’ 과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를 불편해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듣고 몸을 돌볼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죄인이었고 고개를 숙이고 네, 네, 만 할 수 있었습니

다.

‘이게 옳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는 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없었던 건지. 왜 이 모든 책임을 저 홀로 져야 하는 건지. 물론 저는 지지하고 고통을 함께 지려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안전, 건강을 위한 지지기반, 네트워크, 적절한 설명과 진료를 받을 기회 등이 그 사람 개인의 역량, 자원, 운에 달려 있는 게 옳은 건지.

애초에 임신을 안 하면 되는 걸까. 하지만 임신이 제 인생에서 화두로 오른 첫 기억은 초등학교 오학년 즈음입니다. 본가에 있을 때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 제 방으로 들어오곤 했어요. 저는 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 저는 이 곳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봐야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폭력으로 인지하고 문제 삼으면 이후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 감고 입 닫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전보다 오래 샤워하며 혹시나 임신한 건 아닌지 배를 쓰다듬고 찬물을 트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 때 읽었던 ‘오싱’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이 유산하기 위해 차디찬 강에 몸을 담궜다는 장면을 떠올리며 차가운 샤워기를 배에 대고 있었어요.

중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또래친구들을 사귀며 집밖을 나돌았어요. 24시간 카페에 죽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냥 길거리에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춥고 배고프고 피곤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오빠들의 집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섹스를 하게 됐어요. 늘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불안함을 토로하면 친구들은 동성을 좋아하게 돼서 내가 동성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랑 자랐다고 부모에게 얘기하고 중절수술비를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동성애자인 것보다는 조금 빨리 임신한 이성애자가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어떤 위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성관계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임신 출산 육아를 전제로 하는 성관계가 권장되지만 그렇다고 미혼인 여성이, 청소년이, 너무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요. 임신, 출산, 육아, 사회 재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는 더러운 동성애자는 성 위계 최하위의 위치에 위치해있고요. 뭐 이런.

이 사회는 여성의 임신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는지. ‘임신하는 게 애국이다.’, ‘다자녀 출산은 큰 애국’과 같이 임신, 출산, 육아를 국민으로서의 수행으로 구성하는 사회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는 비혼여성, 레즈비언, 게이 등 성소수자는 애는 안 낳으면서 섹스는 하는 문란하고 이기적인 비국민이 되고요.

낙태는 어느 순간에 허용되는가. 누구에 의해서 허용되는가. 낙태죄 폐지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라면 수술을 받는 여성이 기혼인지, 미혼인지가 왜 얘기되는가. 중절 수술을 하는데 왜 남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부모가 장애 혹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가 왜 중절 사유로 고려되는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낙태를 문제 삼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얘기하고 있지만요. 제 생각에 임신중절 불법화의 본질은 이성애 - 일대일의 -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 청소년 시기에는 무성적이지만 이십대가 되면 성적이어야 하고 특정 시기가 지나면 무성적인 어머니라는 존재가 되어 돌봄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대로 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 검열을 통한 국가가 원하는 국민 만들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방식으로 꾸리고자 하는 여성들을 억압,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하에서 임신했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답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으로도 이전 정권보다는 진보한 거고 기뻐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요. 이런 불가피한 사례를 나열할수록 요구하는 피해자상에 들어맞아야만 선별적으로 허락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로 나뉘며 낙태죄가 불법으로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는 누군가는 범죄자가 됩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불가피와 가피의 영역을 나누어 여성들이 얼마나 고부담을 지고 있는지 인정하고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성을 자궁으로,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국가의 국민 통제에 맞서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일대일 이성애 교제와 출산을 통해 사회 재생산의 역할을 다하기를 강요하는 사회에, 국가가 자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고 가임기 여성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매우 반기면서도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도 상담도 경제적, 전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낙태죄 폐지라고 국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2월 2일에 낙태죄 폐지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2월 1일~2018년 3월 5일

여성신문 연속기고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총10회)

발랑 까진 년 혹은 순수한 소녀라는 이분법 깨자 _변에진 (볼꽃페미액션 활동가)*

나는 청소년이자 여성이다. 이는 곧 성 차별과 연령차별을 동시에 받는, 복합적인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성 청소년의 이미지는 미성숙함, 연약함, 어여쁜, 순진함, '보호대상'이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흔히 여기는 '정상 청소년' 상태를 이탈하면, 날라리, 비행아가 돼 보호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청소년과 여성의 성은 일종의 금기로 취급된다. 학교에선 연애를 금지하거나, 성적 행동을 규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교 내 성교육은 '건전한 이성 교제', '책임감', '순결', '자제력'을 강조해 성행위에 대한 공포와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다. 일선 성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리 없는 비명'이란 영상은 낙태반대진영에서 1984년에 제작한 조작 자

료다. 교육에 부적합한 영상을 통해 임신중절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식을 여성들에게 심고 순결을 강조한다. 여성들은 학습을 받으면서 임신과 임신중절에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학생 시절엔 낙태가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구성된 교육을 제공 받을 학습권에 대한 침해이다. 나는 더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다. 이성과, 또는 동성과, 또는 혼자서 어떻게 성행위를 해야 더 좋은지, 모두에게 다 성욕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비롯해 다양한 피임법, 임신 과정과 출산 후 몸의 변화는 어떤지 등을 알려주는 교육을 원한다.

남성 청소년이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욕구로 여겨진다. 그들마저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은 성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끔 교육받는다. 성에 절대 관심을 가져선 안 되는 무성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성행위의 유무로 발랑 까진 년, 더러운 년 아님 순수하고 깨끗

* 여성신문, 2017년 12월 1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60>

한 소녀가 된다. 친구들과 대화하다가도 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조심스러워지고, 부끄러운 일로 여겨 침묵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이중성은 남성과 여성이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규범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지 강제하며, 여성이 '성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욕망을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청소년의 성행위를 제한하는 명분은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성행위를 할 수 없다'이다.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뜻일까? 폭력성, 책임의 부재, 임신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며 나이와 무관하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 왜 알려주지 않는 걸까.

100% 완벽한 피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신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경제적 이유든, 산모의 건강 문제든, 유전적 문제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양육하고 싶지 않아서든, 임신의 지속과 중단은 여성의 삶의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의 판단과 결정 하에 출산 혹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가족 구성과 형성, 시기와 방법 등의 고민과 결정은 국가가 침범할 수 없

는 영역이다.

청소년에게 임신도, 임신중절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임신한다면 어떨까? 일단 아이 양육비, 교육비,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청소년은 누군가의 부양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다. 불법 시술로 인한 고비용과 위험도 감당하기 힘들다. 청소년의 임신은 보호자, 부양자, 선생님 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성 또한 소거된다.

또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살인자 취급을 받는다. 죄인이 되어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외면당한다. 위험한 시술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돼도, 실만한 공간과 기회도, 그럴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심을 살까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임신중절을 죄로 여기는 사회가 낳은 결과다. 본인 스스로 출산을 선택해 아이를 낳은 청소년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임신중절이 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도 형성돼야 한다.

낙태죄는 여성의 결정권을 누락시키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만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임신 중절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질 수 없는 여성의 권리이고, 한 인간의 삶과 존엄을 뒷받침하는 권리는 찬반의 문제가 될 수 없기에 당장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

임신중절 가르치지 않는 의대, 여성 건강권 외면하는 사회 _ 박건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수술실에 들어가니 수술대 의자와 수술 도구에 바로 전 사람이 수술할 때 묻은 것 같은 피가 보였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왜 내가 내 돈 주고 수술을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어렵게 찾은 병원인데 수술 못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결국 아무것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저에게 수술 방법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의료과정이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할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저는 출혈이 너무 심하고 길어서 걱정이 많이 되

었지만, 검사를 위해 재방문하라는 병원의 문자를 받고도, 불결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떠올라 다시 그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에겐 임신을 중단할 권리만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기본적인 권리도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모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발언 중 일부)

한 여성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간 병원에서 경험한 사례다. 우리 사회가 임신중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대략 17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되며(2011년 복지부 조사 추산), 그중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절 관련 합병증을 앓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에서 임신중절은 불법이나,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제한적 수준(너무나도 제한적이기는 해도)의 법적 허용기준을 고려해보면,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며,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 여성신문, 2017년 12월 12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14>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임신중절을 불법화하고,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통해 임신중절을 “소외질병화”시키며, 임신중절을 선택한 수많은 여성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만 유행하는 질병이 그러하듯이, 한국에서의 임신중절 관련 의학기술과 지식은 아무도 애써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결국 여성에 대한 건강의 위협,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임신중절이 불법이다 보니, 산부인과 커리큘럼이나 임상실습, 수련과정에서도 임신중절 기술을 교육하지 않는다. 수련을 마치고 임상에 나가서야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최신 지식을 접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임신중절이 일정 수준에서 합법화된 미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중 97%, 산부인과 레지던트 중 36%가 임신 제1/3분기 임신중절 수술 경험이 없었다.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중 소수만이 의학 수련에서 임신중절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외과적 수술보다 부작용도 많지 않고, 건강상의 위험도 크지 않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약물적 유산유도제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의 경우,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구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다. 여성들은 해외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술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 모두 여성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감내해야 한다. 이는 단지 기술적 측면에서만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신중절이 불법화된 상황에서 여성의 선택지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현격히 줄어든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위험한 수술이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결국 항시적인 건강권 침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임신중절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여성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행위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사회문화적 일탈행위로 낙인찍어버리고 말았던 한국 사회 때문이다. 여성들이 알아서 해결해 버리고, 임신중절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던 오랜 세월 속에서 여성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일수록 겪었던 사회적 불평등과 위험성은 더 커져만 갔다. 그 고통은 기록되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 드러나지도 못했다. 이제 임신중절은 더 이상 소외질병화돼 외면하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자, 건강권 실현의 중요 의제 중 하나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의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_박지영 (페미몬스터즈 활동가)*

3년 전 즈음이었을까, 그 시기에 만났던 남자친구는 입대한지 얼마 안 된 군인이었다. 그의 첫 휴가 때 우린 첫 섹스를 했다. 전부터 몇 번 시도를 했었지만 발기가 되질 않아 허탕치고 말았다. 그렇게 몇 번의 삽입을 시도하다 콘돔을 착용할 겨를도 없이 그는 사정을 해버렸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맘에 문 연 약국에 가 응급피임약 처방을 요구했으나, 약

사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높아지는데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응급한 상황임에도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 보니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절박함을 이용해 비급여로 5만원에서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응급피임약을 그냥 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결국 하루를 더 기다려 응급피임약을 처방 받았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임에도 의사는 약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안내하기는커녕 “아직 48시간이지나지 않아서 살짝 불안하겠지만 약을 잘(?) 먹고 생리를 안 하면 다시 오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덜렁 ‘처방전’ 하나를 들고 급하게 약국을 찾아갔다. 약국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통한 복약 안내는 하지 않고,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면 다시 오라고 했다. 그렇게 의사의 애매한 진단과 15%의 피임율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불안에 떨며 일상을 보냈다.

다음 달이 되어도 생리 혈이 비치지 않았다. 속은 이상하게 메스껍고, 유난히 졸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했다. 다음날 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고, 임신 5주 진단

* 여성신문, 2017년 12월 18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589>

을 받았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고 했더니, 실장이라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 그녀는 수술비와 사후관리비를 포함해 120만원을 불렀다. 나는 가난한 공무원 준비생이었고, 남자친구는 군인이었던지라 그 큰돈을 구할 수 없었다. 다행히 한 병원에서 사후관리비를 제외하고 60만원에 수술을 해준다고 했다. 절박했던 나는 의료진의 전문성, 수술 시의 안전, 수술 후의 부작용 ‘따위’ 등은 고려할 여력조차 없었다. 내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낮아졌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120만원의 ‘사후관리’를 해주는 병원을 택했으리라. 현실은 여성들이 몇십 만원조차 없어 제대로 된 수술 장비조차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 위험한 시술을 받거나, 계단에서 구르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간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날짜를 잡으려 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내원해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다. 남자친구가 군인이라 내원하기 힘들다 했더니, 병원에선 동의서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딱 잘라 반복했다. 내 몸

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있었고, 나는 휴가를 빨리 나와 서명해달라고 ‘구걸’해야 했다. 남자친구가 거짓말로 둘러대고 간신히 휴가를 받아낸 건 2주 후였다. 그 사이 나는 스트레스로 하혈을 했고, 의사는 유산기가 있으니 하루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내 안전을 위한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모든 것에는 남자친구의 동의가 필요했다. 내 불안은 극에 달해 돈을 주고 남자친구 대행을 구해야 하나 까지에 이르렀다. 실제로 돈을 주면 직접 남자친구를 대행해주거나, 연결해주는 업체들까지 있었다. 남자친구에게도 임신의 책임이 있었지만, 그가 지는 책임과 고통은 일말이었고 모든 것은 내 몫이었다. 이미 법은 날 낙태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낙인찍었으나, 죄를 같이 범했음에도 법의 책임에선 벗어난 남자친구가 후에 헤어진 보복으로 날 고소하진 않을까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위 이야기들은 내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아닌 내 친구를 포함한 대다수의 여성이 겪고 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제까지 ‘찬성 혹은 반대’, ‘여성의 결정권 혹은 태아의 생명권’의 이분법

적인 구도로 낙태죄를 이야기 해왔다. 나는 누군가의 찬반 의견 따위와 상관 없이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꺼이 불법이 됐다. 생명을 가볍게 여겨 임신중절을 결정하지 않았다. 내겐 어떤 결정권도 오롯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환경과 맥락들,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낙태죄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 피임, 섹스, 출산, 임신중절, 양육까지 모든 논의의 주체와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다. 현행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그래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상적’ 시민만 탄생시키려
한 국가, ‘낙태죄’ 물을
자격 있는가_ 최나은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고대 그리스의 일화다. “사람들은 어린

* 여성신문, 2018년 1월 2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36>

아이를 씻기고, 탯줄을 자르고 아버지에게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는 홀 한가운데 서 있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 앞의 바닥에 눕혀질 것이다. 이 순간 몇 초 사이에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의식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몸을 굽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모든 친척들의 이마 높이까지 아이를 들어 올린다면, 아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아버지가 무표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알베르토 안젤라,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까치, 2012)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키워야 할 아이가 너무 많거나, 강간이나 간통으로 잉태됐거나, 분명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경우 등이다.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엔 아이가 사회에 나오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여성의 이기적인 선택이며 불법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절이 권유·허용된 역사와 사유를 살펴보면, 사회가 어떤 사람을 구성원

으로 수용할지 배제할지 구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낙태죄’임을 알 수 있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 구성원을 선별하고자 했다. 1960~70년대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이 진행됐고, 임신중절이 일종의 피임 방법으로 권유됐다.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한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정부의 협조 아래에 시술이 시행됐다. 1999년 김홍식 한나라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전국 68개 시설에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지적장애인은 총 66명(남성 40명, 여성 26명)이었다. 강제 불임수술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해당 행정기관, 보건소,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정부의 공식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강제 불임수술, 강제 임신중절 등 극악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을 뿐,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일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시설’이라는 고립적이고 통제적인 공간에서 살면서 자위도, 섹스도, 임신도, 출산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건물 한두 채에서 100여 명이 단

체생활을 한다. 규모 10평을 넘지 않는 방에서 5~10명이 모든 일상을 같이 보낸다. 개인공간이 없는 환경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보하고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비장애 중심 사회가 장애인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 격리함으로써 시민권을 박탈하고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일종의 배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동시에 그들의 재생산을 통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시민이 이 사회에 더 생겨나지 않도록 선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을 비롯해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위협받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비장애 이성애 성인 남성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 청소년, 비혼여성, 여성 노숙인, HIV 여성 감염인, 가난한 여성, 저학력 여성, 비이성애 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성적 실천을 통제하고자 하며, 이들이 임신했을 때 쉽게 중절을 권한다. 이런 차별적인 행태는 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하며, 이들이 ‘무책임한’, ‘낳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낳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강화한다. 국가가 낙태죄를 통해 태어나도 되는 존재 혹

은 태어나선 안 되는 존재로 시민을 선별하는 한, 소수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계속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 강제로 임신중절을 실시했던, 모자보건법 14조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우생학적 사유 또는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누군가에게만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낙태죄를 통해 정상적인 시민을 선별하여 탄생시키고자 하는 국가는 임신중절을 죄라고 말할 수 없다. ‘낙태’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국가는 임신중절 범죄화를 멈추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적 및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낙태죄’, 협박의 도구가 되다 — 홍연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

어느 날, 한 여성이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이유로 협박을 받고 있으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했다. 이미 몇

차례 ‘여성긴급전화’에 전화를 했으나 “임신중절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도 했다.

민우회는 ‘불법 낙태’에 대한 단속이 가속화됐던 2010년부터 임신중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 건수는 많지 않지만 매년 관련 상담 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민우회가 시술 가능 병원 문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접수한 사례가 바로 ‘낙태죄’를 빌미로 한 남성들의 협박 사례다. 협박 이유는 주로 ‘관계의 유지’와 ‘금전적 요구’였다.

5년 전 민우회는 남성에게 협박당한 20대 여성 A의 대응을 지원했다. A는 음주 시 심한 폭언과 폭력을 하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됐다.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 결심하고 결혼했으나, 남성의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면서 파혼했다. 파혼 과정에서 결혼 비용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불리해진 남성이 A를 ‘낙태죄’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남성이 임신한 A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1심에서 여성인 A에게만 벌금 200만원을, 의사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남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결

* 여성신문, 2018년 1월 8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18>

국 의사는 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여성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작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30대 여성 B는 약혼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으나, 남성이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점을 고려해 ‘결혼 후 관계가 조금 더 안정됐을 때 다시 아이를 갖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남성은 ‘낙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낙태하는 여자는 걸레’라며 B를 협박했다. 지속된 폭언·폭력 속에 이들은 결국 파혼했다. 이미 출산일이 가까워진 B에게 출산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고, 남성은 아이를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었다.

민우회가 운영하는 ‘낙태죄’ 피해사례 제보함에도 협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성 C는 헤어진 남성으로부터 ‘네가 임신중절을 한 의뢰기록을 갖고 있다’는 협박을 2년 이상 받고 있었다. C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임신중절을 한 사실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하지 못했다. C는 남성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에 노출됐으며,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낙태죄’는 관계 유지, 여성의 임신 유지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이 남성

에게 있더라도 그 ‘남성이’ 여성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한다. 현행법상 여성만 처벌 받는 점을 악용한 남성들이 ‘낙태죄’를 협박의 도구로 쓴다. 이와 같은 비극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C는 말한다. “혼자만의 고통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 자신의 경험을 주변에 털어놓자,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그는 결국 낙태죄가 문제라고,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또한 묻고 싶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도, 인공 임신중절을 최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다. 낙태죄가 정말 임신중절을 예방하는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있다는 법이 누군가의 존엄과 삶을 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 존중’인가? 정말 그것이 사회 정의일까? 만일 임신중절을 ‘사회적 고통’의 차원으로 본다면, 현재의 낙태죄는 더 큰 사회적 고통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여성의 독박처벌, 독박책임, 독박고통과 남성의 협박이라는 사회적 고통을 줄여 진정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사회, 바로 지금, 낙태죄 폐지로 시작해야 한다.

교회는 무엇을 지켰을까 — 달밤 (믿는페미 활동가)*

2017년 후반, 천주교 주교회의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익숙한 구도가 왠지 찝찝하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권을 주장하면서 낙태죄를 없애면 마치 인류가 생명에 대한 존엄을 포기하게 되는 듯이 굴고, 여성들이 생명 대 이기심의 싸움을 하는 것 처럼 구도를 그린다. 그렇지 않다고, 여성이 사는 삶의 현실에서 낙태죄가 무엇을 지키는지 봐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임신에는 생명의 축복, 모성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이 이미지들은 여성의 경험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구체적인 실재를 가린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요구, 종교의 가르침이 압박을 가할 때 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거스르면서도 “종의 노예상태로 축소되어 재생산의 도구가 되는”(메리 테일리) 경험을 해야했다. 그러한 여성들에게 피임과 낙태기술의 발

* 여성신문, 2018년 1월 14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034>

달은 해방의 가능성이자 원하지 않는 출산과 모성의 반복을 끊어버리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였는 데도, 교회는 여성들을 막아서며 그들을 집안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여성의 삶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여성을 “생식기능에 노예화시키도록”(시몬느 드 보부아르) 공모한 셈이다.

피임과 임신, 낙태나 출산은 여성의 몸과 건강에 깊게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이다. 레슬리 도열에 따르면,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자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률이 10만명 당 30명(1970년)에서 5명(1976년)으로 감소했고, 1984년에 낙태를 불법화한 루마니아에서는 모성사망률이 21명(1965년)에서 128명(1984년)으로 증가했다. 범죄시 하는 것은 낙태를 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이 ‘유지할 수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임신을 끝내려고 시도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권 이야기도 해보자. 생명권이란 태어나는 순간만 보장받으면 되는 권리인가? “생명권은 단지 태어나고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전 과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나영)이다. 쉽게 말해

사는 동안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가 생명권이다. 그런데 여성이 자신의 생명과 삶이 직결된 “성관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요구받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시술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인격권, 생명권에 대한 침해이기도”(나영)하다. 생명권을 존중한다면, 무엇보다 여성의 생명권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체계는 이미 배아, 태아, 영아, 사람을 구분해서 보호하고 각각 다르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해죄, 과실치사상죄는 태아에게 적용되지 않고, 배아에 대한 형량은 태아보다 높다. 지금의 법체계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법적 인격권과 생명권이 인정되는 시기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배아의 이용이나 태아의 구체적인 사법적 권리와 연결될 때는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보다는 현실적 조건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나영)다. 무엇보다 국가는 모자보건법상으로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경우를 정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생명은 우생학적 목적과 인구관리를 위해 사실상 ‘선별’되고 있다. 나영

에 따르면 낙태죄는 여성을 태아의 생명과 대척점에 있는 듯 뒤편으로써, 국가가 인구관리를 목적으로 언제든 여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며- 태아와 모체의 관계성을 분리시키고 생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결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왜, 어떤 생명이 무슨 기준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생명이 선별되고 있고 여기에 국가와 의료, 과학기술이 개입하고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낙태죄를 지지함으로써 스스로 ‘수호한다고 믿고 있던’ 생명권을 지킨 게 아니다. 국가가 이미 법체계를 이용해 생명을 선별하고 있으면서도, 이 구도를 가리고 여성의 임신 중지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낙태죄를 수호했을 뿐이다. 낙태죄가 배우자에게 임신중단 수술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쥐어주고,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여성만을 독박처벌 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매우 상징적이다. 이제 교회는 더이상 국가가 자기의 모순을 숨기고 여성만을 희생양 삼도록 작동하고 있는 낙태죄에 협력해서는 안되며- 여성들이 생명 대 결정권의 구도가 아니라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사회를 상대로 스스로의 생명권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낙태죄 폐지에 동참해야만 한다.

여성의 삶을 대가로 지불한 '평범한' 삶_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결혼 전부터 일을 하고 있던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직장인인 동시에 가정주부이자 아이 양육자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하는 임신과 출산인 것처럼, 결혼과 출산이 의무인 것처럼 사회 속에서 세뇌되어 왔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제도도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임신하는 동안 하혈, 임신성 당뇨, 아이 태동의 문제로 임신 내내 힘든 날을 보내고 양수가 터져 제왕절개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 밤에도 아기에게 2시간마다 수유를 하려면 산모가 밤에 수면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야 한 시간정도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체력과 지속되는 수면부족은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놀

* 여성신문, 2018년 1월 15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033>

아주고 집안 청소와 빨래에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동안 저의 끼니는 서서 잠깐 때우거나 패스트푸드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엄마의 의무라고 소리높이며 맘충이라는 단어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 턱없이 모자란 양육비에 자아실 현이든 뭐든 상관없이 당장 돈을 벌이가 필요한 저는 휴직이 끝나고 직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직장에 복귀했을 때 아이가 아플 때 누가 돌보아줄지, 야근이 생기는 날, 출퇴근시간이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육아에 대한 고민이 직장 복귀 준비보다 앞서있습니다. 그런 여성을 직장에서 반길 리도 없습니다. 육아로 인해 돌아갈 직장이 없는 여성도 다수이며 전업주부의 입장이라고 호락호락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모두를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발언 중 일부)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였던 적이 있을까? 임신과 출산, 육아로 휴직을 한 여성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산모’, ‘어머니’로 호명되는 여성들에게 자기결정권은 사실상 발휘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 육아 및 돌봄에 관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일차적인 책임을 떠안은 채 강요된, 제한된 선택을 하도록 내몰리고, 그 결과에 따른 비난과 책임 역시 떠안고 있다.

혹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상에도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가족-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구성원에 대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기능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범한’ 삶, ‘건강’가정이 상정하는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은 책임 방기와 전가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호·지원을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마련하기보다는 가족에게 책임을 지워왔다. 가족을 이분법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에 입각한 남녀의 혼인과 출산으로 구성된 ‘정상가족’으로 전제하고,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노동자’라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정상화하면서 가족 내 돌봄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왔다. 임신과 출산, 육아

는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 권리의 문제이기보다 여성과 가족의 당위적인 과업이자 의무로 여겨졌고, ‘모성’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자연스러운 역할’로 간주되면서 국가나 사회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성을 비난하고 단죄해왔다.

이러한 가족과 성역할을 둘러싼 정상성 규범은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며, 가족과 노동시장 안에서 성차별을 존속시키고 있다.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면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은 그림자 노동이 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2차적 노동자로 간주되며 임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에 머무르게 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은 여전히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결정을 하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은 태아 및 아동의 권리와 대치되거나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최근의 ‘노키즈 존’, ‘맘충’ 논란에서도 드러나듯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둘러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강할수록

아동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

임신, 출산, 양육의 경험은 결코 연속적이지도, 단일하지도, 당연하지도 않다. 그것은 개인의 과업이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성과 재생산의 권리, 건강권, 돌봄권, 가족구성권, 안전권, 노동권 등 일련의 권리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에 대해 “덜어놓고 나오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 했다가 “아파트 줄게, 애 셋 낳아라”는 식의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주요하게 접근해왔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알팍한 유인책으로 ‘출산 억제’ 혹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차별이나 배제, 강압과 폭력 없이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별,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 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등에 따른 복합적인 차별과 다양한 필요에 대응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 입각해 포괄적이면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

산이 진정 ‘국가적 위기’라면, 여성들이 ‘출산의 도구’, ‘돌봄 전달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그 ‘정의(正義)’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여성의 삶과 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덧씌우며 낙인을 찍고 책임을 전가하는 법과 정책, 관행부터 폐지해야 하며, 그것의 시작은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가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주도 가족계획, 그때도 지금도 틀렸다_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나의 초등학교(80년대) 시절 학기 초에는 어김없이 호구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그 중에는 형제자매의 수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순서는 외동부터 차례로 손을 드는 방식이었다. 그 때 외동인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었고 주변의 아이들은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

* 여성신문, 2018년 1월 23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29>

다. 그리고 형제의 수가 2명, 3명, 이렇게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급기야 셋을 넘으면서부터는 웅성웅성 거리거나 킁킁거리리는 소리가 났고 당사자들은 소심하게 손을 반만 들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얼른 내렸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다르다. 그 때는 각반의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수업을 오전·오후로 나눠하던 시기였고, ‘뒤통을 놓아달라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대대적으로 홍보되던 시기였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대신 남성들은 정관수술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집집마다 돌며 여성들을 모아 무료로 불임수술을 해주었다. 그런데 보건소마다 수술 건수가 많을수록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아져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거의 반강제로 수술한 경우가 태반이었고, 허술한 시술 및 사후관리로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았다.(2017년 9월 28일 모두를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발언 중 일부)

반면 지금은 난임 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무슨 경품마냥 아이를 낳을 때 마다 축하비와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기도 한다. 불과 몇

십 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일들이다. 이 대조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국가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인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인구 정치,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존엄한 신체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믿음이다. 1970-80년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보급하는 가족계획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였다. 가족계획을 빌미로 경제개발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을 원조 받았으며, 가족계획에 지원된 기금은 여성의 건강이 아닌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육성에 동원됐다. 2018년 저출산 정국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언설을 통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비난하고,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 국가의 목표 역시 분명해 보인다.

인간이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고 길러내는 판단과 과정은 국가가 직접 통제할 부분이 아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개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기에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역할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었던 지난해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낭독하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고, 같은 해 12월 2일 검은시위에서는 수 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도 아니고 무책임한 성생활을 위한 주장도 아니다. 오롯이 개인에게 결정권이 주어져야 할 재생산권의 권리가 ‘낙태죄’라는 형법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남는 것에 대한 폭로와 저항이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재생산은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 접근법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전체 맥락은 무시한 채 단지 임신중단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범죄화하는 것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재생산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낙태를 금지시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알팍한 꿈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

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사회구성원의 재생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다양한 사회적 조건 안에 위치한 개인의 건강, 임신, 출산, 양육, 가족 구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며 보다 큰 틀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는 생산적인 논의다.

권리 그 이상의 요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_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최근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해 많은 여성들을 경악케 했다. 극중 인물인 이수아와 서지태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피임 실패로 임신 8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수아는 임신중지를 결심한다. 출산은 두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함께 책임지겠다는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일임에도, 서지태는 “아이 낳

* 여성신문, 2018년 1월 31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16>

고 나서 이혼해 줄 테니 대신 아이를 낳아달라”며, 이수아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이후 서지태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수아에게 임신 초기부터 먹어야 한다며 약을 건네고, 계속해서 이수아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한다.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시술 병원을 고발하고 나서면서 이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한 고소가 증가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도 상대 남성이 고소한 사건이었다.

임신중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당사자나 상대 남성, 가족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임신중지를 이유로 한 고소는 고소인이 상대 남성이나 그 남성의 가족인 경우가 많다.

2013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최종 2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던 사건을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음주, 폭력을 행사했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운 상태에서 심지어 남편이 임신 상태인 부인을 칼로 위협까지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중절을 하자 남편이 아내를 고소한 것이다. 당시에 남편은 자신은 병원에 함께 가지 않았고, 동의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낙태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성에게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시술한 의사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남편은 무죄였다.

2016년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위자료 액수를 두고 싸우다가 아내와 시술 의사를 낙태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만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런 식의 악의적 고소가 가능하고, 남성은 쉽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는 모자보건법 상에 배우자 동의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서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법이 되는 상황에서는 남성의 책임이 쏙 빠지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현실은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을 이용한 성폭력까지도 벌어진다. 2010년에도 낙태를 도와주겠다며 미혼인 임신부를 유혹해서 흥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고 2013년에도 이런 식의 범죄가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낙태죄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이 일었고, ‘낙태죄’ 폐지 요구가 지니는 의미도 좀 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으로 확장됐다. 이 요구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 동안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된 것은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여성의 자기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 몸과 삶에 대한 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연히 임신을 지속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의 문제만 결부된 것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으로 인지하고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몸, 스스로의 삶에 결부된 다양한 조건과 맥락들이 이 ‘결정’의 의미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성에 대한 통제에 이러한 우리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한다. 어떠한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아갈지,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할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혼자 살 것인지 동거를 할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그 국면에 특정한 성적 규범과 삶의 양식이 정답처럼 요구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애 여부, 국적, 나이, 지역, 학력 등에 따라 또다시 삶의 여러 조건들이 제한되거나 혹은 배제, 낙인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한다.

‘낙태죄’는 국가와 사회가 이 조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즉 ‘낙태죄’는 생명을 죽인 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재생산을 위한 성적 규범과 삶의 규범을 수행하지 않은 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 온 것이다. 그래서 ‘낙태죄’는 사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죄라고도 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임신이 통제된다. 이성애와 성별이분법의 규범을 따르지 않은 이들, 이 사회가 ‘정상’으로 여기는 몸과 다른 몸을 가진 이들, 질병을 가진 이들,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기를 거부당하는 이들, 출산보다는 노동 인력으로 먼저 고려되는 이들, 나이가 어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 등에게는 오히려 임신이 죄가 되거나 임신한 몸이 사회적 부담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이러지더라도 그 당사자와 아이의 삶을 보장할 사회적 조건이나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에게 사실상 임신을 하지 말거나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낙태죄 폐지 요구는 이제 단지 ‘임신을 중단할 권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정상성과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생명을 관리·통제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낙태죄를 유지해 온 그 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비로소 이 사회가 원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삶을 보장하는 과정으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이를 낳는 게 행복’이라는 요구에 얽매이고 통제되는 삶이 아니라 홀로, 혹은 누구와 어떠한 형태로 삶의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그 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낙태죄 폐지는 단지 임신 여부에만 관련된 요구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임신중지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듯이, 그 변화를 위한 요구의 책임도 여성만의 몫이 아니다. 다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면 함께 낙태죄를 폐지하자. 그래야 변화가 시작된다.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 상 예외 조항의 의미와 한계 —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여성들은 언제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할 수 있을까? 7년 전, 한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임신중단 수술을 한 병원 세 곳을 검찰에 고발한 후 인공 임신중절은 여성들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던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가 갑자기 현실로 나타났다. 몸을 사리는 산부인과 앞에서 여성들은 해외에까지 나가 임신중절을 할 병원을 찾아 헤매야 했다. 시술 비용은 치솟았고,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이 안전한 곳인지 정보를 나누기조차 어려워졌으며, 시술한 의사와 본인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임신중절은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 됐다. 또한 당시 정부는 저출산 위기라는 미명하에 출산율 증가 정책의 하나로 ‘낙태’ 방지 등 태아를 포함한 모든

* 여성신문, 2018년 3월 5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32>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회적 배경까지 더해져 임신중절은 2009년~2010년 전후로 갑자기 윤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속도로 문제화됐다.

임신중절의 문제는 쉽게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 사이의 결정이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낙태’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이며, 여성의 임신중절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여성들은 임신의 지속과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을 단순히 태아의 생명권 침해와 보호라는 이분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임신은 태아의 건강만이 아닌, 출산 이후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존재한다. 임신중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에 존속해야 한다면 국가와 법은 그러한 생명을 임신 과정뿐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그러한 책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임신중절이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으로 고민될 여건을 제공한 적조차 없다. 임

신과 출산은 자연스럽고 신성한 것으로만 어렵듯이 그려졌을 뿐, 임신을 둘러싼 전후 과정과 양육을 실제로 사회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불안은 오롯이 그 여성의 책임이 됐다. 이로 인해 결혼 제도의 바깥에서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은 선택할 수 있는 고민조차 되지 못했다. 이처럼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뒤로 한 채 인공 임신중절만이 불법이 된 현 상황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감내하게 했다.

현행법이 모든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인공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의 임신중절은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근본적

으로 ‘낙태’죄 유지 합헌결정의 근간이 되는 태아의 생명권 인정과 배치되기에 모순적일 뿐 아니라, 임신중단의 기준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또한 현실적으로 강간 또는 준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중절은 그 피해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이 성폭력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험의 범위가 법이 정한 강간 또는 준강간죄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행위의 범위에 비해 넓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모자보건법 예외조항은 너무나 협소하여 현실의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중절을 고민할 때 처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국 사회는 과거 경제성장 단계에서 국가 주도로 강력한 출산율 감소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도 ‘낙태’죄와 임신중절을 비난하는 여론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는 임신중절을 암암리에 허용했다. 또 인구조절 정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낙태’죄의 예외조항을 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했다.

이처럼 과거를 뒤돌아보면 국가는 ‘낙태’죄 적용 여부를 시대적 필요에 의해

판단해 왔다. 태아의 생명권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의 몸과 안전에 대한 가치가 시대적 조건에 의해 자의적으로 유지돼 온 것이다. 국가 스스로 인구조절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근거로 임신중절을 허용했음에도 오늘날 개인의 임신중절은 불법으로 감시되고 있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낙태’죄의 유지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임신중단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2018년 3월 14일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게시했다. 오랫동안 계속된 '낙태죄' 폐지 요구와 23만 명의 청원이 모여 정부 차원의 검토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핵심인 '낙태죄 폐지'와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로 응답하는 대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미 청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조치이니만큼, 예정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연구진의 성인지적 연구를 통해 여성의 간절한 외침과 경험이 정책으로, 입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준비 상황을 보면 정부가 과연 여성의 입장에서 신뢰할만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관점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임신중절을 “예방”하겠다는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라

현재 공지된 보건복지부의 연구 제안서는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수립 및 관련 정책 결정, 프로그램 마련 등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시 2) 인공임신중절 사유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정책방안마련 및 제도개선이다.

연구 제안서는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과

정에서 어떠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위협에 놓여있는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담기 보다는 “인공임신중절 원인 분석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 정책 및 개선 정책을 제언(p.2)”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 목적의 정부 실태조사는 결국 국가가 여성의 몸을 낙태죄로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라도 임신중절을 ‘근절’하겠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려케 한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임에도 해당 연구 제안서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지 인구 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몸과 출산을 도구화하려는 시각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연구 제안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중절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의 논리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초석을 위한 성인지적 조사를 실시하라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재생산 건강에 관련한 정책적 기반은 미약하다. 저출산 시대의 출산정책 안에서 ‘아이를 낳을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더욱 가혹하고 차별적인 상황이 놓인다. 해당 실태조사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에는 아랑곳없이 어떻게 출산을 하게 할 것인지만을 답습해왔던 기존 정책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23만명 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삶과 건강,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민의 삶과 건강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해낼 것인지에 초석을 놓는 주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결코 협소하고 단발적인 시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복잡한 사안이다. 현재 형법상 60년째 존치되고 있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상 허용되지만 합법적인 인공임신 중절을 건강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성폭력 피해자, 소파술(D&C)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 여성 건강을 복합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 연구의 입찰대상 1순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2017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 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개최,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이며,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시장에서 이탈한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남성의 결혼을 위한 백색 음모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오랜 기간 다뤄온 기관의 정책적 관점이 ‘고학력’ 여성의 스펙(spec)을 제한하고, 결혼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주었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에 수행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보고서에서는 횡수, 시기, 이유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지만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단 한 문장을 언급하였다. 또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201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무엇보다 “인공임신중절은 무엇보다도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완전히 예방하기란 불가능 하다.” 때문에 “피임방법의 보급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의 폐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제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출산한 경우의 양육지원”을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결혼을 하도록 하는 백색음모’와 마찬가지로 인공임신중절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는 수준의 관점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주요하게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를 수행해갈 역량과 의지가 충분한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청와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라

문재인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 ‘여성의 삶’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현 사회의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성을 아이를 낳아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가진 존재로, 인공임신중절은 그저 예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의 연구는 현 정부의 기조와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놓인 여성들

이 겪는 무수한 현실들이 배제될 것이 우려된다.

청와대가 여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내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청원의 취지와 청와대의 정책 방향의 전환을 담은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전환적인 관점의 실태조사 없이는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해온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23만명의 청원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8년 5월 24일 기자회견

제목 :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일시 : 2018년 5월 24일 오전 11시~1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내용 :

- 사회_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 발언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 신윤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가톨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적시는 비,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고려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정,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픈너, 동국대학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 쿵광,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대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연세대학교 문과대 페미니즘 학회 앨리스,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F:ACT,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언문_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이며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윤정원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2017년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250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절 시술이 있었으며, 전 세계 산모 사망 중 8에서 11%가 낙태와 관련이 있으며, 그 결과로 매해 22,800건에서 31,000건에 이르는 예방 가능한 사망이 발생하였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73년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낙태 사망률이 5년간 1/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가 손에 꼽히게 적습니다. 4년에 한번꼴로 실태조사를 하지만, 그 통계조차도 천차만별입니다. 2011년 16만 8천건이라는 통계가 나왔지만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의 3배는 될 거라 예상합니다. 가장 최근 나온 여정원 연구는 여성 3명중 한명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현재 낙태법과 모자보건법상 합법인 케이스는 5%에 불과합니다. 95%가 음성적으로 기록도 안남긴 채, 자의

적인 금액으로, 각서를 쓰며,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수십키로에서 수백키로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권의 문제고 보건정책의 실패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임신중절의 선행요인이 뭘니까 원하지 않은 임신입니다. 그걸 줄이려면, 피임과 성교육,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여남관계의 평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는 그 책임 방기하고 있습니다. 피임 강조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테니까요. 성교육 표준지침에서 피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지 마라,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발을 밟아라라고 가르치고, 피임관련 상담이나 진료, 약은 전부 비급여이고.

1분기낙태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물적인 임신중절은, 개발된지 30년이 넘은 미페프리스톤 유산유도약이 아직 우리나라엔 도입도 안 되어 있어, 정보를 아는 여성들이 국제 NGO나 불법사이트를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파수술이 아니라 흡입술을 하는 것이 더 자궁에 안전하데 임상의 80%가 소파수술을 합니다. 사실 이 자료도 2005년 이후 데이터가 없어 지금 어떤 처치를 받

는지도 모릅니다. 임신중절은 불법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이나 전공의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지난 20년간 임신중절을 합법화해오고 있습니다. 5월 말 낙태법 폐지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아일랜드에는 1000여명이 넘는 의사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여성과 의사를 위축시키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보건의료인 525명(현재도 서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이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내가 인공임신중절을 할것이나 말것이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요구는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와 의료적 지원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세계보건기구 UN 등의 권고사항대로 안전하고 편견 없는 의료시술을 하는 것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상식밖의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입니다. 보건의료현장과 여성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현실을 법에 반영하라는 요구입니다.

▶ 기자회견문

“낙태죄는 위헌이다”

-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

2012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송의 계기가 된 사건은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상대 남성의 고소로 인해 제기된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여성들이 이 사례와 같이 상대 남성 등으로부터의 폭력과 협박, 고소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신 당사자가 국가와 타인의 통제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승인해주고 말았다. 국민 모두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그 불가침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판단이었다.

낙태죄의 존치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 임신중단은 규범적, 사법적 단죄 대상 이전에 여성의 몸과 삶으로 겪는 현실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여성도 국민이다. 국가가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해 온 역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을 목도하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시대에 역행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선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 ‘낙태죄 폐지’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위헌 의견을 밝힌다.

하나, ‘낙태죄’는 생명을 선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역사를 통해 작동해 왔으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 기존 형법의 존치안과 삭제안이 표결에 붙여진 가운데 존치안이 다수표를 얻어 유지된 것으로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후 1973년 유신체제 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이 제

정되었으나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사유는 다분히 우생학적 의도에 근거하고 있다.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한 ‘낙태죄’ 존치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볼 때 국가는 지금까지 ‘낙태죄’의 존치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왔지만 실상 그 책임은 임신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전가했을 뿐이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 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낙태죄’의 역사 자체가 사실상 국가폭력의 역사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임을 천명한다.

하나, ‘낙태죄’는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사회적, 성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여성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현행 법체계에서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 의사와 요청에 기준을 두고 처벌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14조에서는 배우자 동의조항을 두고 있다. 임신 과정과 임신중지 여부의 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러 당사자들 중 다른 이들은 책임을 면하는 반면, 여성만은 어떤 식으로든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낙태죄’에 따른 그간의 판례를 보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법체계로 인한 여성들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조항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려 했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2013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의 경우 남편에 의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주취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편이 임신 중인 부인을 칼로 위협하기까지 한 상태에서 여성은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병원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 방조죄에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여성에게만 벌금을 선고했다. 지금까지의 ‘낙태죄’ 관련 판례는 이와 유

사한 사례가 다수이다.

2010년과 2013년에는 낙태를 도와주겠다며 비혼인 임신부를 유혹하여 흥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모자보건법’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대부분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해당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진 또한 형법 270조 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제 때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낙태죄’의 존치는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성적 위계에서 여전히 매우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더욱 불평등하고 열악하게 만드는 일이며, 이처럼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임신 지속을 강제함으로써 여성과 아이 모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은 현실을 방기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는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11조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임을 천명한다.

하나,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개월 후인 2012년 11월, 임신 23주째의 10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던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여성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어머니와 함께 온라인에서 수소문 끝에 찾아간 병원에서 현금 600만원을 내고 시술을 받았으나 결국 시술 도중 사망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본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 역시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자원이 없는 10대의 학생이자 비혼 상태였던 이 여성은 임신 후기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상담을 할 수 없었으며, 출산 이후 자신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러한 상태에서 결국 혼자 책임을 떠안고

고민하다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일수록, 사회적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처벌의 책임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시술 상황에 놓이거나, 시술 후에도 후유증 등의 문제로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심각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조차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엄격하게 규제되거나 의료 환경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들에서 위험한 공급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소수자 여성이 직면하는 합병증과 사망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정의의 문제이자 공중보건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합병증을 겪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양질의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재차 촉구해 왔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나, ‘낙태죄’는 섹슈얼리티 통제와 함께 작동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궁극적으로 ‘낙태죄’는 국가의 인구관리 정책 하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섹슈얼리티와 자기결정권의 통제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어 왔다.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낙태죄’ 처벌은 국가의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쉬운 상태에 두기 위해 존치되고 있다. 때문에 임신중지 뿐 아니라 성관계와 피임, 임신, 출산의 전 과정에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여성, 제도적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여성, 십대 여성, 이주 여성 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이 가능한 사회적 보장조치 취약한 상태에 복합적으로 놓여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마치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논의되어 왔으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살아야 할 사회적 조건과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사회정의의 문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가의 인구관리 목적에 따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위헌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또 다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한 위헌 판결은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해 온 역사를 성찰하고 국가와 사회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적 전환기가 될 이번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5월 24일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가톨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적시는 비,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고려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정,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동국대학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 쿵광,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연세대학교 문과대 페미니즘 학회 앨리스,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F:ACT,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8년 5월 25일 - 2018년 11월 26일 서명운동

제목 :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

기간 : 2018년 5월 25일 ~ 2018년 11월 26일(2018년 11월 27일 헌법재판
소 제출)

방법 : 온라인

참여 인원 : 10,459명

2018년 5월 24일 기자회견문과 내용 동일

2018년 6월 24일~2018년 7월 17일 카드뉴스

제목 :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카드뉴스

기간 : 2018년 6월 26일 - 2018년 7월 17일



내용 :

- Q1. 낙태죄가 뭔가요?
-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닌가요?
-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우측 상단 QR코드 : 자료집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험 폐지 촉구 페레이드

....




Q1 낙태죄가 뭔가요?

....


**Q1
낙태죄가 뭔가요?**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번 위험 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



**Q1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 조항입니다. 임신중지를 하는 행위를 이유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제2항은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하게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Q1
형법 제270조 제1항**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해도, 의사는 이 조항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약물 처방을 꺼립니다.



....



**Q1
모자보건법
제4조**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무조건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Q3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

Next 낙태되는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닌가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니다!



•••••

10분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Q&A**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




Q2
낙태되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

Q2
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고, 아예 현행 법률 상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4%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74%

•••••

Q2
하지만 낙태죄로 인한 처벌조항이
남아있는 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가임기 여성의 선행위 자제를 죄악시합니다.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 '무책임한 여성' 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성폭력이나 이혼 등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도 불리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

Q2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시술 병원을 찾기
어려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심지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우에도 임신중지 시술을 꺼립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나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Q2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시술 병원을 찾거나 시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협박, 성폭력 등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많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협하게 만듭니다.

Q2

낙태죄는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사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주로 연인/결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목적으로, 현행법이 여성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해서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지속적인 협박은 물론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금전 갈취, 스토킹 등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Q2

결국,

행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낙태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Next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워런 페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니다!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워런 페지 촉구 퍼레이드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

-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Q3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적극적인 인구정책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인구를 통제해왔고, **모자보건법은 인구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이라는 **'모성'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중지 허용사유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낙태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Q3

우생학적 조항은 국가가 태아를 선별하고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는 **국가에 필요한 태아를 선별**했습니다.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생학적 조항**을 통해 임신중지를 강요받았고, **재생산을 통제**당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생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 구조를 반영**하고, **강화**해왔습니다.

Q3

배우자 동의조항은 성차별과 '정상가족'에 기반합니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결정권을 남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허용사유에 해당하여도 배우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됩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만을 동의 가능한 사람으로 본다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결국,

특정한 사유 추가로는 특정한 사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뿐입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Next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니다!

●●●●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고종우 기자
광화문광장

낙태죄

여기서 끝낸다

#04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

월 7일
8시
광화문광장

낙태죄

여기서 끝낸다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 유럽입니다. (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임신중지 대부분이 불법인 아프리카와 남미의 임신중지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34, 44명으로, 북미와 북서부 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

1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7.6명, 네덜란드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중지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5,600만 건의 임신중지 중 2,500만 건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합병증으로 매년 700만 명이 고통받고, 이들 중 500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만 7,000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가 줄어듭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모성사망률이 10만 건의 출산 당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89년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률은 한 해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2010년 초 프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지 시술의사를 고발한 이후, 단속과 처벌로 인해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 비용은 수십 배 증가하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원정 임신중지를 알선하는 브로커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임신중지 유도약을 유통하는 브로커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임신중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정보도 난무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사무장을 사칭한 남성이 임신중지를 알선해주겠다고 여성을 유인해서 강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령축,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Q4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만들고, 빈부격차, 정보격차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재생산권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Next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임시다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05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Q4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8월 7일
8시
로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100% 성공률의 피임법은 없습니다



남성용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2~98%입니다.
경구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91~99%입니다.
질외사정의 피임 성공률은 78%~96%입니다.
정관수술도 99%의 성공률로,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피임한다고 해도, 피임 과정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 성공은 없습니다.


4

성교육과 의료접근권 보장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성교육은 충분한 피임교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피임지식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성지식이 성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교육은 10대의 성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확한 피임법은 뒷전입니다.


반증하듯, 2015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73.3%가 성교육을 받았지만, 피임 실천율은 48.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

많은 여성이 피임을 위해 피임약이나 피임 시술을 받지만, 약의 성분이나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결혼 여부, 나이,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의료기관 방문을 방해하여 피임을 비롯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임을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은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6

피임을 둘러싼 성별 권력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여성 대부분이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임신중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피임 여부나 피임방법이 남성에 의해 여성의 의사 존중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피임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콘돔 사용을 꺼리는 남성에게 더 많은 권력이 쥐여진 상황에서 원치 않은 임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7

Q5

원치 않은 임신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관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보장의 첫 걸음입니다.

8

Next

일단 낳고 임양을 활성화 하면 되지 않나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니다!



1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광화문광장

낙태죄 위헌 · 폐지 촉구 · 퍼레이드

#06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0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입양이 활성화되고 입양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해도 입양은 임신중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입양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중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여성은 임신·출산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과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중지를 결정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는 자체가 여성에게 주는 심적 고통과 부담을 고려할 때, 입양을 위한 출산이 여성에게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양은 임신중지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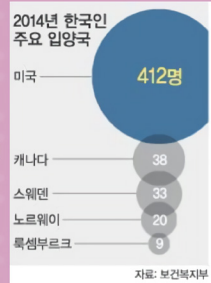
누구든지 편견과 경제적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입양을 선택할 경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으로 입양제도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행 입양제도는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의 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 의뢰 사유는 비혼모 아동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외 입양의 경우, 인종, 종교, 문화, 언어가 전혀 다른 곳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경우도 많고, 양부모가 시민권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추방당하거나, 한국과 입양국 모두에서 미등록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입양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미비한 제도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가족'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입양 자체가 어렵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입양아동 자료집을 보면 국내입양 이유 대부분은 불임·산임이며, 국내입양 아동 중 다수는 여아, 3개월 미만, 비장애인입니다.



입양되었다고 굳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246건의 파양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이 입양 후 안정적으로 양육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Q6

현행 입양제도는 가족의 다양성 확보와 아동 인권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별도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입양제도가 아무리 개선된다 해도
원치 않는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에게
입양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8

Next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니다!



1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07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2



0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3

Q7

임신중지는 여성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 모두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합병증 발생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유산 또는 임신중지는 미래의 임신 가능성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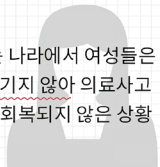


4

Q7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의료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에서 여성들은 비밀유지를 위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아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5

Q7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어야 더 안전해집니다.



임신중지의 불법적 지위 때문에 표준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체는 표준지침대로 시행된다면 안전한 의료시술입니다. 미국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사망률이 5,000건 당 30에서 5로 줄었습니다.

8주 이내의 이른 주수에 시행되는 약물 임신중지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6

Q7 2000~2009년 사이 미국 통계

(합법적) 임신중지 0.7

미용성형수술 1.25

치과치료 0.85

마라톤 0.9

0 0.4 0.8 1.2

■ 행위 도중 사망률 (10만 명 당)

위 통계만 보더라도 임신중지의 사망률이 특별히 더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

Q7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정신건강을 해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유발하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여성은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경험합니다. 2017년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 비해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성들이 불안감, 낮은 자존감, 삶의 만족도 저하 등 부정적인 심리경험에 처할 위험이 더 컸습니다.**

8

Q7

결론적으로 임신중지가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지지를 받을 때,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정신건강은 더욱 증진될 수 있습니다.




9

Q7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약물 임신중지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낙태죄의 존재는 비합법적이고 위험한 의료시술을 늘어나게 합니다.

여성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10

Next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임시대



1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경화문광장

낙태죄 위헌 · 폐지 촉구 · 퍼레이드

#08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이렇게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하면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이나 마취가 필요 없고, 성공률도 90~98%로 높은 편이며, 항생제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보다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이 도입된 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수술 대신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33 번째 인용부호 중 인용부호인 위치에는 해당 없음)

국가	비율(%)
대한민국	17%
스페인	19%
영국	22%
네덜란드	22%
독일	28%
미국	30%
중국	62%
프랑스	64%
베트남	67%
일본	70%
호주	74%
스위스	75%
스웨덴	80%
노르웨이	87%
스페인	92%
조선	96%

임신중지 방법에는 약물을 이용한 방법과 외과적 수술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미페프라스톤'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제스테론 생성이 억제되어 더이상 임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임신중지 유도약은 'RU486', '미프진', '미페프렉스' 등으로도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필수약품 목록에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의 한 방법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효과성뿐 아니라 안정성 역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해 왔으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Q8

합법적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유도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경제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당연히 필수약품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도 임신중지 유도약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임신중지 유도약이 승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신중지의 경우는 물론이고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협한 경우 등 합법적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의 하나인 약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방법 및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마땅합니다.




8

Next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임시다!




1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2



**0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3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안전한 임신중지
: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

- ▲ 모든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쉽게 찾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 임신중지에 관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 안전한 임신중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규제나 절차,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

4

“
안전한 임신중지
: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

법적 자격이 있는 모든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정책을 통해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보호를 이행하고, 여성의 건강 향상을 달성하고, 양질의 피임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난한 여성, 청소년, 성폭력 생존자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

5

Q9 낙태 허용국 현황



출처: 유엔인구개발부(UNFPA), 2017년 5월 기준 / 연방제 국가는 중첩으로 표시할 수 있음

OECD 35개국 중 임신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는 25개국입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하면 OECD 가입국의 80%에 달하는 29개국에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

Q9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신중지 처벌보다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어떠한 제한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어떠한 제한 사유나 주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임신중지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가임여성 1,000명 당 14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7

Q9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다양한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서 오히려 임신중지율이 낮으며, 모성사망률 또한 낮습니다.

이는 임신중지 처벌이 강한 나라일수록 성교육과 피임도 강하게 통제하여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조건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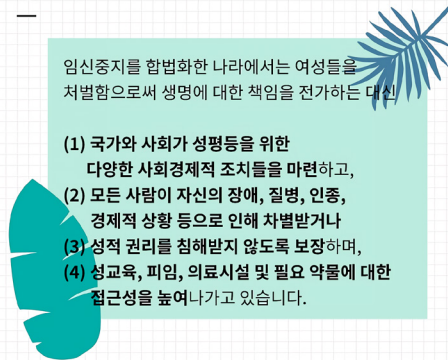


8

Q9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 (1) 국가와 사회가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 (3)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 (4)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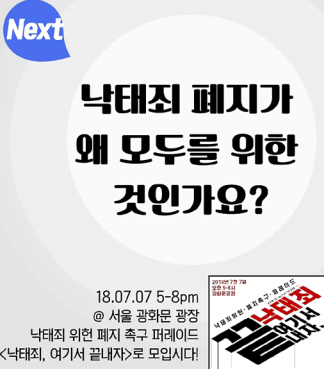


9

Next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니다!



1

낙태죄, 10분 여기서 끝내는 Q&A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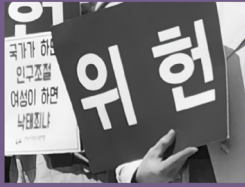
2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18.07.07 5-8pm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3
**"낙태죄 폐지"는 단지
 '임신중지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
 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강화되었다가 다시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산아제한이 필요할 때는 완화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4
**'낙태죄'의 역사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인구수를 관리하고
 생명을 선별하기 심도록
 여성들을 통제해 온 역사입니다.**

**우리의 성적 권리를
 통제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제 방식 속에서 '노동하기 적절한 몸'이 선별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 특정한 계층이나 인종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불임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출산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낙태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 출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구통제를 용이하게 해왔습니다.

6
 '법과 제도를 통해 사실상 생명을 선별해 온 것은 국가인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여성의 몫으로 전가해 온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 가족 상태를 통해서만 '적합한' 임신과 출산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임이나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에도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7

**낙태죄 폐지는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나이, 혼인 여부, 경제 상황, 질병, 장애, 지역적 조건, 이주상태, 종교, 가족 상황, 환경 등 제반의 사회적 조건들은 실질적으로 성교육,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과 관련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입니다.

형법상의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병원에 가기 어렵고 안전한 시술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성과 재생산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8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비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아동의 관점으로 입양제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낙태죄 폐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함부로 내몰리지 않도록 장시간 저임금 노동, 불안정한 계약 관계, 성차별적인 노동조건 등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모두의 삶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를 만들기 위한 요구입니다.

모든 연령,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혼 또는 기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사람이 함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어떠한 삶과 결정도 국가에 의해 차별받거나 배제당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삶의 주제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정의를, 모두 함께 실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그 사회의 의료제공체계, 보다 광범위한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

— 세계보건기구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안전한 임신중지: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중에서

Next



18.07.07 5-8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니다!

2018년 7월 5일 토론회

제목 : 국회토론회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

부제 : 현행 낙태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

일시 : 2018년 7월 5일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내용 :

○ 사회_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 발표

1.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법을 바꾸는가_ 레베카 고퍼츠(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women on waves 및 women on web 대표)
2. 국내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제도개선방안_ 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주최 : 건강과대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측 QR 코드 :

자료집 <전세계적 연대로 만들어가는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2018년 7월 6일 대중강연

제목 :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 상영 및 대중강연회 <전세계적 연대로 만들어
어나가는 성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부제 : 아일랜드부터의 교훈, 다음은 한국이다!

일시 : 2018년 7월 6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하자센터 하하허허홀

내용 :

-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 상영
- 사회_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 발표
- 1. 임신중지선박 이후는? 어플, 드론, 로봇, 그리고 연구 :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_ 레베카 고펜츠(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women on waves 및 women on web 대표)
- 2.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와 재생산 정의_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주최 : 건강과대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측 QR 코드 :

자료집 <전세계적 연대로 만들어가는 성재생산건강과 권리>



2018년 7월 7일 집회/시위

제목 :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일시 : 2018년 7월 7일 오후 5시

장소 : 광화문 광장

내용 :

- 사회 :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오프닝 영상 및 국제/국내 연대 메시지 영상
- 2018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Birthright : A War Story> 감독이자 미국에서 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 권리 운동을 벌여온 활동가 시비아 타마킨 Civia Tamarkin
- 세계 119개국에서 임신중지 합법화와 재생산 권리, 재생산 정의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들과 함께하며 관련 소식을 전하는 International Campaign for Women's Rights to Safe Abortion 대표 마지 베레르 Marge Berer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멕시코 GP 멤버들이자,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건강권과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활동해 온 단체 SIPAM (여성의 종합 건강 Salud Integral PAr la Mujeres, AC.), 지구지역 페미니스트 액티비스트 그룹 Colectiva Sororidad Glocal (지구지역적 자매들의 목소리) 활동가들 (Libertat Enrique Abad, Azucena Palma, Alejandrina Garcia Rojas, Mccutcheon Pasito 등),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까사스 치아파스 지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 (Lourdes Perez 등)
- 이탈리아노총(CGIL) 수산나 카무쎌 Susanna Camusso 사무총장
- 아르헨티나노총(CTA-A) 알레한드라 앙그리만 Alejandra angriman 성평등위원장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발언했던 산부인과 의사 고경심
-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 주인공이자, 임신중지가 불법인 나라의 여성들에

계 인공유산유도약 보급 활동을 벌이는 단체 ‘Women On Wave’, ‘Women On Web’ 대표 레베카 고펜츠 Rebecca Gomperts 현장 연대 발언

○ 자유발언

- 베로니카(천주교 신자)
- 가온누리(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50대 여성)
- 익명 (대독)
- 진은선(장애여성공감)
- 하정(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정인용(비정규직 노동자)

- 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 익명 (대독)
- 이량(페미니스트 대학생)

○ 활동 영상

○ 퍼포먼스

○ 퀴어댄스팀 큐캔디 공연 및 지지 발언

○ 행진(광화문 광장 - 안국동사거리 - 운현스카이빌딩 - 인사동길 - 남인사마당 - 광화문 광장)

○ 자유발언

- 익명의 여성/시민들

주관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 의전화)

공동주최 :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달해, 고려대학교 중앙 페미니즘 학회 여행,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대구

여성회, 대전여민회, 동국대학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쿵광', 마포의료복지사
 회적협동조합, 묵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붉은 뭉소리,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주
 노총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 민
 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건 의료 학생
 매듭, 서울대학교 경영대 여성주의 학회 '여파',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언니네트워킹,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
 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 인천지역 대학생
 맑스주의 세미나 모임 '맑자', 젊은보건 의료인의공간 다리, 제주여민회, 젠더정
 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탁틴내일, 평등
 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
 을 위한 네트워크, 포항여성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
 YMCA간사회 젠더정의분과

발언_ 베로니카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 베로니카입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다니며 어린 시절 성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최근 성당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도와주라"던 교회의 가르침은, 왜 여성의 임신중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하는 '생명수호'에 여성의 생명은 왜!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천주교 신자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지인이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절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신부님도, 수녀님도, 하느님도 아니라 여성! 그 자신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왜, 그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대신에 누구보다 큰 낙인과 비난을 행하려 합니까?

국민의 88% 이상이 가톨릭교인 아일랜드

드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가톨릭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14주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태죄 문제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 낙태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교리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곧 형법이 될 수 없듯이, 교회의 가르침을 이유로 낙태죄가 형법으로 남아 제 주변의 모든 자매님들의 몸과 삶을 옥죄선 안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발언_ 가온누리

저는 낙태를 경험해 본 50대 여성입니다. 저의 낙태는 모두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는 첫아이 출산후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고, 두 번째는 첫아이 출산후 1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임신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학교는 출산후 100일까지는 임신에서 안전하며, 월경 시작일부터 일주일은 안심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 그 말을 충실히 믿었지만, 그 가르침은 제 몸과 맞지 않는 엉터리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전 둘째아이를 가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 출산후 저는 밤에도 3시간마다 깨는 아이때문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좀 자보는 것이 소원이 되었고,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면 10시에 퇴근하는 남편을 보며 독박육아를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출산한다는 것은 저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행복해야 할 둘째 자녀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두 번째 출산휴가로 직원에게 돌아갈 부담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출산휴가기간이 다가오자 주위 직원들이 저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둘러싸고 불만스런 의논을 했던 것을 불편하게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도 양가 부모님도 출산은 무리라는 것에 모두 동의

를 해 주었고,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저의 임신중단경험은 1990년대 가족계획을 장려하던 시기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하는 지금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처벌의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에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엉터리 지식을 가르친 학교, 제대로 여성의 임신을 연구하지 않은 국가가 저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단에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조차 헐박과 공갈로 여성을 벌하겠다고 합니다.

엉터리 학교에서 가르친 지식을 믿었을 뿐인 저에게, 육아를 힘들게 한 직장과 사회에 대항할 힘이 없었을 뿐인 저에게, 임신중단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국가는 이토록 가혹해야 합니까?

여성의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임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가가

오히려 여성을 벌하고 있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발언_ 익명

저는 2015년 5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본 일이었고, 아이아빠와 결혼 또한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의 끝에 낳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아빠는 임신사실을 알게 된 날 해외 발령으로 출국을 했고, 저는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며 열심히 임신여부와 수술가능 여부를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들은 “안된다.” “보호자와 함께 오셔야 한다.” 였고, 점점 아이가 커지는 것이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아빠와 자주 다투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찾은 병원에서는 아이아빠와 연락이 닿으면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날짜를 잡아 혼자 병원에 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시차로 인해 아이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수술을 못했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길에

‘왜 나 혼자서 한 임신도 아닌데 혼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하고, 혼자서 떠안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른 두 살의 나이에 보호자를 찾으며 내 선택대로 할 수 없나’하는 생각에 분하고 억울해서 많이 울던 기억이 납니다.

겨우 찾은 동네 병원들에서는 모두 아이아빠 또는 보호자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아빠도 아니고 생물학적 아빠도 아닌, 남자친구라도 와야 수술을 시켜준다는 것은 왜였을까요? 자연유산으로 수술한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해야 했고 현금으로 바로 지불해야 하는 160만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이아빠는 계속 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 막상 병원에는 오지 않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뱃속 아이는 4개월이 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수술도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이를 떠맡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 수술해 주지 않은 병원도 원망했고, 아이아빠도 원망했고, 낙태가 죄가 된다는 법 또한 원망하면서 임신기간을 지냈습니다. 남들에게겐 축복이고 행복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저는 원망과 후회로 보내야 했고,

지나고 나니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 지금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짐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지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미혼모NGO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낙태죄를 비롯해 아직도 많은 법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책임도 안 지는 보호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거짓 동의를 써가면서 죄지은 듯 하는 낙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낙태도 사양합니다. 여성에게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없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책임만 주어지는 이 사회에 저는 미혼모로서 분노합니다. 임신도 낙태도 출산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발언_진은선 (장애여성공리)

국가는 생산적이지 않은 인구를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상/비정상을 판별하고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권리는 통제되어왔습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 14조에는 ‘우생학적 사유 또는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관점에서 저는 운이 좋게 태어난 생명이고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몸으로 규정된 장애여성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 장애여성인 “너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던 메시지는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너는 이제 장애가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인구 정책과 필요에 따라 낙태를 단속하고 아이 낳기를 강요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는 장애여성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과 재생산 권리가 결혼한 사람이나 건강하고 이성애 관계에 있는 여성, 가임기 여성들이 겪는 문제로, 이들의 권리로 상상되는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과 재생산이 인권이고 보편적 권리라면 이러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강요 없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에야 합니다. 장애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사치로 치부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무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던,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무엇이든,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시민으로 상상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면 ‘보편’과 ‘정상’을 의심하며 정상성이라는 견고한 기준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함께 합시다. 낙태죄 이제 정말 폐지합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발언_ 하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하정입니다. 현재 낙태죄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11월 26일에 임신중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청소년 미혼모는 60%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청소년 중 85%가 학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학업 중단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빈곤도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 임신부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10대 부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0에 수렴하고 그나마 지자체 사례관리 위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공식적 지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10대 부부라는 말이 흔히 말하는 ‘발랑 까진’애들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켜 10대부부가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어 지는 것은 물론,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임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피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가, 임신을 했을 때 출산과정과 출산이후의 삶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국가, 출산이후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에서 낙태를 막는 것은 여성에게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합리한 낙태죄를 폐지하기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_ 정인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노동자가 될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사실 지금껏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낙태죄 위헌소송을 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 땅에 ‘여성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명’으로 존중받았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어날때부터 ‘여자’라 천시받고, 출산과 육아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 되어 ‘나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의 존재감

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는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았었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인 것을 보아도 알수 있듯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보내며, 경력이 단절되고, 그로인해 ‘나’의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임신중지의 그 순간에 번민에 쌓이지 않는 여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행해질 수 밖에 없는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책임과 죄는 여성에게 묻습니다.

그 어느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늘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마지막이 되는 순간들을 맞습니다. ‘임신중지’를 여성들의 ‘범죄행위’로 낙인 찍기 전에 한번쯤은 모두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라 차별받고, 비정규직이라 또한번 차별받는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자존감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중지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낙태죄’는 반드시 폐

지되어야 합니다.

발언_의명

발언_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세계 각국에서 지난 20년간 임신중절을 합법화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여성과 의사를 위축시키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보건의료인 1000명이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내가 인공임신중절을 할것이나 말것이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요구는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와 의료적 지원, 시민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인권을 주는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인도 동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과 법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들이 밀집되어있는 곳에서 공무원들을 손님 층으로 한 노래방 보도를 뛰고 있어요. 노래방에는 불법 성매매 금지 포스터가 붙어있지만 손님도 노래방 업주도 모두 2차아가씨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아무도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2차 아가씨를 옆에 앉히고 내가 교육청에서 일하는 누구라느니 내가 이번 정부 뭐라느니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금카드로 계산해요.

손님들은 이차를 하다가 못 싸졌다면서 콘돔을 뺏니다. 성관계는 같이 하지만 피임은 언제나 언니들의 몫이에요. 초이스가 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빈속에 술을 마시고 그런 몸으로 언니들은 피임을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그마저도 술과 숙취와 함께 하는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챙겨먹기 힘들어요. 임플라논 등 장기적인 피임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잦은 성관계로 인해 질염, 골반염 등을 달고 살기에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성의 성관계는 숨겨야 하는 일이기

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들을 길은 요원해요. 하혈 등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피임약 복용을 중단합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합니다. 일을 쉰 기간만큼을 돈을 떼꾸기 위해 또 성매매를 하고 손님들은 늘 그렇듯 콘돔을 뺏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은 내가 부인을 7번을 낙태시켰어. 이 형이 그렇게 힘이 좋아. 썩다 하면 다 임신이야.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합니다. 남성 연대 속에서 여성의 몸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낙태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요. 정말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상사가 선임이 남성 동생들을 이끌고 룬살롱을 찾는 남성카르텔이 조직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성관계는 개인들만의 것이라기보다는 남성 성역할 수행, 그로 인한 사회적 지위 획득 등 우리 사회 문화 제도가 작동하는 장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눈감아주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남성 간 연대가 공모하는 이 성관계에 이들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성에게만 주홍글씨를 남기는 낙태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성관계와 임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낙태죄 폐지로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발언_ 이랑

저는 경희대에서 페미니즘을 퍼트리는 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서 어떻게 낙태죄 폐지를 설득하고 다니는 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중 고등학생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빌려달라 하는지 의문이 들 때, 항상 그 이유는 낙태였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원치 않은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도 별 도움이 안됐습니다. 낙태를 범죄라고, 낙태하는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세상에서, 여성은 모든 책임을 오로지 혼자 져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교육에서 그려진 대로 낙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낙태 비디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비디오가 가짜라는 것을 아시죠? (네!) 저는 이 비디오가 가짜라는 것도, 낙태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대학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낙태죄가 있어서,

제 친구들과 같은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죄책감을 가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태죄’를 지키려는 이 국가가 과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정관수술을 권장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가에게 여성의 몸은 인구통제의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 페미니스트가 된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여성의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낙태죄 폐지를 설득하는 일들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를 설득해서 페미니스트로 만들기도 하고, 수업에서 생명 타령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시대적 대세 ‘낙태죄 폐지’를 외치려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구를 위해, 경제발전을 위해 통제당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낙태죄 폐지까지 힘차게 싸웁시다!

2018년 7월 26일 성명/논평

[성명서]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 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 입장을 규탄하며 -

7월 25일, 신임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낙태죄’ 존폐에 관한 입장을 묻자 “모자보건법이라든지 특별하게 법률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잉태된 생명이 중간에 인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태아의 생명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낙태죄’ 존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아이를 낳으면 키워야 한다. 여성의 출산 선택에는 경제적 여건, 파트너와의 부양과 돌봄 책임, 사회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조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아이의 양육에 점점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어감에도 국가의 책임은 부족하고, 가족 내의 평등한 돌봄 책임은 여전히 요원하며, 출산 이후에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문제이지, ‘낙태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구도는 여성의 복합적인 고민(자신의 삶, 가족 및 파트너와의 관계, 경제적 여건, 태어날 태아의 행복 등)을 단순화하여 임신 중지를 여성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적 선택으로 만든다. 이러한 잘못된 구도를 깨고,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체를 사고하며 ‘낙태죄’ 문제를 돌아볼 때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왔다. ‘낙태죄’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적인 생명경

시 법이다. 불법화된,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어왔다. 한편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송 의원이 “형법조항상 낙태죄를 보면 '부녀자', 이렇게 낙태를 실제 실행하는 여성과 의사에게만 죄를 묻는다”며 “함께 책임져야 할 남성은 어느 조항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이 후보자 자신의 주장에 비춰보더라도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이 후보자 말대로 ‘잉태된 생명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책임을 여성과 의사만 져야 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는 여기에 답할 수 있는가?

청문회에서 “낙태죄는 너무나 사문화돼있고 여성에게만 불리한 법” “낙태 문제는 법으로 다스리기보다 여성의 출산·육아의 문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 한부모 가정 지원 문제를 통해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넉넉히 키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정당한 반박에 대해서도, 이동원 후보자는 ‘낙태죄’ 존속 입장을 고수하며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 여성의 문제로 놔두지 말고 사회 전체가 배려하고 여성이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형용모순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다. 출산·육아의 문제를 전부 여성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고 심지어 형법상 처벌까지 가하는 것이 바로 ‘낙태죄’다. 실제로 처벌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낙태죄’는 여성의 삶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에게 책임감과 죄책감이라는 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이동원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내무반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냐. 군대 내에서는 성소수자가 군기를 흔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는 문제가 없다. 일부시기에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판사들의 양심을 믿는다.”고도 발언하였다. 인권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해가 없거나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이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필요시 국가에 의해 침해/희생될 수 있는 인권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삶과 결정을 존중받아야 할 ‘생명’들을 정말로 경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동원 후보자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임신중지가 합법이듯이, 최근 아일랜드와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낙태죄’ 존치 주장은 세계적 흐름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우리는 이동원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낙태죄’를 옹호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의 위헌 판결이다.

2018. 07. 26.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 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 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8년 8월 8일 퍼포먼스

제목 :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한 미루지마라> 현수막 퍼포먼스

일시 : 2018년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내용 : 현재는 낙태죄 위한 미루지 마라 퍼포먼스 (유튜브 <https://youtu.be/R6DYAbBIIJU>)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상단 QR 코드 : 퍼포먼스 영상



(사진) 현재는 낙태죄 위한 미루지 마라 퍼포먼스

2018년 8월 8일 기자회견

제목 :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행동 기자회견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일시 : 2018년 8월 8일 오전 11시~12시

장소 :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

내용 :

- 사회 : 김진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 발언
 -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행동을 지지합니다!_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이후 활동 계획_ 나영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언_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지난 7월 7일 광화문에서 낙태죄 폐지 집회에 아르헨티나노총에서 연대사와 함께 적극적인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노총은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14일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는 23시간동안 릴레이 토론이 진행되었고 의회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위가 밤낮으로 계속되었으며 1만 8천 여 명이 유튜브 생중계로 토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주노총은 국제연대에 동참하고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인증샷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오롯이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습니

다. 자본주의 위기 하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이리저리 활용되는 한편 가사노동은 제대로 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신중지 문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닌 정부의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곤 했습니다. 형법상 임신중지는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대상이나, 1973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며 우생학적 사유 등 제한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저출산고령화정책 하에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와 인권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노동력 통제 수단으로 임신중지가 강화되기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노동력의 필요에 의해 다시금 출산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생명존중이라는 모양으로 포장되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처벌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생명을 선별해 온 국가는 여성들에게 폭력으로 존재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민주노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와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발언_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이 후 활동 계획

안녕하세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나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 폐지의 파도가 곳곳에 퍼져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백 만, 수천 만 명의 여성들과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고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구체적인 승리의 소식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

나에서 23시간에 걸쳐 하원의회에서의 밤샘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을 촉구하고 기다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운 끝에, 마침내 다수의 찬성으로 합법화 결정이 이루어지던 순간을 우리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고 그 순간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승리의 파도에 힘입어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도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싸워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2005년, 2013년, 2016년 계속된 싸움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많은 여성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해 50만 건 이상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없어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때문에 전체 산모 사망의 30퍼센트 이상이 임신중지 시술로 인한 사망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때 예외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이 어느 정도나 위험해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의사에게 맡겨져 있고 책임 또한 의사와 산모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 카톨릭 병원에서의 거부로 인해 정말 위험한 상황에도 인공유산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태아가 뱃속에서 죽어 살아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인공유산 시술을 하지 않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신중지를 하지 못해 위험한 후기 인공유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비단 아르헨티나나 외국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병원에서의 인공유산 거부로 심각한 고열에 시달리고 위험에 처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

소가 4 대 4 의견으로 결국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렸던 2012년에도, 바로 그 해 말 한 10대 여성 청소년이 임신 23주차에 인공유산 시술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위험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소송 판결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8월 6일 보도에 의하면 곧 임기가 만료되는 이번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임기의 마지막 선고일인 8월 말 재판에서 낙태죄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반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하는 긴급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시급한 여성들의 상황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새로운 재판부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검토하고 판결할 수밖에 만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 속히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을 촉

구합니다.

여성들은 단지 임신과 출산을 하는 당사자만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임금노동을 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합니다. 각자가 처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가족 상황, 건강 문제로 인해, 폭력과 차별로 인해 임신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성에 대한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임신중지 결정을 한 순간의 선택으로, 태아의 생명과 대립되는 결정으로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만연한 성차별과 성적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국가의 인구계획과 그 필요에 따라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를 규탄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낙태죄 폐지와 함께 여성들과 모든 이들의 성적 권리와 사회적 평등,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를 끝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의회는 하원의회의 결정과 많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고 합법화 승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르헨티나 상원의회가 오늘 반드시 합법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며 한국에서도 힘모아 연대하겠습니다.

Aborto Sera Ley!

▶ 기자회견문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한국과 유사하게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낙태죄 폐지’는 사회각계각층의 간절한 요구였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해 오랜 기간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친 끝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비로소 임신 14주까지 합법적으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지난 6월 14일

아르헨티나 하원 의회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되고, 해당 법안은 오늘 8월 8일 상원 의회에서 표결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한다. 아르헨티나의 승리의 기운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에 전달된 바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등 56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7월 7일 낙태죄 퍼레이드 - “여기서 끝내자!”>에 세계 각국의 국제연대메시지가 발표되었고,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단결을 통해 우리는 성공한다.”며 한국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에 지지의 뜻을 보내왔다. 이제 우리가 연대할 차례이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행동한다.

오늘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 서명 운동과 해시태그 액션에 적극 동참하고, 오늘은 한국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오늘 우리가 두른 초록색 스카프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이자 ‘낙태죄 폐지’를 위해 저항하는 전 세계 여성들과의 강한 연대의 표시이다.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이다. 불법화된,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위협 당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전문적인 의료조치 없는 낙태로 인해 생명을 위협 받고 있으며, 1983년 이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임신중지 사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였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며 오히려 생명을 선별하는 폭력을 자행해 왔다.

우리는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인공유산유도제)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억압당한 채 출산의 의무와 ‘낙태죄’라는 낙인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어왔던 여성들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2016년의 폴란드에 이어 2018년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낙태죄 폐지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오늘이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지금당장, 임신중지 합법화하라!

Aborto Legal Ya!

Abortion rights now!

2018년 8월 8일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향, 경희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행, 고려대학교 페미니즘학회 여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8년 9월 3일 성명/논평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낙태죄’의 현실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낙태죄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지만 낙태죄는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신중지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겨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이다.

촛불 혁명으로 출발한 정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선언하였다.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제약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불평등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거리에서, 청와대 청원에서, 시민사회 각층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시대적 악법을 시정하라는 정당한 분노이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정부에 거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여성의 건강권과 시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는 23만 명의 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통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날치기 시행시켰다. 헌법재판소에는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이 기약 없이 멈춰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인 법무부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수준 이하의 의견서를 내놓았다가 사회적인 분노에 슬그머니 철회하였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요구는 여성이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 시민권과 건강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정당함에 근거한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역사를 후퇴시키지 말라

‘낙태죄’ 위헌 결정을 차기 재판부로 미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오판이다. 지난 5월 24일 형법 269조, 270조 위헌 소송에 대한 3시간여의 공개변론은 ‘낙태죄’의 위헌성을 명증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사회 각계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을 처벌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또다시 ‘나중에’로 미루어졌다. 이를 틈타 보건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시술로 규정하고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보는 ‘낙태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역사를 후퇴시키지 말고 조속히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해온 65년의 세월을 종결하는 역사적 순간을 앞에 두고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법무부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시 법무부는 “낙태죄가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그 어떤 질문에도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행정부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법무부를 지탄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된 후 스스로 철회하기까지 한 법무부 의견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변론의 수준 역시 참담했던 것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이라며 답변하다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 이 자리는 대리인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요지로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이것은 비단 법무부 측 대리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법률적 논리체계 안에서도 옹호할 수 없는 ‘낙태죄’를 변호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모순이다. 여성의 실질적인 재생산 경험과 이를 제약하는 수많은 구조적 조건을 외면한 채 ‘낙태’를 성적 방종과 무책임한 행위로 호도할 뿐 정작 관계부처 협의조차 시도하지 않는 법무부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한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시술로 규정하고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시도했다가 강력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혔다. 성난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는 검은 시위와 촛불 혁명을 거쳐 2017년 무려 23만 명의 청원으로 모였다.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처벌 위주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미루겠다고 결정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년 전 실패했던 개정안을 슬그머니 처리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시에는 정부 부처로서 당연히 개선해야 할 의견서에 ‘의견 없음’을 통보했다.

낙태죄 및 여성 건강에 대해 어떤 의견도 없는 부서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연구 마감이 10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 도구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016년 의료법 개정안으로 시작된 검은 시위 이후 보건복지부는 여성 단체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 정책 요구에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논의의 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낙태죄 처벌 강화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연구 마감을 겨우 한 달 앞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대한 여성 단체의 일회적인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해당 연구에 구체적인 젠더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공임신중절율조차 낮추지 못한다는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검은 시위와 촛불 혁명, 청와대 청원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슬쩍 빼놓았던 ‘낙태’ 처벌 강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이처럼 졸속 행정 처리하는 것은 비겁함의 소치이다. 그리고선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을 수 있

다고 몰타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것이 한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행정부처의 모습인가.

의료인들은 ‘낙태수술 전면중단’이 아닌 ‘낙태죄 폐지 운동’에 동참하라

가족계획의 역사 및 현행 모자보건법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생학적 사유 등은 오히려 국가가 생명을 선별하고, ‘낙태’를 장려하고, 국가의 입맛에 따라 단종 시술을 해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전문성에 대한 고려 및 일관된 원칙 없이 국가의 인구정책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러왔다.

8월 2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 공표를 철회할 때까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실과 괴리된 법과 변덕스러운 국가정책 사이에서 의료적·인도적 차원으로 부득이하게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해왔던 의료인들의 고뇌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회의 파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복지부와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다. 인공임신중절은 원치 않는 임신뿐만 아니라 임신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시술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여성의 건강을 담보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문가로서 ‘낙태죄’ 폐지 운동에 동참하여야 하며, 이번 사태에서 여성의 건강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 보장하라!

2016년 검은 시위와 2017년 청와대 청원, 그리고 2018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거치며 ‘낙태죄’의 실태가 민주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생명권’이라는 허상 하에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낙태죄’의 위법성은 만천하에 밝혀졌다. 지난 7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낙태죄’ 폐지를 넘어 여성의 재생산권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의 취지에 동의하는 전 세계의 연대 메시지 역시 이날

광화문에 올려 퍼졌다.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선진국’의 위치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억압적이고, 후진적이며, 심지어 여성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낙후된 법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UN 조약기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낙태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으며,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보냈다. 2018년 올해 CEDAW는 “2011년의 권고를 이행하고, 모든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임신중절 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낙태죄’의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다.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서, 한 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오롯이 전가해 왔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 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18. 09. 0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 의전화)

2018년 9월 29일 퍼포먼스

제목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국제행동의 날 맞이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

일시 : 2018년 9월 29일 오후 12시~2시

장소 : 청계천한빛광장

내용 :

- 사회 :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유튜브 <https://youtu.be/NcHgCINRu0I>)
- 선언문 낭독
-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모낙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안내서’(인의협 여성위원회) 소책자 배포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엄마민중당,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대)

우측 QR코드 :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





[선언문]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고 낙태한 여성은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국가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을 지시하고, 강제 낙태를 허용하고,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30년간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기술을 지원해왔다. 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를 무시하고 낙태와 가족계획을 강요하다가, 인구가 필요해지자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다.

2018년 9월 29일 낙태죄는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법의 특성을 악용하여 협박 수단이 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을 고발하였을 때, 이혼을 할 때,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

에 있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결정, 여성의 판단은 그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며, 심지어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줄어들다는 것은 이미 전세계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그래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는 장애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했다. 낙태되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것이 인권의 기초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를 위해 박정희가 만든 모자보건법은 바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 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절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이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임을 각성하라.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8년 9월 29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엄마민중당,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 참가자 일동

2018년 11월 10일 유인물 배포

제목 : <낙태죄 폐지는 노동자의 요구!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배포

일시 : 2018년 11월 10일

장소 : 광화문 광장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자!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히 해칩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더 빈번히 발생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낙태금지법 시행 이후 모성사망률이 무려 7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0년 낙태단속 강화 이후 시술 비용이 치솟고 원정낙태가 증가했으며, 불법 복제 낙태약 밀반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낙태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절 시 부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거나, 의료 과실·사고가 있더라도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임신중절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초기 임신의 경우 유산유도제를 통한 임신중단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은 대부분 수술적 방법만 가능합니다. 의료인들은 수련 과정에서 임신중단 관련 의료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낙태죄는 여성이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합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를 침해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는 이유는 임신중절이 허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발생과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때문입니다. 성관계에서 여성이 피임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은 그대로 둔 채, 국가는 출산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아이 낳지 않기'와 '아이 낳기'를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겨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부터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성과 재생산 전반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그 시작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국가와 사회에 요구합니다

-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장애,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
-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결혼 유무, 이주 상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유산유도제)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하라.



낙태죄 폐지는 노동자의 요구!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죄란?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등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시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낙태죄 문제, 여성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임신중지라는 막다른 선택에 직면한 여성의 변민에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한 여성노동자의 생존의 문제가 맞닿아 있다"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불안정한 계약관계,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여성을 임신중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낙태죄는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환원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단속과 처벌이 심해질 때마다 임신중절 시술 비용이 증가하고 음성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습니다. 낙태죄가 불평등을 심화하고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 콜센터, 면세점 등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임신순번제'나 유산 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공보육으로 인해 일과 육아를 전부 책임지거나 경력단절 문제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노동조합이 나서야 합니다.

'애 안 낳는 것이 애국'이었던 시절에는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아래 '낙태버스'가 곳곳을 순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자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이라며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필요에 따라 출산의 도구로 통제하기 위해 낙태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낙태죄 앞에선 '생명 보호'를 이야기하지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여성을 임신중지로 내몰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출산·육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바꿔내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은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민주노총도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투쟁,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2018년 11월 28일 기자회견

제목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오전 11시~1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내용 :

- 사회 : 앎(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
 - 인구조절정책부터 임신중단 처벌강화까지- 국가 폭력의 역사, 낙태죄를 폐지하라_ 신지예(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생명을 선별하고 통제해 온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든 사람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라 _ 황지성(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 남성 혐박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행법, 낙태죄 존치는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_ 노새(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퍼포먼스
 - 낙태죄, 국가적·사회적 폭력의 역사 : ▷국가 주도의 ‘낙태버스’, ▷‘혐박 도구’로 쓰이는 ‘낙태죄’,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등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 현 임기 헌법재판관 9인의 전원합의 낙태죄 <위헌> 판결 장면 연출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민중당,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
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전화)

발언_ 신지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인구조절정책부터 임신중단 처벌강화
까지- 국가 폭력의 역사, 낙태죄를 폐
지하라**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의 역사를 끊어내라!

한국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며 낙태
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제정 때부터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도 한국 여성들 중 약 33%
정도가 1회 이상의 낙태를 경험했을 것
으로 추산됩니다. 당시에 낙태죄 조
항 삭제를 위한 주장이 국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쟁 이후 상당한 인구
소모가” 있고, “주권을 유지하고 나갈만
한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인구가 4000
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며 결국 낙태
죄가 제정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국가가 나서서 낙태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구증가
를 억제 시키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수
술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버스가 만들어져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고 낙태 수
술을 받으면 불임시술도 함께 해줬습니
다. 또한 한센병 환자를 단종시킨다는
반인권적 목표를 위해 90년대까지도 개
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정관절제
및 임신중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이천년대에 저출
산이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다시 낙태죄를 꺼내 들었
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래 기획
위원회 저출산 대응 회의에서는 낙태를
줄이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전혀 과학
적이지 않은 생각을 바탕으로 낙태 단
속을 펼쳤습니다. 또한 2010년 프로라
이프 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
는 산부인과를 검찰 조사하면서 인공임
신중절 수술비용은 10배가량 뛰고 타국

으로 원정 낙태를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인구증가가 억제되어야 할 때는 낙태버스를 돌릴 정도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저출산이 문제가 될 때는 낙태죄를 들어 여성을 헐박했습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임신중지가 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너무도 많습시다만 국가의 의료시스템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관련 보건 의료 정책이 통째로 비어있다는 것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임신중지가 일어나는지 그 통계조차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현장에서 충분한 의료 시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로 큰 병원에 가야했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이 두려운 의사가 신속한 대응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등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여성을 성폭력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낙태죄 때문에 여성은 제대로 된 의료에 대한 접근조차 어렵고 사망과 후유증,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인권, 신체권, 재생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익이며 누구를 위한 생명입니까? 낙태죄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국가의 책임방기입니다.

여성들은 검은 시위, 청와대 청원, 낙태죄 폐지 공동 액션 등 십수년간 낙태죄 폐지 요구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무응답인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낙태죄를 위헌판결 하여 낙태죄로 행해지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합니다. 현재는 위헌판결로 응답하십시오.

발언_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의원)**

생명을 선별하고 통제해 온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든 사람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2018년 오늘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폭력을 작동시킨 하나의 국가 장치를 국가 장치 스스로가 앞장서 철폐시

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형법 낙태죄의 위헌 판결은 국가권력 스스로가 불합리한 억압의 철폐와 성평등을 이제라도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새기고 베풀고자 하는가, 아니면 폭력적 국가 장치를 방치하여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 죽음과 폭력에 놓이도록 조장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성’과 ‘수많은 인구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성’이 너무나 단일하고 협소하게 상상되면서 여성안의 차이들을 삭제하는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성안의 이러한 차이 삭제는 권력에게도 이득입니다. 집합으로서 ‘여성’들 간의 차이들을 횡단하며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발독재국가는 낙태죄가 존재하기에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여성이라는 인구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여성과 ‘비정상’ 여성들로 말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인구위기 담론이 지금 여성들에게 낙태죄의 존재를 ‘새삼’ 일깨우고 있는 것처럼, 국가는 애초에 집합적인 인구를 통제관리함으로써 움직입니다. 국가는 언제나 강압적인 방

법으로 인구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정상’ 여성들에게 낙태죄는 오랜 시간 사문화된 법이었다고들 하고, 지금 국가의 낙태죄 단속이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사이 우리사회에서 무수한 ‘비정상’ 여성들- 여기에는 모자보건법 우생학적 강제 불임이나 낙태 허용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인 사생아, 혼혈아, 빈곤층 노동자 여성, 매춘여성, 10대 여성 등은 국가 인구통치의 강압에 의해 폭력적으로 재생산을 금지당하고 미래를 거부당해왔습니다. 비정상 여성들인 우리는 강제적이고 폭력적 국가 인구 통치를 언제나 항상 경험해 왔고, 그렇기에 낙태죄라는 국가 인구 통치 도구 철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들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수자, 빈민 등 ‘비정상’이나 ‘비생산적’ 인구에 대한 강제불임이나 재생산 금지의 폭력은 초국가적인 경향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흑인삶도 중요하다’ 캠페인은, 미국이 흑인 집단에게 시행한 강제적 단종시술과 재생산 금지라는 역사적 현재에 기반 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감옥에 수감중인 여성들 상당수가 강제불임 시술을 받도록 강요받고 있고, 심지어 구금과 강제불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처럼 여성들 안의 차이를 분할하고 그 차이를 가로지르며 작동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 도전할 때 진정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자리에서 국가의 강압적 인구 통치 장치로써, 그리고 여성들을 분리시키고 여성들의 몸, 성, 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으로써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구 통치가 아닌 정의 실현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국가가 재생산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인구정책, 낙태죄를 폐지하라!"

발언 _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남성 협박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행법, 낙태죄 존치는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민우회는 ‘불법인공임신중지’ 단속이 가속화되었던 2010년부터 임신중절관련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전화 중에는, 낙태죄를 빌미로 한 남성들의 협박 사례들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으로 파혼을 자처하게 된 남성이 결혼준비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고, 거기에서 불리해지자 낙태죄로 고소한 경우, 중절수술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며 수년 동안 스토킹과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임신 후 약혼하였으나 남성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여성이 임신중단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인데 너는 살인마가 되고 싶냐’며 여성을 협박해 여성이 출산하였으나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남성들은 여성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여타의 소송에서 금전적인 불리함을 상쇄시키고자, 또는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거나 여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태죄가 여성만을 처벌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피임실패에 대한 책임을 오직 여성에게만 묻는다는 점, 여성만을 사회

적 낙인 속에 가두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는 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는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미투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트폭력·가정폭력·직장내 성희롱·디지털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가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기민하게 반응하지도, 강력하게 대응하지도 않는 사회, 여성의 이야기와 경험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가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라’고 말하는 낙태죄의 존치는 그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여성이 임신의 지속과 중단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사회, 그 고민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위해,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진) 정부 정책 비판 및 위헌 장면 연출 퍼포먼스

2018년 11월 29일 - 2019년 3월 8일 집회/시위

제목 :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일시 : 2018년 11월 29일 ~ 2019년 3월 8일(100일) 평일 12:00~13:0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1인 시위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DECriminalize ABORTION IN SOUTH KOREA NOW

낙태죄 폐지

철폐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폐지 #낙태죄_전면폐지 #철폐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촉구_1인시위



가장 | 김홍진

2018년 11월 21일 서명 운동

제목 : [국제서명] Abor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in South Korea now!

일시 : 2018년 11월 21일 ~ 2019년 1월 31일

장소 : 온라인 (<https://www.change.org/p/the-constitutional-court-of-south-korea-abortion-should-be-decriminalized-in-south-korea-now>)

참여 : 2,090명

In South Korea, abortion is the only medical procedure included in the Criminal Code (Article 269 and 270) since 1953. Abortion is only legal if the pregnancy causes the woman serious physical health issues, if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an incest/rape, or if one of the parents has 'eugenic' disease. Also, this law requires the consent of (male) spouses even in these grounds. Women can be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or ordered to pay fines of two million won (about \$2,000) for having abortions. Doctors, midwives and any healthcare workers who provide abortions can face up to two years imprisonment.

Korean women and doctors for sexual,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RHR) have been fighting for decriminalizing of abortion since 2010. This year is a very critical moment to decriminalize abor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a case that challenges the abortion law's constitutionality. Meanwhi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sued revised regulations toughening punishment for doctors who perform abortions. The ministry also labeled providing abortion services as an 'immoral medical practice'.

Abortion has been a widespread experience for many Korean women. According

to a government estimate, based on a survey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169,000 abortions(16 abortions per 1,000 people) were conducted in 2010, the latest year for which data is available. While the government has neglected it, abortion practice was not adequately monitored nor officially educated.

Sign the petition to decriminalize abortion and to expand access to safe abortion in South Korea. We'll collect our voices directl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ush to draw the stalled verdict. By signing you will be a great support to women's movement in South Korea and stunning wake-up call for our policymakers and judges.

[Our demands]

- Article 269, 270 of the Criminal Code is unconstitutional. Repeal the 269, 270!"
- Provide safe abortion!
- Officially register the abortion pills!
- Guarantee sexual rights and 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
- Guarantee safe and legal abortion for everyone!
- End stigma!

2019년 2월 14일 성명/논평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오늘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5만 건)으로 추정되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연구진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촉구해왔다. 연구의 과정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연구의 결과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범 정부 부처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다양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과,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아지는 방향에 기여하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해당 연구 결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75.4%의 여성이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 사실 한국은 형법상 낙태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여 낙태 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제 단종을 시행하는 등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에 개입해온 역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만들어진 낙태죄는 여전히 형법에 남아 여성의 판단을 범죄화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수차례 형법상 낙태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여성의 판단을 국가가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의 타당성은 23만명의 청와대 청원,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시사점으로 여전히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한 예방과 안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조건 하에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결론은 정부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여전히 게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도 여전히 ‘출산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에게 인구가 많을 때는 ‘낳지 말라’며 가족계획을 실시하였고, 이제와 인구가 부족해지자 ‘낳으라’며 낙태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나선다. 이러한 기만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조사 항목 중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선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관점을 담고 있는 제14조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현행 모자보건법이 장애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드러내었다.

정부와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2) 임신중지 합법화와 의료적,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 여성의 건강권 보장하라.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17세에서 4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경험이 있고,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임신중지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여성 46.9%, 사실혼 포함 기혼여성 51.9% / 별거, 이혼, 사별까지 포함한 기혼여성 53.1%) 임신중지 사유 역시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과 ‘경제상태’, ‘자녀계획’이 비등한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은 결코 처벌이나 범죄화, 사유의 제한 등을 통해서 그 발생이 낮아질 수 없다.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

어지지 않으며, 최선의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의료 정보를 얻기 또한 어려워지며, 의료인과 당사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2가지)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1.9%가 이며, 인공임신중절 비용,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 이다.

한국은 진보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국가의 의료 시설과 제도, 이를 지탱하는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과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부 부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4.7%,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 25.1%, 주거지와 먼 타 시·도 9.9%, 해외 0.3% 로 상당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로 인해 의료 기관과의 거리적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사후관리나 병원 재방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절 이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는 응답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의 법적 조건이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43.8%만이 치료를 받았고, 54.6%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14% 정도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보건 의료 체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지리적·비용적으로 접근성 높은 의료기관을 제공해야 할 의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임신중지 합법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의 확대, 정보 접근성의 확대, 건강보험 적용,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성차별 정책의 확대, 사회적 낙인 제거 등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

3) 제대로 된 피임법의 교육과 접근성 확대 시급, 포괄적 성교육 시행하라

연구 결과에서는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말 말고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임실천율이 2011년 대비 12.4%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임신중지 경험에서 피임하지 않은 비율 40.2%로 매우 높고, 피임실천을 하더라도 질외사정 등 피임법으로 볼 수 없는 피임방법 사용이 47.1%이며, 콘돔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실상 피임에 실패한 비율이 12.7%로 드러나, 정확하고 안전한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100%완전한 피임법이 없으므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임실천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와 20대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본인이 피임했다는 비율이 더 높고, 피임 지식과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서 습득했다는 응답이 높다. 이는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피임에 대한 접근

권과 보험 적용 등 사회적 보장 확대, 정보 확산과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

4)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라

이번 연구에서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연구 접근 방식은 매우 문제가 많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법화된 의료적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사용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유산유도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 유발) 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 때문에 약을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통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안전하지 못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 약물적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위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는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약물적 유산유도제 복용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진 역시도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히, 임신초기의 인공유산은 병원에서도 수술이 아닌 약물 사용이 더 안전하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 따르면 임신 초기(~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 (medication abortion)을 권고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유도약의 이용 실태는 약물을 이용한 인공유산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약물 사용을 안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의료진 보수 교육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통한 인공임신중절의 전면 비범죄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요구를 덧붙인다.

-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2019년 2월 1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3월 7일 온라인액션

제목 : 111주년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해시태그 #낙태죄폐지 운동

일시 : 2019년 3월 7일~2019년 3월 8일

내용 :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100일시위 #세계여성의날 해시태그와 함께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나의 한 마디를 붙여서 업로드하는 온라인 액션



2019년 3월 8일 기자회견

제목 : 111주년 3.8 세계여성의날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내용 :

- 사회 및 경과보고 :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 발언
 -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 노새 (공동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시민발언1 이예은 (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
 - 시민발언2 남성아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계획 발표_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 한국여성대회·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배포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경과보고 **— 이유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 취지

지난해 5월 2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낙태죄’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지만, 그 이후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은 기약 없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를 틈타 보건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시술로 규정하고 ‘낙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미루기를 규탄하며 헌법 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판결 및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 기간

2018년 11월 29일(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년 3월 8일(3·8 세계여성의날 현재)까지 100일간

(2019년 4월 10일까지 지속 예정)

|| 방식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2인1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단위 회원 외 다양한 연령대, 성별, 거주지, 종교, 정당, 직업의 시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참가한 시민, 임신9개월 상태의 여성도 있었고, 천주교 신부님도 참여하는 가운데 100일간의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1인 시위 후에는 SNS에 해시태그 (#낙태죄폐지 #낙태죄는위헌이다 #100일시위)와 함께 인증샷이 게시되었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간 이어진 1인 시위라는 공동행동을 통해 100명의 목소리는 더욱 큰 울림으로 모아졌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0일시위의 힘으로 우리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낙태죄’는 위헌이다! 임신중지 합법화하라!
- 무상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 여성은 존엄한 시민이다! 우리는 차별도 허락도 거부한다!
-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건강권,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 구시대의 유물, 악법인 ‘낙태죄’를 폐지하라!
- 여성의 힘으로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 100일간의 기록

(1일째) “여성을 범죄자이자 죄인으로 만드는 낙태죄, 반드시 함께 없애요!” (2일째)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억압하는 낙태죄! 어서 폐지!” (6일째)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 (7일째) “‘낙태죄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8일째) “국가가 할 일은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지지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12일째) “어, 신부가 왜 낙태죄 폐지 피켓을 들고 있지? 왜긴요. 오직 여성에게만 책임과 죄를 묻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이니 폐지되어야 합니다.” (13일째) “임신중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에이미를 떠올리며, 에이미의 곁을 지키는 에스터가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겐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14일째) “낙태죄 위헌 판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신청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17일째) “아일랜드도 해냈다! 다음은 우리차례다!”

(20일째)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출산의 도구로 통제하는 낙태죄는 위헌이다!” (26일째) “배우자와 함께 오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이라

는 사건이 발생하면 출산을 결정할 권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당사자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국가는 여성 시민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29일째) “날씨가 많이 춥고 외롭고 낙태죄 지지 세력의 야유에 힘들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죄없이 고통받던 여성들의 아픔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3일째) “임신중단을 좋아서 선택하는 여성은 없다. 그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 삶 자체가 흔들릴 때 임신 중단은 삶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어야 한다. 현행 낙태법은 부당하며 반드시 폐지되어야할 악법 중의 악법이다.” (35일째) “‘낙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죄’로 규정한 국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미혼모예겐 개인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해외 입양을 거대 산업으로 생각하는, 생명을 선별하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국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37일째) “나를 존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40일째) “오늘 길가다 화이팅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좋은 시간이었다! 전혀 외롭지 않고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낙태죄 위헌 결정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43일째) “낙태죄 폐지는 단순히 나의 몸을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우리가, 국가가 어떤 몸을, 어떤 관계, 어떤 존재들을 불법화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제다.” (47일째) “지극히 당연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이 추운날 100일동안 시위를 해야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다.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49일째) “헌법 제10조인 자기결정권을 빼앗긴 임신부들은 안 불쌍하십니까? 당신들의 주장은 곧 임신부들을 2등 시민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50일째)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요구는 단순히 성교하되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57일째)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낙태죄 폐지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63일째) “주문 낙태죄를 폐지한다! 관광객들이 현재 앞 포토존에서 헌법재판관 모습으로 사진 찍길래 나도 찍어봤다. 왜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가? 그럴 권리가 있는가? 현재는 이 질문에 어서 답해야 한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65일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존치를 결정함으로써 차디찬 암흑 속으로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것인가 아니면 형법 269조, 270조를 폐지함으로써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진일보를 위한 햇살을 비춰줄 것인가? 후자를 향해 나아가자!” (71일째) “낙태죄는 위헌이 아니라는 분들이 옆에서 피켓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분들이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 살고 있고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여성들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72일째) “오늘날 합법인 다수의 규범들은 불과 몇 세기 전만해도 허용할 수 없던 것들입니다. 낙태법도 어서 논의할 가치도 느낄 수 없는 옛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생명과 인간의 가치가 제대로 고민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부당한 탄압의 고리가 끊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우리의 포궁은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76일째) “낙태죄 폐지를 위한 당연한 목소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 대한 선택을 오롯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78일째) “시민의 건강과 권리도, 재생산의 존엄과 안전도 보장하지 못 하는 낙태죄. 그저 여성을 통제하고, 성과 재생산 관련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는 면죄부일 뿐입니다.”

(82일째) “낙태죄 폐지는 정말 시작일 뿐인 것 같다. 모자보건법 14조 등에 담긴 우생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 / 국가계획 인구통제에 대한 반발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의 보장 등을 통한 여성건강권 보장 및 향상에 대한 논의가, 낙태죄 위헌판결로 인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84일째) “여성을 국가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취급하는 낙태죄, 여성의 재생산권을 억압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89일째) “왜 여성의 몸은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가? 왜 그녀들만 울부짖어야 하는가? 나는 100일 시위 중 89일째에 이 자리에 섰으며 반대편 시위자들과 헌법재판소를 보고 다시한번 강력히 느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92일째)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 과정일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심정과 상황을 상상하고 느껴본다면... 여성 인권 신장과 사회 구조의 변혁을 소망...” (96일째) “군사정권 때 낙태버스와 루프시술을 통해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저출생 시대엔 가임기 여성지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여성에게 임신을 종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매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는지 사회, 경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97일째) “상적인 가치만 주장하는 낙태죄 유지 피켓들을 읽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국에

서 가임기 여성으로 살아가며 느꼈던 외로움은 매번 저렇게 추상적인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무언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여성은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부끄러운 가치를 버리고 여성의 삶과 생명권을 보장해주세요.”

발언_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12년의 합헌 판결과는 절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낙태죄 존속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에 대한 판단이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협소한 인식과 구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예상하고 어떻게든 처벌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퇴보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면 남성도 처벌하자,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만 처벌하자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군가를 추가로 처벌하거나,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

니라, 누구에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는 인공임신중절 행위,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 시술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누구도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성도 처벌하자거나,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임신중지 시술 병원 고발 사태 당시 여성들이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려 낙태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결국 한 10대 여성의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이며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이를 처벌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규제로서 가로막는 것은 곧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 행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단지 임신중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남성을 처벌한다면 차별이 두려워 상대의 임신 중지 결정을 가로막거나 음성화 된 의료 환경으로 내모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임신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침해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낙태죄의 존속은 법의 실효성이나 정당성, 방법상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이 그간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온 법조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차별은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지난 해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서 발표된 일반논평 36호, 6조 생명권 관련 부분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에 수반되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여성과 남성, 특히 청소년에게 광범위한 피임 정보와 함께 재생산에 관한 제반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들을 위해 산전관리와 인공임신중절에 따

른 사후관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차별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우리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광범위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성적 건강에 관한 상담과 관리에서부터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관리, 양육 등의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요구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직접 그러한 사회로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발언_노세 (공동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시민의 기본권리에 대한 검열과 허락을 거부합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일부에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 사회경제적사유와 같은 몇 가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허용사유’ 방식은 현재도 문제적이며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 낙태죄는 형법으로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별도의 다섯 가지 허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 인척 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24주 이내여야 하며, 배우자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견 몇 가지 예외적 허용사유를 둬

로써 낙태죄의 합리성, 법익의 균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먼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생명권을 최우선시한다면 서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안 낳아도 될 생명’을 선별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입증절차를 밟는 동안 임신을 중지하기 위험한 기간으로 넘어가기도 하며, 성폭력 신고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불법적인 시술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11세 소녀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임에도 의료인들이 시술을 거부하여 제왕절개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중지 가능한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임신중지는 높은 비율로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지만, 뒤늦게 임신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 후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의료적/사회적 지원입니다.

임신중지 처벌법이 남아있는 한, 특정 사유에 따른 허용이든 임신 주수에 따

른 허용이든, 의료인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과 신고를 두려워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제공을 거절하기도 하며, 그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여성들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처벌/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허용사유를 늘리자는 말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는 저마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있으며, 그 복잡한 맥락을 가장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바로 여성 그 자신입니다. 이것은 임신중지 뿐만이 아니라, 임신, 결혼, 진학, 입사, 퇴사, 이사, 이민과 같은 많은 삶의 결정들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여성이 아닌 시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에서만은 ‘정말로 책임 있는 결정인지’를 법을 통해 다시 묻고, ‘숙려기간’을 두고, 후견인과 같은 ‘남성의 동의’를 요구하여, 정말로 불가피한 결정인지를 국가의 허락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까지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던 국가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거나, 따로 운전사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여성의 이동할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문제가 되며 여성운전허용을 요구했을 때, 사우디의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집을 떠날 수 있다”며 여성운전을 반대해왔습니다. 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두고, 여성의 무분별한 운전으로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질서가 해이해질 것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보수 세력의 목소리와,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일이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고 도덕이 타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 다를까요.

낙태죄가 폐지되어 어떠한 사유나 기간의 제한이 없이 임신중지를 보장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횡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 또한 우리는 배격하고자 합니다. 임신중지는 성 문란의 결과가 아니며, ‘무분별한 낙태’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통계적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예측이 아닌, 가부장적 도덕질서를 앞세워 여성의 판단을 무분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더해 여성의 성적 실천을 혐오하고 통제하고자하는 욕망에 다름 아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여성이 어느 측면에서든 이등시민이 아니며, 여성의 성적 실천에 관한 낙인이 없고,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회였다면, 지금 우리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허락하는 세상’이 아닌,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사회보장서비스로 적극 편입하여 어떻게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원할지를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낙태죄의 폐지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는 슬로건 아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는, 임신중지를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락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 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그 사회가 올 때 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 처벌법에 분노하고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발언_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양육비 지원이 아니라, ‘낙태죄’ 폐지를!

최근 일각에서는 양육비 책임법이라든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온전히 여성의 책임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해법은 양육비 지원이 아니라 바로 ‘낙태죄’ 폐지에 있습니다.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시킵니다.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내몰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자발성에 기초한 권리의식과 책임감, 연대정신은 싹트기 어렵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결혼제도에 진입하여 가족을 꾸린 경우에도 발생하는 임신중지의 문제, 즉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신중지

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은폐합니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사실 자체를 쉬쉬하게 되는 현실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요구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기에 이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키울 것인지를 논하고 싶으시다면,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이끄십시오. 바로 ‘낙태죄’ 폐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소위 ‘위기임신’에 대한 예방,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임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여성의 ‘낙태’는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 외의 ‘낙태’는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허락을 하고 처벌을 한단 말입니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여성이 가족의 간섭없이, 교회의 간섭없이, 국가의 간섭도 없이! 일체의 간섭없이 온전히 자율적으로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 아이를 언제 어떻게 낳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성이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중지를 이유로 여성을 심판하거나 처벌할 권한 역시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즉 노동권의 문제와 양육비 지원의 문제는 ‘낙태’ 문제와 상관없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책입니다. 돈 줄게 애 낳으라, 혹은 돈 벌게 해 줄게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 사유와 무관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관계들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입니다. 여성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여성은 출산도구가 아닙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의 문제를 여성에게 책임전가하는 것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여자들 애 안 낳아서 국가경제가 위기다, 경제가 어려워도 양육비 지원해 줄테니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기만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여성을 활용하려들지 마십시오.

2016년 ‘검은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국가의 구제를 바라고 광장에 나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 즉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 존엄성, 노동의 권리,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용기있는 여성들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여성들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29일 100일시위의 첫날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2019년 오늘 되돌아보는 지난 100일간의 발자취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내리십시오.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십시오. 만약 시대의 요구를 역행할 경우 우리는 또다른 행동으로 이 자리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민발언_ 이예은 **(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

평소 낙태죄 폐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시위 현장인 헌법재판소 앞에는 우리 말고도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 그들과 함께 헌법 재판소 앞에서 있는 동안 무엇보다도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성의 몸과 삶이 국가의 경제적 목적 아래 통제되어온 맥락은 무시한 채 그저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이야기하는 그들은 왜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여성 개인의 여건, 그리고 한국의 보육 정책과 기반 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껏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 대 선택권 논쟁,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필요 아래 억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과 삶은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여성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생산에 대한 권리, 안전하게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누군가는 착잡한 마음을 안고 울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협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불법 시술을 감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에 고통 받는 여성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언제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 여성이 온전히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발언2_ 남성이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라

우리는 지난 수십여년간 국가가 여성을 차별과 통제의 수단으로 보았던 ‘낙태죄’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동안 산아제한을 위해 낙태를 권장하며 낙태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인구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출산을 장려

하며 사문화된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선택권보다 중요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국가는 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 허용 사유를 규율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재생산권리를 제약하며 국가 스스로 차별과 혐오의 사회구조를 보존해왔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평등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종교계에서도 낙태를 생명윤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의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낙태는 인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인권’이 될 수 없다”, “종교적 차원에서 낙태를 선택한 여성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가능하나, 형법상 차별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의 고통을 덜어준다며 ‘잘못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인구정책의 통제수단으로 보고, 출산과 양육을 위해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여성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여성이 국가의 정책이나 종교의 신념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것이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차별’하고, 종교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다양한 삶의 조건과 맥락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임신 12주까지는 어떠한 제약없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엠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국가와 종교계가 모두 눈여겨봐주길 바랍니다. 낙태는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종교가 개인의 권리를 허락이나 차별로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

으로, 사회적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이라도 낙인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발화해나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강제하고 종교계가 자신들의 신념을 강요하며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폭력을 멈춰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2019년 3월 8일,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로 할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갈피 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을 위협받아왔다. 이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 내려온 시간을 종결해야 할 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유를 검사받길 요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여성의 판단을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여성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구체적인 의료적 보장과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곁의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 촉구 청원과 서명, '낙태죄' 폐지 집회 현장, 헌법 재판소 앞에서의 100일간의 1인 시위의 자리를 기꺼이 채워주었다.

헌법 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답하라. '낙태죄'가 만들어온 인권

침해의 역사를 직시하라.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낙태죄'가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5개국의 사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답을 알고 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재판소의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3월 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남자도 차별하자?

낙태죄로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면 남성도 처벌하자,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만 처벌하자 같은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처벌이나 벌금, 과태료 등으로 가로막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임신중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처벌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가로막거나 여성을 응성화된 의료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성적 건강,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중지 후의 건강관리, 양육 등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양육비 줄테니 애 낳으라고?

양육비 책임범이나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낙태죄를 유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응성화시킵니다.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내몰습니다. 양육비 지원만으로는 이런 부담을 여성이 전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논의는 상당 수의 임신중지가 남성과 결혼하고 가족을 꾸린 이후에, 즉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합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자신의 인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일입니다. 임신을 유지하든 중지하든 어느 쪽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했든 자신을 둘러싼 복합적인 관계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성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뒤편 놓고 "돈 줄테니 애 낳으라"는 말은 여성을 인간이 아닌 출산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낙태죄란?

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등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시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전망입니다.

합법 낙태 사유를 늘리면 된다?

낙태죄 폐지 없이도 모자보건법상 합법 임신중지 사유,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 국가가 판단하고 처벌하고 허락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여성의 '낙태'는 허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위기' 상황 외의 '낙태'는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지는 여성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허락을 하고 처벌을 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성인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즉 노동권의 문제와 양육비 지원의 문제는 '낙태' 문제와 상관없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 사유와 무관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여성의 결정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낙태죄 폐지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하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만들어온 인권 침해의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낙태죄는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75개국이 이미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 2019년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9년 3월 28일 카드뉴스

제목 : [카드뉴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일시 : 2019년 3월 28일

내용 :

-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 (#100일시위) 참여자들의 이야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01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 참여자들의 이야기

#낙태죄폐지 #이후의세계 #우리가만들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02

“나는 나의 가족들과 임신 중단에 대해 대화하고 싶어서 1인 시위에 나왔다. 우리 모두 과거와 잘 헤어지고 앞으로를 잘 마주하기를 원한다. 식탁에 임신 중단이라는 화두가 오르고, 함께 화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이별하고, 선택이 낙인이 되지 않으며, 나의 몸이 국가 산아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취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4월, 꼭! 낙태죄가 폐지된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2019년 3월 19일 1인시위 참여자 신민주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03

낙태죄를 폐지하고

가족들과 임신중단에 대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과거와 잘 헤어지고
앞으로를 잘 마주하는,
선택이 낙인이 되지 않으며
내 몸이 국가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취급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04

“낙태죄는 정확하게 더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생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가진 게 없고, 결정권이 적고, 정보량이 적고, 약한 이를 공격합니다. 때문에 여전히 10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영아살해죄로 재판정에 서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법과 사회, 질서란 더 약한 자를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2019년 3월 18일 1인시위 참여자 이서영님

낙태죄를 폐지하고

사회적으로 더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랑으로 내몰지 않는,
죄책감을 강조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다
사망한 여성들의 소식을
더 이상 뉴스로 접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결사반대한다’는)
‘진정성 넘치는 선한 싸움’ 같은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두 줄이 뜯 임신테스
트기**를 앞에 둔 가난하고 힘없는, 임신 계획이
없던 여성의 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요.
뒷골이 서늘해지고 세상에 홀로 떨어진 것처럼
외로운 마음이지요. 4월에는, **이미 태어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판결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도 또 존치 판결이
나온다면 현재 앞 아스팔트를 다 뒤집어 엮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1인시위 참여자 이서영님

낙태죄를 폐지하고

두 줄이 뜯 임신테스트기 앞에 선
여성의 심정에 공감하는,
(그것이 기쁨이건, 아니건)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결정을
비난하며 낙인찍지 않는,
이미 태어난 여성의 생명과
건강 역시 귀하게 여기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저는 다시는 이 땅에 당시의 저와 제 친구
같은 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생겨나지 않았
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20살 되고 나
서 다 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청소년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교육** 시간에는 (조작된)
'낙태' 비디오를 보는 10대를 보내고, 임시
공부만 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원**이라
고는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20대가 되어 아
무런 **안전장치** 없이 세상에 내던져지는 청
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이 없었으면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1인시위 참여자 현님

낙태죄를 폐지하고

조작된 '낙태비디오' 따위가
성교육을 대신하지 않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현견과 낙인이 사라진,
누구나 자신의 파트너와
안전한 피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고민
하고 잘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자원과 힘이, 여성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임신 중절을 결정하게 된다면,
처벌에 대한 공포 없이, 수술 및 약물 부작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도움을
잘 받고 몸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1인시위 참여자 현님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자원과 힘이 주어지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누구에게나 성과 재생산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를
 #낙태죄폐지 #이후의세계 #우리가만들자
해시태그로, 피켓으로,
집회에서 직접 들려주세요!)

세계를 만들 것이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죄 폐지 이후에 필요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모여 외쳐주세요.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3월30일 3시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

#낙태죄폐지 #이후의세계 #우리가만들자

2019년 3월 30일 집회/시위

제목 : 집회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일시 : 2019년 3월 30일 오후 3시 30분~6시

장소 :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내용 :

- 사회 :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 Women Helps Women, 아르헨티나 노총(CTA-A), 국제 엠네스티 각국 지부 등 해외 연대 메시지 영상 상영 (<https://www.youtube.com/watch?v=4OLyOaRLhaU&t=24s>),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 보고 영상 상영
- (<https://www.youtube.com/watch?v=xwOfzD51Qt0&t=4s>)
- 발언
 - 수진(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
 - 권혜진(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익명(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 김민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민지)
- 행진 (헌법재판소 인근인 인사동 사거리)
- 피켓 퍼포먼스(“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유산유도제 도입을 통한 여성건강권 보장”,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 요구”)
- 선언문 낭독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

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여성사회교육원, (사)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고려대학교 중앙 페미니즘 학회 ‘여정’,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한의사회, 문화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믿는페미,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 학회 ‘여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건강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인권운동더하기,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모임 ‘젠장’, 제주여민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행동하는이화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41개 단체) 총 65개 단체 공동주최

우측 QR코드1 : 모낙페 활동 보고 영상

우측 QR코드2 : 해외 연대 영상



QR코드1



QR코드2

발언_수진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

안녕하십니까 낙태죄 폐지를 위해 광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전남대 페미니즘 학회 팩트의 수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출산한 여성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논란이 되었던 ‘가임기 여성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연령과 지정 성별만을 기준으로 가임기 여성 수를 집계하고 지자체별 순위까지 기재해놓은 아주 황당한 자료였습니다.

더욱 더 황당하고 화가나는 점은 이것이 정부의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 지도는 여성의 건강, 경제력, 자기결정권 등 여성 개인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을 한 집단으로 묶어버린 후 단지 ‘자궁을 가진 존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 짚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을 자궁으로 보고 있는 정부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잘 만들어 주고 있을까요?

현재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임대, 아동수당,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을 위한 것이지 미혼모나 비혼모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둘이서 키우기도 벅찬데 혼자서 키우기는 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는 등 애가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느냐 등 사회에서 미혼모들에게 보내는 반응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으니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 ‘사고친 여자’가 되는 사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당연히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바로 여성들이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내는데 무리가 없

는 사회, 지정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기 싫다면 낳지 않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형법 제 296조 1항 낙태죄를 폐지하라!

애낳으라고 닭달하지만 말고, 누구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어라!

감사합니다.

발언_ 권혜진 (공공운수노조 교육 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국의 초, 중, 고 국공립과 사립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학교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을 가리켜 모 국회의원이 "그냥 밥 하는 아줌마들이다, 밥 하는 아줌마들을 왜 정규직화해야 하느냐"라고 발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굳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비정규직으로 쉽게 쉽게 채용했다가 필요없어지면 자르면 된다고요.

밥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 매일같이 반복되고 계속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 돌봄노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낮은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계속해서 소모될 뿐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무임금 노동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여성의 노동을 하찮게 여겨왔습니다.

불안정한 노동과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여성을 더욱 가난의 굴레에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수술이 가능

한 병원을 마음 졸이며 찾아다니고, 병가나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일터에 나가 일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말합니다.

약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불법촬영물로 여성을 유희로 삼고, 성별임금격차로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 노동을 하찮게 여기며, 낙태죄를 뒤집어쓰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다중 차별과 다중 고통의 현장에 바로 여성이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우선될 것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을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추가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는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빈곤한 여성에 한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에게만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완벽한 여건을 상정해두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임신중지를 위해 당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제 3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캡틴 마블>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를 요구받던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에 아무도 나를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2019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_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려면 함께 갈 친구가, 동료가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만난 우리들은 임신 중지 자체를 범죄화함으로써 국가가 통제해온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발견하며 동료가 되는 과정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함으로써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 명백히 해주는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허락할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며 휘두른 폭력을 기억합니다. 낙태는 불법이라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우생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를 허락합니다. 우생학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생명을 위계화하는 인구 정책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 놓인 듯 보이지만, 이 부적격자의 위치에 10대,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이 놓여졌고,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허락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위계화 해 왔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애금지, 자위 금지라는 규칙, 강제 불임시술과 같은 방법으로 노골적으로 재생산 권리를 통제 하였던 곳입니다.

장애를 좋지 않은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재생산권리는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상황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장애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성적인 실천을 해내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 권리의 행사 타인과의 관계 맺기 등에는 무관심합니다.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만이 어떤 사건처럼 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따로 떨어진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쪼갤 수 없듯이 소수자가 사회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수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무엇인지, 친밀함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겪는지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선택과 결정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과 권리, 지지기반과 관계 안에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여성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의 소수자로서 우리는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로서, 내 몸이 이 사회와 어떻

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전하게 선택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자유와 평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더 넓은 토론의 장을 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리는 나의 경험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폐지 이후 생명과 윤리, 제도를 넘어선 권리화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모두의 성적 권리와 실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갈 것입니다. 혼란을 걱정하는, 혼란을 핑계삼는 이들에게 범죄화와 통제가 아니라 소란과 혼란이 토론을 만들고 나와 너를 자유와 평등으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일깨울 것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될 것이고 서로의 동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_익명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아하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낙태죄는 분명한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이라

고 뭐든지 쉽게, 뭐든지 약하고 수위가 낮게 가르칩니다.

저는 16살 중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성교육으로 콘돔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김새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계속 유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면 사회가 문란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니 1학년 때부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배웁니다. 본인 몸은 본인이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 몸을 위해서 낙태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제 몸을 제가 미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어제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미성년자 한 여성이 영유아를 화장실에서 낳고 도주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사건은 10년전, 2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사회는 그 잘못을 도주한 여성에게 돌립니다. 정작 그 여성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그 여성에게 잘못된 엄마라고, 책임감 없는 엄마라고 욕합니다. 사회는 여성의 인권을 보

장하지 않고 여성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고 영유아를 잘 키우기만을 여성에게 원합니다. 여성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아이를 죽이는 건 나쁜짓이지만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자금이나 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모든 일을 위해서 내 몸속 작은 세포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가르칩니다. 하지말라고, 그만하라고, 소리지르라고

그러면 여성의 몸에 국가가 가해하는 모든 재앙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가요?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몸을 컨트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제 몸을 제어하고 제 몸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대해 처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미래를 위해서 세포를 포기한다고 해도 저를 비하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학생이 많은 미성년자 여성이 힘들게 낙태를 결정하고 불법적 낙태시술을 무서워해서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를 발로 찬다든지, 여성

을 거꾸로 묶어 놓거나 담배와 술을 억지로 한다든지, 결국 낙태죄를 국가가 가함으로써 여성들의 몸은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낙태죄는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낙태죄 폐지가 오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_ 김민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안녕하세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김민지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드디어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건강을 잃거나 사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이고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임을 천명하면서 2003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지와 달리 여성의 가임력, 미래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지 않습니다. 약물을 통한 초기 임신중지는 출산보다 안전함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임신중지에 대한 최신 지견과 안전한 기술을 잘 모르고 있고, 규제대상이 아닌 성범죄 생존자 등의 사람들에게조차 법원 판결문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을 요구해 왔습니다. 소위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시술할 때조차 임신중지의 최신 지견에 맞지 않으며 더 이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소파술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현재 권고되는 흡입술 또는 배출술은 소파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 비율이 낮고, 가임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낙태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역시 한국에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해외 NGO를 통해 초조하게 몇 주를 기다리며 약을 배송받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브로커를 통해 값비싼 가격에 구입해 제대로 된

복약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복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는 시급을 다루는 의료행위이자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임신중지의 방법이 달라지고, 위험성도 달라집니다. 임신중지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비보험 체제에서는 고가의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길어지고, 그 사이 임신중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가 막힌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임신중지를 하고 싶어서 임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임을 시도했으나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합니다. 임신중지는 무책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언제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신중지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급여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건강권이고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로서의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을 적극 교육하라!

의료인에게 임신중지의 원칙과 최신 지견을 교육하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라!

임신중지 약물은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충분한 사용례가 축적되고 사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건강의 향상을 위해 그동안 ‘임신중지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을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 임신중지와 피임을 보험 급여화하라!

임신중지와 피임은 필수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임신중지를 겪는 사람에게 임신중지는 필연적인 선택이며,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고가의 비용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이 됩니다. 임신중지와 피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였습니다.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선언문 -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은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저출산 해소라는 명목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요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직접 그러한 사회로 변화시켜나가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하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며, 처벌하는 사회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삶에 대한 결정은 늘 한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우리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65년간 존치되어온 악법인 낙태죄 폐지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둘.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하고 피임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피임의 접근성과 성교육의 필요성이 오직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회, 실질적인 의료접근성과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 여부가 탁상공론에만 머무르는 사회에 중지부를 찍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비과학적이고 차별적 내용의 성교육을 시행하며 모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표준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낙인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셋.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여성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임신중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은 앞장서서 안전한 임신중지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최신지견의 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제도화하고,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약품처방과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넷.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권 억압의 역사를 청산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법이었다. 그 법 아래,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 누군가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이라는 치욕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임신중지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섯.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 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안전한 의

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나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사회 부정의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는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19년, 낙태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다.

2019년 3월 30일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참가자 일동

2019년 4월 11일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4월 11일 오전 9시~오후 2시 2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내용 :

○ 릴레이 기자회견

- 청년계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 종교계 기자회견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아멘!>
-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 장애계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명, 장애인의 성적 권리,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 지금 당장!>
- 진보정당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 의료계 기자회견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및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 발언
 - 제이(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나영(성과재생산포럼)
 - 문설희(사회진보연대)
 - 천지선(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보건의료학생 매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충북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인터뷰, 학회학술네트워크, 학회학술네트워크 프로젝트그룹 alda,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독교여민회, 믿는페미,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성과재생산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사진) 헌법불합치 기자회견

2019년 4월 11일 집회/시위

제목 :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 집회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일시 : 2019년 4월 11일 오후 7시

장소 : 헌법재판소 인근(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인복지회관 앞)

내용 :

- 현장 자유 발언
- 수미
- 라온(인천여성민우회)
- 가현(불꽃페미액션)
- 로리(한국여성민우회)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진) 낙태죄 위헌 판결 환영 집회 (사진제공: 노동과세계)

현장 자유 발언_ 수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함께 싸워온 여러 단위의 활동가분들과 목소리를 내어온 여성동지들의 노고에 먼저 힘찬 격려의 박수를 청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성에게
애 낳아 애국해라!
저출산은 이기적인 여자 탓이라고 말하며, 행정부는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며 어렵게 낙태를 결심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습니다.

사실상 완벽한 피임 방법이 없는데
임신중단을 여성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수정란에 생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사실상 모자보건법 처벌조항 개정과 형법 269조의 자기낙태죄를 개정해야 여성의 임신 유지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완성됩니다.

오늘의 승리의 기쁨은 누리겠지만,

향후 정부 부처의 법 개정에도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놓치지 않고 주시할 것입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빼앗긴 자기 몸 결정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당당히 외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이 지배되지 않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현장 자유 발언_ 라온 (인천여성민우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던 몸의 기억과 억압들을 떠올리며 2011년 ‘있잖아 나 낙태했어’를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2016년 10월 낙태죄 조항을 폐지 하자는 서명으로 진척이 이루어진걸 보면 여성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임과 임신 출산은 국가 통제할 일이 아닌 여성들의 일이며 더 나아가 시민적 저항이 되어야 한다고 공론화한 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또한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쯤해서 함성과 함께 우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주변의 여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그녀는 21살의 대학생이었는데 군복무중인 남자친구와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 2월 졸업후 취업할 곳도 생겨서 한참 꿈에 부풀었는데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중절을 하던 임신을 유지하던 여성의 의사결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낙태는 죄라는 조항이 있고 불법시술이 되어야 하고 너의 결정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혼자서 자취하던 그녀는 학자금대출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막다른 길목에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등 떠밀린 결정을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인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최우선이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지껏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사고하고 결정하는 일이 자연스럽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자기가 짊어져야 하고 의료정보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던 욕먹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태인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임신을 유지할 때 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임신을 중지할 때 너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너의 판단을 존중하고 도와줄게 어떻게 결정할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사회적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꼭 결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제도 말고 다른 대안가족은 없는 건가요? 오늘이후로 우리는 낙태죄가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되리라 희망했는데..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남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회는 민주적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가족을 모색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장 자유 발언_ 로리 (한국여성민우회)

<낙태죄를 폐지하라 지 금 당 장!>이라는 구호를 이제 외치지 않아도 되네요. 여러분, 이제 형법 269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잘못된 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고, 너무나 기다렸던 밤입니다.

저는 어제 133일째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하고 온 반사회여성단체 회원 로리입니다. 낙태죄는위헌이다 라고 쓰인 피켓 위에 있던 133이라는 숫자, 코팅된 비닐 위에 휴지로 지우고 마카로 덧쓴 133이라는 숫자는 임신 중단을 형법상 죄로 규정한 66년에 비할 기간이 아니지만, 저 같은 한명 한명의 시민이 생업을 쉬고 수업을 빼고 에너지를 담아서 문자기부를 하고 분노해왔던 에너지와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위협과 불안, 실질적인 위협에 시달렸던 수많은 여성을 생각할 때, 계속 지워지고 다시 쓰인 133이라는, 뽀뽀뽀 마카로 쓴 숫자를 봤을 때 이것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어떤 임신은 허용하고 어떤 임신은 우생학적인

이유로 제외하고, 그것을 국가가 명령하고 제약하고 단순히 내 몸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를 넘어, 사회 구성원 숫자 한명만 늘리면 그뿐이고 너희 여성들의 몸은 그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한 법의 제정과 실행과 사회적 낙인에 반대하는 우리의 분노도 이제는 한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정말, 어제의 1인시위가 마지막이기를, 잘못된 역사의 문을 닫기를, 더 이상 이렇게 여성들이 나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비생산적인 상황, 비상식적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록 대체할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기존법이 존치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낙태죄가 형법상 죄가 될 수 없다고 인정된 사회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낙태죄라는 야만적인 제도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사실상 마지막 1인시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한 언론이 물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계속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하고

단서를 더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막상 위헌이 된다고 해도 너무 당연한 것을 얻어내는데 그렇게 기쁠 일이야?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헌법불합치 다섯 글자를 봤을 때 눈물이 나더라구요.

고생하신 여러분들, 우리들, 이제 낙태죄 없네요.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물론 국회에 더 압박을 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낙태죄라는 있어서는 안 될 죄의 폐지와 싸우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더욱 반가운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승리를 만끽하면서 동시에 재생산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명 두명의 낄세자를 더 늘리고 GDP 생산의 도구로만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과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교육에서 얻고, 내가 원하는 피임 방법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상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 이성애/정상가족 구도를 벗어나서 원하는 형태의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낙인과 차별 없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꼭 우리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 함께 연결되어서 더 큰 승리를 이뤄내고 싶어요. 정말

Chapter2. 대체입법 시한

2019년 4월 12일 ~ 2020년 12월 31일

2019년 4월 12일 기자회견

제목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담회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일시 : 2019년 4월 12일 오후 2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내용 :

○ 사회 :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

-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향후계획 발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제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류민희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보건의료 정책적 과제와 방향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전문의를)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향후계획 발표

4월 11일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위헌결정으로 완전히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입법자들에게 변화의 책임을 넘긴 것은 아쉬우나,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서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세 명,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네 명의 의견으로 압도적인 위헌 의견이 제시된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요구와 함께 지난 수년에 걸쳐 낙태죄 폐지를 외쳐 온 우리는, 그동안 경제개발과 인구관리의 목적에 맞추어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처벌로써 전가해 온 역사가 바로, 낙태죄의 역사임을 폭로해 왔다.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번 결정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역사적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와 같은 처벌의 역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더 이상 현행 형법상의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은 유효하지 않다.

이번 결정으로 66년 만에 한국 형법상의 ‘낙태죄’는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이 존속 될 이유가 없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서 낙태죄의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 조항은 이후 누구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과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를 넘어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관 세 명의 단순위헌 의견, 네 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모두 2012년 결정의 구도를 분명히 넘어섰다는 점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두고 이를 태아와 여성의 권리 충돌로 판단하였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그와 같은 구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대립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태아는 엄연히 모와는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모의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중략)…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태아와 여성의 권리를 대립 구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임신중지의 책임을 여성에게 차별로서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점을 정부와 국회, 사회적으로도 명확히 인식하여 임신중지의 문제를 더 이상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달린 문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은 모두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은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태아에 대한 애착,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출산 후 양육을 담당하면서 부담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신체적/정서적 책임과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과 태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중압감 속에서 자신과 태아의 미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에 기반하여 내려지므로, 그 결정의 무게에 비추어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위와 같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에 비하여 낙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그간의 낙태죄 처벌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임신중지를 예방하는 실효성은 없는 반면 성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되어 온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임신중지의 예방에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증명되어 온 바이다. 전 세계적 추이를 볼 때 임신중지를 폭넓게 합법화하거나 완전 비범죄화한 국가에서 임신중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신중지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임신당사자가 처한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조건, 파트너와의 관계, 양육 환경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화와 보장에 사회적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앞으로 임신중지의 보장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성교육,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유지, 임신중지,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장체계와 성평등의 조건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분명히 확인했다.

이번 결정의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는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에 보장된 여성의 인격권으로서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며,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으며, 이어서

“임신,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짚었다. 나아가,

“임신 유지 여부의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또한 임신 유지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자기결정권임을 확인하면서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판단으로 현행 ‘낙태죄’의 위헌성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향후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 정리]

□ 주수는 논쟁 대상인가? 여성의 판단이 우선이다

"한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그 변경가능 여부를 파악하며, 국가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만약 낙태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거쳐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7p)

○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수에 대한 헌법적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동시에 여성이 자신의 주변적 환경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게 함께 검토되었다. 임신중지라는 사건을 "시간적 사건"으로 해석

한 것은 인상적인 부분이다.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고,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탐색하며, 이를 숙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며 이를 도식적으로 구분하고, 주수 간에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임신 22주 내에서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된 임신 22주 내에서는 "특정한 사유를 국가가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여성의 결정과 요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임신 22주까지를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판단과 요청이 전적으로 존중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파악한다.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여성과 판단과 요청을 근간으로 한 입법적 방향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으며, 입법 재량은 이를 넘어설 수 없다.

"태아는 임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달되어 간다. 태아는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기는 가변적일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임신 22주라고 하고 있고, 산부인과 학계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 시기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32-33p)"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다르지 않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8p)“

-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단순위헌 의견은 임신 22주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기준을 두어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요청한다.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은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유를 두어서 이후의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입법자들이 간과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의견의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적시한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하여 한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30p)"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법적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22p)“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에 비하여 낙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그간의 낙태죄 처벌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헌법불합치의견이 밝힌 것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은 종종 헤어진 연인, 남편 등의 복수 혹은 괴롭힘의 수단이나 가사·민사 분쟁에서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위와 같은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은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위 조항들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미미하며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부분이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등으로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40p)."

-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자기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사실상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성과 함께 법적 악용의 지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형법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의 입법 재량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넘어설 수 없다.
-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단순위헌 의견에서 살펴본바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그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적으로 어떤 형벌 조항이나 형사처벌 조항은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형법적 효과를 악용되는 사례를 통해 반인권적인 법으로 기능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입법재량 역시 임신중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처벌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의 입법 방향을 채택할 수 없다.

- 처벌의 내용과 한계를 형법적 처벌로만 한정하여서 볼 수도 없다. 상담의무제, 숙려의무제 등의 해외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의료급여 제한, 벌금형 등 여성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예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반인권적인 입법 방향이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 내용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이다.

가) 낙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로서 여성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임신 한 여성의 낙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 또한 낙태 문제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낙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낙태 당시 태아의 발달 정도(임신 기간), 의료인의 숙련도, 의료 환경, 낙태 이후의 돌봄과 관리, 낙태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이 거론된다. 낙태 비용도 낙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낙태 비용이 높을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여성들이 낙태를 망설이게 되어 결국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32p).

- 또한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 의견 모두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을 여성의 "건강"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의 "어떻게 임신중지를 제한하고, 절차를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더욱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서구의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사유의 선별, 상담의무제, 숙려의무제 등은 이미 임신중지의 실행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며 궁극적으로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간과할 수 없다.

- 입법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적 요지는 임신을 중지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판단과 결정이며, 임신중지에서 여성의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입법자들의 과제로 제시한다. 입법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따른 입법 방향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처벌을 담보로 한 충족조건 입법은 입법 재량을 넘어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범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전면 폐지하라.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 또한 누구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2019. 04. 12.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언2.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_ 류민희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결정)를 변경하여,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

그동안 대한민국 여성은 낙태죄에 의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당해 왔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은 형벌 또는 출산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낙태죄는 임신중단 수술과 약물에 의한 시술을 불법화하여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결과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산부인과가 드문 지방거주자, 의학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 저학력자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이나 노동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낙태죄는 산아제한과 출산장려 등 국가 정책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었고, 여성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보건법은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기본법 형식의 이 법은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최신의 정보제공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논의할 시간이다. 태아의 생명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 이 선택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보는 대결구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진정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언3.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보건의료 정책적 과제와 방향 —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전문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형법상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만인 2019년 4월 11일 오늘, 역사적인 형법 제 269조 1항, 270조 1항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임신중지를 의료행위로 보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발맞추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낙태죄로 인해 피해입어 왔던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역시 보장을 향해 첫 걸음을 뚫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성장의 성과로 오늘의 값진 결과를 쟁취한 것이다.

여성들은 거리 시위부터 청원, 캠페인, 서명운동까지 전사회적인 낙태죄 폐지 운동을 확산시켜왔다. 여성들이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보건의료인 1143명의 서명을 담은 낙태죄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임신중지가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문제라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더 많은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조직하려는 노력이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 등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을 핑계로 의료인의 의무에 대해 방기해 온 것은 아닌지, 의료인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제 의료계는 '낙태죄'의 그늘 아래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차별 없이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에게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죄'라는 오명을 벗은 임신중지 행위에 대해 의료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중지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료를 할 책임이 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2003년 이미 임신중지가 인권이고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올바른 술기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작하고 있다. OECD 국가 37개국 중 어제까지의 한국과 같이 엄격히 임신중지를 금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1개국밖에 남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임신을 중지할 권리가 곧 인권임은 전세계에서 널리 합의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인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임신중지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떠한 피임법도 100%의 성공률이 아니며, 세상에는 종종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임신은 무책임의 산물이라는 말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말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신중지는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마지막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의료서비스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그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던 필수 의료로서의 임신중지 서비스가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날이 머지 않으리라 기대하며,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교육이 필요하다.

'낙태죄'로 인해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이 어려웠다. 인공임신중절 개조가 의과대학 학습목표에 있음에도 한국의 의료진은 임신중지에 대한 최신 지견과 안전한 술기를 배운 적이 없다. 한국은 소위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시술할 때조차 임신중지의 최신 지견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소파술의 비중이 높다. 이것이 '일부 허용된 부분이 있으므로' 합헌 결정을 내린 2012년의 판결이 낳은 현실이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현재 권고되는 약물과 흡입술 또는 배출술은 합병증이나 다음 임신에 끼칠 수 있는 위해의 위험이 낮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예비의료인 교육 및 의료인 재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라.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의료진이 행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임신중지를 다루도록 제도화해 수련의들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뒤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는 필수의료이며, 필수의료는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산유도약을 도입하라.

유산유도약 미페프리스톤은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충분한 사용례가 축적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기 임신중지에서 그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누구에게든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여성건강의 향상을 위해 그간 '임신중지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을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한다.

넷째,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련된 가치중립적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고 의료상담환경을 조성하라.

한국의 피임실천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중 많은 수가 제대로 된 피임이라고 할 수 없는 월경주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피임 교육이 없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 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여 피임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보건소, 병원, 상담센터 등에서 피임과 임신중지에 대한 의학적으로 정확하며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만약 여성이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을 위해 방문할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성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는 너무나 많다. 상담을 빙자해 잘못된 의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까지 이루어져야 올바르게 가치중립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임신중지와 피임을 보험 급여화하라.

임신중지는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임신중지의 방법과 위험성이 달라지게 된다. 임신중지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에서는 임신중지를 위해 고가의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해야만 한다. 임신중지를 결심하고도 고가의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임신주수가 길어지고, 그 사이 임신중지의 위험성이 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야만 할 상황이다. 누군가 임신중지를 결심한다면 임신중지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것이 임신중지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피임 역시 마찬가지다. 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과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한국의 피임수단은 대다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의 피임수단은 피임접근성을 낮추고, 이는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를 불러온다. 당사자가 피임하고 싶을 때 피임하고, 피임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피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결정권이고 재생산권이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다.

2019년 4월 1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9년 4월 16일 성명/논평

[성명서]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 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 이제 국회가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자평했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에도 한참 미달하는 법안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해외 사례들만을 단편적으로 참고하여 형식적으로 법 개정에만 나설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통제해 온 인구정책과 성적 통제의 역사를 성찰하고, 성관계와 피임,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정책과 법·제도,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낙인의 조건들을 검토하여 권리 보장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빠르게 ‘최초발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법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임신 14주를 경과한 임신중지의 경우 태아의 건강, 성폭력, 근친상간, 사회·경제적 곤란함이나 임신의 유지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또다시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그마저도 임신 22주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외에는 임신 당사자가 임신 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온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제약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인이나 임신중지를 도운 시술자에게 과태료(의사 등 500만원, 비의료인 200만원)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에도 거스르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요구해 온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에는 그 어떤 허락도 처벌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허용 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제약한다는 우려 역시 밝혔다.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개인의 곤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방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방향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임신중지의 결정 시기를 놓치고, 더 열악하거나 위험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이들은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우생학적 사유’를 반드시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적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그간의 우려와 요구들을 도외시한 채 정의당은 또다시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법적 제약의 틀 안에 가두는 퇴보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 3인의 재판관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기준을 두어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 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적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4인의 재판관들 역시 임신 22주 내에서는 “특정한 사유를 국가가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과 요청에 기반하여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근간으로 한 입법적 방향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

시 여성의 결정을 제한하고 국가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징벌하는 정의당의 발의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마저도 한참이나 후퇴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장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법안개정은 여성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토론하는 사회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불과 며칠 후 진보적 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이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한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태아생명권 대 여성결정권’이 아닌 ‘성과재생산의 권리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에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했다.

이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는 정의당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역행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와 성과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용기있게 행동해온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계속하여 전진할 것이다!

- 국회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
-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16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9년 5월 10일 카드뉴스

제목 :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

일시 : 2019년 5월 10일

●○○○○○○○

헌법재판소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 의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이 카드뉴스는 2019.4.12 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입장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01 여성의 임신유지여부에 대한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확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02 ‘여성의 이기적 선택’?? 임신중지는 여성의 전인적 결정

“임신 유지 여부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임신한 여성이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03 여성 VS 태아?? ‘여성의 안위 = 태아의 안위’

“태아는 엄연히 모(母)와는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모의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중략)…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04 ‘처벌법=실효성 없음’ 확인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에 비하여 낙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그간의 낙태죄 처벌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05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 국가의 책임을 짚다.

임신중지의 책임을 여성에게 처벌로서 전가할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교육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더 이상 임신중지를 범죄로 만드는 어떠한 처벌도, 처벌법도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낙태죄의 위헌성이 확인된 만큼, 누구에게도 실질적으로 이 처벌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허락과 처벌에서 권리보장으로 전환하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취지는, ‘여성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라’는 것.

따라서, 국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임신중지를 허락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삶의 맥락을 먼저 살피고, 어떻게 이들의 삶을 보장할 지를 고민하여 법을 재검비하길 요구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9년 6월 18일 토론회

제목 :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

일시 : 2019년 6월 18일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내용 :

- 사회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 발제 :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_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 안전한 임신중지, 어떻게 할 것인가?_ 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가 노동권에 끼치는 영향_ 김수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권리로 접근하는 포괄적 성교육_ 이명숙((사)탁틴내일 상임대표)
 -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 장애여성의 권리_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 재생산 권리와 법적 과제_ 류민희(변호사)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코드 : 자료집 <낙태죄 폐지 2라운드>



2019년 6월 25일 성명/논평

[성명서]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대검찰청 결정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21일,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한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임신기간 12주~22주 이내이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처리기준을 마련한 근거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국회에 입법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와 같은 처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임신 12주 이내’,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와 같은 기준을 둔 것은 검찰이 임의로 허용 가능한 시기와 사유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또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낙태죄’ 조항의 영향력을 존속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우리는 대검찰청이 임의로 제시한 처리기준의 한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임신중지의 경우 향후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

까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유를 불문하고 전면 수사 중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할 수 있다거나, 특정한 허용 사유를 향후 입법 기준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의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불평등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과 삶의 위협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임신중지의 결정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개인의 일시적 판단이 아니라 임신을 유지할 경우 태어나게 될 아이와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따라서 처벌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에 따라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중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임의로 허용 가능한 기간이나 사유를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법을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즉시 수사 및 기소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검찰, 사법부에 촉구한다.

- 검찰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 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중단하고 재판을 연기하라.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공표하고 검찰, 경찰과 사법부에 모든 수사과 기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

2019년 6월 25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9월 23일 온라인액션

제목 :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손피켓 인증샷 캠페인

일시 : 2019년 9월 23일~2019년 9월 27일

내용 :

- 손피켓 : ○○○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ex. 보건복지부는,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 해시태그 : #MyAbortionMyHealth



안전한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 #MyAbortionMyHealth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 #MyAbortionMyHealth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지금.당장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 #MyAbortionMyHealth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19년 9월 27일 기자회견

제목 :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일시 : 2019년 9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내용 :

- 사회 및 활동경과 보고: 앞(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 김성이(보건의료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경과 보고_ 앞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 ▶ 2017년 9월 2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 2017년 12월 1일 검은 시위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 ▶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일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 ▶ 2018년 7월 7일 낙태죄 위헌 판결·폐지 촉구 전국총집중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 ▶ 2018년 9월 29일 269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형법 제269조 ‘낙태죄’ 삭제 퍼포먼스
- ▶ 2018년 11월 29일~ 2019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죄 폐지 촉구 1인 시위
- ▶ 2019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차별도 허락도 거부한다!”
- ▶ 2019년 3월 30일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시위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위헌 촉구 헌법재판소 앞 각계각층 릴레이 기자회견
-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기자회견 및 집회/시위
- ▶ 2019년 4월 12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 입장과 향후 방향 발표 기자간담회
- ▶ 2019년 4월 15일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차별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 ▶ 2019년 6월 3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보건복지부 간담회
- ▶ 2019년 6월 20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 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
- ▶ 2019년 6월 25일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 와 기소를 중단하라!”: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발언_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여성도 존엄한 인간이다. 임신한 여성에게도 인격이 있다. 자율적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즉 헌법에 맞지 않는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멈추어있던 인권의 시계가 66년 만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왜 4월 11일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쩌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법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회피는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있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헌재 판결 이후 직접 보건

복지부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23만 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까지 하셨으니 후속조치를 서두르십시오. 수술적인 방법 외에 약물적인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안전한 방법임을 공중보건 차원으로 국민에게 알리십시오. 복용 전 후의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입니다.

둘째, 의료현장의 실태조사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이제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의료서비스였기에 관련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의료현장 실태조사부터 서두르십시오. 의료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적절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정책적 조치에 임하십시오.

셋째,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공적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임신의 안전한

유지와 건강한 출산 못지않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적 의료서비스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신중지 합법화에 걸맞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역적 격차, 질병과 장애의 유무, 연령의 차이, 언어와 국적의 문제 등으로 임신중지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중지는 피임법이 결코 아닙니다. 피임정보제공, 사전피임, 사후피임, 피임약물 및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의 피임접근권 강화 역시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부처 계획과 경과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4월 11일의 역사적 변화는 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집에

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장난 시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마땅히 다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조속하게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방치도, 책임방기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성의 삶은 멈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발언_노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변화는 오늘부터 필요합니다.” 4/11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지 상담 이야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

죄 헌법불합치 선고와 함께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처벌이 합당하지 않다”며 구시대적 악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할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처벌법과 함께 구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선고 이후 민우회로 들어온 임신중지 상담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A님은 임신 8주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로 13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했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용안내와 함께,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가 났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위축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B님은 집을 나와 원가족의 지원 없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성파트너는 임신사실을 듣고선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불법수술 비용도 불법약물 비용도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라,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임신주수가 높아

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출산을 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C님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거절당한 사례였습니다. 남성은 임신사실을 알고 이미 잠수를 탄 상황이었으나, 병원은 남성의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며 남성의 병원동행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사례〉 이 밖에도, 유산유도제에 관한 문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믿어도 되는지, 정품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약이 도착하는 동안 주수가 계속 높아질 텐데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불법약물 사용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여성들의 문의전화 속에서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면, 이 여성들은 전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중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각 방법은 어떤 장단점과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차별이나 낙인 없이 여성들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없애나가고, 높은 비용이 누군가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들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국제 사회는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임신중지’라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지라도 받고자 애쓰며, 그 전후와 과정상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각 부처에서, 국회에서, 병원과 학교에서 실질적 변화들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발언_ 김성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연대단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리의 보장수준은 그 사회에 속한 여성의 자유권과 사회권 특히 건강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의 계획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물리적 제약이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임신중지 또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성취해내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임

니다. 모든 재생산과정에 대한 권리는 생존과 안전,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존중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재생산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여성이 단지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책임주체로 인정받고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구비된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궁내장치를 제거할 때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난임은 지원하면서 피임은 외면하는 자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보십시오. 여성의 건강보다 출산율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부, 제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잘못을 시인하고 여성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건강보험에서 임신중지서비스를 급여

화하고, 이를 위한 내과적 임신중지서비스와 의료생산체계를 보장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약품으로 지정한지 15년이 경과했고, 외과적 시술에 비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전 세계 67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약품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아직도 약물적 임신중지 대신 자궁천공이나 유착의 위험이 있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과학적 진보의 기술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연령과 장애, 국적이나 질병, 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생산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면적인 보건의료체계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장소인 몸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계획하고 논의하십시오. 더 나아가 재생산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정책과 재생산정의를 추구하는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임신과 출산하는 몸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전쟁같은 세상에서 아이

를 낳아 키우기를 기대하실 건가요? 염
치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 역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합니
다. 내과적 임신중지를 비롯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훈련도 하지 않는 의학교육과 수련, 지
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필
요로 하는 양질의, 안전한 재생산 의료
서비스는 지금 하던대로 해서 되는 것

이 아닙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의료의
가치와 의학실천을 다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자부하고, 여
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
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
에서 우리들의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지지
하십시오.

▶ 기자회견문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차별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덧 6개월
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
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이므로 필요한 것은 차별과 낙인이 아닌 권리 보장임을 확실히 했다. 뿐만 아니라 여
성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이나 불평등
과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
는 낙태죄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법 개정 이전
에라도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을 비롯하여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부터 시행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으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일수록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환경에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그 무엇
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에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가. ‘안전하

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아래의 요구들을 실현하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우리는 정부에 시급히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수술적 방법 외에 약물적 유산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회피하고만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여성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필수약품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로 인해 한국의 여성들은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채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한 약물의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의 관련 상담,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그간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이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의 사용과 의료 조치, 임신중지 전후 상담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연

령, 언어,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조건을 개선하고 최선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66년 동안 존속해 온 ‘낙태죄’와 오로지 출산율의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보건의료 체계는 비공식적이고 상당 부분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상담 체계에서는 충분한 접근성과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와 보험 적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하라

피임 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에서 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성과 사회에 관한 비판적 판단 역량과 상호 존중의 관계, 협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편협한 정보 전달과 보호주의, 성역할의 강화는 불평등한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을 높일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함께 피임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교육,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차별의 시대는 끝났다. 전면 비범죄화만이 답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그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남겨져야 한다. 임신 중의 특정 시기나 사유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더욱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지 오래다. 세계보건기구,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

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령 맨 섬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처벌의 기준이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법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2월 이전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법의 내용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이다. 우리는 그 목표가 실현되는 날까지 전 세계의 여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My Abortion My Health!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년 9월 27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9년 10월 7일 성명/논평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처-

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이와 관련한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2. 당초 요구했던 답변 시한을 넘겨 9월 27일 오전 11시를 경과하여 보건복지부의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 유산유도 약물의 의학적, 안전성, 시술주수, 모니터링 필요성, 해외 허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자연유산 유도 약물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인공임신중절 관련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강화할 필요성, 강화 내용에 대해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공의 수련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신의료 기술이 반영된 인공임신중절 시술 가이드라인이 산과전문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향후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향후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 인공임신중절의 의료적 접근성에 대해서는 수행주체, 시술절차 등 다양한 요인

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형법 상의 ‘낙태죄’ 관련 조항 등 개정과 연동하여 형법-모자보건법 간 법체계 정비 방안과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각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OECD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간 협의 등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 요청한 답변 기한을 넘겨 지난 27일 기자회견 직후에야 관련 입장을 밝히는 등 미온적 태도에 그친 점은 아쉬우나, 답변서를 통해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법적 제한 사항에 관한 검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유산유도제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인 교육, 건강보험 적용, 접근성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가 차별과 제약이 아닌 건강권 보장의 방향으로 임신중지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한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각계 입장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을 뿐, 공공의료 체계 하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성과 접근성을 보장해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의무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계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우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미 95.3% 여성들이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결정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평균 6.4주 이내에 이루어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한다. 임신중지 결정을 늦추는 요인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이거나, 파트너나 가족에 의한 폭력이 있거나 지지

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권리와 정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경우 등 사회의 차별적 조건과 의료접근성에 의해 좌우된다. ‘낙태죄’의 존재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나누어 처벌 요건을 둔다면 이는 다시 한 번 국가가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사회적 차별 해소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여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임신 당사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현재 검토 중인 유산유도제의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의료체계의 재정비, 의료진 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법체계 검토에 있어서도 현행의 규제 조건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성교육,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조건까지 제반의 연동된 권리들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제시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7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대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 의전화)

2020년 2월 28일 대중강연

제목 : 성과 재생산의 권리로 새로 쓰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일시 : 2020년 2월 28일

장소 : 유튜브 (<https://youtu.be/NE6oWAWIFA8>)

내용 :

- 민주노총-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제작 교육자료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 변화를 이끈 힘, 용기있는 여성들의 행동!
-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흐름
- 낙태죄 폐지 운동과 노동조합
- 2020년 낙태죄 폐지 운동의 과제

공동제작 : 민주노총,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코드 : 강연 영상



2020년 3월 5일 카드뉴스

제목 : [카드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

일시 : 2020년 3월 5일

●○○○
○○○○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응답하라041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소위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천여 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중요한 진전입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

새로운 법안 마련의 기한, 2020년 12월 31일

하지만 이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금의 범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새로운 법은 여성의 권리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의료계, 교육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0년을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

새로운 법안 마련의 기한, 2020년 12월 31일

하지만 이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금의 범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새로운 법은 여성의 권리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의료계, 교육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0년을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1

국회와 정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4월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의료적,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3

적절한 의료체계 마련과 의료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료인 교육훈련은 임신중지를 대하는 태도, 약물과 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 환자의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4

피임 접근권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성적 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전 과정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공동행동

Action!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3. 8 공개예정)

[기자회견]

2020. 4. 7. (화) 10:30
국회 앞

[퍼포먼스]

2020. 4. 11. (토)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문의: safeabortionforal@gmail.com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년 3월 8일 성명/논평

[성명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11일, 임신유지를 중단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비로소 확인되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외치며 지난 수년에 걸쳐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여성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되어온 66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2019년 4월 11일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번째 날이 되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다시 맞아 우리는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선언한다. 수년간 우리는 외쳐왔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 혹은 경제 위기 해결은 인구 관리 및 가족 유지로써 가능하지 않다, 여성의 몸은 국가 발전을 위한 출산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에게 처벌로써 전가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2020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제 우리는 권리를 요구한다. ‘낙태죄’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를!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법 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 국회, 의료계, 교육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

에 응답해야 한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특히 4월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임신중지에 한해서라도 유산유도제 도입을 시행하여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에 여성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의료 체계 마련과 의료인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의료인 교육훈련은 임신중지를 대하는 태도, 약물과 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 환자의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 보편적 공공의료 보장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성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성적 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전 과정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여성의 존엄과 권리보장을 위해 저항해 온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과제를 확인하는 3·8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외친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보장하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월 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3월 8일 설문조사

제목 : #응답하라0411 설문조사 :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일시 : 2020년 3월 8일~ 4월 8일

내용 :

- 링크 : <http://bit.ly/3cBUxdg>
- 응답자 : 총 1,338명
- 국회의원 후보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참여 독려(녹색당 고은영, 김기홍, 김혜미, 성지수 비례 후보 / 정의당 배복주 비례 후보 / 무소속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 참여)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1.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
선택지 : ○ / X
2.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선택지 : ○ / X
3.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
선택지 : ○ / X
4.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 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
선택지 : ○ / X
5. 다음 중 임신중지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
선택지 : 자궁암 / 유방암 / 없음
6.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
선택지 : 정관수술 / 콘돔 / 없음

7.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택지 : O / X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주요 통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과 총선 국면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여 동안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 퀴즈에는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녹색당의 네 명의 비례 후보(성지수, 고은영, 김혜미, 김기홍)가, 4월 7일에는 무소속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가 직접 퀴즈를 풀어보는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총 7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4번 질문에 ‘X(아니다)’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5.3%에 달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7번 질문에도 92.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진행되었던 임신중지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보다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반면,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꽤 되었습니다.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라는 1번 질문에 1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고,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된

다”라는 3번 질문에서도 ‘O(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1.9%였습니다. 또, “다음 중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이라는 5번 질문에서 ‘자궁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1.8%, ‘유방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2%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안감을 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올바르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피임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이라는 6번 질문에서 72.1%의 응답자만이 ‘없음’을 선택하였고, ‘정관수술’이 21.8%, ‘콘돔’이 6.1%에 달했습니다. 100% 안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피임 실천율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④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2번 질문에는 78.3%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아직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위장관계 질환에 대해서만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술이나 마취, 항생제가 필요 없어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두 이른 주수에 시행될 경우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약물적 임신중지 역시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되지만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랙마켓 등을 통해 혼자서 약을 구입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뿐 아니라 관련한 상담과 의료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아래는 각 문항에 따른 정답률과 오답률, 정답 해설입니다.

1.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

정답 X : 응답자의 8.19% (1,101명)

오답 O : 응답자의 19.1% (260명)

[정답 해설]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임신중지는 후유증이 없다.

임신중지시술에 따르는 의학적 위험성은 출산 시에 경험할 수 있는 위험성보다 높지 않습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임신중지 수술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0.7명으로 만기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인 10만명당 10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8주 이내의 이른 주수에 시행되는 약물 임신중지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2000~2009년 사이 미국의 임신중지 관련 사망률은 10만 건 당 0.7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용성형수술의 사망률은 0.8~1.7, 치과 치료의 사망률은 0~1.7, 마라톤을 달리다 사망할 확률은 0.6~1.2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임신중지의 사망률이 특별히 더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 응답자의 78.3% (1,066명)

오답 X : 응답자의 21.7% (295명)

[정답 해설]

임신중지 약물(유산유도제)은 임신 전 기간 사용가능한 안전한 필수약품이다.

미프진(Mifegyne)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수술이나

마취, 항생제가 필요 없으며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단 임신중지 시술은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두가 이른 주수에 시행될 경우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약물적 임신중지 역시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됩니다).

유산유도제는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약물 도입과 관련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제공받고 관련한 상담과 의료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된다.

정답 X : 응답자의 88% (1,198명)

오답 O : 응답자의 12% (163명)

[정답 해설]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은 미래의 가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신중지 시술 이후 자궁 외 임신 등과 같이 난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 이후에도 임신중지 시술이 미래의 가임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오히려 임신중지 시술 이후 2주 이내에 배란이 회복되어 임신가능성이 있으므로 곧바로 피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여성의 가임력 및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임신중지 시술 자체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사회·경제적 요인입니다.

4.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 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

정답 X : 응답자의 95.3% (1,297명)

오답 O : 응답자의 4.7% (64명)

[정답 해설]

임신중지율의 증가는 임신·출산의 권리와 양육과정을 가로막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때문

2019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전 세계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북미와 북서부유럽인 반면, 임신중지가 불법인 한국의 임신중지율은 2007년 기준 1000명당 31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법적 처벌은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효과가 전혀 없으며,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출산의 권리와 양육과정을 가로막는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입니다.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는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화에 따른 두려움과 낙인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초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5. 다음 중 임신중지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

정답 ‘없음’ : 응답자의 87.1% (1,185명)

오답 ‘자궁암’ : 응답자의 11.8% (160명)

오답 ‘유방암’ : 응답자의 1.2% (16명)

[정답 해설]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방암·자궁암 등에 걸리기 쉽다,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 신체적 후유증을 강조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 및 흡연, 술·약물 중독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후유증이 임신중지 시술과 관련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의료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6.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

정답 '없음' : 응답자의 72% (980명)

오답 '정관수술' : 응답자의 22% (290명)

오답 '콘돔' : 응답자의 6% (82명)

[정답 해설]

100% 피임 성공률을 가진 피임법은 없다.

다양한 피임법이 존재하지만 100%의 성공률을 가진 피임법은 없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남성용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2~98%입니다. 경구피임약은 91~99%이고, 영구피임법으로 분류되는 정관수술도 99%의 성공률로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피임한다고 해도, 피임 과정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원치 않는 임신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교육, 피임, 임신중지 모두 누구에게나, 제대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께 요구해요!

7.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답 O : 응답자의 92.7% (1,262명)

오답 X : 응답자의 7.3% (99명)

[정답 해설]

전 세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증진을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증진을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낙태죄'가 헌법

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0년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비범죄화하는 법안 개정예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 보장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0년 4월 2일 질의서

제목 :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서

일시 : 2020년 4월 2일

내용 :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공개 질의서 발송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낙태죄를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가 전무한 가운데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 및 입법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입니다.

1. 귀하(당)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 정책을 어떠한 내용으로 마련할 예정입니까?
2. 유산유도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 많은 여성들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의 승인과 안전한 보급을 위한 귀하(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비로 인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현재 여러 나라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당)에서는 임신중지 보험 적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4.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함께 피임과 출산, 성 건강, 성교육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아우르는 법과 정책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귀하(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0년 4월 6일 온라인액션

제목 : #응답하라0411 온라인 액션

일시 : 2020년 4월 6일

내용 :

- 카드뉴스 제작·배포 및 해시태그 액션

1/8

**낙태진
헌법불합치 1년**
이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응답하라0411
#온라인액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8

올직히 이제 들어올 때 됐다.

유산유도제 도입

언제까지 수술적 방법만??
2005년 세계보건기구 지정 필수약품이자,
67개국에서 널리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 041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3/8

보험적용 의 암되?

의료보험 적용

경제적 취약 계층 등
모두가 접근 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처벌에서 권리로!
#응답하라041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4/8


더 알고 싶어요.

포괄적 성교육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평등한 의사소통,
피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 041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5/8



이제 사회도 바뀔 차례!
사회적 인식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 041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6/8

GO온라인 액션GO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진이나 그림, 손글씨와 함께
#응답하라0411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올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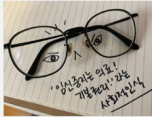

필요한거 많습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7/8

온라인 액션 예시

모낙페
 '임신중지는 의료! 기본권리!'라는
 사회적 인식 **#응답하라041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8/8

온라인 액션 예시



모낙페
 낙태죄 처벌조항을 모두 지움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년 4월 10일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일시 : 2020년 4월 10일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앞

내용 :

- 사회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발언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봉혜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 이애란((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퍼포먼스 :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투표 퍼포먼스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발언_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주요 통계발표 및 21대 총선 모나페 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발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과 총선 국면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여 동안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퀴즈에는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녹색 당의 네 명의 비례 후보(성지수, 고은영, 김혜미, 김기홍)가, 4월 7일에는 무소속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 어제 4월 9일에는 정의당 배복주 비례후보가 직접 퀴즈를 풀어보는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총 7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4번 질문에 ‘X(아니다)’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5.3%에 달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7번 질문에도 92.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진행되었던 임신중지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보다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꽤 되었습니다.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라는 1번 질문에 1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고,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

신이 잘 안 된다”라는 3번 질문에서도 ‘O(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1.9%였습니다. 또, “다음 중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이라는 5번 질문에서 ‘자궁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1.8%, ‘유방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2%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안감을 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올바르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로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피임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이라는 6번 질문에서 72.1%의 응답자만이 ‘없음’을 선택하였고, ‘정관수술’이 21.8%, ‘콘돔’이 6.1%에 달했습니다. 100% 안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피임 실천율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해 왔듯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2번 질문에 78.3%의 응답자가 ‘X(아니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아직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위장관계 질환에 대해서만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술이나 마취, 항생제가 필요 없어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두 이른 주수에 시행될 경우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약물적 임신중지 역시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되지만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랙마켓 등을 통해 혼자서 약을 구입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뿐 아니라

관련한 상담과 의료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다섯 곳에 정책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답변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함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확대 등 여성 건강권 차원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여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임신의 유지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접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상세 사항과 전문의약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였고,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 보장, 지역커뮤니티와 의료기관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물론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 매우 많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낸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현재 저희가 질의서를 보낸 각 주요 정당의 정책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은 지금 오직 야합과 꼼수 뿐,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난 몇 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많은 여성들과 보건의료계, 법조계, 장애, 이주, 종교계, 청소년, 성소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며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꼭 보란듯이 활짝 웃자고 계속해서 다짐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침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순간 어쩔 수 없이 감격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날의 감정이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그 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날의 감격은 여전히 생생한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과 정책, 보건의료, 사회 현실은 제 옷처럼 1년 전 그 날과 변화가 없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지난 66년 동안 여성들에게만 차별로서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와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여성을 차별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낙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다음 날부터 바로 그에 따른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승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별 보건의료 격차 개선, 의료인 교육, 보험 보장, 피임 접근성과 포괄적 성교

육 확대, 노동 조건 개선과 임신중지 시에도 유사산 휴가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었다면 당장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승인을 위한 절차부터 시작하고, 현재 가능한 임신중지 상황의 의료조건부터 바뀌나갔어야 합니다. 관련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의료 현장 변화, 의료인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지난 1년 동안 바로 시작되었어야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모두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폭력을 감당하거나 블랙마켓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눈 감고 무시해 온 폭력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낙태죄의 문제 역시 이 폭력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폭력을 감당하고 그 폭력에 대해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일방적인 낙인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현실에 낙태죄 역시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내내 눈치만 보고 있지만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성과 소수자들의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보장,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점점 진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수와 사유를 따져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붙일 우리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상징 물품으로 핫팩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이상 임신중지를 한 여성이 혼자 아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지 수술이나 약물 복용이라는 처치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고려하는 사후 상담과 지원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

아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얼굴로, 달라진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_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여성의 삶과 건강,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년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뉴스속보를 보며 감격했던 순간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동안 이 당연한 결정이 없어서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이 당연한 결정을 얻기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년전 4월 11일 낙태죄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와 정부는 대안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필요한 법안을 ‘지체없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오늘 의료

인의 입장에서 개념정리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태(혹은 인공유산)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그것도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0 퍼센트 완벽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별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은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지 말지는 그 당사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폐암을 1기, 2기, 3기, 기수에 따라 어떻게 치료할지 법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개별사정을 가진 환자와 표준치료법 알고 있는 의사가 상의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중지도 몇주는 되고 몇주는 안되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와 담당의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미페프리스톤이 국내에 도입되어야 하고 미소프로

스톨은 임신중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험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WHO에서 필수약품으로 지정된 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국가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관심이 없고 무책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의료인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여성에게 처방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의료서비스(상담, 수술, 시술, 약처방)은 공식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피임도 보험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월경하고, 가끔 임신하지만 자연유산되기도 하고 인공유산하기도 하고 또 가끔 출산하는 것은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언제 임신하고 언제 출산할지 여성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은 그 결정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 또한 마땅히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성의 임신 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_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일의 공간에서 재생산권 보장하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정책에 맞춰지고 출산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재생산권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다고 만들어진 여성노동정책의 대부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바뀌고 있는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은 난임 부부 지원,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유급 검진휴가 확대, 남성의 출산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수년간 싸워서 지켜왔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고 대신 임신기 검진휴가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성의 재생산이 임신과 출산으로만 맞춰져 있기에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월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의 권리와 맞바꿀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보장하겠지만 임신기 해로 발생한 태아에 대한 건강권은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주의료원 수술실 간호사들의 집단 유산은 산재로 인정받아도 장애로 가진 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의료원 수술실에서 엄마가 겪은 산재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재 승인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월 29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월경, 월경불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방광염 유발과 각종 여성 질환의 발생들은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을 원해도 산업재해로 인해 불임이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선택에 의해 임신을 중지하거나, 일 때문에 월경을 중지해야하거나, 화장실에 못가서 방광염이 생기거나,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식과 관련된 변화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야 할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넘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가로 막는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재생산 권리를 위해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일터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_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우리 공동대표)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고, 낙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온 성교육은 달라졌을까요? 여성의 몸을 ‘임신가능성’으로만 여기던 사회의 상상력은 확장되고 있을까요? 청소년을 순결하고 무지한 존재로만 바라보던 성적 통념은 부수어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낙태죄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각자의 일상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바라보며, 낙태죄 폐지 이후의 변화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N번방의 피해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의 압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청소년의 임신중절은 여전히 부모 동의를 필수로 합니다. 사실상 청소년에게 임신중절이 금지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이 아닌 친권자에게 있는 상황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터부시되는 사회

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문란한 일로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겪는 위험은 청소년이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소수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섹스는 더욱 위험해지고 은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콘돔’이 19금 검색어인 사회에서 청소년의 피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콘돔 등 안전한 섹스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나, 고액의 임신중절 비용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 및 출산을 할 권리도, 임신중절을 결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2015년,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여자가 더치페이를 하지 않아서 일 수 있다” 등의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채로 발표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매뉴얼로 인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성교육 표준안에는 피임, 임신 및 출산, 임신 중절 등 청소년의 재생산권 전

반에 대한 논의도 부재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젠더 폭력 사안이 범람함에도, 제대로 된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티는 지난 2월, <힐난도, 수치도, 자랑도 아닌 콘돔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간 성 담론이 비청소년 남성 중심의 포르노적 통념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여성과 쿼어, 청소년이 각자의 욕망과 감각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여성과 청소년의 몸이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임신중절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권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기억하며, 위티 역시 싸워나가겠습니다.

발언_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국적·인종·종교·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을 맞이하며 제반 법안 개정과 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하며 국내 이주여성과 난민여성들의 취약한 여성인권 상황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이주민 체류자가 2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주창한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15세이상 이주여성 체류자수가 601,200명으로 91.7%가 아시아계 여성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순으로 많다. 노동유형으로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으로는 20-40대 여성이 다수이다. 체류 목적으로는 혼인, 노동, 공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여성 중 특히 제도밖 미등록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지위의 난민여성들이 여성인권 보호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은 이중삼중의 열악한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현장과 주거환경, 사업장 내 성폭력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남성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겪는 가장 큰 난관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건강은 물론 더욱 무거워진 부양 책임으로 가난으로부터 더욱더 벗어나기 힘든 굴레에 빠진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임신출산을 겪으며 본인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 여성들이 체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군기지 성매매 피해여성,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임신 후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주변에 상담이나 조언을 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임신중단을 원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매년 150-200명의 미등록이주여성들이 희망의친구들을 통해 분만과 산전산후검사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난민여성의 경우 대다수 가족단위로 본국을 떠나 난민으로 입국하는데 종교적, 가부장제 문화권으로 재생산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 불안정

한 체류상황,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상태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다. 3년 전 무슬림 문화권 난민여성은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였고 자신의 건강과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가족의 반대로 인해 결국 출산을 하였다. 대가족 안에서 자녀 양육과 가족부양, 경제적 궁핍, 허약해진 이 난민여성이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는 이주여성과 난민여성들에게 단순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넘어 이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와 여성인권보호의 안전장치이다. 현재 이주여성들은 불평등한 의료접근권과 노동권, 모성보호에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누구나 국적, 인종, 종교,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받고 건강권을 보호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나아가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누구나 자국어 여성건강정보

제공 받아야 한다. 성상담 및 성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여성은 안전한 피임 방법 및 임신증지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

발언_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성과 재생산권리를 되찾는 싸움을 중단 없이 진행하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2009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여성들과 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으로 발달장애여성들과 성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았을 때, 시설은 절대로 이런 내용은 안된다, 차마 펼쳐보기도 낮부끄러운 책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여자도 성에 대해 자극 받으면 안되는 사람을 시설 측에서 구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수 없다 였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는 그곳에서는 강제불임수술, 사생활 통제와 같은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 입을 수 없고(38.3%), 목욕을 다른 사람과 해야 하는(55.2%)”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실천은 문제 행동이 되고 자위, 연애 금지라는 규율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성폭력은 외부에 쉽사리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설 성폭력 사건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장애와 질병을 낙태 허용 사유로 뚝으로써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을 위계를 두고 차별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있습니다. 의학적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민으로서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명권은 위협받습니다. 낙태죄로 억압해왔던 출산의 정상성과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통제하는 출산의 비정상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해 왔습니다.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으로 국가는 장애인을 감금하였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해 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인 권리 보장이란 책무는 자연스럽게 은폐되었습니다. 국가는 이 공간에서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재생산 경험, 강제 불임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책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락된 장소에 몸을 놓여야 하고, 원하지 않는데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월경에 대한 원리와 정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어떤 약으로 월경이 중단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위는 주로 장애남성에게 이루어지지만 성적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탈적이고 규정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여성은 자위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금기시 됩니다.

몸에 붙여진 이름표는 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표식, 언제나 정해진 길로 시설 종사자의 뒤를 따라가야 했던 방향, 외출 한번 하던 그날에도 통제되었던 시설화된 삶과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몸에 대한 권리와 존엄이 빼앗긴 그 자리에 성과 재생산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폐쇄된 한정된 관계와 공간, 공동생활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 못 받고, 경험한 바가 없는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한결같이 ‘발달장애’

로 인한 ‘어떤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몸을 훈육해 왔습니다. 치료와 지원이 내 몸과 욕망을 탐구하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기 보다 통제하는 것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별의 당사자이며 목격자인 장애인여성들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을 말하고 재생산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사회의 불인정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실천 속에서 동료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세계를 알리고 성적 권리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포착하지 못한 이들의 욕망과 움직임들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이끌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 어떤 성교육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 또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 나서는 것 등 수많은 활동을 장애인여성의 경험과 속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내 재생산권 침해 역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여성공감은 탈시설 지원과 성교육 현장에서 시설 거주인의 경험을 나누며 배울 것입니다. 프라이버스와 성적 즐

거움을 말하는 성교육을 통해서 시설 거주인이 자신의 경험을 발언하기 시작했을때 거대한 억압의 역사가 드러날 것 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상상력은 다른 소수자들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 재판 싸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 허락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공간과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원과 지원을 권리로 요구하고, 성적 폭력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역동적인 여정을 스스로 시작하는데 참여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여성의 욕구와 경험 속에서 재생산 권리 전반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국회와 정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 책부터 보라고 던져줘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재생산권리를 찾는 싸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퍼포먼스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을 위해 필요한 것은?



2020년 5월 4일 성명/논평

“포기하지 않고 싸운 10년!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새 역사를 쓰다!”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유산하고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제주의료원은 10년이 넘도록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공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과로에 시달리며 유해한 약품을 다루다가 본인과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것에 대해, 부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정부 역시 외면해왔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이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마땅한 책임이 짊어졌다. 우리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굳건히 싸워온 이들의 용기에 감사한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건강과 재생산권리를 해치는 비극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고통을 딛고 싸운 이들의 용기 덕분에 여성의 노동권 및 건강권, 나아가 재생산권리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렸다.

지난 수년간 쟁점이 되었던 ‘모(母)와 태아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님”이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소했다. 이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일맥상통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 역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며 ‘모(母)와 태아 관계’의 특수함을 언급했다. 또한 임신(유지/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에 대해 여성에게 처벌로써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모성’은 의무와 희생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다. 그리고 그 권리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여성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억압적인 처벌이나 시혜적인 보호가 아니라, 여성이 건강하게 노동하며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국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은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여성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모와 가족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산재보험제도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합의로써 의미가 크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는 10년의 세월 동안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도, 여성들의 재생산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도,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던 입법부와 행정부의 책임 방기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노동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0년 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을 딛고 싸웠던 이들이 일구어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2020년 5월 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6월 1일 성명/논평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 무급휴직·실업·신규채용감소 등으로 물류창고 일용직 알바 등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노인·장애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성·재생산권 침해

여성들의 경우 가족 돌봄의 책임과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의 곤란함에 처해있다. 얼마 전 전국의 3백여 명 여성들에게 판매되다가 적발된 가짜 ‘낙태약’(유산유도제) 소식은 그간 우리 사회가 미뤄둔 문제들이 위기 시기 더욱 취약한 이들의 건강과 존엄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여성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계속하여 침해되었고, 코로나19로 임신중지 접근권이 더욱 제약되자 가짜 ‘낙태약’(유산유도제)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

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이제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을 차별한다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낙태죄’의 실효성 없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인이 된바, 임신유지/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의 권리에 대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20대 국회는 결국 회피하였다. 이제 21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입법개정 시한이 반년 남짓 남았다. 우리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300명 의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한다. 지체없이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안 마련에 나서라!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역할을 다하라!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건강과 존엄이 더욱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마땅한 역할을 명령하며, 2020년을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0. 6.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7월 10일 의견서

제목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입법과 정책 방향에 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입장

수신 : 보건복지부

일시 : 2020년 7월 10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입법과 정책 방향에 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입장

2020.07.1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에 따른 법·정책의 기본 원칙

첫째,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이 결정은 지난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제시된 견해이니만큼, 앞으로도 임신과 임신중지, 이에 연관된 제반의 권리는 국가의 인구정책 등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거나 강제되어서는 안 될 것.

둘째, 처벌은 실효성이 없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보장 체계가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처벌이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신중지의 처벌

로 인해 1)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2)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으며, 3) 음성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수술비를 내고 불법적인 수술을 받거나 심지어 해외 원정까지 하게 된다는 점, 4) 임신중지 수술과정에서 의료 사고나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5) 수술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나 상담, 돌봄 등을 제공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 6) 불법 수술을 원하는 여성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고, 7) 끝내 시기를 놓쳐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 영아유기 내지 영아살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함. 따라서 위의 내용은 향후 개정 입법과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2. 개정 입법 방향과 법·정책 과제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사유로 타당성을 제한할 수 없음. 처벌은 두려움과 낙인을 강화하여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의 환경을 만들 뿐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95.3%의 응답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도 자신의 건강에 미칠 영향과 태아의 성장을 고려하여 여건이 된다면 누구나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함.
- 적절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고, 파트너와 폭력적이거나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회경제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개인일수록 임신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므로 후기 임신중지의 상황에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에 의한 상담과 안전한 의료적 조치임.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의 원칙]

- 임신 당사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한 임신중지의 경우 주수와 사유를 불문하

고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 조항도 없을 것

- 임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시술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력한 약사, 조산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 조항도 없을 것
- 임신중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의무제도나 강제 숙려기간을 전제로 두지 않을 것
- 임신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나 제3자의 동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기본 정책 방향]

- 보건의료인들이 임신중지 관련 최신의 의학 정보와 사전/사후 건강 관리, 정보 제공과 상담에 관한 가이드를 꾸준히 향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마련
- 아동/청소년, 이주민/난민, 장애인 등 정보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 제공, 의료 환경 개선
-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관련 보건의료 기관의 지역별 격차 개선
- 유급 유·사산 휴가에 임신중지 휴가 적용

○ 주수와 사유는 처벌이 아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 임신 주수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착상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이 때 임신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는지, 초음파를 통해 판단하는지, 신체적 징후를 통해 판단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이는 법의 명확성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특히 처벌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될 경우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을 가로막게 될 수 있는 방식임.
- 흔히 22주를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는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비용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의료적 조치가 취해질 때의 가능성일 뿐 그 자체를 태아가 자력으로 생존하거나 출생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임신 주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함. 초기 임신중지일수록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모든

방법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보험 적용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만을 하게 될 경우의 지원사항이나 고려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담과 이에 개입하는 의료 전문인의 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

- 주수에 따른 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할수록 입증 요건이 많아지고, 성폭력 이든 사회경제적 사유이든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여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를 늦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시기, 어떤 이유에서라도 처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임신중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시기에든지 임신중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성의 진술과 요청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여 의료적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 미페프리스톤은 이미 전 세계 67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사용되고 있고, 2005년에는 WHO가 필수약품으로 지정. 더 이상 여성들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약을 개별적으로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공식적인 의료 체계를 통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또한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사용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현재 위장관계 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미소프로스톨의 적응증을 확대하여 임신중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 최근 업데이트 된 프로토콜*에 따르면 마지막 월경 이후 70일(=10주, 기존 프로토콜은 63일=9주)까지 처방받은 약을 직접 복용하는 방식의 임신중지가 가능하며, 10주 이후에도 훈련받은 의료진의 관찰과 조치 하에서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약물적 방법을 통한 유산 유도가 가능함.
- 약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제는 현재 국가마다 다른데, 대체로 9주-10주 이내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아니라 훈련받은 의료 종사자라면 누구나 처방을 할 수 있음.

* <https://www.guttmacher.org/evidence-you-can-use/medication-abortion>

- 한국의 의료체계와 의료 환경에 맞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1) 누구나 빠른 시기에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2) 약에 대한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하며, 3) 가장 최신의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업데이트 된 교육과 가이드를 제공할 것, 4) 복용 후 우려되는 증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 **상담은 임신 당사자의 의무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과 내용의 가이드를 제공할 것**

- 임신중지에 따른 의료적,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판단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로 규정될 수 있으나 임신당사자의 의무로 부과되어서는 안 됨.
- 프랑스의 경우 상담과 숙려기간에 따른 의무조항이 오히려 임신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고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는 판단 하에, 2016년 첫 임신중지 요청 이후 이를 확정하기까지 의무사항으로 두었던 7일 간의 숙려기간을 제도를 폐지하였음. 2012년 WHO에서 발표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체계 가이드라인’에서도 “숙려 기간은 적절한 케어를 지연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인 서비스 접근을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숙려기간을 없애고 지체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 규정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약의 복용 방법과 유산이 진행되는 과정, 그에 따른 몸의 증상과 통증, 합병증, 약물 사용 후의 성관계나 기타 활동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을 할 때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판단이 포함된 내용을 삼갈 것,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것 등을 상담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철통제 등을 제공할 것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것, 성 매개 질병이나 HIV, 학대 등에 관한 사항들도

상담에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후 조치로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한 관리, 피임 관련 정보나 지원을 연계할 것을 명시.*

- 향후 상담체계는 소위 ‘임신 갈등 상황’ 차원에서가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가서 성교육에서부터 성관계, 성 관련 건강 관리, 피임,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개념으로 구축되어야 함. 무엇보다, 이러한 상담을 특정 종교 기관에 위탁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주체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만약 그로 인해 내담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을 강요하는 경우, 피임 실천이나 임신중지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모자보건법은 매우 제한적인 허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동의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배우자, 가족, 부모 등 제3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취약하게 하고 시급한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
- WHO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체계 가이드라인’에서 “지지, 정보 제공, 교육을 통해 부모의 개입을 독려해야 하지만 필수적인 것으로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기밀유지는 의료 윤리와 사생활 보장의 핵심 원칙”으로써 “부모나 다른 성인의 동행 없이 혼자 상담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다고 간주되는 청소년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기밀보장이 된 서비스와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자(한 명 이상의 전문의, 관련 위원회, 법정, 부모·후견인(보호자), 파트너·배우자 등)의 개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논평 24호(1999)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5호(2013), 일반논평 4호(2003)에서도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권리를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의학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278968/9789241550406-eng.pdf?ua=1>

- 당사자가 해당 의료행위와 자신이 결정 가능한 선택지, 그에 따른 의료적, 사회적 조건, 지원 사항 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원칙으로 법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이에 따라 당사자의 판단 능력과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의료인과 관련 상담 전문가는 당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 정부와 의료인, 상담자들은 환자의 연령, 장애, 언어 등에 따라 적절한 전달방식을 개발해야 함.
- 뉴질랜드, 캐나다, 스코틀랜드, 퀸즈랜드에서는 ‘Gillick competence’ 원칙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지성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1년에 부모 동의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우선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되 청소년 당사자가 기밀유지를 원할 시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후견인을 동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음. 캐나다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을 동반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정보와 상담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임신 당사자인 청소년이 동의하고 관련 상담이나 지원을 함께 받을 조건이 된다면 부모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조건의 의무사항으로 강제될 경우 부모의 의지에 의해 더욱 열악한 상태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이렇게 될 경우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노동만으로 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적절한 지원 기관이나 상담자,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인터넷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구하고, 비싼 비용을 요구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임.
- 의료인은 아동·청소년 환자를 대할 때 부모와의 대화를 독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성인과 동등하게 기밀유지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해야 함. 이와 같은 원칙들은 비단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들, 정보 접근성에서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

○ **피임과 임신중지를 필수 공공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보험을 적용할 것**

- 현재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한 34개국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재원,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험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등의 경우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피임과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은 비용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해 줌으로써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나 모성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함.
- 피임과 임신중지 또한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필수 공공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피임과 함께 임신 전 기간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

○ **의료진 교육과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

- 정부는 임신·출산 뿐 아니라 임신중지와 관련된 보건의료 전달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 인프라 등을 준비해야 함. 특히 현재 산부인과를 비롯한 관련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격차가 매우 크고, 분만실과 임신중지 케어 병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에는 분만실이 없는 병원도 많은 만큼 지역에 대한 지원도 전반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
- 의료진 교육의 경우 임신의 중지나 유지와 관련된 상담에서부터 환자 존중과 기밀 보호 등 의료진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와 원칙에 관한 교육, 임신중지 방법(약물/수술)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나 의료적 조치에 관한 사항,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한 사항, 위험 발생 시의 매뉴얼, 임신중지 후의 상담과 지원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 행위의 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됨**

- 현재 일부 국가에서 ‘신념에 따른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개념으로 의료진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계산부인과 학회와 세계의사회에서는“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의 거부권은 환자에 대한 의무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념에 따른 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두고 있음.

- 공립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사립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기관 자체가 아니라 의사 개인에게만 거부권이 주어지며, 의료인의 거부 시에 가까이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나 공립 의료기관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음
 - 의료진과 보건당국은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거부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빠르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해서 연계해 주어야 함
 - 응급상황,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을 둔다고 해도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음. 때문에 2018년 10월 UN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6호 (6조 생명권) 중 8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함. “당사국은 새로운 장벽을 도입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현존하는 장벽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장벽은 개인 의료 제공자의 양심적 거부 행위도 포함된다. 당사국은 모든 상황에서 기밀을 유지하여 여성과 여아에 대한 양질의 산전 의료조치 및 임신중지 후 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의사의 거부권 인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

2020년 8월 24일 기자회견

제목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8월 24일 11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온라인 중계 <https://youtu.be/nBrn5WhOyy8>)

내용 :

- 사회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발언
 -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HARE대표)
 - 김수정(변호사, 낙태죄 위헌 청구인 공동대리인단 단장)
 - 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처의사 협의회)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코드 : 기자회견 영상



발언_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주제가 ‘국회 형법 낙태죄 폐지 입법 완료 환영 기자회견’이었다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오늘 이 순간에도 불법화된 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조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차별과 통제’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법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67년 간 지속된 형법 낙태죄가 만 들어온 차별과 폭력의 시대를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법무부와 정부에 「형법」 제 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정책위의 권고는 한국여성단체

연합 환영 논평에서 밝혔듯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잘 담았다고 평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입법 목적의 실질적인 실현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권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결정의 핵심을 정확하게 포착한 정책위의 권고를 환영합니다.

정책위 권고 소식이 알려진 후 천주교에서 “낙태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폭력과 야만, 독재 시대에는 ‘차별과 통제’만이 무언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평화·정의의 시대입니다. 이제 ‘차별과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인정, 존중과 지지’를 통해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생명 보호는 여성을 통제하고 차별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위가 존중·구현해야 할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임신·임신중단·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정부 입법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위 권고를 지지합니다.

또한 ‘획일적으로 일정한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는 유념해야 할 문제인식에 대한 정책위 권고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여성의 몸은 사이보그가 아닙니다. 월경 28일 주기는 교과서의 얘기일 뿐 실제로 월경주기가 3개월, 6개월인 여성도 있습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단신도 있고 2M 넘는 장신도 있습니다. 월경주거나 초음파 사이즈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생명을 사이보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의 구분은 ‘처벌’ 기준이 아니라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법무부와 정부 입법 과정,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책위 권고의 금과옥조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 법무부와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조속히 형법 제27장(낙태의 죄) 폐지 개정안을 발의하라!

- 정부와 여당은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

을 적극 반영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국회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한 정부 입법이 나오도록 협력하고 조속히 확정하여 형법 낙태죄가 만들어온 차별과 폭력의 시대를 끝장내라!

발언_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HARE대표)

먼저 지난 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1년 4개월여 만에 형법 제27장의 전면 삭제에 대한 공식 권고가 발표되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 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임신중지를 합법화

해 왔고, 캐나다의 경우 1988년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없이 공공의료 차원에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임신중지율은 연간 11% 정도로 한국의 추정 통계치인 15% 보다도 낮으며 대부분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21주 이후의 임신중지율은 0.7%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 상담 의무제, 의무 숙려제도 등 각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들은 과도한 입증 과정과 절차를 요구하여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데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성들을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이 이미 지난 4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통계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합법화 상태에서 여러 규제를 두었던 국가들도 지금은 전면 비범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 40년을 거처온 다른 국가들의 과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시기에든지 임신중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성의 진술과 요청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여 의료적, 사회적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와 함께 임신중지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제대로 보장하고, 보험을 적용하고, 성교육,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 제반의 관련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폭력이나 차별, 낙인 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의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형법 제27장의 삭제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의 인구 관리 목적에 따라 시행되어 온 모자보건법의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통해 임신중지 처벌을 명시하는 한편 모자보건법 14조를 통해서도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명분은 임신중지의 제한적 허용 사유였지만, 이는

사실상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의 출산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 온 것입니다.

차별과 허용 사유만 있고 권리에 대한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비장애인 여성, 청소년 여성 등은 차별이 두려워 위험한 조건에 내몰렸고 장애인 여성은 오히려 “정말 출산을 할 거냐”는 압박 속에 때로는 강제 불임이나 유산 시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선별적인 차별-허용 구도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더 많은 평등과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입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시작으로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전 영역에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들도 과거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권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답변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발언_ 김수정
(변호사, 낙태죄 워헌 청구인
공동대리인단 단장)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형사처벌은 태아의 생명보호는커녕 임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다면서, 형사처벌이 아닌 임부의 권리보장,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임신의 주수별로 낙태의 허용과 조건부 허용 불허용으로 차별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비범죄화가 법 개정 방향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 위와 같은 현재의 결정취지에도 완전히 부합합니다.

현재가 22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나, 나이가 어리거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로, 또는 장애가 있어 초기에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적기에 임신중지를 하지 못한 여성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한 여성들이 형사처벌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현재결정의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임신중지의 권리는 개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나아가 차별과 폭력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대책 마련에서 ‘모자보건법의 전면개정과 교육의 실시, 사회서비스의 확충,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번 권고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법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는 임부의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안전하게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_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처의사 협의회)

죄가 아닌 재생산 건강권리로서의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 제 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1년 4개월이 지났다. 입법시한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입법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이 시점에서, 양평위 권고안이 진일보한 출발점이 되어 궁극적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담은 대체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넘어,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사람과 임신중지를 결정하려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하여 임신중지를 더욱 음성화한다. 그 부작용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임신중지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네 배 이상 높으며, 이로 인한 모성 사망률도 세 배 이상 높다.

또한 임신중지를 불법/합법으로 구분

짓고 특정 조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법제도는 전인적인 의료적 결정을 제한한다. 기존의 모자보건법에서 열거하는 예외사례들은 과학적 입증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인권을 침해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조각사유들을 새로이 수정한다고 해도 문제다. 의료현장에서 당사자와 의료진은 당사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판단과 그에 따른 의료행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특정 시기 이전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하거나, 단편적인 예외 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이러한 의료 현실에 맞지 않다.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 안에서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당사자와 의료진이 환자중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를 실제 있는 권리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임신중지 권리는 허울이 아니라 실제 있는 권리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비범죄화를 넘어, 실질적으로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를 안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임신중지 권리를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으로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공급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먼저, 안전한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보편적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임신 제 1삼분기 초기에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유산유도약 미페프리스톤을 도입하여 의사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임신중지와 피임에 대한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중지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낙태’가 ‘죄’였기 때문에, 진료실에 들어와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의사는 "당신이 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거나,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이거나, 혈족간에 임신이 된 경우이거나,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가 적시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하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질환과 부작용, 모성사망 등의 위험

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더욱이 수련과정에서 정식교육도 받기 어려워 의료진은 위축되고 방어적인 진료와 처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

사자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의사가 죄책감이 아닌 안전함을 느끼고 진정한 건강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넘어 임신중지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1차 권고문〉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성교육 등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는 대책 마련이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이다. 이는 임신중지 여성과 그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해온 기존의 '낙태죄'가 헌법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이 훨씬 더 넘은 늑장대응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크지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이번 권고안을 환영한다. '모낙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스스로 삶을 존엄하게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특히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온전하게 법·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을 처벌한다고 태아의 생명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낙태죄'의 실효성 없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인이 된바, 임

임신유지/중지 및 출산과 양육 전반의 권리에 대한 환경 조성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 과정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고 법·제도의 모순을 폭로해 온 여성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편 권고안에서도 밝혔듯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여성의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그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여성의 재생산 전반의 과정을 임신과 출산에 국한하여 기능적으로 보호하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임신·출산 의무를 다한 자를 보호하겠다는 편협한 관점이 아닌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피임과 포괄적 성교육, 임신유지 및 중지,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보장, 건강권에 대한 접근권 확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를 확정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형법 제정 이후 66년간 지속되었던 ‘낙태죄’라는 시대착오와 결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없이 나아가기 위해 ‘모낙폐’는 계속하여 행동할 것이다.

2020년 8월 21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9월 23일 성명/논평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별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차별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중요한 의미는 “차별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임신중지를 합법화 하면서도 주수에 따른 제한 등 여러 법적 제약과 차별 조항을 남겨 두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에도 차별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주수에 따른 제약이나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들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는 이들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최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4조가 함께 존속해 왔던 지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평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역사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권리다.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책임을 국가가 감당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모두를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지난 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는 “66년만의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결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역사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임신중지의 경험과 그에 얽힌 사회적 불평등, 폭력, 차별과 낙인의 상황들이 그 66년의 역사에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66년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23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서서 투쟁하며, 세계 각국에서 지지와 연대의 힘을 모은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역사를 되돌릴 것인가. 후퇴가 아니라 진전을 택하라.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처벌과 허용의 구도로 다시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으로 나아가라.

이와 같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9월 28일 기자회견

제목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온라인 중계 <https://youtu.be/98WTBqzIDas>)



내용 :

- 사회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발언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대표)
 -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김하나(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 섬돌향린교회 전도사)
 - 진은선(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권수정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 성미선(녹색당 운영위원장)
 - 장혜경(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
- 피켓 퍼포먼스 : 청. 와. 대. 는. 우. 리. 의. 목. 소. 리. 를. 들. 어. 라.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상단 우측 QR 코드 : 기자회견 영상

대표발언_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대표)**

10년 전인 2010년에, 우리는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이 그저 사익일 뿐이라며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해 가을, 한 명의 여성이 처벌을 피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시술을 받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다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여기 광화문 광장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생명권과 결정권을 손쉽게 태아 대 여성의 문제로 대립시키는 국가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오늘처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었던 3년 전 9월 28일에는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빨간 끈을 들고 서로의 경험을 연결했습니다.

70년대 가족계획 정책으로 소위 배꼽수술이라 불리던 복강경 피임 시술을 받고 골반염에 시달려야 했던 경험, 임신과 임신중지를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당했던 경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임신중지를 요구받았던 경험, 임신중지 시술을 받기 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은 국가가 인구관리 목적을 위해 형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의 우생학적이고 임의적인 허용사유를 공존시켜 온 지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낙태죄 폐지 요구는 국가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낳을 만한 사정과 그렇지 못한 사정을 구분하고, 손쉽게 여성들에게 처벌로서 그 책임을 전가해 온 역사를 이제 끝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장애나 질병, 인종, 국적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받고, 직장에서는 계약해지나 퇴사

를 요구받는 현실, 불안정한 일터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여전히 독박육아와 돌봄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실질적인 성교육은 여전히 거리가 멀고 남성들이 스텔싱, 피임 거부,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성관계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이 사회에 대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산부인과를 찾아 멀리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의료 환경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 인터넷에서 출처도 모르는 유산유도제를 구입해서 복용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지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처벌이나 허용 사유를 검토할 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이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성들에게는 출산만큼 임신중지도 자신과 아이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처벌이 두려워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여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이 달라진다면 임신의 유지를 결정하게 될 여성들은 많습니다.

낙인과 처벌은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 뿐이지만, 공공의료 체계를 통해 어디서든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여성들은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평등한 삶의 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 불평등한 결과를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은 형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라는 낡은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6년의 여성 처벌의 역사, 우리의 삶과 생명을 선별해 온 역사,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대신하여 이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삶도 처벌이 가능한 조건 속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각계발언_ 박은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호주제 폐지운동을 함께한 여성100인의 낙태죄 폐지 촉구 선언> 대독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호주제를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라!!

2020. 9. 28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발언_ 김하나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
섬돌향린교회 전도사)**

오늘도 여성의 안녕을 묻는 것이 두려운 하루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의 회원이며 섬돌향린교회 전도사 김하나입니다.

작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소식을 듣고, 이 불의한 사회 구조에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이끌어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몸에 관한 일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을 듣고 살았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에 이상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조심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낙태를 했어야 하는 친구들과 함께 병원 있으며 왜 우리는 죄 지은 사람처럼 병원을 찾아다녀야하고 그러는 동안 임신 주차수가 지나고 있는것을 두려워해

야하는지 온갖 수치심을 뚫고 자기 삶을 지켜낸 건 여성인데, 몸과 마음의 부담은 왜 오롯이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싸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생존이, 살아내는 것이 투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때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에 함께 할 제안을 받았고 함께 공부하며 제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와 임신중절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선언되었으니 더 나은 세상이 오겠다고 기대했지만, 정부는 무늬만 '낙태죄 폐지'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제도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여성의 건강과 존엄은 누군가의 합의나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건강과 존엄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역할은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국민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정작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조력하는 노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인권이 보장되고, 각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맘의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과 신념을 이유로 여성의 생명과 존엄에 위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여성은 더 안전한 임신중절의 방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생명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 가부장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생명존중과 사랑이 종교의 역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우리들의 건강과 존엄성이 오롯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연대합니다. 함께합니다. 투쟁!

발언_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진은선입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역행하는 정부안을 철폐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국가는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도 조급한 이 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14주까지 허용하는 안을 만든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성의 결정을 범죄로 만드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 14주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국가가 제시하는 최선입니까? 이것은 모든 여

성들이 실현가능한 전제입니까?

성적 불평등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정보의 불평등으로 임신사실을 모르거나 몸을 통제하는 권한 자체가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받는 위치에 있을수록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국가가 임신중지를 주수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부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장애, 질병, 나이,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장애여성공감은 더불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번째, 국가는 장애와 질병을 이유로 생명을 선별하고, 시설에 가두는 인권 침해의 역사를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유전적, 우생학적 질환을 낙태의 허용사유를 두고

시설에 수용된 많은 이들이 강제불임시술과 낙태수술을 강요해왔습니다. 존엄하지 않은 생명은 누구입니까? 국가정책에 따라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자보건법을 폐기하고 차별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설사회를 유지하는 구조에 분노하며, 가뉘야 할 것은 낙태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국가는 성과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서 성과재생산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다양한 차별에 놓인 소수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사치로 치부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무시되지 않아야 하며, 피임과 임신, 출산 과정에서 당사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코로나19 시대의 성과 재생산 권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고 이동이 제한될수록 시설화된 사람들의 삶은 급격한 위기를 맞습니다. 재난의 시기 일수록 모두가 성과

재생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차별과 혐오에 강력하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이며,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누릴 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그 책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무지함으로 역사를 후퇴하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는 이를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완전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만들어냈으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 것을,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성과 소수자의 몸에서 벌어진 전쟁을 끝낼 것을 결의합니다. 낙태죄 완전폐지하고 성과재생산권리 보장법 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발언_ 권수정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을 기본값으로 설계된 사회입니다. 남성이 기본값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18만 조합원 중에 여성은 5%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를 만들고, 철강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조업 생산현장은 여성을 취업시키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까지 3% 정도이다가 5%까지 늘어난 이유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여성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금속노조의 투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되면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의 몸을 기본값으로 설계된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 타던 자동차의 키를 여성이 받아서 운전할 경우 시트를 조정하고, 밀러를 조정해서 내 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여성이 배를 만들고, 철강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취업해서 라인에 들어가 일을 하려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몸을 기본값으로 설계된 라인에 여성의 몸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임

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90년대말에 창원의 한국산연이라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부라인과 수유라인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임신부라인은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 라인이었고, 수유라인은 오전오후 두 차례씩 아이들에게 수유시간을 주며 운영했던 라인입니다. 수유라인이 가능하려면 사내탁아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이들 젖먹이겠다고 한두시간 라인을 비우며 집에 왔다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모범적인 라인 운영을 했던 한국산연은 해마다 흑자를 내는 회사였음에도 일본 자본이 철수협박을 반복하며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은 소수의 조합원만 남아있고 더 이상 생산현장에 라인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부라인이나 수유라인도 옛말이 되었죠. 2020년 대한민국의 생산현장에 임신부라인이나 수유라인이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될까요? 단 한 공장도 없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여성노동자가 어떻게 라인에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도 잘리지 않고 일할수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배를 만들고 철강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최

소한 여성이 50%의 비율로 취업을 하고, 여성의 몸에 맞게 설계된 라인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고도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국가는 고민해야 합니다.

근대는 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은 인간들의 공동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공공의 권력이 제한하고 처벌하는 전근대적 봉건시대의 사고로 국가를 운영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취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발언_ 성미선 **(녹색당 운영위원장)**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미선입니다.

지난 몇 년 간 거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을

함께 해 온 우리 모두와 연대하신 분들과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는 66년만에 여성의 존엄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절 관련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마스크를 낀 우리의 모습 말고 달라진 것이 없는 답답한 현실 앞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절 관련법, 정비에 앞서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하여 윤리적 기준, 의료기반 마련, 시민의식 변화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임신중절에 대한 주수제한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강하게 정치권의 책임을 묻습니다.

정치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임을 잊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행위는 엄연한 권한 밖의 일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 보장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입니다. 전 세계의 여성들이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 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완전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낙태죄 완전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선행요건은 원하지 않는 임신입니다. 시급히 정확한 성교육과 피임법, 성평등 제도개선등 사회적 합의와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덴마크에서 1971년에 출간돼, 2017년 한국에 소개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라는 그림책이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부 낳아줄 어린이 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유

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바로 책을 회수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잘못된 논리를 반박하지도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채 당장 책을 회수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18년 발표한 국제 성교육 지침에서 '세계 각국의 연구는 성교육이 성행동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오히려 시작 시기를 늦추거나 성적 행동에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게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성교육은 시기가 빠를수록 좋고 정확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성교육이 '강한 자아'를 기르는 중요한 교육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아는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능력,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자아를 만듭니다.

독일 교육은 성교육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제1원칙이 윤리적 판단금지의 원칙이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런 욕망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계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또한 잊지 않고 강한 책임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과 관련한 자기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 성희롱은 반사회적 범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과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강한 자아를 기르고 죄의식을 내면화하지 않는 인간으로 기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치와 교육이 함께 변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을 제안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벌였던 운동의 과정, 마침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녹색당도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현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_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작년 현재의 낙태죄 판

결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낙태죄를 손보겠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는 낙태법 개정은 낙태죄의 완전 폐지가 아니다. 임신주기에 따라 합법적인 낙태와 불법적인 낙태를 갈라, 낙태죄를 약간 완화된 형태로 존속시키려고 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세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무시한 채,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할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어야 할 국가 책임은 방기한 채, 낙태한 여성에 대해 단죄와 처벌을 여전히 유지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책임을 방기한 채 여성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전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현재 낙태에 대한 전세계적 추세는 낙태를 처벌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낙태를 처벌한다고 낙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은 '낙태의 완전한 비범죄화' 기조 아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권 보장, 무상의 공공의료로 임신중지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지만, 낙태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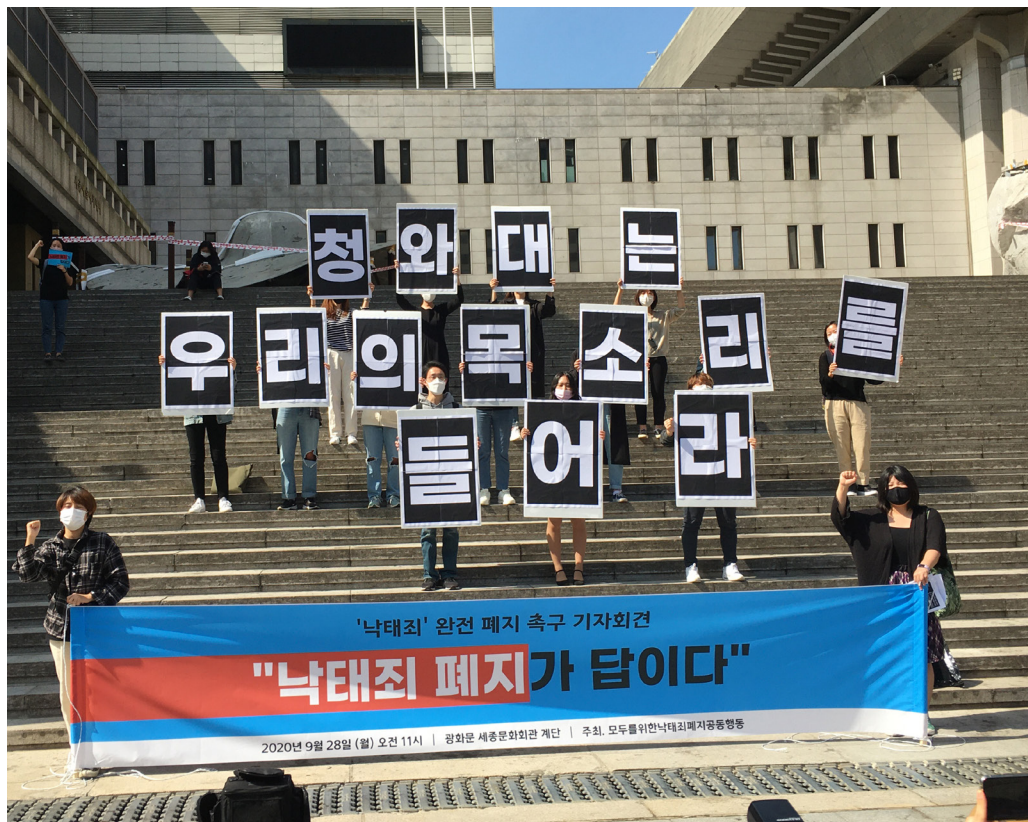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부의 움직임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염원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최근 미투운동이 촉발되고 N번방 사태와 같은 성착취에 대한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성폭력, 성착취를 끝내야 한다는 외침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문제인 것처럼, 여성의 출산권, 임신중지권을 국가가 법으로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에 몸에 대한 국가폭력에 다름아니다. 완화된 형태의 낙태죄의 존치는 단순히 임신중지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의 안전한 임신권, 출산권, 임신중지권의 보장은 노동현장에서의 여성차별을 종식시키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서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없애는 운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연결된다. 가부장적이고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보전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페미니즘 대통

령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지 말라. 정부는 낙태죄 전면 폐지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한다. 우리 변혁

당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사진) 피켓 퍼포먼스 : 청.와.대.는.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

2020년 9월 28일 온라인액션

제목 :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일시 : 2020년 9월 28일

장소 :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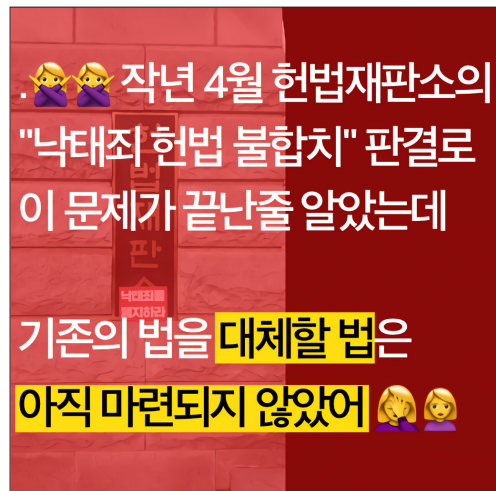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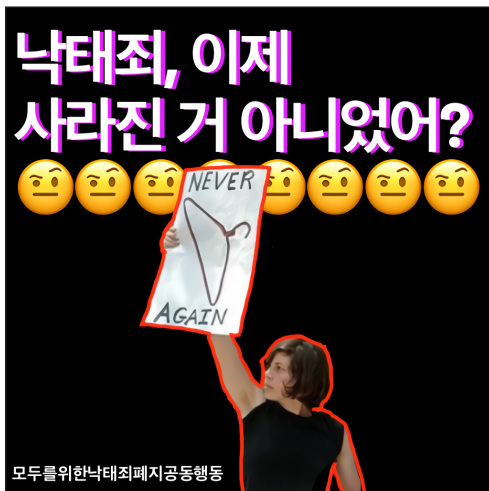
내용 :

○ 해시태그 :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

○ 영상 :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우리는 이렇게 싸워왔다

<https://youtu.be/f6aQZehxo3g> (QR코드 참고)

우측 QR 코드 : 영상




데드라인은 2020-12-31
 이제서야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어

👎 그런데 👎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 임신 14주 내의 👎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14주 👎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최최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소리야 👎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면
 여전히 👏 국가가 👏
 임신중지는 👏 범죄라고 👏
 보겠단 뜻이야 🔥

심지어 👎 14주 👎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 짧은 시간 ✨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2016년부터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낙태를 상징하는 옷걸이를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섰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의 성과야

'낙태죄' 존치 시도는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 **그간의 시계를 되돌리는** 🕒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 **☞ 위험한 역주행이야 ☞**

2020년 8월 24일 오전 11시 | 여성미래센터 소통동
 |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세계 곳곳에는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이 있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9월 28일**

한국에서도 다시 힘을 모으려 해



**'낙태죄' 완전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2020.09.28 일요일

**점심시간(12~13시)
저녁시간 (18~19시)**

1. 청와대 계정 태그하기
2. 역주행 규탄과 낙태죄 폐지를
담아 게시물 올리기
3. 카드뉴스 마지막 이미지, 또는
마음을 전하는 이미지와 함께 올리기

**'낙태죄' 완전 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0928**

09.28(월) 점심시간(12시), 퇴근시간(오후6시)

@청와대태그, SNS    에 게시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



**'낙태죄' 완전 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 0928**

09.28(월) 점심시간(12시), 퇴근시간(오후6시)

@청와대태그, SNS    에 게시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



2020년 10월 8일 기자회견

제목 :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일시 : 2020년 10월 8일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온라인 중계 <https://youtu.be/Lw8JR4vJMtQ>)

내용 :

- 사회 : 앎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명 발표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와 퍼포먼스 등에서 사용했던 선전물 위에 쓰러지는 '다잉 퍼포먼스' 진행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 코드 : 기자회견 영상





(사진) 다잉 퍼포먼스 :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차별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다. 270조의2를 신설하여 허용 요건을 제시하였다고는 하나, 그에 앞서 차별이 전제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은 온전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요건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의 권리가 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은 불필요한 입증을 요하여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이다.

정부는 형법 상의 낙태죄를 유지시키고 주수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의 절차와 같은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차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형법 270조의2 신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으로, 여성의 성과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겠다는 것이다.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지를 조장하고, 성

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 시켜온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허락받을만한 사유의 입증을 위해 여성들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요건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허용 사유의 추가가 아니라,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허용 주수의 구분은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시기의 구분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임신주수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착상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임신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하여 ‘유추’되는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14주, 24주 등의 주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하다. 주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 주수에 따른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요건으로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특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을 통해 증명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24시간을 대기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을 돌리기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간 같은 제도를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어 왔고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출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프랑스에서도 2015년에 숙려기간 규정을 폐지

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의무 숙려기간 없이 상담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규제로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에서도 거듭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담의 의무화가 아니라 내용과 기준이 중요하다.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 상담가 개인의 종교적 입장을 강요하는 태도, 임신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상담 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 행위 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에 더해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서야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의료인이 거부할 경우 다시 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현재 산부인과의 지역별 격차도 매우 큰 상태에서 여성들은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상담기관과 의료 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약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의료인의 거부권을 인정한 곳에서는 임신중지를 시행하는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재정난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행해 왔다. 이에 2018년 10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6호를 통해 “의료제공자의 거부 행위를 포함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라”고 권고하였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행위 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 세워질 것을 우려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보험 적용,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정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이다.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이상과 같이 정부 입법예고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돕겠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와 절차로 규제하고 억제시키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국가에게 허락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다. 정부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위기임신에 대한 예방 사업이 아닌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더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2020년 10월 7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10월 13일 성명/논평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지난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를 전부 폐지하고, ▶임신중지의 처벌을 전제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신설을 통해 임신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안은 그동안 국가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개정입법예고안을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처벌과 허용' 프레임을 넘어서, 재생산건강과 의료접근권 등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을 확대하고(제2조),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제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제7조의2)하여 △통합적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제12조)하도록 있도록 하였다. 인공임신 중단에 따른 의료비 지원(제14조의3)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실질적인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안에 따르면 여성은 더이상 국가와 의사, 배우자나 자신의 파트너에게

특정 사유를 입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정한 선택을 강요받아서 안 되는 주체이다(제14조의2).

이와 같은 원칙 하에 권인숙 의원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제의 수단이 아닌 여성의 권리로 규정하고, 의사에게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게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게 하고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숙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의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임신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안이다. 또한, 권인숙 의원안은 의사가 임신부의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되, 필요시 임신부가 정보의 이해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당사자가 타인에 의해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국회는 관련법 개정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책임을 미루어 왔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정부 개정입법예고안은 여성을 차별하는 형법 조항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임신중지를 둘러싼 퇴행적 논쟁을 반복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를 외치며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접근권 보장, 포괄적 성교육 실시,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을 촉구해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차별에서 권리 보장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권인숙 의원안을 환영한다.

권인숙 의원안의 발의는 이제라도 국회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21대 국회는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국가의 책무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낙태죄폐지_새로운세계 #낙태죄_완전폐지 #차별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가답이다

2020.10.1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 의전화

2020년 10월 13일 온라인액션

제목 : [긴급액션]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지금 참여해야 하는 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보내기

일시 : 2020년 10월 13일~10월 20일(모자보건법), ~11월 16일(형법)

내용 :

-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정부입법예고안>에 개인/단체가 반대 의견 개진하여 '낙태죄' 전면폐지 공동행동에 동참하도록 유도 및 방법 안내


2020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지금 참여해야 하는 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보내기**
opinion.lawmaking.go.kr

<우편 제출 방법>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1) 법무부[형법]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2)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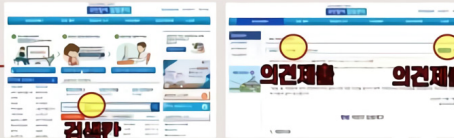
2020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지금 참여해야 하는 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보내기**
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들어가서

- 1) 검색 칸에서 [형법] 또는 [모자보건법] 검색
- 2) 관련 글 클릭
- 3) **의견제출** 버튼 클릭
- 4)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공인인증서 등 가능)
- 5) 각 항목별 의견 남기기(직접 쓰기, 파일첨부 모두 가능)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07


2020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지금 참여해야 하는 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보내기**
opinion.lawmaking.go.kr

<이메일 제출 방법>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를 참고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1) 법무부[형법] : lhm1013@korea.kr
2) 보건복지부[모자보건법] : lwj1017@korea.kr

*모든 항목에 의견을 입력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합니다.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03


2020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지금 참여해야 하는 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 보내기**
opinion.lawmaking.go.kr

'처벌과 허락'이라는 프레임으로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은 **국화로 보내기 전 개인·단체의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자보건법은 10/20(화)까지, 형법은 11/16(월)까지!

어떻게?
온라인(직접작성, 파일첨부), 이메일, 우편, 팩스 모두 가능!
*예시용 의견서(한글파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01

2020년 10월 14일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0월 14일 11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온라인 중계 <https://youtu.be/myRBJds28d0>)

내용 :

- 사회 :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발언(대독 및 현장 자유발언)
- 종교계에 보내는 메시지
-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 후속 활동 소개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 코드 : 기자회견 영상



기획 취지 및 경과보고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과 지지 선언>을 모았습니다. 약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15명의 천주교/개신교 여성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모아진 지지 선언과 의견은 기자회견 직후 <의견서>의 형태로 정부 각 부처와 종교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진행 경과

- 2020.9.28.~2020.10.11. 온라인 구글폼 통한 의견 및 지지서명(세례명) 취합

- 2020. 10. 14 법무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각 국회의원실, 천주교 한국교구(서울대교구) 등 에 <의견서> 제출

선언 참여자들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 주요내용

- 낙태죄 폐지에 적극 찬성
- 여성 인권에 관심 없이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
- 낙태죄는 여성이 겪는 문제, 정부도 교회도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성차별에 침묵하고 일조하는 대신 여

성의 삶과 인권에 귀 기울여야

발언_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종교계>에 전하는 글 대독

마리아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1세 신자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니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를 반대하지요. 심지어는 산모가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태 반대하며 태아 먼저 살리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 교회이니, 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임신중단을 결정하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하시고 안중에도 없으시겠지요. 오히려 임신중단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함부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남자들, 자기의 필요에 의해 여자에게 임신중단 강요하는 남자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일언반구도 없고요. 모든 혼외 임신, 심지어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책임도 여자에게 묻는 게 지금 한국 천주교회니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여자들보다 임신중단을 살인이라며 여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수도자,

신자들이 더 반생명적이라는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살아있는 여자들의 생명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들 여자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여자들의 생명과 선택권에 대해 존중하시는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로라 님의 의견입니다. 청소년기에 태아의 발모양을 본 뜬 낙태 반대 배지를 성당으로부터 받은 뒤에 한동안 그것이 절대 선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세상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가혹한지 피부로 느끼면서 낙태죄 역시 얼마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인류 전체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지 여성 개인에게 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이 땅의 여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낙태죄 폐지 운동에 오히려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나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도태되지 않고 존속하며 신자들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신자들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워 여성들의 신체를 억압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종교가 할 일 일까요?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이제 저는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낙태죄에 대해 강론하시고 백만 서명을 받던 그 때부터요. 낙태를 죄라고 엄숙히 강요하던 그 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저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지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여성인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제가 미혼이건 기혼이건 낙태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에게만 모든 죄가 지어지는 부당함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여성 신도들의 봉사도 유지되는 천주교가 여성의 죄만을 묻는 모순 앞에서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하느님은 누구의 곁에 계시나요? 여성의 곁에는 계시지 않나요? 저는 교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요안나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신자이지만 낙태죄폐지에 찬성합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지만 소중한 삶을 위해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코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사회가, 종교가 출산에 대한 자기결

정권을 존중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천주교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바라며 요안나가 씁니다.

리따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 예비 부부 교리에서 콘돔,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고, 주기에 따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서 임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걸 듣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되지 않는 편이 나은 사람도 있는데 피임도 안 되고 중절도 안 된다니 교육을 받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미사 후 성당 마당에서 신자들에게 볼펜을 손에 쥐어 주다시피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권하는데 그 중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미 얼마나 여러 번 중절을 경험했는지, 그 신자들 마음이 어떨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했습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미사에 간 날이었는데 그날 이후 다시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삶에 관심이 없는 종교에 저도 마음을 달았습니다.

구네군다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을 진행한 뒤로 성당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닙니다. 임신을 하지도, 출산을 하지도 않는

신부들이, 눈 앞에서 강론을 듣는 '자매'들에게 낙태가 얼마나 익숙한 경험인지 상상도 못하는 신부들이, 함부로 죄를 이야기하는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매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마르가리타 님의 의견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성과 여자 신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못 본 체 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까지 심어 주며 적극적으로 여성혐오에 가담하는 교회가 무책임을 넘어 비열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보수적이고 남성위주의 교회, 여성혐오와 함께한 종교의 역사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점점 줄어드는 여성 신자의 수가 걱정된다면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가 아닌 마땅히 생명이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그나저나 왜 생명은 낙태할 때만 갑자기 소중해지는 건가요.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은 본체만체 하면서.)

미로페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에 반대합니다.

라파엘 님의 의견입니다. 임신중단이 주님이 보시기에 죄라면, 그 정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교리상 죄라 하더라도, 그 죄는 카톨릭 공동체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의 형법 및 공권력에 의한 제한의 영역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신중단이 생명권의 침해라면, 그 생명권은 단순히 태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산모와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사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주아네스 님의 의견입니다. 태아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법을 유지하는 것을 천주교가 지지한다면 이는 곧 천주교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것인데 진정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생각해주세요. 태아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도 생명입

니다.

세라피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낙태를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모나 교회 내 여성 노동자들의 육아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생명 사랑을 이유로 들어 낙태죄에만 집착하는 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미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키우는 여성에 대한 처우도 좀 신경을 써 주시지요.

글라라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생명존중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낙태죄는 한 태아를 죽이는 이 아니라 한 여성을 살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여성을 지우지 마세요. 카톨릭이 수호해야할 소중한 생명에는 당연히 여성들의 삶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안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교님들 및 신부님들께. 얼마전 주교회의에서 나온 성명을 본 후 천주교의 오랜 신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여성

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85년에 세례성사를 받았고, 장애인선교회에서 봉사자로 활동을 해온 요안나라고 합니다. 우선,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의 요구에 대해 남성들로만 구성된 주교님들께서 선부르게 예단하시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신 외의 타인에 대해 그 특성이나 고유성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관련되어 정책을 만들거나 하려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신 및 출산, 낙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은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인 여성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전 단 한번도 천주교측에서 여성이 임신과 낙태,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나 고민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종교는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번째,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 또한 종교가 지나온 길에는 어땠는지 돌아보고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가가 인구를 늘리고 줄이기 위해 때때로 정책을 바꾸고, 개개인들의 권리를 빼앗고,

여성들을 출산하는 도구처럼 취급할 때 그대도 지금처럼 말씀하셨나요? 종교는 누구나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세번째, 임신중지권을 “특권층의 이익이나 다수의 논리”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특권층이었던 적이 있던가요? 남성들이 장악한 남성 위주의 사회일 뿐 여성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여성 사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사제의 수발을 드는 사람은 모두 수녀 혹은 연로한 여성평신도이고, 평신도의 회장이나 사무장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성들은 성당의 청소, 행사의 식사담당 등 끝없는 돌봄의 역할만 주어집니다. 과연 누가 특권층인가요? 사회문제에 대해 차별과 평등,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먼저 천주교내에서 차별은 없는지, 평등한 조직인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네번째, 특정 종교의 교리와 가치나 주장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타 종교 및 종교인, 무 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제가 제 일상을 개신교의 교리나 주장으로 영향을 받고 싶

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천주교 혹은 교황 등의 권위가 국가의 법과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던 로마시대같은 가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저 또한 천주교의 평범한 신자로 우리 종교가 비종교인 혹은 타 종교인들의 가치영역을 침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태죄이든, 차별금지법이든, 그 무엇이든 국가의 법 개정 혹은 제정과 관련하여 종교라는 이름을 들며 침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반대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등을 논하며 “뭘뭘 보다 우선하는..”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인권적이지 않으며, 모순입니다. 존엄이나 인권, 평등과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 우린 차별이라 부릅니다.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낙태죄라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존엄을,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행복을 침해하여 왔기에, 그 침해를 막고자 하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여성의 신체와 정신과 생명이 없는 태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여성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태아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리에 대한 비문이 아닐런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

은 끝날 때까지 낙태죄가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 싸우고 바꾸어 낼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가 사회가 우리를 짓밟고, 여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어디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천주교 신자라는 걸 말하기 쪽팔리게 행동하고 있더라도, 누구나 평등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없이 발휘하고 스스로 최선으로 생각한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파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신부님,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100만 낙태죄 폐지 서명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후보에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유감 성명문이 나왔을 때에는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교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근래만큼 교리교사로서 부끄럽고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종교 교리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페미니스트 교리교사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성도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경했던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델라이드 님의 의견입니다. 주보에 낙태의 상처를 겪은 이를 위한 정기모임 안내가 실려 있는 걸 종종 봤어요. 교회 안에서 낙태를 겪었던 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포용하기는 커녕 처벌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지금의 교회는 여성을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낙태를 종용한 남성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 하나요?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살아서 숨쉬는 여성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없을 겁니다. 다만 낙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이겠죠.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지만, 낙태하는 여성에게 처벌을 하는 세상을 원하진 않습니다. 낙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낙태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으로서의 낙태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낙태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레지나 님의 의견입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사랑한다면 교회부터 여성의 삶을 사랑하고 공감할 줄 아셨으면 합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교회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기 이전에 약자의 삶을 보듬었는지 약자의 생명을 보듬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약자들에게 죄를 묻기 전에 어떤 죄가 연결되어 거기서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부터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글라시아 님의 의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참 바뀌지 않는 곳이 카톨릭이라 생각합니다. 카톨릭의 역사는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암담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카톨릭 내부에서 많은 일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묵살되는 일의 중심에는 늘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는 당연히 되어야합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합니다.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 역사 속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미카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30대

천주교신자이고 20대 중반에 낙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콘돔을 끼기 싫어했어요. 사후피임약을 먹은날도 관계를 갖자고 했어요 결국 임신이 됐고 남자쪽 집안에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 했습니다. 도저히 키울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했는데 동갑이었던 남자는 수술한 날 대학교 기말고사라고 곁에 있어주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는 제 목살을 잡고 감히 니가 헤어지자고 하다니, 바람뽀냐고 하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폰 번호를 바꾸고 차단하고 가까스로 그 남자한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저는 5년넘게 죄책감과 후유증 우울증에 시달려야했습니다. 남자는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다녔고 아무런 죄책감도 책임감도 없이 죽고 싶을만큼 괴롭혔어요. 저는 우울증에 죄책감에 자살시도도 했습니다. 낙태치유미사, 고해성사, 성서공부도, 연수도 피정도 다녀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자매님들이 감옥에 가야하는 것인가요? 형법상 감옥에 가야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후유증이 아직도 있지만 낙태

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랑 애기낳고 살았다면 저는 맞아죽던가 자살하고 이미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낙태를 "마음의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낙태를 죄로 법으로정하여 여성을 감옥에 보내고 단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남성들이 생명의 소중함, 책임감에 대해 깨달을 수 있게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자매님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숨을 틔어주는 것이 낙태를 막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의 행복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아기도 행복하게 태어나고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오랜 천주교 신자입니다. 성당에서 오랜 기간 봉사자로 일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수많은 5-70대 여성을 만나왔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음에도, 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20년, 길게는 50년 전의 낙태 경험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 같은 '죄'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고통 받는 여성들을 보며 이런 단죄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왜 이 단죄는 여성들만을 향하는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

발언_ 낙태죄 폐지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정부>에 전하는 글

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알려주려 오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 자매들을 단죄가 아닌 사랑으로 보듬을 때라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가타리나 님의 의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부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교회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신부님들의 입으로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는 말은 눈 뜨고 살아있는 수많은 여성 신자들을 목살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입니다. 저는 천주교 사제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냉담을 시작한 신자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찬성합니다.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길게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합니다.

가브리엘라 님의 의견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고 싶다면, 낙태 금지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착취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벌써 출산율은 0%대. 끊임없이 여성을 멸시하는 성범죄 판결 개혁, 출산과 회복/육아에 따른 여성 경력의 안정성 확보, 전반적인 여성의 직업 불안, 남녀임금의 불균형 해소, 육아 노동의 불균형 등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란체스카 님의 의견입니다. 혼자서 낳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님에도 낳는 사람만 처벌받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어린이는 보호하지조차 않으면서 태어나지조차 않은 태아는 보호하고 싶어하는(이게 정말 보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우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단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에 대해서

요.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온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뜻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병원비 앞에 놓여 있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입양시설 앞에 버려집니다. 진정으로 아동 복지를 생각한다면 낙태를 죄로 묻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낙태시키도록 만든, 책임지지 않는 남성에 대한 죄라도 규정하던지요. 한 쪽으로만 기운 저울은 무너집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로사 님의 의견입니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힘들게 아이를 낳더라도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법과 제도,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그저 생긴 생명을 낳아

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무용합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에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유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산아 제한에서부터 출산 지도까지, 국가는 '인구 정책'이라는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왔을 뿐, 단 한 번도 여성 시민의 몸을 그 자신의 것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생명을 낳게 하는 여성 그 자신의 선택 또한 소중합니다. 이제는 여성 시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임신 중지를 허용해야 합니다.

크리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종교 집단의 눈치를 보나요? 종교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에 내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효주아네스 님의 의견입니다. 양육비 지급조차 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국가와 주변에 알리는 것이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성폭력임을 입증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한 명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스티나 님의 의견입니다. "임산부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임신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임신은 병이 아니라서, 입덧약도 비보험인 이 세상 속에서- 남성이 임신한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축복'으로 여기라고만 할 지 궁금해졌습니다. 임신도 낙태도 그것이 가능한 자(여성)의 선택입니다. 그 '축복'이라 부르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을, 직장을,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목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낙태죄폐지 찬성합니다"

엘리사벳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가 죄라면 한 여성이 낙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낙태금지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고 그 실효성은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낙태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죄할 수도 없습니다. 폐지하세요.

소피아 님의 의견입니다. 천주교인 모

두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성직자가 될 수 없는 보수적인 천주교회에서 발언의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세요.

안젤라 님의 의견입니다. 국가는 시대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출산율 조정 정책을 써왔습니다. 지금이야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뭐든 하고 싶겠지만 불과 삼사십년 전만 해도 국가는 아이를 한 명만 낳으라고 권고하다 못해 직접 낙태버스까지 운영하곤 했습니다. 여성의 몸이 이렇듯 국가에 의하여 멋대로 조정될 수 있는 물체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낙태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겠어요? 미혼모, 사회적 취약 계층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겪게 될 고통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놓지 않고서 오롯이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지게하는 국가가 답답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과 여성 지원 정책,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게하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생기지 않는 한 낙태죄는 무조건적으로 여성차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저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레오나 님의 의견입니다. 낙태죄가 낙

태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존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남용’할 거라고요? 낙태가 무슨 사마귀 떼어내는 수준도 아니고, 자기 몸 해쳐가며 낙태를 반복할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을 구속하기보다,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노베파 님의 의견입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정부, 사법부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호주제 폐지 당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많이들 했었죠. 그래서 망했었나요? 평등한 길은 많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0일 의견서

제목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수신 : 보건복지부

일시 : 2020년 10월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8호)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afeabortionforall@gmail.com

1. ‘모성’의 관리와 ‘위기임신예방(낙태예방)’을 취지로 하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함.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는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8호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위기갈등상황’이라는 규정은 임신중지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여성의 자기 결정의 맥락을 위기와 갈등으로 협소화시키고 ‘낙태 예방’에만 치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위 ‘위기임신’에 처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지는 비도덕적인 결정으로 규범화하는 문제를 지님.
- 또한 입법예고안에서는 여전히 ‘모자보건사업’의 틀로 ‘모성과 국민’의 생식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을 고려할 때 개별 주체가 아닌 ‘모성’을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을 권리 주

체가 아닌 ‘모성’이라는 국가가 기대하는 하나의 성질로 치환하는 것으로 문제적임.

-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임신 상태 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성건강,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 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전체 국민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지원하는 법과 정책을 책임있게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2.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임신·출산 상담 제공(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함.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운영 및 사업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함.

- 개정안은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안 제7조의2)”,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은 임신중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매김되어야 마땅할 상담사업이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적 절차로 배치되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지원의 방향과는 괴리가 있음.

- 해당 사업은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운영 및 피임, 임신·출산, 안전한 임신중지, 성교육과 성건강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며 개정입법안 역시 관련 취지와 방향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해야 함.

3.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인 교육 및 피임의 급여화’ 등과 같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을 마련해야 함.

-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조항을 포함하였음. 그러나 ‘의사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며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방향임.

-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 인정은 이미 시행된 다른 나라에서도 보건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지역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공공병원의 인력과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임신중지 및 성건강에 관한 보건의료 환경을 지체시키고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의료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보고되어 왔음.
-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른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이며, 국가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 개정안에 담겨야 할 것은 의료인의 거부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임. ‘의료인 교육 및 피임의 급여화’ 등과 같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의견

•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과 국민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앙 임신·출산 지원사업과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사업을 포함한다).

• 의견

- 모자보건법은 국가의 인구관리 목적에 따라 '모성'에 대한 의무와 규범으로 여성을 통제해 온 역사와 다름없음. 입법예고안은 해당 법의 대상을 '모성과 국민'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또다시 '모성'으로서 여성을 통제해 온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 개정안의 취지와 목표는 여성을 포함한 온 국민의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임신중지 역시 이러한 목적 하에서 처벌

의 대상이 아닌 중요한 공공의료 사업의 영역으로써 배치되어야 함.

• 조항

제7조의2(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종사자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의견

- 임신·출산 뿐 아니라 임신중지 역시 중요한 지원사업의 영역으로 명시되어야 함. 그래야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해소될 수 있을 것.
- 임신중지에 대한 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중앙 지원기관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지원·그 밖에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됨. 구조적으로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밖에 없음.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편중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원치 않는 출산을 중용하는 것임.

- 조항

제7조의3(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중략)

④. 제1항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의견

- 제7조의3 중 4항에서는 “제1항 제4호의 상담은 임신한 여성이 심리적 지지와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임신 중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 또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법에도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명시되어야 함.

• 조항

제7조의4(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지정)

(중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견
 - 제7조의4 중 3항에서는 상담사실확인서의 부정한 발급 등 지정기관 취소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담 기관의 기본 자격 요건과 상담의 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구체 사항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정보 제공, 사적 정보 유출 금지, 종교적 신념이나 상담자 및 상담기관의 일방적 가치관 강요 금지 등 기본적인 원칙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본 법안에 명시해야 함.
 - 위의 모든 필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270조의2에 의하여 사실상 ‘상담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므로 상담이 여성의 건강권과 여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큼. 상담은 여성에게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함.

- 조항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와 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3.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의견

- 신설되는 사업은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임.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

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공적 서비스로 자리매김되어야 마땅할 상담사업이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적 절차로 배치되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지원의 방향과는 괴리가 있음. 이는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제도로 기능하여 여성의 자기 결정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 사업은 피임, 임신·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여성의 재생산건강지원’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마땅함.

- 조항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의견

- 이 조항은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개정법률안 제27조 제1항) 해당 사항에 대한 서면동의를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전 의무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은 해당 정보의 제공과 관련 상담 등 지원사항에 관해 당사자 동의 하에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제공할 사항이지 의료서비스 제공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됨.
- 다른 의료행위와 달리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요건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당사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처벌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 조항

- ②.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 ③.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 ④. 제3항의 상담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임신·출산상담기관의 장 또는 임신한 미성년 여성 본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 등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의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의견

-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구분할 문제가 아니며, 미성년 자라도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 평소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 의사소

통이나 의사결정에서의 불평등성, 동거 또는 인근접거주 여부,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임신중지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상담사실확인서로 갈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학대 상황을 증명해야 함.
- 그러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의 학대는 신고하기도 어렵고 입증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 당사자에게 많은 부담이 가중되므로 학대를 입증할 공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더 큰 제약과 고통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음.
- 임신중지에 관한 미성년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동의가 아닌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당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동의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오히려 제3자에 의한 비동의 임신중지, 임신중지의 강요에 관한 사항을 처벌요건으로 두어야 할 것임.

- 조항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수락)

- ①. 의사는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견

- ‘의사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임.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방향임.

-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른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이며, 국가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마땅한 의무가 있음. ‘의료인 교육 및 피임의 급여화’ 등과 같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우선적이고 주요하게 다뤄져야 함.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의사가 개인의 호불호, 종교적·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
- 임신중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만 요청하는 의료행위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방법은 없으므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임. 임신중지만 예외적으로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임.
- 진료 거부 허용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현저히 낮추고, 임신한 여성이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개인의 노력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감.
- 상담기관 안내의무는 실효성이 없음.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여성은 먼저 의무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를 만나게 됨. 다시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무용함.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기관 안내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속한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임.

2020.10.2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페미당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이상 총27개 단체)

2020년 11월 5일 기자회견

제목 : 형식적 의견수렴! 여성들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1월 5일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내용 :

- 사회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 발언
 - 발언1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대표)
 - 발언2 : 김수경(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발언3 : 이서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 발언4 : 이동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발언_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대표)

지난 2일 월요일 저녁 6시경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성계 의견수렴 간담회(11/4)>를 개최하겠다고며 바로 다음날인 3일까지 참석자 통보를 요청해왔습니다. 안건도 자료도 없는 단 다섯 줄짜리 메일 통보였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졸속적인 요청이었으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중요한 시기만큼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안건의 내용은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 조문비교표가 전부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소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제출된 모낙폐와 각계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세부 쟁점을 안건으로 제시하거나,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과제라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물었으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인구아동정책관 모두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 대다수는 아무런 성의도 없이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명분용 의견수렴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낙태죄’ 관련 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누구보다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일이고 그런만큼 정부는 여성들의 의견과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귀담아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을 뿐, 올해 6월부터는 불과 며칠 전에 급하게 간담회를 제안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를 세 차례나 반복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여성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한 차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는 아무런 책임있는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눈치만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평등위원회의 의견도, 내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또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복지부, 법무부 등 각 부처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언론과 각 정부 부처,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었던 여성계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종교계,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한겨레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정부가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건강과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여전히 낙태죄를 태아 살해행위로 인식하고 정부 부처들과 함께 여성들을 기만하고 시간끌기를 하는 전략을 짜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부의 전략 속에서 정부 부처들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하며 명분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여성들에게 미칠 현실적인 영향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모낙폐를 비롯한 각계에서 반대해왔던 형법 처벌조항 유지,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적 허용, 상담의무, 숙려기간 의무, 의사의 거부권까지 모두 들어간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조항들은 지난 40여년 간 각국에서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실을 후퇴시켜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폐지 권고를 해왔던 것들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국내외의 권고들을 무시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형법 낙태죄를 통한 처벌을 유지하며 특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요건을 두는 방식은 명백히 반 인권적이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66년간 바로 그 방식으로 국가는 여성들의 몸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고 장애인의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주수에 따라, 사유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법은 더 권리에 취약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불합리한 권리 침해를 용인하는 법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인권을 내세우는 대통령이라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사회경제적 요건에 따라 임신중지의 허용 요건을 가르는 법이 아니라,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여건을 마련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현실을 변화시킬 책임있는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와 이에 책임있는 5개 부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발언2_ 김수경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우리가 바라는 바는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시킬 수 있는 임신중지의 허용사유

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밝혀왔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여성계의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상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아니다. 수없이 전달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여성들이 돌봄부담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독박육아를 하는 전업주부나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여성노동자이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보건의료,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여성이거나 지금 어디 한 곳이든 여성에게 희망적인 곳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꼼수로 가뜩이나 힘든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한다. 지금시기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시급하게 위기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보건복지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누가 임신중지를 선택하겠는가? 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가?

코로나19로 고용은 불안하고 아이를 함

게 돌볼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돌아본다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하찮게 내던지던 행보를 당장 중단하고 솔하게 전달된 우리의 요구를 전면 받아들여야한다. 그리고 해야 할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중지를 위한 계획을 밝힘으로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전해야 할 것이다.

발언3_ 이서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진,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의 요구에 못 미치는 후퇴한 내용이다. 여러 국가에서 실효성 없음이 입증된 불필요한 상담과 숙려기간을 강제하는 내용도 문제고, 의사의 진료거부권과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일반적인 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명시되어있다. 이는 낙태에 대한 기존의 낙인을 방치하고 심지어 더 강화

할 뿐이다. 이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에게 죄책감과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인의협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재생산 건강권의 측면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판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두차례 참여했다.

첫번째는 지난 10월 23일 있었던 의로계 간담회다. 우리는 이때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직된 자세로 임했다. 두번째는 어제, 지난 4일 있었던 '여성계' 간담회였다. 준비부터 졸속이었다. 일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으며, 당일 간담회 자리는 구체적인 안전조차 마련되지 않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미 각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마친 지 오래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나 대책은 없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 법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 틈새 많은 이번 개

정안이 만들어낼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피해자를 양성하는 일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일을 우려하고 대비하고 싶었다면 사전준비도 없이 ‘답정너’ 간담회를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고심하라.

발언4_ 이동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앞서 말씀대로 어제 보건복지부 간담회는 졸속 간담회였습니다.

게다가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 약물 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색내기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제한해온 것을 이제야 가능하게 했다고 마치 무언가를 들어준 듯한 발언이었고, 이런 생색내

기 발언을 듣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의 말처럼 임신중지 약물 사용이 과연 법안만 개정한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아직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약회사가 유효성 안전성을 입증하는 가교시험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따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줄 수 없고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수술로만 할 수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0일 성명/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함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하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이로써 제21대 국회에는 권인숙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법안이 발의됐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정당의 책임있는 당론발의 법안으로는 최초 발의안이다. 특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한층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며, 다음 내용에 주목한다.

처벌 금지와 지원을 넘어 권리 보장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개정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제명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1조 목적 규정도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지금까지 '모성 및 영유아'를 법의 대상으로 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어온 한계를 전환하고, 국가의 인구 관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명시한 것이다.

제2조 정의 규정은 '모성'을 '임신·출산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임신, 출산, 유산, 사산, 인공임신중단이 모두 포함되도록 정의하였다. 이어서 제4조는 현행 '모성 등의 의무' 규정을 '임신부의 권리 등' 규정으로 개정하고, '임신 출산 등과 양육 및 생식건강과 관련하여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제4조의 2로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조항을 신설한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향이 향후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사회경제적 상황은 '허용 사유'가 아닌 국가의 책임 조항으로 반영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법안의 목적을 권리 보장 및 지원으로 명확히 전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보다 분명하게 제시했다.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식건강, 성적 권리,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고, '장애유형과 특성, 나이, 언어, 인종 및 국적,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규정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하고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해나갈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중앙 및 지역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한 제7조의 2, 제7조의3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제7조의4는 '임산부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며, '임산부등의 사회적·경제적·의료적 욕구에 따라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검진, 의료비 등의 지원,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생활지원, 법률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양육지원 등의 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를 지원기관의 책임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법·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우생학적 조항의 수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권리 반영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국가의 우생학적 인구관리 목적을 드러내 온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했으며, '선천성이상아'를 '선천성장장애아'로 개정하고 '장애아의 발생 예방'은 '장애아의 조기 발견'으로 개정하는 등 법률 전반에서 장애차별을 해소하

고자 했다. 또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여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도 유·사산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가 인구 정책에 따라 여성들을 차별하고 통제하며 우생학적 인구 관리로 국가폭력을 저질러온 지난 66년의 역사를 바로잡을 시간이다. 더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폭력에 따른 현실을 개인의 몫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그 책임과 요구를 인식하고 형법 '낙태의 죄'의 폐지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국회 내 다른 의원들과 정당들도 이와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차별이 아닌 권리 보장의 방향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에 역행하는 행보는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역사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2020년 11월 10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 의전화

2020년 11월 16일 의견서

제목 :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수신 : 법무부

일시 : 2020년 11월 16일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의견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307호)에 대해 아래의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afeabortionforall@gmail.com
1.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임.
 -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임.
 - 270조의2를 신설하여 허용 요건을 제시하였다고는 하나, 그에 앞서 처벌이 전제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은 온전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요건이 구성되기 때문임.
 -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의 권리를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임. 이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현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함.
 2. 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은 불필요한 입증을 요하여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임.

-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상의 낙태죄를 유지시키고 임신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의 절차와 같은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험적 상태를 제거했다’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안임.
- 처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형법 270조의2 신설은. 오히려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으로,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쳤다는 것임.
-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지를 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음. 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시켜온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허락받을만한 사유의 입증을 위해 여성들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요건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함.
-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허용 사유의 추가가 아니라,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임.

3. 허용 주수의 구분은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남.

-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시기의 구분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남. 임신주수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착상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임신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하여 ‘유추’되는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14주, 24주 등의 주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함. 오히려 임신기간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할 것임.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주수에 따른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4.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요건으로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했다는 점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특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을 통해 증명받아야 함. 그리고 다시 24시간을 대기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을 돌이키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간 같은 제도를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어 왔고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출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프랑스에서도 2015년에 숙려기간 규정을 폐지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의무 숙려기간 없이 상담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규제로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에서도 거듭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임.
 -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담의 의무화가 아니라 내용과 기준이 중요함.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 상담가 개인의 종교적 입장을 강요하는 태도, 임신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상담 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각 조항에 대한 세부 의견

- 조항
 -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1항의 현행 유지
- 의견
 - 형법 제27장 ‘낙태의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기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전면 삭제되어야 함.

- 법무부의 일부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법적 처벌이 가능한 죄로 전제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사실상 14주 이전이라도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접근권과 건강권, 재생산권, 평등권 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없음.
-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어 왔음.
-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유지된다면 허용요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악용되되는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_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이견 중)
-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낙태죄를 통한 형사처벌은 임신중지율을 줄이는 데에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의 시기만을 늦추며, 보건의료 여건을 지체시키는 문제만을 초래하였음.
- 2012년 11월 임신중지 시술 도중 사망하게 된 여성의 사례와 같이, 처벌이 유지된다면 의사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초래함.
- 의료인과 의료현장은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최신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고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한도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임.

- 조항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 ①.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26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70조제1항의 행위가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3.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의견

-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임신중지의 허용 요건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유지되는 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은 계속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임신중지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함께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임. 가령 아무리 집 근처에 병원이 많더라도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병원을 찾아가기가 어려움. 실제 여성들의 현실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이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파트너나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들의 반응, 학업이나 노동 조건, 다른 자녀의 양육 여부 같은 사회적 조건들에 달려 있음.
- 임신14주, 24주 등의 기준은 의학적으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됨.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와 착상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주 정도의 차이가 나며,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월경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있음.

- 임신 14주 초과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2항 1-4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있으나 1, 2, 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나 절차 규정을 두지 않음. 모든 기준이 임의적이며 법률적 입증 판단을 요하는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섬.
- 4호의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는 임신 기간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1호, 2호, 3호의 경우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출산 시 책임지기 어려운 여건이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임신 기간이 길어질 때 까지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거나 권리가 취약한 여건에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임. 따라서 이런 경우 당사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 회복,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함.
- 24시간의 의무 대기시간은 임신한 여성의 숙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하등의 근거가 없음.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24시간의 의무 대기시간을 두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뿐이며 완전히 불필요한 절차임.

2020.11.16.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상 총28개 단체)

2020년 11월 27일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일시 : 202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사당 앞(온라인 중계 <https://youtu.be/tvE5i0qfyww>)

내용 :

- 사회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 대표발언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 각계발언
 - 최규진 (인의협 인권위원장)
 - 장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
 - 앎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퍼포먼스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 코드 참고 : 기자회견 영상



대표 발언_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지난 화요일 문재인 정부의 형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낙태죄를 존치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후퇴이다! 라며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닌 권리보장이라고,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의,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고스란히 담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하게 되는 선진적인 법안인양 정부는 포장을 하였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여성에 대한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이전부터 유산유도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로도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을 핑계로 약물임신중지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이라든지 상담 의무화 절차를 통한 허용 등과 같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

을 포함하는 정부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입니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단 말입니까.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의 진정성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향방에 따라 최종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십시오.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절반, 여성의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으십시오.

참담한 와중이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부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이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으로 모이고 또 모인,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퍼진 공동행동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대안적인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가 후퇴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임하기를 바라왔지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남은 국회 회기 동안 임신중지 여성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임신중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낙태죄’를 전면 폐지했나? 권인숙 의원안과 이은주 의원안은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는 낙태죄와 정녕 이별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임신중지를 권리로 명시했나? 권인숙 의원안과 이은주 의원안은 모두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조항의 신설을 통해 임신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중지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로 정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확히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나아가 이은주 의원안의 경우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제명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성의 임신출산만을 모성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의무로 규정해왔던 법안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 유산 사산 인공임신중단 모두를 모성으로 정의하고 권리보장의 법으로 역사를 새로 쓰는 시도를 우리는 적극 지지합니다.

셋째, 국가가 권리보장을 책임지는가? 권인숙 의원안은 문재인 정부안이 기초하고 있는 ‘차별과 허용’ 프레임을 넘어서, 재생산건강과 의료접근권 등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에게 피

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은주 의원안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식건강, 성적 권리,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특성, 나이, 언어, 인종 및 국적, 소득 수준 등으로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등을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규정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지하고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의 권리보장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는가? 권인숙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임신 중단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한 조항도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은주 의원안 역시 ‘임신·출산 건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임산부등의 지원’ 조항에서 ‘임산부등의 사회적·경제적·의료적 욕구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접근성을 낮추는 장벽은 없는가? 권인숙 의원안은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제의 수단이 아닌 여성의 권리로 규정하고, 의사가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여성에게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게 하고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숙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며, 의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임신당사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안입니다. 이은주 의원안은 국가의 우생학적 인구관리 목적을 드러내 온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였으며, ‘선천성이상아’를 ‘선천성장장애아’로 개정하고 ‘장애아의 발생예방’은 ‘장애아의 조기 발견’으로 개정하는 등 법률 전반에서 장애차별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여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사산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약하는 문턱을 낮추는 법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향이 향후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진정 국회의 시간입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국회는 국가의 책무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십시오. 낙태죄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_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낙태죄 전면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반의학적이고 반역사적인 개정작업을 중단하라.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라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것은 반의학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의학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저는 낙태죄 폐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여성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오래전에 보건의학적 측면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통계분석을 통해 임신중지를 법률로 제한한다고 해서 임신중지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법률과 정책이 갖추어졌을 때 임신중지율과 임신중지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범죄화와 법적 제한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시술자에게 수술을 받거나 혹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뿐입니다. 실제 신생아 출산 10만 건당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의한 임신여성 사망률을 보면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한 국가보다 범죄화한 국가에

서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임신중지에 대한 제한을 없애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에 의한 임신여성 사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신여성의 사망 자체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와 관련 연구소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전세계 국가들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빅데이터를 떠드는 정부가 이렇게 확고한 빅데이터를 무시하고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태죄가 유지되는 게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 하다못해 임신중지율이 줄어든다는 통계학적 증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해보십시오.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이런 법안을 개정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는 그 막강한 힘을 이런 데 안 쓰고 뭐하는 겁니까?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여성들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걸 10년 전 우린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마치 낙태죄가 사문화된 것인양 농치다가, 결국 이명박 정권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낙태 줄이기’를 추진했고, 급기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등장하면서, 하루아침에 낙태죄가 서슬 퍼렇게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그 당시 제

때 적절한 임신중지 수술을 받지 못해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는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생생한데, 어떻게 낙태죄를 유지하는 법안을 개선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낙태죄로 여성들이 고통받은 역사가 1948년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상, 1912년 일제강점기때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낙태죄가 조선에 적용된 게 여태까지 유지돼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8년만에 겨우 낙태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도루묵을 만들다니요. 사회경제적 사유가 들어가면 다 된 건가요? (사회)경제적 사유는 일본에선 이미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 때 들어갔던 조항입니다. 한국은 25년이나 지나 그 낡은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베꼈는데, 그걸 베끼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 조항만 쪽 빼놓고 모자보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와 겨우 보완하는 게 과연 개선입니까? 아무리 사회경제적 사유가 들어가도 그 모호함 때문에 언제든 낙태죄에 의해 2010년과 같은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경제적 사유를 70년 넘

게 두고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낙태죄로 고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변호사협회에서도 1993년부터 줄곧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토록 망신을 당해왔으면서 부처간 협의에서 몇 마디 한 걸로 손 터시려는 겁니까?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여성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우려에서, 형법상 낙태죄에서의 여성 처벌 조항을 개정하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부터 보호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은 낙태죄 문제를 오래전부터 권고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호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매번 망신을 당해놓고 어떻게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만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낙태죄를 무마시키기엔 어렵없는 사회경제적 사유 하나 앞세워, 주수를 제한하고, 상담·숙려기간을 의무화하고, 의사 거부권까지 집어넣은 이 개정안을 정말 개선안이라

고 보는 겁니까? 낙태죄가 존재하는 한 그 어떤 걸 갖다 붙여도 개선안이 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법안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의 유무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의 기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낙태죄를 없애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까지 받아냈는데 어떻게 낙태죄가 남아있는 거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누더기 개정안을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 임신중지와 관련된 전세계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헌에 잘 나와있다. WHO. 『World Health Report 2008 – primary health care: now more than ever』. 2008.; WHO. 『Women and health: today’s evidence, tomorrow’s agenda』. 2009.; Safe abortion-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Second edition, 2012.; Gilda Sedgh,
et al. “Abortion incidence between
1990 and 2014: global, regional,
and subregional levels and trends”,
『LANCET』 Volume 388 No.10041.
2016

** 日本弁護士連合会, 刑法と売春防
止法等の一部削除等を求める意見書,
2013年6月21日

발언2_ 장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연구소 장은지
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
지가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데
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의료선
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
성의 필수 의료서비스인 임신중지를 보
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에 대해 무지한 남성 파트너의 비협조
로 적극적인 피임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에 물
질적, 정서적 지지의 공백을 홀로 감내

해야 했습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 의
료이용에 도달하기까지 충분한 정보제
공, 상담, 부담 없는 비용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성의 장벽 때문에 더 많
은 피해를 입는 이들은 역시나 여성 청
소년, 장애여성, 이주 여성과 같은 사회
적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의학적 보호와
사회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
의 책임이 약자의 고통으로 오롯이 전
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결과였으며,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대
한 권리뿐 아니라 교육, 노동, 의료, 사
회복지 등 포괄적 성과 재생산 권리보
장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신중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
영하지 않고, 낙태죄 존치 실효성에 대
한 과학적 근거조차 부재한 정부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다음 과제를 제
언합니다. 첫째, 숙려기간 의무화가 아
닌 포괄적 서비스 연계와 지원을 요구
합니다. 불가피하게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만 늦출 뿐, 여성 건강 보호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은 여성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임신유지와 출산에 대한 정보와 동등하게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생식건강과 관련된 상담 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서비스를 연계할 포함하는 종합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외주화된 하향적-수직적 보건 사업이 아닌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공공 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요구합니다. 시설과 인력 지원없이 보건소 또는 비영리기관에 설치되는 ‘종합상담기관’은 위기 임신 지원 역량은 부재한 채 상담 확인서만 발급하는 절차적 장벽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적시에 위기에 개입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성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에 머물지 않고 임

신중지라는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일이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라는 인식을 가져야합니다. 또, 임신중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 사회문화적 낙인과 차별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모든 여성들에게 형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인구통제가 아닌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낙태예방책은 처벌과 억압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피임교육과 피임 접근성의 강화입니다. 근거를 기반으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선진국의 보건부 장관들처럼 여성을 의학과 역사의 진보로부터 소외시키는 소모적인 낙태논쟁을 끝내십시오. 피임과 임신중지 보장이 곧 여성건강 보장이며, 여성건강 보장이 곧 국민건강 보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_ 앞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박아름입니다

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입법예고기간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요약·발췌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허용'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주수와 사유라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국가가 국민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은 예외적인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에게 상담의무와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의무와 숙려기간은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임신중지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킵니다.

정부 개정안은 상담기관의 설치·운영·지정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을 필수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담기관이 설치 또는 지정되지 않거나, 상담기관에서 임신중지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임신·출산·임신중지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혜자를 대상으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기관이 과연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임신중지 허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들은 서비스 제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해야 하며, 그로 인해 임신중지가 지연되는 부담과 위험은 개인이 져야 합니다.

또한,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근무일,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숙려기간을 채운 다음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숙려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다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한 교통편이 취약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경우 등에는 임신중지 시기가 더욱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임신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연속적 발전과정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으로 인해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임신중지가 불필요하게 지연될수록 여성의 건강권은 심각

하게 침해됩니다. 형법 입법예고안처럼 처벌조항과 주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순전히 행정적인 이유로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없게 될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은 사실상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독소조항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필요한 상담이지만 정작 임신의 종결에 관한 정보는 상담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편중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한 선택을 유도하고자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스스로 결정”했다며 개인에게 돌리고자 하는 의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은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돌이키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2015년 프랑스는 “여성은 의사에게 임신중지를 요청하러 가기까지 이미 충분한 숙려를 했을 것이며, 숙려기간은 여성을 불필요하게 더 고통스

럽게 할 뿐이고, 오히려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임신중지 시술이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된다”라는 이유로 숙려기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신중지에 관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규제나 정책, 제도적 장벽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세계산부인과학회 등 여러 국제기구도 상담의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하도록 거듭 권고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은 사실상 모든 여성에게 강요될 우려가 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를 상담·지원해온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은 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사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여성에게 강요될 우려가 큽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허용요건인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임

을 입증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나 경찰의 ‘고소사실확인서’ 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존치되는 한, 의료기관은 처벌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여성에게 법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 요건을 채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기관, 의료기관, 주변인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실제로는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이라도 ‘사회경제적 사유’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모든 사유에 대한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에 반대합니다.

이처럼 저희 상담소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끝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 열쇠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권인숙

의원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등이 발의된 상황이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도 소관위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국회는 여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낙태죄’ 폐지 법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전면 폐지돼야 하고, 앞으로는 여성의 성·재생산권, 결정권, 건강권, 안전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집회/시위

제목 :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간 : 2020년 12월 1일~12월 31일 평일 12사-13시

장소 : 국회의사당 앞

문재인 정부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1인 시위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DECIMINALIZE ABORTION IN SOUTH KOREA NOW

낙태죄폐지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폐지 #낙태죄_전면폐지 #처벌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촉구_1인시위

2020년 12월 2일 기자회견

제목 :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및 경찰조사규탄 릴레이 1인 시위

〈'낙태죄' 폐지 하겠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일시 : 2020년 12월 2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앞(온라인 중계 <https://youtu.be/BVQc4NYFXWE>)

내용 :

- 사회 : 명숙(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김유미(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 이미경(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 김민문정(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명서 낭독 : 김지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녹색당)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킹, 인권연구소 창

우측 QR 코드 : 영상 기자회견



발언1_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대표]

오늘 우리는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끝내 차별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법안을 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두 명의 모나페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경찰과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분노를 표명하는 발언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꾸었던 꿈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관련된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만, 오늘 아침 꿈에서는 제가 어느 상담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상담해주실 선생님은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까지 불러 모아 여러가지 항목이 쓰여 있는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문항은 이런 것들이었습니

다.

-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잘 보살펴줄 사람이 있는지
- 임신중지 진료실은 어떤 분위기이면 좋겠는지
-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 지금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다가 임신중지 후 회복하면서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테크노 음악을 택해서 스스로 웃기고 황당해 하면서 꿈에서 깬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그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서 깨자마자 꿈에 나왔던 것들을 바쁘게 적어두었습니다. 꿈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았던 것들,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이자, 가장 이루고 싶었던 내용들이 꿈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여성들이 실제로 고

민하고 부딪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말 좁쌀 한 톨만큼의 고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2012년엔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도 2019년엔 낙태죄로 인하여 실제 여성들이 처해온 부당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처벌과 허용의 틀에 머물면서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떠한 말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국가의 책임 회피를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입니다. 손쉽게 여성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허용 기준만을 세우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결과 생명권과 결정권에 대한 논의도 협소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지 않는 생명권 논의는 허구이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권을 논의하는 것도 허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66년만에서야 낙태죄를 다시 들

다보며 이제 겨우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처벌이 사라져야, 국가는, 이 사회는 국가와 사회가 할 일들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꿈에서 제가 보았던 질문들, 임신중지를 하게 된 여성에게 임신중지를 결정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잘 보살펴줄 사람이 있는지, 임신중지 진료실은 어떤 분위기이면 좋겠는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의료 환경과 그런 사회, 그런 국가는 단지 제 꿈에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작년에 방문했던 캐나다의 병원들은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의료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뉴질랜드가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삭제했고, 프랑스도 사실상 임신 전 기간에 대한 임신중지의 보장을 고려하여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낙태죄의 온전한 폐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우리 동료들이 경찰에 소환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

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골백번을 소환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막으려 해도 이제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받고 국가가 그 책임을 제대로 실행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발언2_ 김유미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팀장)**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당연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방패막이이자,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것만큼 분노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이고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에 함께하고 있는 문설희 동지는 9월 28일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오늘 경찰소환조사의 대

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9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입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야 정부가 입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입법안이라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보 조항, 허용 주수를 가져오더라도 ‘임신중지 행위’가 ‘여성의 죄’라는 형법상 처벌 조항이 남아있다면 우리 사회가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9월 28일의 기자회견은 이런 식의 정부의 입법안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그간의 논의를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자회견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인 사람들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기자회견 진행 중에는 맨 앞에 한 줄을 제외하고는 기자회견 장소 바깥으로 빠져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안내했습니다. 발언자들을 포함하여 참가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하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이 올해 말이 입법 기한인 상황에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에 매번 고심에 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정부에 항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자회견으로 발표되는 모낙폐의 입장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장소에 모인 것은 십수명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청와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문구가 한글자 한글자씩 새겨진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 청와대는 언론에 퍼뜨리던 입법안대로 낙태죄 존치 방안을 입법예고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12월이 시작된 지금까지 임신중지가 여성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외침

에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찰소환 조사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선택적으로 경찰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정부입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언3_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년 12월 2일,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후퇴의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여성인권운동단체 활동가 2명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소환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으셨습니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27 결정을 통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어 법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통제하고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요구에는 눈감고,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라는 아주 ‘당연한’ 주장을 한 활동가들을 압박하며 경찰조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용인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중지조차도 성폭력사실 입증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자신이 성폭력을 했다고 자백하는 가해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증거도 없습니다. 의사는 처벌 가능성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을 아예 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기록 누락 및 조작 등을 제안하며 터무니없이 높은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성들이 서 있는 이나라 현실입니다. 결국,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어야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에 대한 고민이나 고려, 그리고 임신중지 결정 과정에서의 안전과 권리 보장은 없고, 의심과 통제로 점철된 개정안입니다. 형법 입법예고안은 입증 불가능한 주수 기준으로 임신중지를 처벌하며, 여성에게 상담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과해 임신중지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종합상담기관 설치·운영·지정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을 필수가 아닌 임의로 규정하고, 의사가 자의적으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임신중지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임신한 여성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하며 개인의 노력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이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개정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 많은 NGO 활동가들의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열정과 실천이 큰 밑받침이 되어왔습니다. 오늘 경찰이 소환한 두 사람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을 소환하려면 함께한 우리 모두를 소환하십시오. 청와대는 더 이상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단지 수사에 지나지 않는 말은 거두십시오. 그리고 이렇듯 활동가를 마구 소환해 NGO 활동을 위축시키고 압박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조치하십시오.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존중하며 변화하십시오.

우리는 사회변화를 위해 발로 뛰는 NGO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동료가 경찰에 소환되는 일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발언4_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형법 처벌조항 중 유일하게 여성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죄’입니다. 여성만을 처벌하는 형법 ‘낙태죄’를 개정하면서 어떻게 당사자인 여성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성들이 그 법으로 인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국가의 잘못된 법이 어떻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는지, 무엇이 여성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개정 방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당사자, 현장이야기를 무시, 배제한 채 만들어진 탁상공론식 정책과 법의 무수한 실패 사례 봐오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현재 결정문 그 몇 장의 종이쪼가리에 무려 66년 동안 차별적인 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겪은 무수한 일들이 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제발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 달라. 그것을 말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닿지 않으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자회견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럼 여성들은 권리가 침해되든 말든, 잘못된 법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 살인을 당하든 말든, 가만히 처분해주는 대로 있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정당했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집회와 시위라는 행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 평등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권력과 자원을 가진 집단은 자신이 소유한 매체로, 또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자원을 이용해 무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자원도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이 있는 길거리로 나서는 것뿐입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 이 불평등을 바꾸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런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등 해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소환 조사’라니요. 이것이 정의로운 법 집행 맞습니까? 공권력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에 경고합니다. 부당한 법 집행을 당장 멈추십시오. 저는 두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두 기자회견 모두 주최 측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여성시민들이 많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통행 제한 등 강력한 통제로 인해 기자회견을 멀리서 지켜보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엄수했고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집회, 소환조사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공권력의 집행이 아니라 탄압입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규탄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 기자회견문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한 채, 주수를 기준으로 임신중지를 ‘허락’하거나 ‘처벌’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은 기만이자 모욕입니다.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는 낙태죄 존치 시도가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9월과 10월, 국가의 퇴행적 시도를 규탄하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은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시간과 인원도 제한했던 기자회견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위법적 집회라는 자의적, 임의적 판단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진행된 낙태죄 찬성 기자회견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간의 수많은 기자회견 중 청와대를 향한 기자회견만 겨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무관합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출석 요구로 응답한 경찰, 청와대, 국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군사독재 시국에나 유효했던 반민주적, 전체주의적인 집시법을 무기나 되는 양 흔들어대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경찰은 일본강점기 순사 시절을 아직도 못 벗어난 것입니까.

임신중지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보편적 담론입니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위한 마땅한 의무는 방기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뒤에 숨으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개탄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진일보한 입법안이 아니라, 세월을 거스르고 여성의 권리를 퇴보시키는 반인권 반민주적 안을 공부와 숙고 없이 내놓은

정부와 청와대는 반성하십시오.

임신중지에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을 의심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위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국가의 책무를 당장 이행하십시오.

낙태죄 완전히 폐지하라!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2020년 12월 2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

2020년 12월 8일 기자회견

제목 : '낙태죄' 폐지 촉구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일시 : 2020년 12월 8일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앞(온라인 중계 <https://youtu.be/tvE5i0qfyvw>)

내용 :

- 사회 : 이지수(변혁당 여성사업팀장), 박은주(한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지윤(녹색당 정책팀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모두를위한낙태죄 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들)
- 모낙폐 성명 낭독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앞(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대표)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 이어말하기 (총30명)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지완, 세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김규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써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산부인과 의사 최예훈,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파랑, 고양여성민우회 심지선 대표, 수원여성회 조영숙 대표, 수원여성회 사무처장 이정수 사무처장, 박들샘, 전국연대-미래, 행동하는 간호사회 율, 인의협 이서영, 세어 김보영, 기본소득당 신지혜, 이아란, 스머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린, 장캡틴, 한국여성민우회 춘, 여성의당 대표 이지원,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 이진심, 여성의당 당원 정다빈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 코드 : 기자회견 영상



발언_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임신 중단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야기하고, 임신 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고민하고, 숨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사실상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

겠다는 속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멈추고, 낙태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도 모자랄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관련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신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인공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 중단이 더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 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는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가 차별의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

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그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발언2_ 지원

여전히 낙태가 죄로 존치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임기 여성입니다.

최근 있던 당근마켓의 일화를 다들 아시나요? 출산을 했으나 돌봄노동을 수행할수 없어 아이를 상품으로 올렸다는 웃픈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일화를 들은 제 친구 엄마는 처음으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겠구나,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형법상 죄로써 존재하는 임신중절은 여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인 모부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아주 어릴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막상 가임기 여성이 되자 그 교육은 점차 논쟁화 되었습니다. 입는것 먹는것 뿐 아니라 누구와 결혼 후에 어떤 가정을 꾸려야하는지까지도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피

임이 중요하다라는 합의를 보고 임플라논 시술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만, 교회를 다녀온 모부님의 발언은 바뀌어있었습니다. 딸의 성욕을 부추기는 건 아니냐, 성적 문란함을 키우는 건 아니냐,가 주 이유였습니다. 일단 낳아라, 내가 키워주겠다,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나 강간, 성폭력을 당해도 일단은 낳아라, 낳아서 입양 보내면 될 거 아니냐, 아빠는 당신의 딸에게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일방적 통보 속에서 모체, 자궁만이 존재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꾸리고 결정하는 사람은, 여성은, 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부님과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다.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일 수 없었으니까요.

다발로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몰래 집에 쟁여두었습니다. 주수가 너 낳아야 더 싸니까요. 혼자 병원에가면 사후 피임약도 잘 처방해주지 않으니까요. 혼자 돈을 모아 임플라논 시술을 받고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모두가 저의 잘못이라고, 저의 책임이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과 실질적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저도 여느 여성들 같이 그 모든 과정을 저 혼자 치러냈습니다. 제발 2021년에는 다른 세상에 살기를 바랍니다.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꾸릴 수 있는 세상에서 다른 출발점을 모색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더이상 가임기 여성 1이 아니라,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 지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_ 세민

안녕하세요. 이번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된 세민입니다.

오늘 9시부터 이렇게 국회 앞에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오는 길이 참 많이 화도 나고 우울하기도 했던 거 같습니다.

저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이 당연한 말을 2020년의 끝자락까지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대립으로만 임신중절 합법화를 이야기하는 이 지긋지긋한 구도가 심지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 계속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

취한 변화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판결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정책안들 중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크고 작은 유무형의 변화들, 모두 낙태죄가 어떻게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얼마나 여성을 위협으로 내모는가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연대한 여성과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오늘도 공청회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이 한가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연대해왔고 앞으로 낙태죄 없는 세상을 함께 그려 나갈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공청회가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법사위 의원들의 구성이 참 미심쩍기 때문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이 트위터에 작성한 글로 그 내용을 대신해보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자칫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차별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법사위 인원 구성을 보고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기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우려로 바뀐 순간인 거 같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임신 중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과 저것 사이에 주어지는 선택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저희 어머니께

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피임은 없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 투여되는 신중해야 하는 결정이다. 어쩌면 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원치 않는 임신은 하게 되면 걱정말고 그냥 엄마에게 말해라. 다 해결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해결이란 불법 임신중절 기술을 알아 봐준다는 것이겠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았어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일화가 짚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임신중절이라는 사건은 재생산 능력이 있는 여성에게 그다지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이하기 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고 이후에 아이가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당히 인위적인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결정에 따른 부담이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여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낙태죄의 폐지만으로는 한참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형법에 낙태죄가 남아 있는 현실에서는 저희 앞에 놓인 더 많은 과제들을 해나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회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낙태죄의 유지로 고통받는 삶과 억압받는 권리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십시오. 어떠한 이득도 권리도 보장할 수 없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십시오.

발언4_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2018년 8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429명의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당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가 낭독한 발언문의 전문)

40여 년 전, 제 어머니는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차적인 이유는 가난이었습니다. 이미 두 명의 아이가 있던 어머니는 아이 세 명을 키우기에

는 집안형편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의논해서 낙태를 결정했습니다.

경상도라는 보수적인 공간에서 태어났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제 어머니는 국가가 하는 말이라면, '다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하라고 하면 그에 잘 따르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더욱이 박정희 정권이 그래도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낙태를 했고,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모두가 낙태를 했다, 안 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낙태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보건법이 1973년에 제정됐으니 낙태는 이미 불법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불법이 아니게 된 것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구가 많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고,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 구호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정부에서 둘만 낳으라고 했고, 이미 둘을 낳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했고, 일반병원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낙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어머

니는 낙태를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낙태를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정의 빈곤이었지만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법을 어기면서 낙태를 합법화했고 오히려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해 정부 정책을 따라 낙태를 한 저희 어머니가 범법자입니까? 법을 어기면서 정책을 시행한 국가가 범법자입니까? 낙태가 죄라면, 그 범인은 국가입니다.

산아제한을 이유로 낙태를 합법화했던 국가가 이제는 인구증가를 이유로 낙태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낙태의 합법화와 불법화를 결정하는 이유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은커녕 아이에 대한 생명 존중도 없습니다. 그저 인구가 많아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차디찬 바다 속에서, 뜨거운 유치원 차량 안에서, 지하

철 선로에서,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있으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도 보장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에게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씌우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비정상 가족'이라는 낙인을 씌우고,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에게 '책임감이 없다' 비난하고, 전업주부를 '맘충'이라 비난하는 것을 묵인·방조하면서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선 순위를 매기지 마십시오. 여성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의 신체를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고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국가의 시선부터 바꾸십시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들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 건강권과 안전권을 인정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생명이 중요하다면, 여성들에게 낙태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불평등이 세습화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각자도생의 불안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낙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구조와 정책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추진한 국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책임을 왜 여성들에게만 전가하려고 합니까?

국가는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 통제하고 억압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국가가 원하는 목표 달성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십시오.

발언5_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먼저, 이 추운날씨에 또 거리에 서게 만든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한 여성분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께서 매번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논의를 이어가고 이 사회를 후퇴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이 싸움의 끝은 언제나 우리 여성들의 승리가 있을 것이란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폭력을 일삼을 때 정해진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닥치는대로 던지고, 부수고, 엄마를 밀치고, 때리고, 그 옆에서 악을 쓰고 울며 하지 말라고 외치는 저와 동생에게, 아버지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니 엄마가 니 동생을 죽였어!”

그 소란 속에서 갑자기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 폭력

의 원인을 엄마에게 돌리고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임을 어린 나이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당시, 저는 ‘동생을 죽인’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나 충격, 증오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일삼는 아빠란 인간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서?”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죽였다는데, 엄마가 죄인 같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엄마를 비난하고 탓하는 그 말을 엄마가 이혼하고 그 집에서 벗어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매번 폭력이 일어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었습니다.

고백하자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저는 사실 그 말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한명은 이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한명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뻔 했는데 다행이다. 저는 그 실체 없는 ‘죽은 동생’보다 차라리 죽는게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엄마와 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좀 더 커서 알고보니 그것은 임신중지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되었고 전 엄마를 더 두둔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에 대

해 사회는 비윤리적인 프레임을 씌우며 낙태를 행한 여성을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저는 그것들을 받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태한 여성들을 살인자 취급하는데, 제가 본 살인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란 인간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폭력이 없는 날이면 언제 다시 폭력이 시작될까 전전긍긍하고, 폭력이 있는 날이면 이 폭력은 언제쯤 끝이날까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단 한번도 주변 사람들은, 동네 이웃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걸거나, 엄마가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온 경찰들은 동네 시끄러우니 잘 해결하라고 말만 했습니다. 죽겠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살려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엄마가 잘못했다며 엄마를 비난합니다.

이후에 엄마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엄마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었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최선을 있을거야. 엄마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거야. 그리고 죄책감을 내비치지

않는 엄마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엄마는 선택을 한거지, 죄를 지은게 아니야.

돌이켜보면 이상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비윤리적이라는 프레임에만 노출되어 있었을 때였음에도 어린 저는 엄마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여성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낙인찍는거, 그 낙인은 여성 혐오적인 가부장제를 답습하고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매우 편하고 쉬운 억압 기제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듯, 폭력을 일삼는 죄인은 버젓이 떳떳하게 살아가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구속하려 듭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나랑 섹스는 해야해. 하지만 넌 순결해야해. 난 피임 안할거지만 너는 임신하면 안돼. 난 책임 안질거지만, 넌 낙태하면 안돼. 이 모든게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데서 오는 것들이고, 낙태죄의 존치는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승인한다는 것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로서 책임 방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현재 판결을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담

회는 졸속적이고 형식적이었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은 형법 처벌조항을 유지하고, 주수 제한을 하고, 상담과 숙려 기간을 의무로 두고, 의사의 거부권까지 두면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리에는 양과 한도가 없습니다. 권리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허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또 다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여기에서 국가는 또 뒷짐지고 가부장제 권력을 영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낙태죄’의 처벌을 유지한 채 국가가 인정하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몸을 또 다시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입니다. 국가는 여성이 임신중지를 선택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지만, 그러한 책무는 지지 않은채 또 다시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후퇴한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 수 있는 마지막 기대는 국회에 있지만, 과연 기대를 걸 수 있는 국회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가 이 국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법사위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공청회에 전문가라고 증언하게 된 이들의 명단을 보니 기가 찹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헌에 반대한다며 성평등 개헌 논의 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차별금지법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 낙태죄 전문가입니다.

야당의 추천을 받은 네 명의 진술인 중 음선필이란 작자는 법대 교수라는 직위를 걸고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며, 외국인과 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하고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권은 태아에게만 존재하는 것인지,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구성은 어떻습니까.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 연합은 어렵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누군가의 인권이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를 만나 “다수 의원이 반대”한다며 “법안 막아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윤한홍 의원은 ‘6주 미만’의 주수제한을 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1억원으로 삭감하며, ‘성평등’이란 ‘용어’가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남성이 없다며 문제 삼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의

인권, 평등권조차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서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를 존치시키려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생명권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들이 말하는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태어난 아이도 지키지 못하면서, 장애가 있다고, 성소수자라고, 온전히 나답게 살지 못하게 혐오를 일삼으면서 어떻게 생명권을 운운하며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십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죄에 반대하고, 젠더 정책에 반대하면서 드는 근거가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파괴한답니까. 누구에게만 건강한 가족인지, 누구에게만 건강한 사회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적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정상적인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의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법사위 외 나머지 국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니까. 평균 55세 남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강간죄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여성의 안전을 담보해줄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이 부족합니다. 남성 중심의 국회에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안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여성의 안전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정녕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지는 오늘이 국회 앞에 모인 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어떻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ILO 비준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모두 국민의 생명과 관련있는 법들입니다. 정작 태어날 아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무슨 생명권을 운운하십니까. 소중한 생명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그들의 명목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당시 냈던 환

영 성명 일부를 읽겠습니다

낙태죄를 통해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여성의 존엄한 삶을 위한 결정에 낙인을 찍고, 동시에 우생학적 사유를 들어 예외적 임신중지를 허용해 온 국가의 기만적인 행태는 평등한 개인들을 출산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존재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재단하며 모욕과 차별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은 물론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현재의 결정은 이러한 차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2012년 현재의 합헌 결정 후 6년 만에 압도적인 다수로 이루어진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평등과 존엄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잘 나타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어받은 국회와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가족 상황, 국적, 이주 상태 등 그 어떤 사유에도 상관없이 성적 건강과

재생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형법, 모자보건법과 관련 정책의 개정은 물론 모든 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발언6_ 파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세상에 '낙태'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낙태로 인해 여성이 처벌받는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문화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이 당연한 말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지겹습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살고 있던 저는 당장이라도 헌법재판소 앞으로 뛰어가 판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이 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싶어 기뻐했습니다. 한 번도 여성의 목소리를 국가가 반영한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 입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닌 임신 주수 제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금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스럽기만 합니다.

● 사문화된 낙태죄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는 여성의 낙태 건수를 줄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또한, 낙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만 처벌하며, 임신중절 여부의 결정 최종 권한을 남성인 배우자에게 주는 것은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법령으로 여겨왔습니다.

● 국가로 통제당하는 여성의 몸

한국의 낙태죄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상한 법입니다.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증가억제책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산아조절과 산아제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가족계획을 주제로 하는

계몽 교육과 피임 보급이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평균 출생 6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생 건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들은 피임 실패에 따른 보완적 방법으로 낙태의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왔다는 여러 증거도 존재합니다.

1970년대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낙태죄 관련 형법은 유지하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 낙태를 허용한 구조였습니다. 이 시기 마련한 낙태죄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6~70년대에는 낙태가 법으로는 불법이었으나,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되면서 2003년부터 국가는 출산장려정책이 시작하였고, 또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불법 낙태, 인공임신중절 시술 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진행되면서 ‘낙태’에 ‘태아

의 생명’이 적극적으로 기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낙태 수술에 대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지 수술비가 10배 이상 올랐고, 해외로 원정 임신 수술을 하러 가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수술을 받던 18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시술 의사는 내원한 여성에게 현금 650만 원을 인공임신중절 시술 비용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시기 수많은 여성이 낙태죄로 인하여 법적, 의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임신 중지 수술로 인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낙태를 통해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가부장적인 구조로 통제해왔습니다. 인구 증가가 필요 없는 시기에는 만연하게 낙태 허용 사유를 이용하고, 인구증가가 필요한 시기에는 낙태죄를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이미 근대 시기에 우리는 우생학적 정책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재생산권을 통제하고, 인간을 적격자와 부적격자

로 나누며, 공동체의 재생산을 관리하려 한, 결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생학이 잘못된 과학과 신념으로 비롯된 과거 학문일 뿐일까요? 이 우생학의 기획과 형법 제270조를 개정해 낙태를 엄중 처벌하고, 또 입법 예정에 있는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죄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결정하겠다는 태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태아에게서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이 어떤 임신 중지는 가능하게 만들고, 어떤 출산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의 의미와 과거 우생학적 논리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또 예고 안에는 다른 의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서면동의서나 의사의 거부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은 임신 중지 시술을 거부하지 않는 의사, 거부하지 않는 부인과 병원을 찾아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기존 낙태죄가 죄였던 시기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이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인해 여성의 임신 중지를 거부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명분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지는 의료행위입니다. 의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후기 임신 중지로 넘어가는 경우 불법 수술로 내몰려 법적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신 14주차는 실제적인 임신 3개월이 아닙니다. 임신 주 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신 14주는 한 두 번 생리를 건너뛰고 생리를 왜 안 할까 의심이 들 때쯤의 시기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쉬겠지만, 몸의 변화를 눈치채기 어렵거나, 생리 불순이 심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임신 14주차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신 14주 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있는 사회에서 여성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낙태죄 폐지가 모든 여성의 행복을 책임져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태죄가 없더라도 여성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해 기뻐하는 여성들을 두고 스텔싱을 하겠다는 악성댓글이 난무했습니다. 스텔싱은 남녀가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낙태죄가 사라졌으니 동의하지 않는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시키고, 낙태를 시키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낙태죄는 가부장적인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낙태죄가 사라진다고 하니 다른 가부장제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스텔싱을 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괴롭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같이 기존 국가와 사법체계가 가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모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정책들을 점검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재생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태도 또한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있어 낙태죄 폐지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낙태죄 폐지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상식입니다.

낙태죄를 유지하겠다는 국가의 자세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국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동과 또 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낙태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 한, 낙태로 인해 여성이 처벌받는 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문화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발언7_ 박들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여성민우회의 글을 보고 '국회 앞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면 겹겹히 최소 20년 자신의 인생을 육아에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인생만 바치면 몰라,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않는다면 가능한 한 일일까요?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아이는 여자 혼자만 드나요? 근데 왜 처벌은 여성 혼자 받아야하나요? 저는 이부분에서 큰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종교계에서 생명존중과 교리를 이유로 낙태죄유지를 원한다면 생물학적 아버지도 처벌가능하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진정성이라도 인정해줄텐데 지금의 행태는 그다지... 그냥 여성을 처벌하고싶어 안달이났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종교믿는것도 아닌데 왜 종교계분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영향받는 법을 종교적이유로 주무르

려하는걸까요? 이것부터 너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네요. 당신들 신자나 신경 쓰세요. 저는 그 신 안믿으니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강해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종교를 믿기는 하지만 내 인생에 더 중요한것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단능 선택하겠다?'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 역시 개인의 선택과 자유. '종교를 믿지않고 출산육아보다 중요한것이 있어 임신중단 선택' 당연히 개인의 선택과 자유. 이게 어려운가요?

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가당치도 않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낙태하지 말고 피임하면 되지않느냐'입니다. 학교 성교육시간에 잤나요? 100% 피임법이라는게 존재하나요? 포궁을 적출하지않는한? 가장 흔한 피임법인 콘돔의 피임확률은 80~85%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구피임약도 확률이 100%는 아닙니다. 게다가 여성의 몸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주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몰랐나요? 이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여성의 몸과 출산에 관심이 없다면 임신중단 논의에 왈가왈부 할 자격이 있을까요?

발언8_올 (행동하는 간호사회)

안녕하세요 행동하는간호사회 올입니다. 작년에 현재 앞에서 간호 학생으로서 낙태죄 완전 폐지의 발언을 했는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발언대 앞에서 서있다는 게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은 저 개인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스무살 초반, 자신의 성욕을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때문에 극심한 임신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만 했습니다. 임신 중절을 하고 싶어도 그 법적인 책임 또한 제가 져야만 했습니다.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처벌과 두려움과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죄 존치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임신 중절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너무도 답답합니다. 임신과 출산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 여성 자신

이어야 하며, 실제로 가장 속고하는 당사자는 여성의 파트너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에 오신 국회의원 분들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생명이 귀중하십니까. 이미 태어난 생명도 귀중합니다. 이미 태어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이 소중한데 왜 이미 태어난 이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낙태죄는 정상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낙태는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말입니다. 낙태가 남용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에게는 세상이 마치 흑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도화지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성한 태아, 혹은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이사이에는 촘촘하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해야 했던 사람부터 낙태를 강제당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지금 이 앞에서도 제발 흑과 백이 아닌 다양한 세상을 봐달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태아의 생명 여부를 떠나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논

의가 지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청회에 오신 국회의원 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9_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낙태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도 낙태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낙태죄를 존속하는데 침묵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회의 근무 태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다? 20일 남짓 남았는데 공청회를 여는 것이 법사위가 할 일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편파적인 인원구성은 기만이 아닐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국민들 앞에서 선출직인 국회가, 낙태죄같은 오래된 악법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선출직이 게으른 건 나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가장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다름아닌 국회입니다. 낙태죄는 정치적 득실에 따라서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국회가 낙태를 그저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골치아픈 문제로 여기거나 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죽어가는 여성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체 하지 마십시오.

낙태가 죄라서 낙태시술은 음성화되고, 낙태가 죄라서 여성들은 그늘로 숨어든 병원과 약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낙태가 죄라서, 적절한 의료적 시기를 놓치고, 낙태가 죄라서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죄니까 의료행위의 질 관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건강 위해는 고스란히 임신중지가 필요한 몸들에게 부과됩니다. 낙태가 범죄면 이런 고통은 다시 세상에 꺼내어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언해 왔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겨울이 올 때까지 국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죄인이 되는 사람이 없게 한 다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들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장벽을 없애는 일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법사위가 편파적인 공청회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발언10_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신지혜입니다. 방금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기자회견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이 곳에 왔는데요. 추운 날씨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러 와주신 많은 여성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0월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어느새 두 달이나 흘렸습니다. 두달동안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똑바로 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정부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600명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살인자’라며 맞불집회를 하던 현장에서 분노를 담아 ‘낙태죄 폐지’를 힘껏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남성의원들이 ‘낙태죄 존속’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을 때 5000명의 의견을 모아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를 오롯이 폐지해야한다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두 달째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공청회 진출인 중 대부분은 ‘낙태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열리는 공청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말그대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입법절차에 반영하고자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하는 공청회를 열고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정도껏입니다.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오늘 공청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낙태죄 폐지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추미애가 잘못이다, 윤석열이 잘못이다, 몇 달째 정쟁으로 다투면서도 낙태죄 유지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여야를 보며, 끔찍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성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강의하는 대신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영상은 45분 수업시간을 딱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길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합니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임신중절 수술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생생한 건 수술 장면을 보여준 탓도 있지만, 그 영상이 강조했던 메시지 탓도 있었습니다. 영상은 임신중절 수술하기 싫으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시기 학창시절을 보냈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한 피임방법은 왜 알려주지 않는지, 그리고 임신은 쌍방의 책임인데 왜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는다라는 것만 안 것은 대학에 와서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기혼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란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것이라는 편견은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이 돼서야, 제가 보았던 임신중절 영상 너머에 있었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 뒤에 있었던 여성들의 처절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저 역시 헌법재판소 앞에 갔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어말하기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 현장에 함께하셨을 것 같은데요. 폴리스라인을 두고 두 세계로 나뉘어있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납니다. 한쪽에선 낙태죄 폐지를, 다른 쪽에선 낙태죄 유지를 외쳤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살인자 취급했습니다. 중학교 때 봤던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끔찍한 사진을 들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사람들이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낙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으면서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며 혼을 냈습니다.

그 날 환호를 지른 건 낙태죄 폐지를 외쳤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일치로 판결했습니다. 66년 만에 드디어 임신하고 출산해야 하는 몸이 아닌 여성의 몸 그 자체를 존중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상은 차갑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낙태죄를 역사 속으로 없애버리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보다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의사에게는 진료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에 사라지는 대신 더 잔인하게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을 경악하게 했던 가임기 지도처럼 말입니다.

전국에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이나 사는지 지도로 만들었던 가임기 지도와 낙태죄는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출산하는 몸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 말입니다.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은 출산을 의무로 여길 때만 가능합

니다.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듣키지 않아야 하고, 여성은 계속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뿐입니다.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안전한 의료행위로서 임신중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의료행위 임신중절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졌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중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낙태죄’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고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낙태죄 폐지 목소리는 국가가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써 통제하려는 시도를 2020년에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대신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여성을 그 시작이 바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87년생인 저는 학교에서 낙태를 ‘죄’라고 배웠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듣고 자랐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온전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인권의 미래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 가장 최선의 결정은 오직 여성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지를 결정할 때 더이상 국가의 허락은 필요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이 건강한 의료행위로서 인공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권리입니다.

여성들은 정부와 국회의 여성에 대한 통

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은 내 몸에 대해 결정할 때,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고, 국가가 나를 처벌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인권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당연한 말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성들의 힘으로 이미 사회에서 죽어있는 낙태죄를 아예 법전에서 삭제합시다. 감사합니다.

발언11_ 이아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

반갑습니다. 전청소년행동연대 날다에

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청년진보당 당원 이아란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시고 발언 자리 열어 주신 모낙페 선생님들과 참여자 여러분께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낙태죄 폐지라는 역사의 진보를 눈앞에 두어야 할 시기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정하게 웃으며 보내야 할 연말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와 한탄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안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데?' 였습니다. 주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임신중절 자체를 규제하는 것도, 낙태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여성의 몸과 결정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중절시 상담의무와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만족하실 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낙태죄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려는 정부에게 대선과 집권 초반에 약속했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약속조차 남아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숙려 기간과 상담 동안 여성을 어떻게든 붙들어

매는 것이, 시술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행위 거부 또한 경악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담과 숙려절차를 다 지나 의료행위에 들어서려는 순간, 의료인이 거부하면 또 다시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여성을 이리로 저리로 빙빙 돌리시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은 병원진료와 숙려기간과 상담의무와 의료인의 거부 속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임신중절을 하라는 것입니까?

임신중절의 주수를 제한하는 이 법이, 성평등자문위도 무용지물로 만들어가며 강행한 이 법이, 소위 '답정너'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밀어붙이는 이 법이, 여성의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여전히 무시하는 이 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과 몸이 여전히 처벌받는 이 법이 낙태죄 폐지라며 역사적 진보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꼴은 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 공청위에서는 6:2라는 희대의 비율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낙태죄

발언12_ 스머프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존치 측이 과반수를 넘는 기울어진 공청회입니다. 국무조정실 문건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답은 정해져있으니 여성은 따라오라는 정부와 국회의 선전포고입니까? 여성들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낙태죄 존치로 갈테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낙태죄는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위헌 판결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답은 낙태죄 전면폐지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임신테스트기를 붙잡고 제발 비임신으로 나와달라고 기도하던 심정으로 절실히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제라도 정신차리시고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답은 오로지 낙태죄 전면폐지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낙태죄 존치로 뭉개고 가겠다면 날다의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여성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절반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끝내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스머프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2012년의 한 순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는 지금만큼 낙태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낙태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저에게 당시 현재의 결정은 생소하게만 다가왔습니다. 그저 모든 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법을 굳이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헌재가 참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임신중지 수술을 받던 10대 여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의 언론들이 이 일을 ‘10대 여성의 일탈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 정도로 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낙태죄의 존재가 문제였다’는 시각으로 보도한 뉴스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어

쩌다 일이 저렇게 되었을까. 참으로 불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던 건 보다 꼼꼼하게 뉴스를 읽고 난 후였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부모들이 임신중지 수술을 위해 비밀상담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병원을 직접 수소문 했다면 임신 중지를 만류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기도 전에 상담 사실이 새어나갈지를 가장 먼저 걱정했다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 병원을 수소문 했다면 그 병원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의료사고가 있지는 않았는지, 과잉진료를 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그리고 의사는 친절한지를 가장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처벌되는구나. 낙태죄는 아직 존재하는구나. 임신중지는 단지 의료행위가 아니라 처벌이 되고 그래서 금기시되는 일로 여겨지고 있구나. 그래서 비밀유지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구나.

심장이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낙태죄’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인 병원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낙태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법은 사람을 벼랑으로 내몰고 위험에 내던지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에 내몰리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SNS에서 ‘나는낙태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공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유된 많은 경험들은 ‘낙태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모멸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을 겪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경우 임신중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암암리에 병원을 찾고 찾았으며 의료행위 과정에 대해 제대로 질문조차 하지 못 하고 등을 떠밀리듯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벌 받을 지도 모를 임신중지를 부탁하는 사람은 의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임신중지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기는커녕 원치 않는 임신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많은 경우 여성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초음파 사진

을 보여주며 굳이 임신중지를 해야겠냐는 의사, 잘못을 했으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는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가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만하고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요구를 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 4월 10일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133일 간의 1인 시위의 마지막 날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1일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역사적인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긴 시간 이어져온 싸움 끝에 이제는 낙태죄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겨울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향해 한발 걸어난 사회가 다시 뒷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14주의 허용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24주까지는 예외적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한 사유와 조건을 늘렸기에 최선의 법안을 마련한 셈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부처 간 논의의 결과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했던, 그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라면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믿음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입법안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고 결국 국회로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낙태죄 관련 입법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선이요? 개선이요? 대한민국 정부에 말합니다. 기만하지 마십시오. 오만 떨지 마십시오.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 외에 그 어떤 개선도 최선도 없습니다. 14주의 주수제한, 예외적 허용사유 추가, 상담과 숙려기간 의무화가 실효성도 없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이미 많은 분들이 훌륭히 비판해주셨기에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점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더 많은 예외를 만든다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어떤 임신중지는 처벌을 받을 일이고 어떤 임신중지는 그렇지 않다고 구분하는 현실은 결국 여전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매하게 나뉘진 그 기준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임신중지, 낙태, 이런 단어들을 잠시 지우고 이야기 생각해봅시다.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 도리어 그런 일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상황, 이런 위험 때문에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고발의 빌미가 잡히는 상황, 그리고 최선의 의료적 선택을 하고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으며 의료행위 과정을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몸에 대한 기본권이 박탈되도록 법이 조장하고 국가가 방조하는 상황. 한 국가 내에서 이런 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것은 대규모의 인권 탄압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기본권 박탈입니다. 집단적인 억압이자 국가 폭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법안은 타협조차도 아닌 퇴행입니다. 사실 타협이나 협상조차도 해선 안 됩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원칙에 따라 관철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임신중단은 괜찮고 어떤 임신중단은 그렇지

않다는 법률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임신중지는 안전할 권리, 신체에 관한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결코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바로 ‘낙태죄 폐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성이며 동성애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제가 낙태죄와는 가장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이어져온 낙태죄 폐지 집회에 함께하며 그런 저에게 ‘낙태죄’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성주의를 배웠던 공동체의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시선을 통해 논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적인 사유임을 강조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며 그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임신중지를 처벌할까요? 모든 형벌은 인신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때문에 사회는 결코 아무 행위나 형벌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등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며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거나 지켜야만 하는 규칙을 어겼을 때에 형벌이 가해집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중지도 바로 그런 일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임신중지를 처벌한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봅시다. 임신을 하면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성은 반드시 출산을 해야만 하는 존재,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낙태죄의 존재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는 성역할에서 벗어날 때, 그런 일을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젠더는 시스템이며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만 작동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여성에게 ‘어머니’라는 성역할이 강요되기 위해선 무게와 성격이 분명 다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남성의 ‘아버지’ 성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낳고 기르라는 성역할을 강요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반드시 이성애에 기반 한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안의 누군가는 ‘딸’로서 누군가는 ‘아들’로서 따라야 할 역할을 주입받으며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사회는 이런 삶에 정상성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비정상적으로 몰거나 아예 없는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전통적인 성역할과 이성애 중심주의,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존재하거나 평등하게 존중 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낙태죄를 만들어 낸 시스템이자 동시에 낙태죄로 인해 유지가 가능한 사회 체제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상대방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지정된 성별을 거부하고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그런 사회 속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성소수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애자로 살고 결혼을 했지만 강요되는 성역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맞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그런 욕구가 없다고 해도 ‘정상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굳이

부부라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형식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여자답게, 남자답게,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한다, 때가 되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에 지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이야기 드리며 발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낙태죄의 존재는 분명 여성에 대한 집단적인 인권탄압이자 억압입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삶을 위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낙태죄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낙태죄는 여자들의 문제지’, ‘나는 낙태죄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니요 이것은 당신들도 연관된 문제이며 분명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또한 낙태죄의 유지가 가능하고 또한 낙태죄로 존재가 가능한 지금의 사회는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아니요, 더 이상 이런 식의 세상을 유지하는데 동참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거부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 요구합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물러나 있지 마십시오.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동시에 이제는 정말 우리 사

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장해주시십시오. 모두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성역할이나 이성에 중심주의, 성차별과 성별규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중간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태죄 하나조차 제대로 끝장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해방과 진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낙태죄조차 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지금보다 더욱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낙태죄 폐지는 움직이길 거부해온 사회가 스스로에게 채워놓은 족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족쇄를 직접 박살낼 것입니다. 저는 국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그 과정에 함께하기를 지금도 너무 늦은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13_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안녕하세요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린입니다

다. 대학생이자 기후활동가 이기도합니다.

오늘 발언준비하면서 17년부터 대학에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 했던 활동들이 되새겨보았습니다. 피켓을 만들고, 기자회견에 나가고, 퍼포먼스와 검은시위에 참여했던 사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잠시 추억을 회상하면서 열심히 투쟁해왔구나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2017년 청원 23만명, 2017년 검은시위, 2018년 9월 269명 피켓퍼포먼스, 19년 #해넷다_낙태죄폐지 헌법불합치 선고 그리고 곧 2020년이 지납니다. 우리는 정말 가열차게 우리의 임신중지권을 위해 재생산권을 위해싸워왔습니다. 그렇게 가열차게 싸워서 저희가 얻고자했던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낙태라는 처벌의 시대를 끝장내고, 낙태죄라는 말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길 바란것이였지. 몇주는 합법이고, 또 몇주는 불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것이 아닙니다.

최근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사보험이 있어서 이번년도 산부인과 진료를 본 처방전을 뽑으려 산부인과에 들렸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국가보험 처리도 되지 않지요. 사보험은 다른 진료보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들도 더 많

고 까다롭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처방전은 따로 뽑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은 진료비와 약값이 다른 진료보다 비싸도사보험도 국가에서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100퍼센트 개인부담이지요. 이 사례만 봐도 국가가 여성을 대하는 생각하는 수준이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얼마나 국가에서 통제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언니들을 보면 낙태경험이 많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것조차 창피해합니다. 그걸 숨기고 싶어합니다. 왜 그래야할까요. 감기걸릴때 집앞 어느 병원에서도 처방전을 받고 진료를 받는것처럼 되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금 입법안을 마련하고, 처벌이 아닌 권리를, 허락도 제한도 필요없습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로 불리며 '낙태죄' 폐지의 시발점인 '검은 시위'에 참여했던 우리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은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

니다. 변혁당학생위원회도 그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14_ 장갑린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여아가 100명 태어날 때 남아는 116 (백열여섯)명이 태어났던, 여아감별낙태가 절정에 달했던 악명 높은 해에 운 좋게 태어날 수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30여년 전 젠더사이드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저는 무사히 초등학생이 되었고, 5학년 토론 수업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낙태에 관한 찬성 VS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는 교육 영상이랍시고 다들 본 적이 있을, 앞서도 많이 말씀해주셨던 영상을 시청합니다.

이제는 조작 영상이라는 진실이 밝혀진, 그 시절 흔히 낙태 비디오라 불렀던 (소리 없는 비명 The Silent Scream) 영상입니다. 어쩌면 그 수업은 토론 결과에 상관없이 목적이 정해져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토론에 충실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낙태 찬성 편에 앉아서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시 재생산권은 커녕, 자기결정권이 된지 주체적인 성적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은 당연히 없었지만 태어날 아기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여성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은 5학년의 상식과 감수성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곧 나일 수도 있겠다고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20년 전 이 토론의 기억이 선명하 이유는 토론이 한창 불붙은 막판에 결국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자기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낙태를 해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며 울며불며 하던 11살의 제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상황이 불가피해 낙태를 선택했더라도, 낙태를 한 여성은 마음에 짐을 엮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11살의 여자 아이는 그 죄책감,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감정이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

이 낳던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게 억울해서도 아니었고,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게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임신중절을 받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여성의 그 심정이 안타깝고 가여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여기 서있는 저는 더이상 죄책감에 동일시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느껴야 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안전하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안도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여성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는 단지, 여성도 시민 구성원의 한 명으로 온당히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위함입니다. 여성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성들은 이미 너무나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낙태죄 이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지 이 굳건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도구로만 여기는 국가가 귀를 닫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고, 얘기해왔습

니다.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낙태의 권리가 여성의 삶 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여성 시민이 평등한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종착점은 아니라는 것.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 권장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받는다면, 임신중절 자체는 매우 간단한 수술이고, 다음 임신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

낙태죄가 남성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으며, 기독교가 그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응해왔다는 것.

한국의 낙태 범죄화 낙인은 기본권적으로 국가에 요구해야 하는 기초적 재생산 서비스조차 정당하게 제공받을 수 없게 하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논의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성과 개인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성혐오이자 국가 폭력의 발로라는 것.

작년 4월 11일, 다시만난세계와 아모르

파티가 울려 퍼지던 안국역의 저녁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경험을 함께했습니다.

1953년 낙태죄가 시작된 이래, 66년의 역사를 끌고 온 낙태죄...그 악법의 폐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벅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이렇게 쉽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낙태죄를 형법에 부활시켰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을! 주수 기한,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여부 등을 들먹이며 교묘하게 낙태죄를 부활시켰습니다. 아니, 교묘한 방식이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꺼내놓은 개정안은 여성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성과 재생산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여성의 몸을 억압하며 통제하겠다는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기만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게으른 방식으로 다시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

하고 억압할 것입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규범적이고 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강제할 것입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지속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폭력을 자행할 것입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계속해서 차별과 위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실 안에서 낙태 찬반 토론이 아닌,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림들은 갓을 쓴 채로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소리쳤지만 지금은 한 때 유행했던 유머처럼 인터넷상을 돌아다니는 호주제처럼, 낙태죄도 구시대적인 발상의 지나간 역사로만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이 마구잡이로 망쳐 놓은 세상에서 기후 위기에서부터 약자 혐오까지.. 앞으로도 계속 싸우며 이곳에 살아남아야 할 다음 세대에게 낙태죄라는 유산까지 건네주고 싶지 않습니다. 되도록 않는 조건이나 숫자로 장난치지 말고, 더이상 여성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십시오. 이제는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낙태죄 폐지 이후를, 상상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신중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으로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배틀그라운드> 속 윤정원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여 읽으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78페이지

인권과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 임신중지 / 윤정원

#모두에게_건강을_추구할_권리를
생명권 대 선택권의 이분법으로 임신중지 이슈를 바라보기는 쉽다. 그리고 생명은 너무나도 강력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찌면 그 답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임신이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몸, 삶, 시간은,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점,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그 이분법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중략)...

출산이든 임신중절이든, 그것이 진정한 여성의 옳은 선택이었든 적이 있는가. 낙태 근절 비디오가 아니라 월경주기와 가임기 계산법을 학교에서 배우

고, 약국에서 약사와 눈 마주치며 “피임약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파트너의 성기에 내가 좋아하는 향의 콘돔을 끼울 수 있고, 임신했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고,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임신중절과 출산에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무엇을 선택하든 소독된 진료대 위에 누워 경험 있는 의료진에 의해 안전하고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아이 걱정 없이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내 아이가 엄마만 있는지 부모가 다 있는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때, 우리는 출산을 ‘선택’할지 임신중지를 ‘선택’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현재를 ‘살고’ 있는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발언15_ 춘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춘입니다!

저는 정부가 지나치게 강조하며 얘기해왔던 30대 가임기 여성입니다. 현재 남성애인과 거주 중이며 어떤 누군가는

그런 저를 문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저를 보는 시선과 비슷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어떻게 될까요? 저는 신체적으로는 국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정상성'과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성애를 하고 임신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긴했는데 혼인 신고 항목이 누락되었군요. 국가의 마음에 속 드는 일은 이렇거나 어렵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출생률에 그렇게나 집착하면서도 국가가 허락한 정상가족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반기지 않습니다. 아니 차갑고 냉담합니다. 장애도 있어선 안되고, 너무 가난해서도 안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문란한 동거 커플이 감히 아기를 가지다니...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반발심만 커졌습니다. 그들이 설정해 놓은 정상성에 질려 버리는 바람에, 결혼하라는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는 불효 k장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저 덮어두고 여자로 태어났다면 응당 거쳐야 할 관문인 승고한 임신 경험이라는 말로 통쳐 버리는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밖에 개인적인 신념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여성을 벌춤으로서 끌고가려는 정책방향

성으로 저같은 여성 개인이 출산에 대한 어떤선택을 하게되는지 정부는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아십시오. 놀랍게도 여성은 생각할 줄도 알고 스스로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낙태한 셋째 아이가 아직도 가끔 꿈에 나오는 저희 어머니도 처벌 대상으로 보시는지요. 젊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아니꼬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저만의 기분탓일까요? 여성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여성도 국민입니다. 저는 가임기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발언16_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생후 36주인 갓난아기를 입양한다는 조건

으로 20만원을 받는다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팔 수 있냐며,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논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안전을 고민하는 동안 그 여성이 왜 그런 글을 작성해야 했을지는 고민하지 않더군요. 그 여성과 그 아이의 사연이 바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의미 있게 치러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여성은 아이가 36주 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은지 3일 만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직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모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양육할 능력도 되지 않으며, 함께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사연들을 이미 여러 번 접했다고, 이건 여성의 잘못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국회의 그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1.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
2.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임신중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인프라

3.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
4. 여성의 재생산이 존중받을 수 있는 노동권의 보장

저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편파적인 사법 정의의 문제를 더 강조하려 합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서 실행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형법으로 처벌하는 대상은 여성과 의사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의사에게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대상은 여성 뿐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처벌과 낙인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가해집니다. 그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는 어떠한 처벌과 규제도, 비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회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임신중단의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그동안 법조문에서 누락되어 왔던 남성에게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이렇게 본회의 하루 전에서야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성에게 전가된 책임을 면제하려 했겠지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남성에게 전가될 책임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평등과 자유를 내세워 남성에게 전가될 책임을 여성도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

이런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며 수 개월을 투자했을 겁니다.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말을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안 심사를 해서 국회 본회의 안건상정과 의결을 하루 만에 해내겠다는 것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제스처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있었습니까.

올해 개원한 21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18명의 의

원들 중 여성은 백혜련, 전주혜, 조수진 의원 단 3명 뿐입니다. 윤호중, 김도읍,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훈, 신동근, 최기상, 유상범, 윤한홍, 장제원, 최강욱 남성 의원은 15명입니다.

국회에는 정부 개정안 외에도 4개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발의안 대부분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열린 공청회 진술인 8명 중,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사람은 오직 2명 뿐입니다.

법사위 위원 18명 중, 15명은 남성. 공청회 진술인 8인 중, 6명은 반대 입장. 국회 본회의 바로 직전에 소집된 공청회.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남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국민들의 삶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있는 와스콥시 의회도 그러했습니다. 전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와스콥시 의회는 정말 손쉽게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임신중단이 남성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으로 보장되도록 만들어낼겁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과 현실을 고려하고 그것을 입법의 형태로 개선해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이 여성일 경우에는 참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여성의 삶은 입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낙태죄처럼 문제의 책임을 오롯이 여성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생명권, 경제권, 노동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듯 말입니다.

오늘의 법사위 공청회와 내일 이뤄질 국회 본회의는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일 겁니다.

여성의제를 슬하계 기각시켰던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에서도 뻔뻔하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지, 여성의당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켜보겠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 오늘, 내일 이렇게 어떻게든 넘어가면 될거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심하는 동안, 여성들은 기를 쓰고 국회, 시의회, 정부, 각계 각층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 여성들은 임신중단이 여성의 기본권

발언17_ 정다빈 (여성의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온 여성의당 경남도당 권리당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하고 계신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님 지역구이지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 직접, 제 목소리를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콘돔착용을 거부한 관계 후 월경주기가 되어도 월경이 시작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몰아쳤습니다. 관계 후 2주 이내였기 때문에 테스트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굶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생기고 있거든 영양부족으로 "자연유산"이 되도록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의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문제가 생겨 제 꿈을 이어나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저는 재능 있는 여성입니다. 초

등학교 입학 전부터 동네에서 독특하면 서도 아름답게 말을 하는 아이로 유명 했습니다. 학창시절엔 백일장에서 수차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랬던 끼를 살려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계속 관련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글쟁이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스페인어, 코딩, 자전거 수리, 영화 분석, 철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가 소중한 생명입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면, 저 역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는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저는 천 구백구십년대 초반 여아낙태가 극심하던 시절, 아들을 낳으려고 수차례 낙태 후 오진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도 사주에는 아들 노릇을 한다며 어른들의 기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어릴 때는 언제나 제 존

재가 불편했습니다. 여자아이라는 것이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여자아이의 몸은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질 몸이기 때문인데요. 격한 운동을 하거나 크게 다치면 안 된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었습니다.

내가 나라서가 아니라 내 몸에 아이를 가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기분을 아십니까?

90년대 초반 태어난 여성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결혼적령기가 되었고 그중 하나인 저는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그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가 강요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운 좋게 태어난 저는 낙태죄 폐지 이슈를 볼 때마다, 낙태죄 찬성론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가 트렁크 가방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담아 옮기는 여행용 캐리어요.

저는 가방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소

중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뱃속에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가 아닌 저를 보십시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십시오. 여성이 자신이 계획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낙태죄 폐지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당장 일부러/ 헤프게 섹스를 하고서 임신을 한 뒤, / 낙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 자신이 살인이 불법이 아닌 세상이라면 자신이 살인자였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낙태죄 위험 판결이 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의 '남용'을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더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주요한 판결취지로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개정되는 법도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청회장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 얘기한 뒤 나오게될 졸속 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참여한 이 기자회견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방향대로만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고려하지도 않은 법안이 나와서 이렇게 에너지소모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은 현재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에도 우리 지역구는 평균연령이 높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더 크게 들릴 수 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출생률 제고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층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만 그 도시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운용비용도 그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젊은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곧 장기적으로 봤

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일 텐데, 근시안적인 태도로 고령층의 목소리만을 집중해서 듣는다면 그것이 포퓰리즘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마산회원구를 대리하는 국회의원이시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의 생존을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십시오.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면, 지금 당사자들이 외치고 있는 낙태죄 폐지가 가장 상징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낙태죄가 있어야 출생률이 높아질거라는 착각은 집어치우십시오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지금 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독_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

대법원은 국민의 가장 최우선 과제 무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젊은 맘 카페에 가도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는 글은 좋아요를 정말 많이 받

습니다.

낙태죄로 인해 낙태할 권리를 잃어 버리고, 태어난 아이를 억지로라도 키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이 살기 힘들고 지치는 세상에 그것이 과연 필요한 법 일까요? 과연 따남들의 부모가 이법을 환영할까요? 국민의 의견 묻지 않고 뜬금없이 나온 법입니다.

낙태법 이전에, 피임약이나 미프진 홍보를 더해야 합니다. 오히려 낙태를 더 간소화 하고 비용축소를 해서 그 아이가 최소한의 시간 전에라도 낙태를 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 아닐까요? 준비 안된 상태로 아기가 태어나서 출산율이 올라도 그건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방식과 크게 어긋납니다.

헌법상 국민회의원은 지역구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독_민정 (행동하는간호사회)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의 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대독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료진들의 입장이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병원에 찾아오는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료인의 목소리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과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여성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이 다수인 간호사 집단에서도 임신 중에도 인력부족으로 야간노동, 고강도노동,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사직을 권고 받거나 부서이동을 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순변제라는 악습이 일어나고 실제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낙태' 만 죄로 처벌하는 이런 상황에서 임신중절은 필수불가결 한 일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시술로 인해 건강권의 침해를 받는 여성들. 금전적, 접근성의 문제로 또 다시 폭력의 굴레에 갇히는 여성들. 이들이 필요한 의료적 처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낙태죄 개정안이 아니라 여성들이 불이익 없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법사위에서 구성한 공청회 진술인은 총 8명으로 정부(법무부)·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법조계/학계/의료계/종교계의 각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개정안 외에도 4개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소관위에 회부되었다. 이에 따르면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전체의 2/3인 4건이다. 그럼에도 현재 구성된 공청회 진술인을 보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야당의 추천을 받은 네 명의 진술인(이홍락, 연취현, 음선필, 최안나)은 물론이고, 법무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진술인 두 명(정현미, 이필량) 또한 현재 정부의 개정안 수준에서 의견을 진술할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는 이미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요구해 온 것이고, 헌법재판소 또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각계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도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전체 발의된 법안에 따른 균형 및 실질적인 민의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흐름을 파악하면서 제대로 된 입법 방향을

고민하는 공청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인의 구성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파적인 구성의 공청회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이번 공청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는 이번 공청회가 12월 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청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상정 및 의결까지 단 하루로 가능할 리 만무하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더불어 관련 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주문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법 개정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는커녕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입법부의 역할도,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전혀 없다가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 이제 와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벼락치기로 해치우려는가.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와 연결되는 ‘낙태죄’ 관련 법안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될 법안이 아니다.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 졸속 개정을 고려한다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한다. ‘낙태죄’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여성에 대한 책임 전가와 처벌이 아닌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떤 진지한 고민도, 검토도 없었던 법사위가 단지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을 편파적으로 구성하여 졸속 개정의 명분을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낙태죄’ 폐지만이 이미 명확한 근거를 통해 도출되어 온 유일한 답이다. 국회 담벼락을 넘어,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우리의 요구는 이미 공식적인 목소리이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국회가 낙태죄의 온전한 폐지라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2020.12.03.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
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
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12월 7일 온라인액션

제목 : ‘낙태죄’ 폐지 촉구 온라인 액션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일시 : 2020년 12월 7일-2020년 12월 8일

내용 :

- 방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문자/카톡/SNS로 ‘낙태죄’ 폐지 촉구 하는 메시지 보내기/댓글 달기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¹
과연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처벌법 전면 폐지만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한다는 것!**

-법사위 공청회: 12/8(화) 오전 10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갑자기
낙태죄 공청회 개최.
그런데 이 공청회에 임신중지 비범죄화라는
여성의 요구를 반영할 발언자는
8명중 2명뿐.
이대로 본회의 까지 처벌법을 그대로 남긴 법안을
가져간다면 **여성의 목소리는 그저 묵살되는 것.**

2021년 낙태죄 없는 세상을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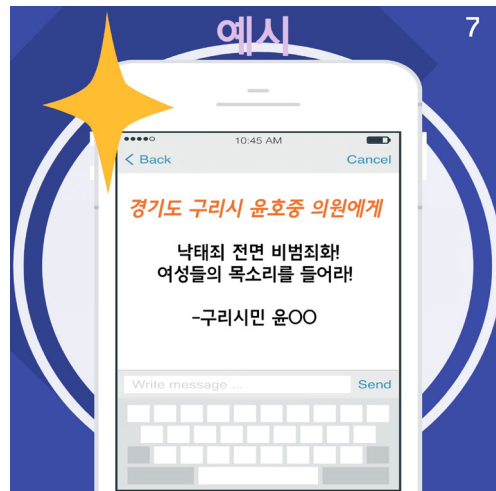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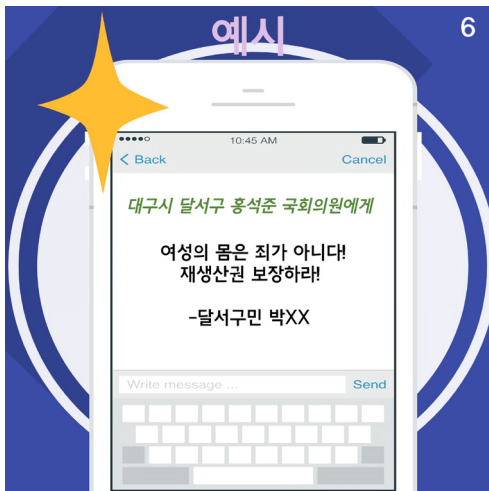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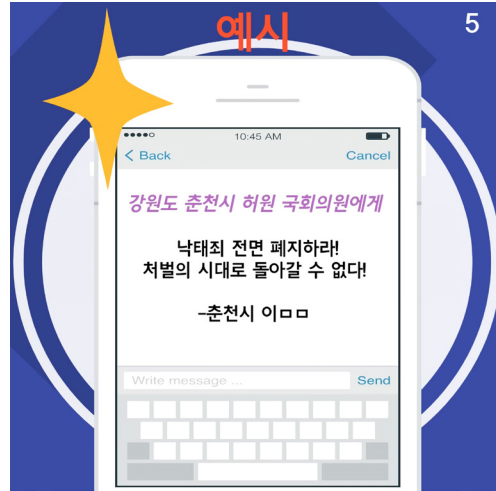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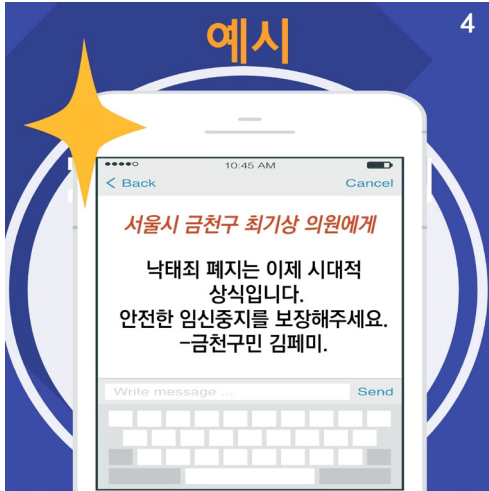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라"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게
위의 내용을 포함한
문자/카톡/sns 메시지 보내기/댓글달기

참여방법

3

1. 아래 링크로 들어가 국회의원/
연락할 방법을 선택한다
2. "낙태죄를 폐지하라",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라"가 포함된
메세지를 보낸다
3. 보낸 메세지나 댓글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한다.
이 카드뉴스를 리트윗/공유한다



2020년 12월 14일 성명/논평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파적인 진술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타당한 방향은 바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즉 ‘낙태죄’ 폐지라는 사실이다.

공청회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삶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태아생명권과 여성결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중지는 온전한 의료행위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해외 법률을 모방하여 임신중지, 사유, 상담 등의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처벌 조항을 차례로 폐지함으로써 임신중지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는 전 세계 법 개정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낮은 임신중절 건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주민 법사위원의 발언은 ‘낙태죄’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국회 안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밖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죄’ 관련 법안은 결코 편파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중차대한 의제임을 알렸다. 4시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 참석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목소리를 모아 외쳤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더 이상 누구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임신중지 당사자인 여성을 포함한 다수 국민의 목소리마저 듣지 못하는가?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직결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또다시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져 왔다. ‘모낙폐’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의 존엄이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회, 여성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임신중지/임신유지/출산/양육 등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회, 결혼여부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과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동시에 온전하게 존중되는 사회는 바로 ‘낙태죄’ 전면 폐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무능으로 ‘낙태죄’ 관련 법안의 개정, 처벌 대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연내 수립은 어려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존엄을 침해해왔던 낡은 법이 소멸되는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시대를 역행하는 꼼수를 궁리할 것이 아니라,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할 준비에 힘쓰는 것이다.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지난한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과제들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1년 ‘낙태죄’ 없는 세계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마땅한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가이드라인, 1월 1일부터 안내되어야 할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라. 국회 역시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 입법을 위한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모낙폐’는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계속하여 외칠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2020년 12월 1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

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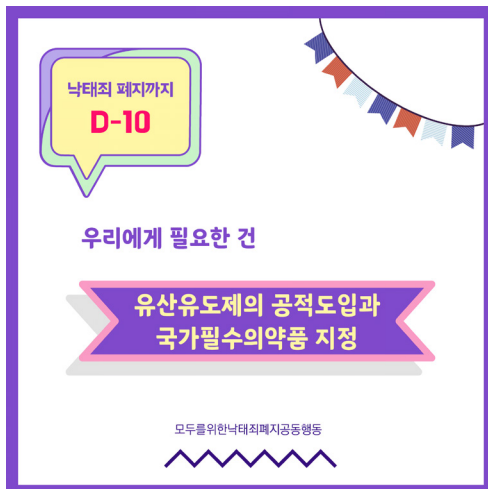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월 1일 카드뉴스

제목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D-DAY 카운트다운> 1일 1카드뉴스

일시 : 2020년 12월 22일~2021년 1월 1일

내용 :

- 방법 : 1일 1카드뉴스 연재 <낙태죄 폐지까지 D-10, 9, 8, 7... 우리에게 필요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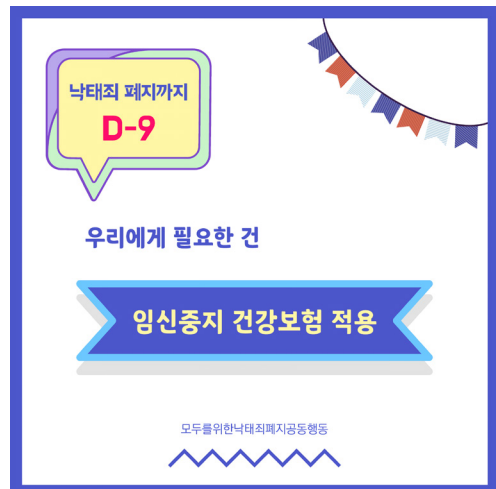
낙태죄 폐지까지
D-10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This card features a purple border, a yellow speech bubble with 'D-10', and a purple banner with the text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A string of colorful bunting is in the top right co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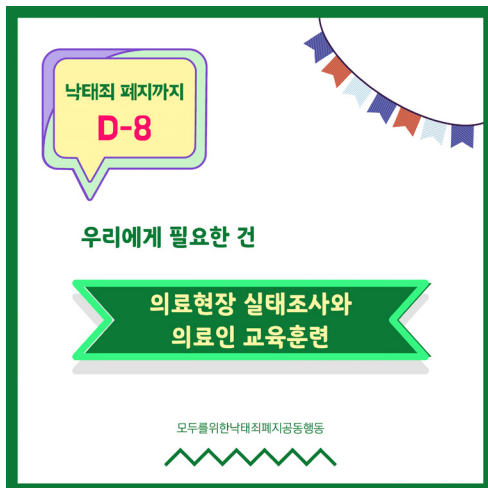
낙태죄 폐지까지
D-9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This card features a blue border, a yellow speech bubble with 'D-9', and a blue banner with the text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A string of colorful bunting is in the top right co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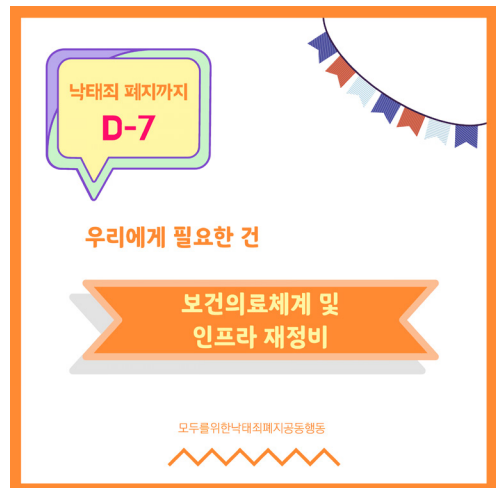
낙태죄 폐지까지
D-8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This card features a green border, a yellow speech bubble with 'D-8', and a green banner with the text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A string of colorful bunting is in the top right corner.



낙태죄 폐지까지
D-7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This card features an orange border, a yellow speech bubble with 'D-7', and an orange banner with the text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A string of colorful bunting is in the top right corner.

낙태죄 폐지까지
D-6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낳을 권리' '낳지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폐지까지
D-5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폐지까지
D-4

우리에게 필요한 건

피임접근권 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폐지까지
D-3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출생,양육,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폐지까지
D-2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
사회적 낙인 해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폐지까지
D-1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닌
권리보장으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년 12월 30일 토론회

제목 :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 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 2020년 12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 온라인방식(ZOOM)

*국회의원 권인숙 페이스북 중계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58816245974509&id=520949508)

내용 :

○ 발제

- 낙태죄 폐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_ 나영(모두를 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낙태죄 폐지 관련 국제적 흐름 :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_ 류민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_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SHARE 기획운영위원)
- 낙태죄 폐지 이후 성·재생산권 확장을 위한 입법과제_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
- 김수경(민주노총 여성국장)
-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 조미경(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종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남인순·박주민·권인숙·류호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례)·이은주·장혜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주관 : 국회의원 권인숙

우측 QR 코드 : 토론회 자료집



2020년 12월 31일 기자회견

제목 :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국회 앞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2월 31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온라인 중계 <https://youtu.be/Nqa30DwkMT8>)

내용 :

- 사회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발언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경과보고 및 운동 방향_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 SHARE)
 -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 의의_ 제이(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 처벌대신 권리를!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정책 과제_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 SHARE)
 - 의료계 발언_ 민정(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 종교계 발언_ 자캐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 청년 학생 발언_ 홍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 성명 발표 : 앓(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은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 퍼포먼스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 장벽(부도덕/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 안전한 의료서비스 부재, 낳을권리/낳지않을권리 부재한 노동환경, 가임기 여성지도, 여성의 시민권 배제, 형법 27장 낙태죄, 낙태죄 악용한 폭

력/협박, 가족의 허락/배우자의 동의, 진보한 과학기술 접근권 제한)을 뜯어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퍼포먼스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
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
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
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
성의전화)

우측 QR 코드 : 기자회견 영상



발언_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
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
센터 세어SHARE)**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경과보
고 및 운동 방향**

이제 오늘로써, 낙태죄는 실효를 다하
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만들어낸 전국의 여성, 시민분
들과 함께 모여 오늘을 축하하고 싶은

데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 못해 너무 아
쉽습니다.

낙태죄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이를 위한
인구관리의 도구로 삼아 왔던 역사의
산물입니다.

여성들은 80년대까지 가족계획 요원에
게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 가 배꼽수술
이라 부르던 복강경 난관시술을 받았
고, 장애나 질병이 있는 여성들은 강제
로 불임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받아야

했으며, 저출산시대가 되자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은 이기적인 여자들로 내몰리고 파트너와 남편에 의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생명 경시를 운운해 온 국가와 사회는 사실상 이 모든 일들의 적극적인 행위자이고 방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진오비가 ‘낙태 근절운동본부’를 만들어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하고 제보 게시판을 만들면서 병원들은 시술을 거부하고, 시술비가 수백만원 대로 폭등하고, 해외로 가는 여성들이 증가했습니다. 가짜 낙태약이 밀수입되기 시작했고, 임신중지 병원 알아봐 주겠다면서 불러내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자기 허락을 안 받고 여자친구, 아내가 낙태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매일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에게 칼까지 휘두르던 남편, 위자료 안 주려고 아내를 고소한 남편들은 무죄를 받고 여성들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19세 여성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문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법이 언제나

지 악용될 수 있고, 여성들의 삶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들이 쌓여 2016년 검은시위로 터져나왔고, 용기있는 여성들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여성들은 국가의 인구정책 속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장애여성의 경험을 통해 낙태죄의 문제가 사실상 국가의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고 차별을 지속시켜온 폭력의 문제임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세대, 연령, 질병, 장애, 노동,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연결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이제 우리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

제라는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정부, 지자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고, 교육, 노동, 사회복지 기관, 의료, 상담 기관 전반에서 실질적인 접근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 분들도 지금까지는 불법인 여건에 있었지만 의료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여건까지 살피는 의료인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료인 분들이 마음놓고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유산유도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도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만 처방할 수 있는 병원으로부터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까지, 협진이 필요한 3차 의료기관까지 연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게 하고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임신중지 여건이 마련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혼란이나 입법공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처벌법이 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혼란도 공백도 아닙니다. 작년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되었다면 이 법은 이미 그 때 사라

졌어야 할 법입니다. 우리의 용기있는 요구와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신하게 만들었고, 한참 후퇴한 정부의 개정안을 막아냈으며,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임신중지를 처벌하던 시대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처벌을 통해 오직 여성들에게만 전가되고 가려져 온 사회적 불평등을 함께 드러내고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여전히 제한적 허용과 처벌 방식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각국의 선례를 보았을 때도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앞으로 비범죄화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또 다른 진전들은 이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전하자, 독일 베를린에서도 한국의 선례가 여전히 임신중지가 형법에 범죄로 남아있는 독일 같은 나라에게 선도적인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독일에서도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129개국에 참여하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국제 캠페인 조직과 각국 여성들에게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우먼 헬프 우먼에서도 축하와 연대의 인사와 함께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더불어, 정말 길고 힘들었던, 그러나 너무 멋진 투쟁 끝에 어제 상원의회에서 임신중지 합법화를 이뤄낸 아르헨티나의 소식과 함께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를 충분히 축하하고,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낙태죄 폐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노동으로 존중되고, 임신과 임신중지 모두가 책임있는 결정으로 존중될 수 있는 사회, 장애인과 질병이 있는 이들의 건강권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고 자립과 지원의 여건이 함께 보장되는 사회, 우리의 삶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없애고, 혼자 혹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자녀의 양육 여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여성 이주노

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가지 않고, 이주민과 난민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시대에 더 취약한 삶의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전가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고, 재생산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발언2_ 제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의의

저는 이 역사적인 날, 무엇이 낙태죄를 가능하게 했고, 무엇이 그것을 끝장냈는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임신중지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1953년, 피임도구도 구하기 힘들던 때부터였습니다. 여자는

시민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가정과 국가를 위해 아이 낳는 게 당연했고, 어떻게 임신을 피할 수 있는지, 낳은 다음 어떻게 키워낼지는 그저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일뿐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계속 임신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또 어떻게든 임신을 중지했습니다. 중절수술을 여러 번 받은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긴 세월 동안은 더했습니다. 동시에 ‘낙태’는 죄악이고 수치였습니다. 낙태 죄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태반이 었지만, 그렇다고 그 법 조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는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중절수술을 일곱 번씩 받아도 인구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을 문제시 하지 않던 사회, 그럼에도 개개인의 임신중지 경험은 의료기록에도 남길 수 없고 가까운 사이에도 말 못하고 숨겨야 했던 사회, 여성의 건강과 존엄한 삶에는 무관심하고 여성 통제를 통한 출산을 조절에만 관심을 쏟는 사회, 즉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내리누르던 사회가 낙태죄의 존재기반이었습니다. 낙태죄가 만들어진 50년대나, 적극적으로 무시된 1970년대나, ‘낙태 고발 정국’으로 가시화된 2010년대나, 우리는 연속된 ‘낙태죄의 시대, 처벌의 시대’를 살아오

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의 끝을 당겨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을 기억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을 떨리는 목소리, 이젠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다고 말하던 목소리,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던 목소리, 혹은 이게 분노할 일이 맞는 건지 조심스럽게 질문해오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수술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의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질문할 수 없었는지, 왜 우리의 경험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밀쳐져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정치화하며 엮어나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경찰서에, 법원에 동행했던 순간들. 상대 남성의 고발로 기소되어 2심까지 함께 분투했지만 결국 낙태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이 불합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도 좋다고 말해준 여자들. 여성의 관점에서 낙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기사들, 책들, 영화들.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선고를 받아들이고도 멈추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억압을 뚫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낙태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낳는 기체가 아니다.” “내 몸은, 내 삶은 범죄가 아니다.” 2016년 한국사회 최초로 광장에서 대놓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검은 시위'. 전국에서 지역별로 수차례 반복된 캠페인과 선전전. 주말마다 보신각에서 열린 임신중지 합법화 시위의 검은 물결. 넓은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집회. 300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형법 제269조 삭제 퍼포먼스〉. 햇살과 우박이 한꺼번에 내리치는 기묘한 날씨에 ‘낙태죄 폐지, 새로운 세계’를 외쳤던 그 날. 몸과 얼굴에 강렬한 메시지를 쓰고 담대하게 카메라를 응시했던 여자들. 수백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진 1인 시위. 아르헨티나, 폴란드, 아일랜드-각국의 활동가들과 연대의 깃발을 서로 흔들어 보였던 순간. 23만 명의 낙태죄 폐지 청원. 분노의 필리버스터, 이어 말하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 1015명의 천주교 신자들. 의료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키며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요구한 의료인들. 여성의 경험을 누락한 채 구멍 나 있던 낡은 법을 인권과 정의의 언어로 새롭게 기

워낸 법률가들. 낙태죄 전면 폐지 입법 청원에 참여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 수십번의 기자회견. 수많은 의견서, 성명서, 영화제, 포럼, 토론회…. 그 모든 현장에서 강력한 증언과 선언을 겹겹이 쌓아올려 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한 줄기로 환원될 수 없는, 하지만 기저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으로 연결된 각각의 귀중한 운동들이었습니다.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이 2등 시민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당연시되던 시절을 지나, 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한 정부부처가 설립되고,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한적이거나 시행되고,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받고 폭력에 노출되고 심지어 수술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라는 똑같은 권고를 몇 년째 받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없이 이뤄지는 동안, 낙태죄로 처벌받은 시민들이 두 차례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엔 낙태죄의 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위임받은 자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고' '사회적 인식이 아직이고',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운운하며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성들이 한국

사회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진작부터 변했고,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명백백한 증거를,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에도 국가는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차단하려 했습니다. 종말의 위기에 처한 처벌의 시대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새로운 처벌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여성들, 그것도 젊은 여성들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미 내파시킨 낡은 세계의 마지막 잔해를 툭 털어내듯이 낙태죄의 소멸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호주제를 떠올리듯이, 옛날엔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었다고, 그땐 그런 법이 없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악법을 없애기 위해 나섰던 용기있는 여자들이 기세 좋게 살아나갔던 시대이기도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확인하고 제도의 공백으로 빚어진 사회적 고통을 그저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범죄의 영역에 밀어 넣었던 처벌의 시대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로서의 임신중지를 보장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여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끝까지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함에 대한 스스로의 감각을 믿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온 서로를 믿고, 낡은 법과 낡은 윤리에 속지도 구속되지도 않고, 여성들 그리고 주변화되었던 이들의 관점이 온전히 반영된 새로운 정의와 새로운 윤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발언3_ 이유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처벌대신 권리를!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정책 과제

“이어 2021년부터 낙태죄 조항의 효력 소멸에 따라 바뀌어야 할 법과 정책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에서 제안한다.”

2020년 12월 31일 오늘, 오늘 이후의 한국 사회는 67년만에 드디어, 여성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몸에서 진행되는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낙태죄라는 형법을 통해 개인의 몸과 성을 규율하고, 침해해온 역사를 비로서 내일 투쟁으로 끝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권리의 보장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향해가는 새로운 법과 정책들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결론이 아닌 시작입니다. 개인의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법과 정책은 이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017년 UN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 기반하여 전 세계의 국가에서 재생산 건강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가라는 주체입니다. 국가가 피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장애물을 없애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고 개입하고 있는지가 바로 한 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성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통합적인 보장만이 차별을 낮추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UN의 지속가능발전의제, 미래의 방향성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성과 재생산의 영역이 권리라는 인식이, 선언이, 법적인 기반이,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러한 몸으로 노동하고, 임신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며, 친밀감과 재생산이 결부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결정의 권리를, 평등의 권리를, 신체적 자유권을, 인격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차별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남성과 정상가족을 꾸려서, 비장애인 아이를 낳아서, 국가의 저출산 위기에 도움될때만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섹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교육을 원하는 나도, 나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나의 학습 공간과 노동환경에서 존중받고, 보장받고 싶은 나도, 성매개 질환이나 피임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나도, 임신을 중지하고 싶은 나도, 남성 파트너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나도, 모두 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입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그것을 위한 기본법을 준비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본법을 통해서 셰어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 접근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성·재생산권에 포함되는 세부 권리들을 확인하고, 월경, 피임,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 보조생식기술의 사용과,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사안별로 그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법의 한줄 한줄을 만들 때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역사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 경험한 폭력, 차별, 낙인, 억압들을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 보장 시대, 여성과 소수자, 모두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정의롭게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바로 그 미래에 통제와 처벌, 낙인과 억압의 역사를 넘어서는 정치적 결단, 정책적 전환으로 2021년, 긴 시간 거리에서 싸워온 우리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발언4_ 민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행동하는간호사회)**

12월 31일, 오늘이 지나면 ‘낙태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임신중지’를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할 의료공백이 우려스럽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앞두고 일부 의료인단체는 ‘낙태죄’의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주수제한 조항, 의료진의 거부권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은 변해 ‘임신중지’

는 여성의 권리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계 안에서는 아직도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임신중지가 합법화 된 나라임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을 의료진이 설득, 회유하고 심지어 잘못된 지식으로 겁을 주고 주수를 숙여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진료거부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우려스럽습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료진의 인식이 변하지 않아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란 의료진의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명확한 지침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대, 간호대, 약대 교육과정에서 임신중지와 그 약물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아예 배우질 않거나 있다 해도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쉬쉬하며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저는 간호사임에도 약물낙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공서적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비전문적인 시술을 받아야하고 인터넷을 통해 약물을 구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 의료인/예비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임신중지 방법, 약물은 물론 어떻게 대상자를 상담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까지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이 오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관련부처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지 의문입니다. 임신중지를 죄가 아닌 필수적 의료처치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관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임신 중지’,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신을 중단하고 싶은 여성은 누구든지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위에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발언5_ 자캐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이제 종교가 종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면 이 땅의 여성들이 오늘과는 '또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만큼 많은 생각이 스칩니다.

저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에 참여한 중인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사제 자캐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교 국가도 아니고, 특정 종교가 절대적 가치를 행사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회 구성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는 있어도 전부일 수 없습

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 남성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낙태죄'가 완전 폐지된 이후, 종교가 종교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그리스도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터부시되는 사람들 한가운데'입니다.

지구상 단일 종파로 가장 큰 규모인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부활과 성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두 이야기 모두 '천사가 여성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중 성탄 이야기에 한 '임신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는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앞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종교의 자리,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당대 기준으로 터부시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총과 환대, 연대의 선언을 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1.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종교에게 잘못된 질문과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앞둔 날,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종교에게 ‘그 역할 이상의 질문과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교를 포함하여 땅의 종교에게 “여성이냐? 태아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 남성들의 ‘의도적인 책임 회피’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터부시되며 고통 받아 온 ‘이 땅의 여성들을 어떻게 환대하고 연대할 것인가?’를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에 대해 책임질 의지도 없고 제대로 된 노력도 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가 ‘뜬금없이’ 생명을 존중한다며, 여성과 태아를 대립 구도에 놓는 건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과학이나 의학적 사실과 더불어 세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런 종교는 태아를 여성과 연결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정 태아를 위한 최선의 배려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 숨 쉬는 여성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태아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적 도구’가 아닙니다. 독립적 인격인 여성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과 태아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사회, 의료인들은 그 여성이 ‘독립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마땅합니다. 정부와 사회, 의료인들이 독립적인 여성을 대신해 결정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2. 종교는 종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교, 무엇보다 제가 속한 그리스도교는 그 시대나 사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터부시되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돌아가 은총과 환대, 연대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의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생각할 때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그 과정에서 더 안전하고 평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적극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질문과 토론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일삼던 왜곡과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낙태죄 완전 폐지는 ‘낙태 선동’과 무관합니다. 이런 주장은 마치 많은 여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낙태를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는 오히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가와 사회, 교회의 책임’에 대해 평등하고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는 임신 중단을 포함한 재생산권 앞에서 고뇌하는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환대와 연대, 사랑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독립적 인격체인 여성과 한 몸인 태아에 대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맞이하는 2021년 1월 1일, 정부와 이 사회는 종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질문과 요구를 해주십시오.

한국 사회의 한계와 편견 때문에 오랜

시간 터부시되어 온 여성들의 임신 중단 그리고 재생산권 논의 앞에서, 종교는 왜곡과 정죄가 아닌 ‘은총과 환대, 연대와 사랑’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낙페와 동행하는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은 그 일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6_ 홍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전국학생행진)**

안녕하세요. 전국학생행진에서 활동하는 수영입니다. 올해 우리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뿐, 여전히 처벌 중심의 법안이 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았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힘으로 정부의 입법안을 저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태죄 폐지를 넘어서 어떠한 여성이든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페이지는 낙태죄를 폐지한 우리들

의 손으로 다시 써질 것입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는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삶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뽕뽕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서 20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좀체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어두운 미래로 인해 여성 청년의 우울증과 자살율이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가정 안에서는 여성을 향한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삶을 제약하는 조건들은 하나 둘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겹겹히 쌓인 모순 속에서 여성들은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오늘도 위험한 시술과 약물 복용을 감행합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접근권을 확대할 때 무엇보다도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입법예고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임신중지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동의 조항은 여성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방해할 뿐입니다. 청소년 개개인이야말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임신중지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의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바로 내 집 옆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마음 놓고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유산유도제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청년·청소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여성 개인이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 결과 가정을 꾸리기를 포기합니다. 가정을 꾸린다 할지라도 임신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국가는 여성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선택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권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한 사회의 재생산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원동력으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권리 확대에 힘쓸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선포한다!

오늘 우리는 처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낙태죄’ 없는 2021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21년 1월 1일 마침내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있는 외침으로 이뤄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 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오늘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 후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룬 국가가 되었다. 단순히 개정입법 시한을 넘기는 방식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한국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례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처벌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현실에서 한국은 처벌 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수십 만의 여성과 시민들이 용기 있게 경험을 나누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온 결과다.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든 그 모든 장면을 반드시 역사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외침에 계속하여 화답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더 이상 여성의 몸이 인구관리의 도구로 여겨지지 않고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의 존엄이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사회, 성관계, 피임,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 등에 관한 권리가 개인의 결정권 차원을 넘어 노동,

교육, 주거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와 함께 연결되고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결혼여부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과 성적 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모두 온전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없는 2021년, 새로운 세계를 향한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하나, 유산유도제를 공적 도입하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하나, 의료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편견없이 최선의 의료행위가 제공되도록 의료인 교육·훈련 보장하라.

하나, 의료기관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건의료체계 및 인프라를 재정비·마련하라.

하나,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라.

하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을 시행하라.

하나, 피임접근권을 강화하라.

하나,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라.

하나,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효력을 상실한 두 조항을 비롯해 형법 제27장 ‘낙태죄’를 형법에서 전면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라.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존엄을 침해해 온 낡은 법에 매달린 구시대의 망령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향한 새로운 시대에 복무하라.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2021년을 맞이하자!

2020. 12. 3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

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0년 12월 31일 온라인액션

제목 :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카운트다운 파티

일시 :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 2021년 1월 1일 오전 1시

장소 :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용 :

- 프로그램
 - 함께 인사해요
 - <낙태죄 폐지 이슈>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순간이 떠오르나요?
 - <낙태죄 없는 2021년>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
 - <낙태죄 없는 2021년> 두구두구...카운트다운!
 - <낙태죄 없는 2021년> 문구를 포함한 인증샷 다 같이 올려요!
 - <낙태죄 없는 2021년> 새해 덕담 나누기!
- 참여 : 최대 접속자 약 250여 명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대(성익전화))

[속보] '낙태죄' 기한 만료로 소멸... 축하 인파에 카카*톡 서버 다운

QR CODE
단톡방 :: 입장하기

‘낙태죄’ 없는 2021 카운트다운 파티

“2020.12.31. 23시”
~ “2021.1.1. 0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낙/태죄 없는 2021년 기념 오픈 채팅방” 검색 또는
“https://open.kakao.com/o/gV7XtRMc” 링크 입력 또는
왼쪽 모니터 속 QR코드 입장!

#낙/태죄 #저벌대신권리를 #전면폐지 #폐지하라 #abortion #abortionism

Chapter3.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 카드뉴스

제목 : '낙태죄' 없는 2021년 선포 및 신년인사 카드뉴스

일시 : 2021년 1월 1일

내용 :



#낙태죄없는2021년 D-day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어제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 열 가지를 하나씩 차례로 제시하며 낙태죄없는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산유도제 신속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제도 안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체된 과제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책임방기하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2021년을 만들도록, 계속하여 요구하고 함께 행동합시다.

2021년 1월 21일 - 2021년 1월 31일 서명운동

제목 : ‘낙태죄’ 폐지 활동가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탄원서

일시 : 2021년 1월 21일~1월 31일

장소 : 온라인

참여 : 2,250명

탄원서

지난 12월 26일 서울종로경찰서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와 박아름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각각 9월 2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10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제정 67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와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던 여성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9월 28일은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국제 캠페인의 날’로 모낙폐는 2017년 9월 28일 발족 이래 매년 이날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개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9월 28일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입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야 정부가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사전 보도된 정부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외 사유나 허용 주수를 가져오더라도 ‘임신중지 행위’가 ‘여성의 죄’라는 형법상 처벌조항이 남아있다면 우리 사회가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된 9월 28일의 기자회견은 이런 식의

정부 개정안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그간의 논의를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언론에 알리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정부 개정안의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언론을 통해 ‘낙태죄 전면 폐지’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당일 진행된 퍼포먼스(‘청와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글자 피켓 퍼포먼스)는 다수 언론에 기사 및 사진 등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10월 8일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고 주수제한, 상담의무, 숙려기간, 의사의 신념에 따른 의료 거부 인정 등 새로운 처벌 기준을 포함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로 다음 날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하루속히 언론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규탄하고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해 기자회견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낙태죄’ 폐지의 입장을 담아 각종 행사에서 사용했던 피켓들이 전시되었는데,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연대하고 변화를 만들어온 기록이자 증거들을 재확인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개정안에 대한 모낙페의 성명서 낭독 이후 몇몇 활동가들이 전시된 피켓 위로 쓰러지는 ‘다잉 퍼포먼스’는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워온 활동가들이 이 전쟁터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낙태죄’ 폐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이 여성들의 권리를 사실상 죽이는 법안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기자들도 알아채고 열정적으로 취재를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에 전시된 피켓 및 퍼포먼스는 다수 언론에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낙태죄’는 형법 처벌조항 중 유일하게 여성만을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낙태죄’ 조항은 수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형법제정 67년 만에 대한민국 여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죄인으로 다루던 처벌의 시대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대로 방향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모낙페는 언론을 통해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말하고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퍼포먼스는 이러한 입장을 함축적,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국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자회견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권리가 침해되든 말든, 잘못된 법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 살인을 당하든 말든, 정부와 국회가 처분해주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장은 없이 또 다른 처벌 및 통제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형법 입법예고안은 입증 불가능한 주수 기준으로 임신중지를 처벌하며, 여성에게 상담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과해 임신중지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했습니다.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종합상담기관 설치·운영·지정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을 필수가 아닌 임의로 규정하고, 의사가 자의적으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임신중지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임신한 여성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하며 개인의 노력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했고, 2021년 이제 우리는 ‘낙태죄’라는 처벌이 사라진 자리를 권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으로 채우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과 10월 8일 개최된 각각의 기자회견은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알려야 할 목소리를 담아 적절한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모낙페’는 각각의 기자회견이 목표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언론에 전달되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에도 각별히 유의하고자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힘썼습니다. 9월 28일의 기자회견의 경우 월요일 오전 광화문 거리를 지나는 시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기자회견 참가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10월 8일의 기자회견 역시 평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인근을 지나는 시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기자회견

견 참가인원을 최소로 제한하였습니다. 각각의 퍼포먼스 역시 짧은 시간에 함축적·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하에 신속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집회개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낙페에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은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에 매번 고심에 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방역지침을 지키면서도 정부에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자회견으로 발표되는 모낙페의 입장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자회견 장소에 모인 것은 몇 명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여성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청와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문구가 한 글자 한 글자씩 새겨진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 청와대는 언론에 알렸던 개정안 그대로 ‘낙태죄’ 존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 혐의를 두며 ‘모낙페’의 공동집행위원장들을 경찰에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답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선택적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무슨 일을 겪었는지, 국가의 잘못된 법이 어떻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는지, 무엇이 여성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 박아름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접하며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낙페는 ‘낙태죄’ 전면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재생산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여성의 요구를 알리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 또한 결국은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 평등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권력과 자원을 가진 집단은 자신이 소유한 매체로, 또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자원을 이용해 무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관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도 자원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로 나서는 것뿐입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 이 불평등을 바꾸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런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등 해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기자회견, 그것도 방역 수칙을 엄수했고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혐의로 사회자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정의로운 법 집행에 해당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해서 언론을 만나는 일을 모두 경찰에 신고하게끔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결국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사람들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외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경찰에 알려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회를 맡았던 이들은 경찰에 기자회견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제든 수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위축되는 것이 2021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통제하고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요구를 환기하고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을 이유로 또다시 여성을 처벌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 박아름에 대한 수사를 멈추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2021년 2월 1일

탄원인 2,250명

2021년 3월 8일 기자회견

제목 :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일시: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온라인 중계 <https://youtu.be/unCkMBy9zsU>)

내용 :

- 사회 :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발언:
 - ‘낙태죄’ 없는 2021년! ‘모낙폐’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 사회자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한 시민 발언 - 로리, 승은, 혜영
 -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 이서영(인도주 의실천의사협의회)
 -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 접근권 보장하라! - 나무(장애여성공감)
- 기자회견문 낭독 :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 기자회견 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연대의런데이 참여 :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직전 3.30 집회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서 진행했던 서울파이낸스센터-광화문-헌법재판소 왕복 3.8km 걷기 및 인증(앎, 나영, 보영)

추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 코드 : 기자회견 영상



시민발언_ 로리

국가가 여성인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이 사회가 여성인 나의 건강과 행복을 신경쓰고 있는가?

이것은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이 거의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그렇다, 한국은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여성의 결정을 동등하게 존중한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혼제도 안에 있든 없든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여성들은 매일 매일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딛으면 우리는 바로 범법자가 되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타인의 고발, 의사의 진료 거부, 주변 공동체나 가족의 외면과 강요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잘못된 선을 그어놓고, 어떤 임신을 허용할지 어떤 임신을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해두고, 여성이 마땅히 자기 몸에 행사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난 이후에도 다시 잘못된 궤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021년의 여성은 위협과 불안, 형법상 죄라는 실제 위협과 주입된 죄책감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건강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는 여성들의 일탈이나 오남용, 잘못된 판단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못된 관성으로 다시 후퇴하려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의 당연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주체적인 시민입니다.

일정 주수 이후의 임신중지는 위험하다? 아니오,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 제도를 준비하십시오.

특정한 상황에서만 임신중지를 허가하겠는가? 아니오,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지, 어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지에 집중하십시오.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아니오,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의심하는 추가 조건을 달지 말고, 여성이 원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안내하는 상담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임신지속이든, 임신중지든, 국가나 법이 개입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여성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로 여성 국민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 어떤 낙인과 제한으로도 이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차별의 시대로 돌아가기는커녕,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의 결정을 사회가 존중할 것을, 그리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지원을 받기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시민발언2_ 헤영

안녕하세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Battleground269의 작업을 했고 여전히 이 작업으로 만난 100여명의 여성들의 메시지가 유효한 현 시점에 매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된 사진가 헤영입니다.

발언을 준비하며 ‘낙태죄’ 폐지를 위해 달려온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지난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10월, 낙

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의 제목은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였습니다. 그 날 보신각 앞 광장에 모인 여성들은 이런 피켓 문구를 직접 작성해 준비해 왔더군요.

- 내 자궁에서 손 떼. 국가는 나대지 마라
- 여성은 정부의 자궁이 아니다.
-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여성은 수단 이 아니다.
- 내 몸, 나의 선택.

이 메시지는 2017년 Battleground269에서도 이어졌고 2019년4월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들렸으며 어찌면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이 때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성들은 제 몸의 권리를 외쳤고 그 내용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국가는 과거 한 때에는 낙태를 권하며 산아제한을 하더니 이후에는 범죄자로 낙인찍었고 국가의 이러한 움직임에 사회는 임신중절을 택한 여성들을 임신과 낙태를 일삼는 부도덕하고 음탕한 여성을 만들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성 개인과 태아의 이분법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그 중간에 놓인 임신중

절을 선택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슬한 사유는 삭제시킨 채 말입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가 된 이후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세계는 어떠해야 할지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 주변의 임신중절을 선택한 몇몇의 여성들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1인은

“결혼 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혼자서 정보를 찾고 병원을 찾아내 갔지만 피가 묻어 있던 수술베드에 누우면서 불안했던 심정, 병원에서 힘들게 나와 다시 먼 길을 돌아와 떠도는 이야기처럼 출산 후와 같이 몸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낙태 경험을 알릴 수 없으니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전의 낙태경험으로 인해 임신한 아이가 잘 못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임신 중의 불안과 공포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특정한 청자가 없는 듯 헛헛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내 몸은 불법, 오늘부터는 합법인가?”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

의 과거시간은 국가가 제정한 불법이라는 범죄자로서의 낙인으로 인해 내내 자신의 몸임에도 제 몸의 경험 일부를 부정하고 은닉하며 부당한 경험을 감수해왔지만 ‘낙태’가 비범죄화가 된 지금 그것을 보상해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낙태죄가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제 역할에 게으른 국가만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낙태죄 폐지를 위해 모여 권리 보장을 외쳤던 수 많은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하게 들립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고 2021년 낙태죄가 사라진 지금,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정치로 휘둘렀던 국가는 이제라도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편협한 태도를 중단하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면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을 선행해야 할 것이며 임신중절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권리 또한 존중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한 안전한 임신중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혼과 임신, 출산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여전히 3배 이상 되고 육

시민발언3_ 승은

아노동 또한 여성에게 과부하 된 현실을 인식해 가부장제 내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주도의 인식/제도 마련, 과도한 육아비와 학비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재생산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변화시키는 것, 결혼제도 밖의 생활파트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국가자원을 제공하는 가족제도의 확대,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와 같은 무게로 존중하고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료 정보와 치료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를 가진 여성들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 권리를 개인의 문제나 태아의 입장에서 보는 이분법적인 시선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늦지 않게 서둘러서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애써주십시오. 그것이 국민 여성들의 권리이고 그것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1일,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수업시간에 교수님 눈에 띄지 않게 폰으로 생중계 영상을 틀어놓고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생명을 차별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해온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대가 멧음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보다 골똘히 생각하게 된 건 그 날이 아닌, 다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4월을 얼마간 지나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날,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막연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콘돔을 사용했음에도 말이지요. 몸을 가진 존재로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제각기 놓인 다양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복잡한 판단과 결정을 통과해 행하는 임신중지 역시 결코 부정하거나 단죄할 일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만을 그저 벌하는 낙태죄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얼마나 협소한 이야기였는지 생각했

습니다. 한편으로 그날의 저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간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무기 삼아 여성을 통제해온 세상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러한 무기가 더는 유효하지 않게끔 저항해온 여성들에게 내가 빚지고 있는 바를 실감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포개어져 이제는 낙태죄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뤄졌습니다. 더없이 기쁘고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이 저를 괴롭혔던 그 날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그 가정 뒤에 내어놓은 말은 고작 ‘임신중절수술에 드는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 였는데요, 여성 개인을 처벌하는 낙태죄 외에는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백으로 남겨둔 사회 속에서, 저 역시 열악한 상상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제 다른 상황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재생산에 대한 일이 단지 사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에 관한 것임을 지금의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임신중지 시 적절한 공적 의료지원 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 낙인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수술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올바른 피임법과 성병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친밀성이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재편되면 좋겠습니다. 성적 소수자도, 남성들도, 장애를 가진 존재도, 이주민도, 청소년들도 저마다의 맥락과 위치에 따라 재생산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가 모든 이들의 재생산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길 바랍니다. 모두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경험이 더 충만하고 기쁘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_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낙태죄의 실질적 효력이 사라진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처벌의 우려 없이 재생산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의료진도 여성들이 원하는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얻었지만, 국가는 여성들이 이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공적 지원과 제도적 준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들은 여전히 재생산권리를 온전히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는 전면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형법은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이 남아있어 아직 현장에서는 24주제한, 배우자동의, 보호자동의 등의 제약이 남아있고, 특히 건강보험은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신중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장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권은 실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임

신중지가 건강보험 급여화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론 모자보건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건강보험 적용논의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현 제도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당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신 진단 시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을 임신중지에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는 이런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료진들도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의 여성의료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57곳은 분만 산부인과가 아예 없고 30곳은 차로 1시간을 달려야 산부인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이러한 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상

항입니다. 임신중지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진료에 필요한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응급상황에도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분만’의료 뿐만 아니라 포괄적 성과재생산건강, 그리고 임신중지의료의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도 기존 ‘분만 의료 중심의 조사에서 나아가 지역별 여성건강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과 임신중지의료의 실태조사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임신중지가 정착할 수 있으려면 의료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임신중지를 시행해왔던 의료인들, 그리고 앞으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을 진료할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낙인을 줄여나갈 현실적인 대책들 또한 필요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넘어, 이제 임신중지를 실제 있는 권리로서 행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여성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 의료인들도 이런 목소리

에 앞장서겠습니다.

발언2_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오늘은 사회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여성이 즐겁고 안전하게 성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미프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프진은 단순히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화학적 호르몬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임신의 초~초기단계부터 임신진단키트를 사서 임신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곧바로 집에서 임신중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 재생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약입니다. 최소 임신 6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수술적 임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미프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 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미프진을 도입 하라고 2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민간제약사가 적극적으로 허가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려 해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허가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산부인과협회나 종교계 눈치를 보느라 미프진을 허가하는 걸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프진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어온 약입니다. 그리고 16년 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미프진은 완전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임신중지를 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온라인에서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사이트도, 구매를 하는 여성들도 제대로 규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프진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프진을 사용해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임신을 중단하는 주체로 새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60년 전에 피임약의 사용이 여성해방과 인류발전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1960년에 미국의 피임약처럼 2021년에는 한국에 미프진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성과 출산의 고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미프진을 쟁취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사회에서는 미프진의 사용 조건으로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해서 이 약을 복용하고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프진이 매우 위험한 독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주장은 그냥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약물적 임신중지와 관련된 각종 임상시험에서 입원이 요구되는 부작용은 0.04~0.9%에 불과한데, 미프진을 사용하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프진을 사용하는데 입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원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미프진은 손쉽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통제된 조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누구나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3_ 나무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 접근권 보장하라!

우리는 오늘 형법 제269조 낙태의 죄가 사라진 2021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사회구조적인 통제와 억압에 대해 함께 연대해 온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허용 주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인권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또 다른 통제 기준만을 제시할 뿐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후속 입법 제정 등을 미루며 전반적인 성과 재생산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로서,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권리에 있어서 접근성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이 정보접근성에서 차별받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장애, 나이, 질병, 가족형태, 성정체성, 경제적 지위, 성별,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접근성 문제를 고민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엄마도 관리해야 하고,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라는 발언 기억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상적인 엄마는 어떠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장애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으며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성이라는 규범화된 기준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재생산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와 태어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명을 선별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낙인을 강화하게 되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한 위치는 갈수록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성과 재생산권리의 통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일상화됩니다.

시설에 수용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여성들은 우생학적 기준에 의해 본인의 의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채 강제 피임 및 불임시술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호, 안전의 이유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일상 및 재생산 권리 등 전반적인 섹슈얼리티의 통제가 정당화되는데 주요 근거로 작동됩니다. 피해자로서의 위치만 존재할 뿐 또 다른 일상의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일상회복과 재생산권의 실현은 중요한 의제도 아니며 논의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여성은 본인의 몸에 대한 결정과 통제권한이 국가, 거주시설, 지역사회 지원기관, 가족 등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인들은 장애여성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차

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전제하며 정보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즉, 의사소통, 논의, 협상, 결정,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등한 주체로 사고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경험과 욕구는 전혀 궁급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상황에 대해 이해할 시간, 생각과 감정에 대해 질문받고 표현할 기회, 판단-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확보, 고민과 조언을 나눌 동료의 필요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의사소통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누구나 일방적인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를 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권한은 당사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장애여성 사회 인식 및 불평등한 구조변화를 위해 함께 싸우고 행동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주체적인 참여는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애여성을 둘러

싼 사회구조적인 환경과 관계망들은 당사자의 경험과 언어에 긴장감을 가지고 질문하고 의사를 확인하고 듣고 기록하며 평등한 소통을 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역량과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구나 내 몸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해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성적인 즐거움 및 욕망에 대해 알아가고 피임, 임신중지 및 유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고, 두렵고 불안하지 않게 안전한 상태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인권침해, 사회적 낙

인, 차별,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정상성 규범을 기준으로 한 가족계획, 우생학 등 국가에 의해 통제해 왔던 재생산권리 침해의 역사를 묵인하고 방치하며 책임을 유예하지 마십시오, 성과 재생산 권리는 사회적 규범에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공공의 권리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국가는 책임있는 대안,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공적 지원과 제도, 사회적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2021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 사회경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로 이를 실현해 나갈 출발점에 섰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이

와 연계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노동, 교육, 사회복지 등 각 영역에서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연령, 장애나 질병, 지역, 이주 상태, 성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부재한 채 임신·출산의 책임과 의무만을 여성과 개별가족에게 전가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2개월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여전한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료현장 또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임신중지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상담 가이드 구축,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적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어 제약회사에서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법의 실효가 사라짐으로써 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변화이며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절차들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처가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의료인 인식 제고와 관련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체계 마련,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식약처 또한 제약회사의 신청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해 발의된 권리 보장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올해 비범죄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현행법의 제약을 없애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었음에도 관련 논의가 미뤄지며

여전히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국회와 관련 부처의 이러한 책임방기로 인해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에는 상당한 제약이 잇따르고 있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찾기가 어려우며, 건강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다른, 종종 지나치게 높은 시술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기도 어렵다.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인터넷상의 유통업체를 통해 성분이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찾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 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책임 방기를 용인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을 필수적인 공공보건의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제약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미 해외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신속하게 승인하라!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억압해왔던 ‘낙태죄’가 비로소 폐지된 2021년, 오늘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편적인 권리로, 공적인 의료서비스로 보장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접근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
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
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
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
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
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대(전환)

우측 QR 코드 : 토크쇼 영상



2021년 6월 9일 - 2021년 7월 16일 설문조사

제목 :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일시: 2021년 6월 9일 ~ 2021년 7월 16일

내용 :

- 응답자: 370명(임신중지 경험 있는 응답자 79명)
- 심층인터뷰
 - 방법: 온라인 ZOOM 개별 인터뷰
 - 기간: 2021년 7월 21일 ~ 2021년 9월 9일
 - 대상자: 14명

2021년 7월 1일 성명/논평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김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수술적 임신중지 전후에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임신중지 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적인 정보 마련과 상담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공적 의료체계 내에서 시작된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낙태죄’의 실효가 소멸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비로소 임신중지가 공적 의료제도 체계 내에서 논의된 것은 매우 뒤늦은 조치이다. 게다가 임신중지 접근성 확보에 보다 핵심적인 과제인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를 행한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경제적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술적 임신중지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술적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수술적 임신중지는 건강보험 밖에서 이루어져 비용 통제 구조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술 시기를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공적 보장 체계 내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하기 위하여 수술적 임신중지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둘째, 임신중지 유도약 미페프리스톤의 도입과 약물적 임신중지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WHO 가 지정하는 필수약품인 미페프리스톤은 정식 허가조차 되지 않아 개인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편승하여 온라인 불

법 약물 광고는 연간 2300건이 적발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이뤄지는 약물적 임신중지 또한 경제적 장벽이 높은 편이다. 같은 조사에서 약물을 사용한 여성 중 3분의 2가 비용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약물이나 수술 등(…)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자평했으나, 아직까지 안전하게 약물적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한 상태다. 실제로 약물적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약물 도입 및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줄곧 임신중지 의료행위 일체에 대한 제도화 및 급여화를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상담료 신설은 이제까지 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부터라도 임신중지 교육·상담뿐만 아니라 수술적, 약물적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급여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시스템 준비에 발맞추어 관계 법령 정비도 속개되어야 한다. 이미 실효가 상실된 형법 조항은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로 접근성 확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권인숙 의원,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있으며,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만큼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임신을 경험한 여성 중 5분의 1이 임신중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임신중지는 피임, 임신, 유산, 출산 등의 연속적인 재생산 생애주기 내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재생산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임신중지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한다. 이번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은 임신중지가 공적 의료시스템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나,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은 그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우리는 재차 촉구한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하고 임신중지유도약 도입 본격화하라!

2021년 7월 1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
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
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
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
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
회, 한국여성의전화)

2021년 7월 29일 성명/논평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유산유도제는 필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허가 더 이상 지체말라!

지난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넘게 지난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서 미프지미소의 허가절차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미프지미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가까이 필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약물이 안전한 임신중지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매우 중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취지에 맞게 국가는 불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미프지미소의 사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회 등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위해 가교시험 자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교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E5(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민족적 요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하지만 ICH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이익을 지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재실시는 의약품 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최적의 치료법의 이용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

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미 30년이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의약품의 접근권을 제한당해 왔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에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사전검토로 4개월이나 허가를 지연시켰으며, 미프지미소의 신속심사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교시험 자료 제출까지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재생산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행위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임신중지 약물 적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내에 미프지미소를 허가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1년 9월 2일 참고인 진술

제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절차 관련 중앙약사심의회의
원회 참고인 진술

일시: 2021년 9월 2일(목) 오후 4시~6시

장소: 서울역 인근 회의실

내용 :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참고인 진술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김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발언_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미소프로스톨-미페프리스톤 콤비팩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 일각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유효성, 안전성 심의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페프리스톤은 가교임상시험 없이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입니다. 가교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족적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88년 프랑스와 중국을 시작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몽골, 북한, 인도, 네팔 등 아시아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

는 일본에서도 도입 과정에 있고 올해 4월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일본인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한국인과 약물대사에 있어 인종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서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비아시아국가에서 미소프로스톨-미페프리스톤 콤비팩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연구에서 아시아인종을 포함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인종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인구에 별도의 가교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둘째는 미프지미소 위해성 관리계획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우선 미소프로스톨은 한국에서 위궤양치료제로 분류되어있지만, 자궁수축에 효과가 입증되어 한국 임상 환경에서도 이미 분만 후 출혈, 자연유산 치료, 유도분만 등의 용도로 오프라벨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만큼 미소프로스톨에 대한 임상적 경험은 한국 의료진들에게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허가가 되지 않은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유지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길항체로, 병용했을 때 미소프로스톨 단독 사용에 비교하여 훨씬 효과적으로 임신중지를 유도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중지뿐만 아니라 완료되지 못한 유산, 계류유산 등 다른 목적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약물입니다. 미페프리스톤 도입 시 다른 신약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유도약의 처방과 복용에도 불필요한 장벽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WHO에서 발표한 약물적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전문의, 일반의는 물론 간호조무사까지도 제시하며 표준적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든 약물적 임신중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임신중지 이후 추가 검진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도입의 시급성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우리는 특히 현재 국내 허가가 안 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성분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물로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적응증의 경우에도 현재는 수술적 방법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약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일성분 의약품의 해외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보면, 수술과 관련된 의료인 및 간호 인건비, 시설 이용료, 마취 및 투약이 필요한 시술보다 비용효과적입니다. 특히 판데믹으로 인해 의료이용 및 의료인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더 효용가치가 높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계산부인과의학회(FIGO)에서는 지난 3월 토론회를 열어 약물적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약물 허가 미비와 법적 규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미페프리스톤 도입 지연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당사자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은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안전하고, 따라서 가교시험 없이 시급히 국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발언_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의견서

1. 들어서며

2년 5개월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보장하도록 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을 도입하는 회의에 의견을 보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의 여성 재생산권이 한 발 도약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에 관한 타당성 여부

1) 약물적 임신중지의 시급성

약물적 유산은 임신중절 수술보다 빠른 시점에 자신의 재생산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수술대라는 두려움 때문에 의약품의 사용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관련 약물이 허가되지 않아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의 음성적 구매가 만연합니다. 식약처가 관련 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sn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미프진 구매를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낙태유도제 판매 불법광고 적발만 2019년 한 해 동안 2,365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성적 거래의 실제 규모는 짐작하기 어려우며, 의료인이 배제된 약물임신중지는 여성들을 의약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2) 미소프로스톨 (1996년 국내 허가)

미소프로스톨은 1996년 9월 소화성궤양의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자궁수축 유도 목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허가 초과 약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문헌이나 관련 기록들을 통해 유산이 된 산모들에게 임신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신중단술 또는 소파수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이미 25년간 사용되어온 미소프로스톨은 외국 제약사의 제품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4종류의 제네릭의약품이 있습니다.

위궤양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의약품인 만큼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민족적 감수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응증 외삽 가능).

3) 미페프리스트론

미페프리스트론은 프랑스에서 1988년 9월에 최초로 승인되었고, 미국 FDA에서는 2000년 9월에 허가되어 약 2~3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WHO는 2005년부터 필수약품 목록에 지정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미페프리스트론을 필

* 이정재 외 (1998), 임신 일삼분기의 소파수술을 위한 질내 미소프로스톨 투여와 경구 미소프로스톨 투여에 따른 자궁경관개대의 비교, 산부인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1(0) / 양재혁의 (2001), 임신중기의 임신중단술에 있어서 프로스타그란딘 E1 - 미소프로스톨 단독사용과 복합약제사용시 효과의 비교분석,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44(1)

** 2009년 10월 19일 식약청은 미소프로스톨 함유 경구제가 산부인과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분만유도제'로 사용하여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수의약품 핵심 (core) 목록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한국은 약 2~30 년간 제도적, 규제적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WHO 는 미페프리스톤이 임신중절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편의성 및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오래전부터 유럽, 미국 등 외국에선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 받은 의약품입니다. 동양인권으로 한정하더라도 중국 (1988), 대만 (2000), 베트남 (2002), 몽골 (2005), 북한 (2013) 등에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교시험은 약물의 민족적 감수성을 검토하기 위한 요구이지, 국적 감수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닐 것입니다. 가교시험의 지나친 요구가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며, 이미 30 년 넘게 지연된 의약품 접근권을 더욱 지연시킨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최근 5 년간 신약 66 개 중 국내 가교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은 단 10 개에 불과합니다. 이 중 3 건은 건강한 성인 (여성을 제외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약동학 시험자료를 제출했으며, 7 건은 아시아에서 가교시험을 진행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표 1 참고). 총 30 개 의약품은 가교자료 제출을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면제받은 사유는 주로 희귀의약품이거나 HIV 치료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제로 인정받거나,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었습니다 (표 2 참고).

규정에서 가교자료를 면제하고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희귀의약품 또는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
- 나. 에이즈치료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항암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1) 표준요법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 2) 표준요법 등에 실패한 후 사용하는 경우
- 다. 국내·외 개발 중인 신약으로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진단용의약품(방사선의약품 포함)
- 마.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신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의약품

- 다. 국내·외 개발 중인 신약으로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진단용의약품(방사선의약품 포함)
- 마.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신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의약품
- 바.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사.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별표6] 외국임상자료 등에 대한 검토 및 가교시험 결정방법

표 1. 최근 5년간 신약의 가교시험자료 제출여부에 따른 분류

가교시험 제출	수 (개)
가교자료 제출 면제	30
글로벌 3상 임상시험 내 한국인 자료로 대체	26
국내 약동학시험 시행	3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가교시험 제출	7

표 2. 최근 5년간 신약의 가교자료 제출 면제 사유

가교자료 제출 면제 사유	수 (개)
희귀의약품	18
국소목적 사용	6
생명을 위협하는 치료제로 인정받은 경우	2
기타	2

참고: 매년 식약처가 발표하는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된 외국개발 신약은 총 74개였습니다. 이 중 허가심사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8품목을 제외하고 66개를 조사하였습니다. <별첨 2>에 관련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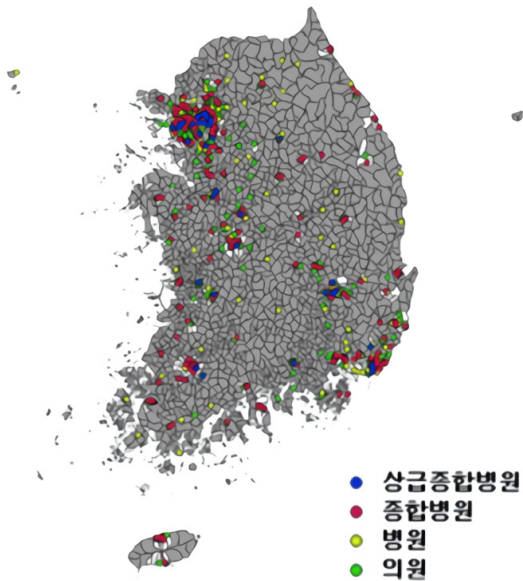
미페프리스톤은 WHO에서 공인하고, 교과서에도 서술되며, 아시아권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약으로 민족간 약물 감수성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 등에 가교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것처럼 약물유산의 대체불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전문의 처방 제한 문제

한국은 지역별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뚜렷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공백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국가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는 253개 지역 중 59곳에 달하였습니다. 약 4곳 중 한 지역은 재생산건강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셈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산부인과 의원이 듬성듬성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할 때 약물적 임신중지의 처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 하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여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3.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 현황

산부인과 의원 관련 기초 시·군·구 현황	수 (개/명)	전체 대비 비중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59	23.4%
해당 시·군·구 내 출산가능연령* 여성 인구	358,534	2.4%



(그림) 산부인과 의료기관 분포도 (이소영·김가희, 2021)

참고: <부록 1>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시·군·구 현황

* 합계출산율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 15~49세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 안전성 관련 최신 변화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검토는 수십 년 전 기준이 변경 검토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조치로 의료접근권이 일부 제한되면서 약물적 임신중절의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령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약물적 임신중지를 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초음파 스캔을 받고 병원 내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신 10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전화나 화상통화로 시도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변화 전후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4. 약물적 임신중지의 원격의료 전환 전후 비교평가 (2020년 1월~6월)

		제도 변화 이전 n=22,158	원격의료 시행 이후 n=29,984	비고
성공적인 약물 낙태		21,769 (98.2%)	29,618 (98.8%)	
합 병 증	수혈이 필요한 출혈	8 (0.04%)	7 (0.02%)	
	입원이 필요한 감염	0	0	
	대수술	0	0	
	죽음	0	0	
자 궁 외 임신	사전 상담과정에서 처리	37 (0.17%)	39 (0.13%)	유의하지 않음
	약물적 임신중지 후 처리	2 (0.01%)	10 (0.03%)	
	예상보다 늦은 처리	0	0	

2020년 BMJ에 게재된 문헌에 따르면, 가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경우와 클리닉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의 안전성과 유효성, 수용가능성을 평가한 임상 결과들의 메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효성, 안전성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

* Gambir K, Garnsey C, Necastro KA, et al., Effectiveness, safety and acceptability of medical abortion at home versus in the clini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 response to COVID-19, BMJ Global Health 2020;5

습니다.*

표 5. 약물적 임신중지 시행 장소에 따른 비교평가(체계적 고찰)

			가정 기반	클리닉 기반	유의성
유효성	3개 RCT	1452명	95.3%	95.8%	없음
	16개 NRS	10,124명	93.8%	94.0%	없음
안전성	두 그룹간에 입원이 필요한 합병증에 유의미한 차이 없었음.				
수용가능성	같은 방법으로 선택할 의사, 친구에게 권유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두 그룹간의 차이 없었음.				

2020년 BMJ에 게재된 문헌에 따르면, 가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경우와 클리닉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의 안전성과 유효성, 수용가능성을 평가한 임상 결과들의 메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효성, 안전성에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BMJ에 게재된 문헌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총 13개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관련 제도를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원격 의료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직은 일시적이며, 추후에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임신중지 후 방문을 원격진료로 진행하거나 임신날짜 측정을 위해 사용한 초음파를 생략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 Gambir K, Garnsey C, Necastro KA, et al., Effectiveness, safety and acceptability of medical abortion at home versus in the clini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 response to COVID-19, BMJ Global Health 2020;5

** Gambir K, Garnsey C, Necastro KA, et al, Effectiveness, safety and acceptability of medical abortion at home versus in the clini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 response to COVID-19BMJ Global Health 2020;5:e003934.

*** Moreau C, Shankar M, Glasier A, et al., Abortion regulation in Europe in the era of COVID-19: a spectrum of policy responsesBMJ Sexual & Reproductive Health Published Online First: 22 October 2020. doi: 10.1136/bmjshr-2020-200724

국가	변화	법적 절차
벨기에	집에서 사용하는 약물적 임신중지를 권장	봉쇄 1주일 뒤 적용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약물적 임신중지가 기존의 9주에서 10주로 연장	
프랑스	집에서 사용하는 약물적 임신중지의 주수제한이 7주에서 9주로 연장됨/원격의료로 시행되는 모든 약물적 임신중지는 의무상담이 면제됨/ 약사가 직접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주문할 수 있음	2020년 3월 26일 National Society (CNGOF) 가이드라인 발표, 4월 10일 National Health Agency
영국 Wales, England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와 집에서 사용하는 약물적 임신중지가 허용 / 임신중지약물 우편배달	Department of Health of the Wales Government on 31 March 2020 Department of Health of the English Government on 30 March 2020
노르웨이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	Directorate of Health 결정

미국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접근권의 제한을 우려하여 기존의 대면프로그램의 재량권 범위를 완화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요구로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원격진료 및 우편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5. 결론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제제는 지난 30년간 약물적 유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영국 20만명, 미국 300만명을 포함하여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약물적 유산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위기에 의료기관에서의 임신중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산유도제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에 더욱 중요한 의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 제제의 안전에 대한 우려나 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이미 지난 20년 전에 사후피임약 도입과정에서 유사하게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사후피임약 도입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거나 생명경시현상이나 성 문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후피임약 허가되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실현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페프리스톤 제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기 전에 또는 여성들이 약물을 남용할거라는 우려를 고민하기 전에 스스로 임신중지에 대한 편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30년간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매년 수천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다른 약물과 달리 안전사용 문제를 더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음성적으로 약물적 임신중지를 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정보도 조력자도 없는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임신중지를 문의했다가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가짜약을 구매하여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언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적 약물감수성 차이를 우려하여 가교시험을 통해 유산유도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안전 우려를 너무 좁게 평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산유도제의 안전장치에 있어서 한국의 약물 사용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은 임신을 하더라도 산전관리를 받기 위해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이들 중 4분의 3은 출산을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중지 이용을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신속성이라는 약물적 유산의 장점을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 내에 심사위원님과 중앙약사심의위원님들께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페프리스톤 제제의 허가 및 사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_ 김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관한 자료와 의견

2021.09.01.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미페프리스톤의 이용은 가교시험이 필요하지 않을만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미페프리스톤은 WHO 필수 의약품입니다.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빠른 승인,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한 이용 보장, 보건의료 접근성의 확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정보접근성, 보험 적용입니다.

1.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

WHO에서는 2003년 처음으로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을 포함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를 발행했으며, 이후 꾸준히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사진) https://www.figo.org/sites/default/files/2021-04/Slides%20MA%20briefing_ENG.pdf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2005년에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문화된 의료 감독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목록”의 의약품으로 격상시켰음.
- “핵심 목록”은 국가 차원에서 복제할 필수 의약품의 목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필수 의약품 중에서도 기본적인 보건 체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의약품 목록이며, 현재와 미래의 공중 보건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하고 비

용 면에서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된 의약품들을 의미함.*

- 2000년 미국에서 승인한 미페프리스톤(미페프렉스®) 관련 모성사망률은 0.00063%, 42만 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입원, 수혈, 감염과 같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은 0.01-0.7% 정도로 보고됨. 그 외 드문 합병증으로는 자궁 파열이 있는데, 이것은 임신 주수가 지나 자궁이 커지고 제왕절개와 같은 자궁 절개 수술을 한 경우에서 있을 수 있으며 WHO 2018 약물적 유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경우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응급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둘 것을 권고함. 즉,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비율은 우리가 매우 흔하게 복용하고 있거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도 있는 항생제, 진통소염제들과 비슷함.**
- 임신 초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성공률은 미소프로스톨만 사용할 때보다 높음. 임신 9주 이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은 95~99%, 미소프로스톨 단독요법은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됨.***

2. 처방 자격, 사용 기간, 복용, 사후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

- 2019년 기준 전 세계 75개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1분기 임신중지에서는 계속해서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최예훈, “[미프진 특집] 미페프리스톤 가이드 (1): 소개와 현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슈페이퍼, 2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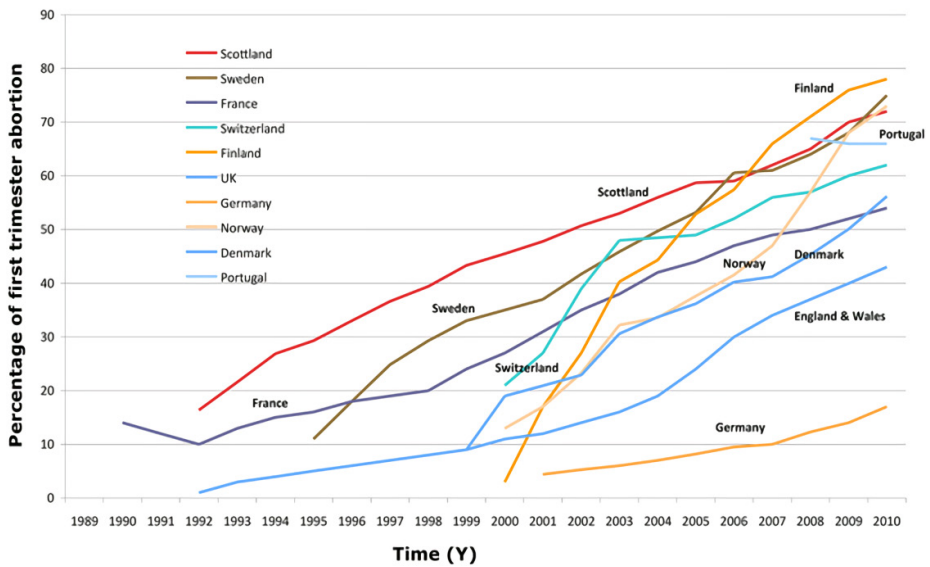
<https://srhr.kr/issuepapers/?q=YToyOntzOjE5OjIjZl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6142932&t=board>

** 최예훈, 앞의 글. 원문자료 :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The Safety and Quality of Abortion Care in the United States, 2018

<https://www.nap.edu/read/24950/chapter/4>

*** Bixby Center for Global Reproductive Health,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TEACH(Training in Early Abortion for Comprehensive Healthcare), Early Abortion Training Curriculum, 2020

Medical abortion as percentage of first trimester abortions



Instability of Misoprostol Tablets Stored Outside the Blister; A Potential Serious Concern for Clinical Outcome in Medical Abortion(2014)

- WHO의 가이드에 따르면 전문 의료인은 임신 중 전 기간에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임신 9주~10주까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 있음.*

TABLE 1 Summary chart of recommendations on medical management of abortion

RECOMMENDATIONS	COMBINATION REGIMEN (RECOMMENDED ^a)		MISOPROSTOL-ONLY (ALTERNATE)
	MIFEPRISTONE >> 1-2 DAYS >>	MISOPROSTOL	MISOPROSTOL
1A. INCOMPLETE ABORTION < 13 WEEKS	None	Use misoprostol-only regimen	600 µg PO ^b or 400 µg SL ^b
1B. INCOMPLETE ABORTION ≥ 13 WEEKS	None	Use misoprostol-only regimen	400 µg B, PV or SL every 3 hours ^b
2. INTRAUTERINE FETAL DEMISE ≥ 14-28 WEEKS	200 mg PO once	400 µg PV or SL every 4-6 hours ^b	400 µg SL (preferred) or PV every 4-6 hours ^b
3A. INDUCED ABORTION < 12 WEEKS	200 mg PO once	800 µg B, PV or SL ^b	800 µg B, PV or SL ^b
3B. INDUCED ABORTION ≥ 12 WEEKS	200 mg PO once	400 µg B, PV or SL every 3 hours ^b	400 µg B, PV or SL every 3 hours ^b

* WHO,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2nd ed., 2012

- 유럽의 경우 일찍부터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비율로 약물적 임신중지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먼저 약물을 도입했던 프랑스(1988), 영국(1991), 스웨덴(1992)에서의 사용 경험이 뒤따라 도입한 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미침.
- 처음 사용될 때의 가이드라인은 미페프리스톤의 용량, 프로스타글란딘(미소프로스톨, gemeprost)과의 투여 간격, 적용된 임신주수 등 조금씩 다양했으나, 이 세 국가들은 초기 유산 유도에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였고, 미페프리스톤 600mg과 2일 후에 프로스타글란딘 처방을 모두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배출물이 나올때까지 머물면서 지켜보았음.
- 그 결과, 미페프리스톤의 용량을 600mg에서 200mg으로 낮추고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 자궁 수축 효과가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사용했던 gemeprost 보다 미소프로스톨의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사실, 보다 이른 주수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점, 집에서 미소프로스톨을 자가로 복용해도 결과가 좋다는 것, 초음파 검사를 의무로 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냄.*
- 따라서 현재는 복용 후 의사의 관찰 하에 대기하지 않아도 되며, 초음파를 사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고, 약물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범위도 점차 확대됨.
- 먼저 약을 도입했던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입원하여 복용하도록 하면서 유산을 진행하거나, 미페프리스톤을 병원에서 복용하고 1~2일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도록 하였음. 그 결과 입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의료 인력이나 그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원을 오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증상이 시작되거나 멀리서 와야 하는 경우 여러 번의 병원 방문을 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음.
- 이후 전문가적 합의의 결과는, 지지가 되는 사람과 함께 안정된 장소에서 약물

* 최예훈, 앞의 글. 원문 자료 Guttmacher Institute, Mifepristone for Early Medical Abortion: Experiences in France, Great Britain and Sweden, 2002

복용을 했을 때에 기대되는 약물 효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 스스로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과 효과 측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경우에도 2015년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이후 2017년부터 미페가이미소(mifegymiso)를 공급하면서 처음에는 제조사에 등록하고 교육과 인증을 받은 의료인만이 처방할 수 있고, 반드시 의사 관찰 하에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제한 절차를 두었으나 의료인들의 임상결과를 보건 당국이 적극 수용하면서 11개월만에 불필요한 관련 절차를 모두 제거하였음.
- 현재는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가정의, 임상간호사도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을 위한 별도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제조사가 아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처방 전 초음파 검사 의무 또한 삭제함. 현재 초음파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임.
- 약물적 임신중지의 약제 처방은 임신 9주까지 가능하나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처방할 수 있고, 의료보장 체계 하에 포함되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처럼 각국에서 1분기 임신중지에서의 안전성이 폭넓게 확인됨에 따라 법적 상황이나, 지역, 노동 여건 등 다양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도 병원에서 의사의 관찰 하에 머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약물을 이용하고 필요 시 의료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MA(Self-Managed Abortion)의 방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WHO에서도 2020년 11월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별도로 판매되거나 적절한 용량으로 함께 포장됨

* 최예훈, “[미프진 특집] 미페프리스톤 가이드 (2):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이슈페이퍼, 2020.05.

HYPERLINK "<https://srhr.kr/issuepapers/?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6142933&t=board>"<https://srhr.kr/issuepapers/?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6142933&t=board>

원문 자료: The Safety and Quality of Abortion Care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8 HYPERLINK "<https://www.nap.edu/read/24950/chapter/4>"<https://www.nap.edu/read/24950/chapter/4>

니다.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의 직접적인 감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임신 테스트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임신중지 과정의 완료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할 경우 즉시 피임을 시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약물적 임신중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에 있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_〈WHO recommendations on self-care interventions Self-management of medical abortion〉

INDIVIDUALS CAN SELF-MANAGE MEDICAL ABORTION IN THE FIRST TRIMESTER

The self-management of medical abortion is:

- ✔ Non-invasive
- ✔ Cost-effective
- ✔ Acceptable
- ✔ Improves autonomy

Links to a healthcare provider should always be available, if needed

hrp research for impact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ations on self-care interventions Self-management of medical abortion

* WHO, WHO recommendations on self-care interventions Self-management of medical abortion, 2020.11.

3. 국내 수요자의 현 상황과 약물의 승인 및 공급에 관한 제안 사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 에서 19세~44세 여성 중 최근 5년(2016~2021)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와, 최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 시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의 결과(9월 중 보고서 발표 예정)에 따르면 ‘약물적 방법이 수술적 방법보다 좀 더 안전하거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변의 시선, 임신중단 가능 의료기관 정보 부족, 의료인과 진료인의 거부, 비용적 부담 등이 주요 이유로 확인됨. 20대 이하에서는 정보 부재, 비용적 부담, 편의성 등의 이유가 3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이와 같은 국내 수요자의 상황과 지난 수십년 동안 누적된 해외의 임상 결과, WHO 가이드 등을 바탕으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도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고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급해야 함
- 이미 2010년 경부터 중국 등을 경유하여 유산유도제 약물이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2015년 이후로는 국내외 중간 판매상에 의한 구입이나 해외 단체(Women On Web, Women Help Women 등)를 통한 유산유도제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 온라인 중간 판매상의 경우 정확한 상담이 어렵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 복용 전후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유산의 완료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실패 확률이 높음.
- 한편, 해외 단체의 경우 전문 의료인을 통해 안전한 약물을 배송해 주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송 지연, 국내에서의 온라인 정보 차단, 세관 문제 등으

* 김동식, 동계연, 김새롬,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로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발생거나 신청 후 배송을 기다리다가 임신중지 시기가 2주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약물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고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약품의 안전한 이용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시행해야 함

-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료적 여건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로 임신중지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의 이용, 부작용,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증상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정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해 약물의 이용과 주의사항 등에 관한 공식 정보를 누구나 접근하여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글자, 그림, 영상, 수어, 다국어 등)으로 제공할 것
-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 항목으로 적용할 것
-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보건소, 1차 의료기관과 일반의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처방 전 의료 절차는 간소화하는 편이 좋음

- 앞서 강조했듯이, 해외의 오랜 임상 결과를 통해 미페프리스톤 약제의 안전성은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의료인이 세부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와 의료접근성이 확보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전 초음파 검사, 환자의 동의서, 복용 후 병원에서의 관찰 등 불필요한 의무 조치를 둘 필요는 없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이 임신중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에 장벽이 되어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위험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조치가 아니라 언제

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접근성의 확대와 정확한 정보 제공에 있음.

발언_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지 2년이 지났고,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성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유산유도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온라인이나 지인, 여성단체에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접근성은 낮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합니다.

약물적 임신중지 방법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적 유산유도제(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수술보다 약물적 방법을 원하는 내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담소가 해줄 수 있는 안내는 제한적입니다. “아직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정식허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임신중지 약물 광고를 보고 사기를 당한 후에 상담 요청을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문제지만 성분도, 안전성도 확인할 수 없는 가짜 약을 먹거나, 피해를 겪고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임신중지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산유도제 허가를 미루는 것은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들의 피해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커질 것입니다.

미프지미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왔고, 세계보건기구가 20년 가까이 필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온 약물입니다.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수십 년간 문제없이 사용되었고,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산유도제 허가를 미루는 것이 여성을 위협하게 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약물 유통을 적발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대응으로는 당장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이 불법에 의지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유산유도제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국민투표로 ‘낙태죄’ 폐지를 결정했는데, 반년 만인 2019년 1월부터 유산유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루속히 미프지미소를 정식 허가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성명/논평

[성명서]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으로!”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전세계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한국에서도 오랜 투쟁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며 마침내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이루었다. 이제 안전한 임신중지는 모두를 위한 권리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처벌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책무를 방관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와 정보 부족,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문제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설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98%가 임신 1분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경험하였고, 90% 이상이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모두 되도록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자 했으나, 정보 부족과 의료 기관에서의 거부, 의료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한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초과 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드는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병원 재방문을 하지 못하여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신중지가 불법이 아니게 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한 고통을 겪어온 경험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아직도 의약품 허가과정에 막혀 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은 여전히 성분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모낙페의 실태조사에서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성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약물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미프진 도입이 더이상 늦춰질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유산유도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미프진 신속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불필요한 논쟁 속에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이미 지난 30여년 동안 해외 7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로 체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 70% 이상이 유산유도제를 통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할 만큼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제 한국 정부도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신중지 방법에 대한 결정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산유도제 약물의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

모낙페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10월 초에 발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책임 방기를 빠져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법 제정과 관련 정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모낙페는 작년 9월 28일과 10월 8일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개최한 기자회견 각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 4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존치하고자 했던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가들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 박아름 활동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모낙페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제약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철회하고 정당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신중지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결정권 차원을 넘어 노동, 주거, 교육, 접근성 지원 등에 관한 사회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을 함께 요구한다. 혼인여부, 장애여부, 소득수준, 인종, 연령, 성적 정체성 등과 상관없이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낙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구한다.

- 건강보험 적용과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라.
- 유산유도제를 공식 보건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허가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라.
-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라.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 의료현장에서 임신중지가 최선의 의료행위로 제공되도록 의료인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라.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2021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의 슬로건은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역사로 남게 하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해 온 구시대의 법과 관행을 역사에 남기고,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1년 9월 2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
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
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
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
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
회, 한국여성의전화)

2021년 10월 12일 기자회견

제목 :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1년 10월 12일 오후 2시~ 3시

장소: 온라인(유튜브 <https://youtu.be/202bVhb0pBU>)

내용 :

- 사회: 앞(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
 - 임신중지 경험 심층인터뷰 결과 요지 발표_ 이서영 (인도주의실협회사협의회 정책부장)
 -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결과 요지 발표_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_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유산유도제 관련 경험의 의미 분석과 제안_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간·배포
 - 방법 : PDF 홈페이지 등 게시, 인쇄본 100부 복지부·여가부 소속 국회의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소속 단위 등 배포

추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SHARE, 여성의당,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우측 QR 코드

: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1_ 이서영 (인의협 정책부장)

임신중지 경험 심층인터뷰 결과 요지 발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이서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봄부터 기획하고 진행한 임신중지 경험 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의 취지와 진행 경과, 심층인터뷰 결과를 개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조사를 진행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신중지를 제공한 의료진과 여성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비로소 임신중지 경험을 조금씩 발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임신중지 당사자, 혹은 조력자로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신중지 의료가 보편적 의료체계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의료인으로서 임신중지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건강할 권리를 추구

하는 것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들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법과 제도, 의료, 노동과 문화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낙페는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서 입법당국과 정치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전달하고자 해당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의료행위의 수진자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가 법과 제도의 설계에 있어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문/실태조사 진행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낙페는 2021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온라인 설문지로 임신중지 경험 유무에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임신중지 대체입법에 대한 쟁점 별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문항 15개와,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는 그 외 문항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임신중지 경험에 대한 설문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전과 이후의 경험 모두를 취합하였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것이 스스로의 신체 · 정신 · 사회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설문 기간 내 총 370명이 응답하였으며,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

명이었고, 심층인터뷰 참가자는 총 14명이었습니다. 심층인터뷰는 기존 저희 설문, 실태조사가 완료된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 중 심층인터뷰 참여의사를 밝히며 연락처를 남겨주신 13인에 더해 장애여성으로서 재생산과 의료에 관련된 경험을 나누주기 위해 참여해주신 1인을 더해 총 14건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층인터뷰는 설문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반구조화 설문지를 별도 구성하여 인터뷰이의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된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청취하였습니다.

14인의 심층인터뷰 결과는 본론에 아홉가지 주제로 개괄하여 실었습니다.

우선 몇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 당사자로서 처벌의 불안 없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이전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 또한 항상 처벌의 위협에 대해 걱정했던 불안이 해소되었

다고 했고,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의 조력자로서의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을 구술하였습니다. 한편 처벌에 대한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자 대부분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보제공 및 상담체계,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범죄화만으로는 재생산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러한 제도정비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쟁점별 경험들을 실었습니다.

유산유도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인터뷰이들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조달의 어려움과 복약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한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미적용과, 사회보장제도 미비를 체감한 경험들을 청취하였습니다. 임신중지 의료는 현재 대다수가 비급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가격형성이 일관되지 않고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임신중지 의료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들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개인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들 또한 청취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임신중지 전후 요양 없이 일터에 나가야 하거나 갈등과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현장에서는 기존의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와 사회문화적 터부시로 인해 음성화되고 소극화된 의료행태를 일관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의료진과 관련된 경험, 배우자동의 요구와 관련된 경험, 진료거부와 관련된 경험, 임신중지 전 상담과 정보습득에 대한 경험들에서 의료제도와 정책의 미비가 낳고 있는 직간접적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경험에서는 임신유지 결정과 출산 경험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통해, 임신중지 보장은 재생산권리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며, 심층인터뷰 내용 개괄을 마치겠습니다.

발표2_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결과 요지 발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의 임신중지 당시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보편적인 임신중지 경험 결과는 심층인터뷰의 결과, 그리고 이전에 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 기관에서 이루어진 여러 실태조사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기에 간단한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첫째, 임신중지의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접근성 보장, 둘째,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 셋째, 임신중지 사전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 임신중지의 전과정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 넷째, 다양한 임신중지 방법 마련 및 보장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심층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임신중지 전과정에서의 경험과 임신중지 권리보장에 관한 의견을 질문했습니다. 8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

습니다. 86문항 가운데 71개 문항은 임신중지 경험을 질문했고, 15개 문항은 권리보장에 관한 의견을 질문했습니다. 총 370명이 응답해주셨고, 이들 가운데 임신중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분들은 79명이었습니다. 이후 설명드리는 조사 결과는 79명의 응답에 바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전에 임신중지 당시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20대, 비혼 또는 미혼, 서울 거주자, 한 달 소득 100만원 미만,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임신중지 방법, 임신중지 주수, 임신중지 결정 소요 시간, 비용 부담의 차이가 있었는데, 주요 결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임신중지 방법 결정은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과적 방법을 통해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 대부분이 단체 및 기관의 도움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였습니다.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 경우, 또는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 외과적 방법 즉 수술을 통해 임신중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현재 공적 및 사적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방법에 관한 정보가 외과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임신중지 방법의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기혼이었던 응답자들은 모두 외과적 방법을 선택하였고, 동거 또는 비혼/미혼인 경우에 약물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사유로는 의사가 권하거나, 기록이 남을까봐 가장 많은 응답을 구성. 외과적 방법 임신중지 경험 어려움 결과 고려할 때, 수술의 경우 상대방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한 시간 역시 당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랐는데, 병원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지인이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에 소요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결정 소요 시간이 달랐는데,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중지 관련 물리적 접근성은 임신중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경우는 외과적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하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비혼/미혼인 경우, 임신중지 가능한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 마련 부담을 넘어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신중지 경제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필요는 물론, 경제적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편적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의료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중지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 보장은 임신중지 이전과, 이후 건강돌봄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임신중지 이전과 이후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고, 특히 임신중지 이후에 임신종결 확인 이외 별도의 의료적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이후 성과 재생산 건강을 포함한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나 상담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의료자원 마련 및 환

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술 환경의 위생상태나 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임신중지가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되어야 함은 물론, 동시에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관련 질 관리 등의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 입법과 제도화에 대한 공론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 15가지 즉, 임신중지 비범죄화, 경제적/지역적 의료접근성,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 임신중지 의료자원, 임신중지 상담과 정보 제공, 당사자 권리보호, 사회보장제도 의견, 그리고 제반 재생산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등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신중지를 둘러싼 포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외 주요 결과는 임신중지 결정부터 이후 건강관리까지 시간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중지 결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이 임신중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신중지

관련 결과를 살펴보면, 임신중지 방법으로 대부분 외과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약 9%는 내과적 방법을, 5%는 외과 및 내과적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과적 방법과 내과적 방법 모두 관련 정보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비용에 부담을 느꼈으며, 임신중지 과정에서 의료진 또는 약물 제공자로부터 약물 또는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중지 이후 건강관리나 피임, 성관계, 가족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과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 약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약물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응답한 비율도 약 2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임신중지 방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수술로 하는 편이 확실할 것 같아서 또는 안전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신중지 이후 회복 과정에 관한 경험은 앞서 설명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요약합니다. 첫째, 임신중지의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접근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체계에 관한 입법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임신중지는 사전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임신중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전제하고 입법 및 제도 마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임신중지 방법 마련 및 보장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인터뷰 결과와 다르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인 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 순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경험과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입법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니다. 실효성 있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 체계 마련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3_ 나영

(모낙제 공동집행위원장, SHARE 대표)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법,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

앞에서 두 분께서 심층 인터뷰와 실태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보고서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꼭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층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맥락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인터뷰의 맥락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임신중지라는 구도를 얼마나 협소하게 다루어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낙태죄 실효가 이제 상실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여태까지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언론에서의 보도는 여전히 현재의 입법 공백을 언제까지를 허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심층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이 인터뷰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현재 입법 공백은 어떻

게 또다시 과거와 같은 틀로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의 공백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그것은 건강권의 공백. 그리고 이것을 보장해야 될 보건의료 체계의 공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이번 결과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결론과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왔듯이 건강보험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술적 방법과 약물을 통한 방법 모두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심층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인터뷰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는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많은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들을 함께 낳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금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의료 행위를 받는 수진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

료 행위가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의 권한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권한 조차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여러 다른 형태의 부담들로 함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뷰들이 검사와 진찰, 약제, 그리고 사후 검진 등 포함된 의료 항목의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시술 당시에 의료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인터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금으로 비용을 해 왔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혹은 파트너가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협박이나 낙인의 부담 또한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의료기관을 찾거나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후속적인 결과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문제는 단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의 여러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국회에서도 논란이 다뤄졌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지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태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성분을 알지 못하고 혹은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임신유산유도제는 이미 WHO에서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이고 필수 의약품의 핵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 의약품 중에서도 핵심 목록에 있다는 것은 전문화된 의료 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중 보건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약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약물로서 제공을 했었고, 병원을 반드시 찾아가지 않더라도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격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사시 위험 시기에 얼마나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 여겨지는지가 접근성의 큰 차이이자, 건강권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문제는 임신중지에 해당되는 의료 행위뿐만 아니

라 이전과 이후 건강 돌봄을 포함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지 자체를 단절적인 사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애 주기에서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의료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기록이 남지 않고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신중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록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인터뷰이들을 만나본 결과 많은 인터뷰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는 기록에 대한 부담이 처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공식 체계이자 보편 의료 행위로서 보장이 되어야 그에 따른 낙인 효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점 반드시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보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

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정책 개입으로 우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유급 병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한에서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해 이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통해서 발의된 바 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서 조항만 삭제하더라도 당장 임신중지도 유사산 휴가로서 포함될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재생산 권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많은 인터뷰이들이 비용을 감당하느라고, 빌린 비용을 감당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또 할 수밖에 없었고, 유사산 휴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시술을 받고 오후에 바로 복귀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개인의 건강에도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가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라고 불리는 이 부가급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의 행정규칙 자체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임신중지의 경우 모자보건법 허용 요건에 한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그 태도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법의 실효가 사라진 만큼 유산이 일반적으로 적용 수 있다면 모든 경우의 유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은 정부가 공식화하고 정확하고 표준화된 정보를 공식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다른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의 포털 사이트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임신중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확한 정보, 편견 없는 정보가 공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게 우선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습

니다.

현재 상담 교육료 신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의료인이 의료 수진자가 받아야 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은 당연히 수진자가 받아야 되는 권리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한 비용으로 되기보다는 의료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권리로써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의료인이 제공해야 할 의료 행위로서 이에 관한 교육 시스템도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임신중지에 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배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난 9월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300여 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과정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체계화되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의료인의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 보시면 임신중지는 아니지만 유산과 출산 경험이 있는 장애 여성의 경험이 보고서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중지뿐만 아니라 임신의 유지나 출산에 있어서도 의료인의 편견이 개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검사나 관련 시설, 결정 등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이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하거나 함부로 개인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료인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의료기관이 차별 없이 임신중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 의료법 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이주민이나 난민, 노숙인, HIV 감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의 편견이나 생각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거부하

는 것이 심지어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더 많은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안들이 일부 올라와 있고 특히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거부권을 명시한 법안을 또 하나 발의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국공립, 3급 종합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신중지 시술을 시술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지만 사실상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 수 기준으로 10%에 달하지 못하는 OECD 최하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70여 개 진료권역 중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3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는 단지 임신중지라는 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개인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불평등과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개인의 건강권을 고려해서라도 거부권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을 하면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은 마찬가지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을 해두었는데 이것은 개별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에서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항목으로 다루면서 이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법제도와 거부권 역시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는 온전히 여성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파트너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한다거나 혹은 파트너가 그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이후에 다른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본인의 결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부모나 제3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개인이 이 결정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교육에서도 소극적인 내용에서 탈피해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까지 모두 포괄하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점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실효가 사

라진 지 1년여가 되어 갑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의 문제로 두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낙태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낙태죄 시대의 처벌과 허용이라는 프레임은 이제 과거의 역사로 두고 이제는 어떠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무엇을 보장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번 심층 인터뷰와 설문 실태조사의 내용이 그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4_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유산유도제 관련 경험의 의미 분석과 제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활동가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을 포함하여 의약품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신 10주 이내에 안전하게 어디

서나 쉽게 또 수술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기에는 임신중지 약물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가능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제도 내에 허가된 의약품의 공급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권해서, 수술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처방이 아니면, 공신력이 없는 온라인을 통해 또는 지인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임신중지가 지연되어야 했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담하기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들도 재방문을 하기 어려워 사후 부작용 관리에 대해 안내를 받기 힘들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층 인터뷰에서 참가자 중 2019년에 약물을 이용한 분도 30년 전 약물을 찾은 분도, 동일하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30년동안 제대로 된 약물 정보조차 없는 환경은 동일하였습니다.

이러한 약물 임신중지 안전관리의 무법지대는 식약처의 미프지미소의 허가가 이뤄지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이 개발된지 30년이나 되었지만 우리는 이런 의약품 사용의 미보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와 함께 병원 또는 약국을 통한 사후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는 외과적 방법의 물리적 한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0% 이상이 1주 이내에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데 1주 이상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는 임신중지 사실을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은 임신중지를 결정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임신중지 약물의 사용은 임신중지 접근권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한국에서는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외부적 이유로 안전하지도, 접근용이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 수만 명이 찾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는 여성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저렴하게, 어디서나 쉽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신속하게 허가 해야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 만으로 제한된 처방권이나 원내처방 등의 의약품 이용의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록]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언론 대응 활동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1	2017.09.23	여성신문	‘낙태죄 폐지’ 위한 ‘검은 시위’ 1년, 9월 28일 여성들 다시 모인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99	단순보도 (외 20건)
2	2017.11.09	아시아경제	"여성은 인구통계수단이 아니다"...낙태죄 폐지 목소리 봇물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916382852537	단순보도 (외 10건)
3	2017.12.02	SBS	"여성이 인구 통제 도구 아냐...낙태죄 폐지해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2230&plink=ORI&cooper=NAVER	단순보도 (외 27건)
4	2018.03.14	MBC	여성인권단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여성건강권 보장 관점에서 해야" https://imnews.imbc.com/news/2018/culture/article/4555781_30819.html	단순보도 (외 1건)
5	2018.05.04	한겨레	국회 입법조사처 “낙태죄 규제 완화” 첫 보고서 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275.html	인터뷰
6	2018.05.24	뉴시스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단죄 이전에 여성 현실 고려"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524_0000317127&cID=10201&pID=10200	단순보도 (외 42건)
7	2018.07.05	한겨레	레베카 곰퍼츠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 중단은 여성의 권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2108.html	단순보도 (외 8건)
8	2018.07.07	경향	‘낙태죄 폐지’ 촉구 최대 집회... 현재 향해 “낙태죄는 위험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7071959001	단순보도 (외 36건)
9	2018.07.26	뉴스1	여성단체 "'낙태죄 존치' 이동원, 대법관 자격 없어" https://www.news1.kr/articles/?3383041	단순보도 (외 4건)
10	2018.08.08	경향	“낙태 합법화, 아르헨티나여 힘내세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8081823001	단순보도 (외 13건)
11	2018.08.29	국민일보	“불법 낙태, 의사·여성 별준다고 해결되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0002&code=11132000&cp=nv	인터뷰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12	2018.09.03	코메디닷컴	‘페미니스트 대통령’, 낙태죄는 외면하나? http://kormedi.com/1229067/	단순보도 (외 1건)
13	2018.09.17	오마이뉴스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http://omn.kr/15xz5	심층인터뷰
14	2018.09.29	연합뉴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여성들 '낙태죄 폐지' 시 위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9032800004?input=1195m	단순보도 (외 50건)
15	2018.09.30	경향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809302057025	기고(심층 인터뷰)
16	2018.10.02	이데일리	임신은 여자만 책임?...낙태죄 논란에 여성 피임수술 확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1526619368984&mediaCodeNo=257&OutLnkChk=Y	인터뷰
17	2018.11.14	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http://omn.kr/1cz3i	심층인터뷰
18	2018.11.28	뉴스시스	"낙태죄 존치는 여성 폭력"...내일부터 현재 앞 100일 시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28_0000486721&cID=10201&pID=10200	단순보도 (외 16건)
19	2019.02.14	연합뉴스	낙태 줄었다지만...의료계 "현실 벗어난 법 개정해야" 한목소리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4109200017?input=1195m	인터뷰
20	2019.02.14	한겨레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 도입해야...세계보건기구 (WHO)도 권고한 것"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82175.html	단순보도 (외 24건)
21	2019.02.14	MBC	정부는 '낙태' 줄었다는데...후유증에도 '속앓이'만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64446_28802.html	인터뷰
22	2019.02.14	MBC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현재 결정 바뀌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64448_28802.html	인터뷰
23	2019.02.14	JTBC	여성 75% "낙태죄 처벌조항 고쳐야"...내달 위헌 여 부 결론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9906	인터뷰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24	2019.02.15	연합뉴스 TV	"누가 불법 낙태 밝히겠나"...정부 발표에 의구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422&aid=0000361379	인터뷰
25	2019.02.18	녹색당 유튜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1인 시위 78일차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RvqOBSkaZjo	인터뷰
26	2019.03.08	경향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여성의 날 맞아 '낙태죄 폐지' 촉구 목소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3081449001	단순보도 (외 47건)
27	2019.03.19	이데일리	낙태약 제공사이트 '위민온웹' 차단 논란... "여성 권리 침해" vs "불법·부작용 우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22424960&mediaCodeNo=257&OutLnkChk=Y	인터뷰
28	2019.03.30	연합뉴스	서울 도심서 낙태죄 찬반집회... "태아도 생명" vs "폐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0041300004?input=1195m	단순보도 (외 40건)
29	2019.03.31	서울신문	불법 촬영 경각심 커진 여성들 "집회도 찍지 마"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1011001&wlog_tag3=naver	인터뷰
30	2019.04.04	아시아경제	[특류청론] 낙태죄 폐지와 국가의 역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411263507545	기고(심층 인터뷰)
31	2019.04.07	한겨레	"몰래 산 임신중절약 안전할까"...불법 덩에 갇힌 여성 건강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89065.html	인터뷰
32	2019.04.08	오마이뉴스	가난하고 불쌍하면 낙태 허용? "그런 식으론 안 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5147	심층인터뷰
33	2019.04.08	MBC	여성 75% 낙태죄 반대... "안전한 임신 중단도 권리"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40337_28802.html	인터뷰
34	2019.04.09	한국일보	"낙태죄는 여성 생명권 위협... 거리서 공감 확산 느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81360044822	심층인터뷰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35	2019.04.09	한겨레	7년만에 심판받는 낙태죄...국민은 '폐지'로 기울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89271.html	인터뷰
36	2019.04.10	민중의소리	[기고] 낙태죄 폐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계로 http://www.vop.co.kr/A00001396758.html	기고(심층 인터뷰)
37	2019.04.10	경향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냐...낙태'죄' 꼬리 떼기 '6'에 달렸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4102129005	인터뷰
38	2019.04.11	국민일보	여성을 인구조절 도구로 보던 역사는 끝났다... '낙태죄 위헌' 여성단체 환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23851&code=61121111&cp=nv	단순보도 (외 41건)
39	2019.04.11	KBS	[팩트체크K]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 올라간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8108&ref=A	인터뷰
40	2019.04.11	이데일리	"22주 이내" 낙태기준에 충분한 숙려·정보제공 기대... "남발 없을 듯"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94966622455136&mediaCodeNo=257&OutLnkChk=Y	인터뷰
41	2019.04.11	YTN	낙태 기준·의사 처벌 원점에서 손질...의료 현장 혼란 우려도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11917135488	인터뷰
42	2019.04.11	연합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시민단체 도심서 축하 집회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175000004?input=1195m	단순보도 (외 7건)
43	2019.04.11	서울신문	[팩트 체크] 낙태 허용해도 낙태율 상향 일시적...美 합법화 후 16→2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2006014&wlog_tag3=naver	인터뷰
44	2019.04.12	한국일보	낙태 '기간 한정' 논란 속... 시민단체 "임신기간 제한 없이 허용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21659396574	단순보도 (외 32건)
45	2019.04.12	KBS	안전한 임신 중단 '어떻게'?...의사 교육도 시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9131&ref=A	인터뷰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46	2019.04.12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3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 동 나 영 위원장/해남119안전센터 박경용 센터장) https://kjmbc.co.kr/programme/ YkU0WylEzLGPBOva/p/pSseOJwa/single/55335/ page/86	인터뷰
47	2019.04.16	한겨레	낙태죄 폐지 입법 논의 시동...‘안전한 임신중지’ 법제 화 관건 https://www.hani.co.kr/arti/society/ women/890220.html	인터뷰
48	2019.04.16	KBS	낙태죄폐지 시민단체 “정의당 개정안은 낙태죄 존치나 다름없어” https://news.kbs.co.kr/news/view. do?ncd=4181353&ref=A	단순보도 (외 10건)
49	2019.04.17	여성신문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임신중지 출일까’”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88460	심층인터뷰
50	2019.04.21	한겨레21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 general/46944.html	심층인터뷰
51	2019.05.13	미디어오늘	정의당 낙태죄 폐지 법안이 말하지 않는 것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 html?mod=news&act=articleView&idx no=148325	인터뷰
52	2019.05.31	오마이뉴스	"홍준표도 정치하지 않나, 페미니스트 여성들도 잘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541791	심층인터뷰
53	2019.06.20	민중의소리	‘장애인이 아이를?’ 편견에 가로막힌 장애 여성 재생산 권 http://www.vop.co.kr/A00001415543.html	단순보도 (외 1건)
54	2019.06.25	뉴스1	여성단체 "검찰, 자기의사 따른 임신중지 수사·기소 중 단하라" https://www.news1.kr/articles/?3654430	단순보도 (외 1건)
55	2019.06.27	투데이신문	檢, 낙태 사건 기준따라 ‘기소유예·중지’ 처분키로...여 성단체 “사유 불문 수사중지·불기소 해야”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 html?idxno=67336	인터뷰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56	2019.07.21	연합뉴스	정체불명 낙태약 불법유통 여전...여성계 "합법화 논의 시작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0052500004?input=1195m	인터뷰
57	2019.08.02	뉴스핌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미프진' 도입 지지부진.. 위협 받는 여성 건강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801001118	인터뷰
58	2019.08.30	오마이뉴스	"걱정 말고 즐겨달라"는 변영주 감독... 돌아온 여성영 화제 http://omn.kr/1kpa6	단순보도 (외 3건)
59	2019.09.27	한국일보	불법유통 낙태약 60% 중국산 가짜"안전한 복용 위해 합법화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61678370881	인터뷰
60	2019.09.27	연합뉴스	시민단체 "임신 중지 지지하라...처벌·낙인은 그만"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069200004?input=1195m	단순보도 (외 19건)
61	2020.03.06	여성신문	"국회는 '낙태 전면 비범죄화' 법 개정 미루지 말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851	단순보도 (외 4건)
62	2020.04.06	서울신문	캐나다·뉴질랜드는 임신중절 합법화... 건강권 관점서 사회적 합의 끌어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11003&wlog_tag3=naver	인터뷰
63	2020.04.06	서울신문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시행... 여성 안전은 부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7011004&wlog_tag3=naver	인터뷰
64	2020.04.08	서울신문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8&wlog_tag3=naver	심층인터뷰
65	2020.04.09	한겨레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대체법 미뤄지며 위협 내몰리는 여성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36372.html	인터뷰
66	2020.04.10	여성신문	낙태죄 헌법 불합치 1주년,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014	단순보도 (외 13건)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67	2020.04.10	한국일보	[영상] 도대체 낙태죄는 언제 없어지는 거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01655361982	심층 인터뷰
68	2020.04.15	헤럴드경제	“21대 국회에선 낙태죄 관련 법 조항 개정 이뤄지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5000021	인터뷰
69	2020.04.17	한겨레21	불법과 불안 속에 여성들의 1년이 흘렀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46.html	인터뷰
70	2020.04.19	한겨레	응답하라 개혁입법"...21대 국회에 바라는 21개의 간절한 외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114.html	인터뷰
71	2020.04.30	헤럴드경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입법 보완·의료 시스템 필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	인터뷰
72	2020.05.04	프레스리안	대법원 "여성 노동자 유산은 업무상 재해" 인정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415281290822	단순보도 (외 2건)
73	2020.06.02	여성신문	'낙태죄' 개정시한 반년 남았는데..."21대 국회는 응답하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03	단순보도 (외 1건)
74	2020.08.22	미디어오늘	양성평등정책위, 법무부에 형법 '낙태죄' 폐지 권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단순보도 (외 1건)
75	2020.08.25	서울신문	"낙태죄 폐지, 임신한 날짜 관계없이 비범죄화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5011014&wlog_tag3=naver	단순보도 (외 4건)
76	2020.09.24	한겨레	낙태죄 유지한다고?...14주 이내 허용설에 여성들 뿔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3545.html	단순보도 (외 2건)
77	2020.09.28	프레스리안	낙태죄 비범죄화 국제행동의 날..."국가 허락이 아니라 국가 책임"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814181734828	단순보도 (외 21건)
78	2020.10.06	문화일보	"사실상 낙태 전면허용 우려" vs "처벌조항 완전히 삭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0601070827328001	인터뷰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79	2020.10.06	뉴스1	'임신 14주 낙태' 입법 예고... "사실상 낙태죄 유지" vs "전면허용과도 같다" https://www.news1.kr/articles/?4078929	인터뷰
80	2020.10.06	SBS	"낙태죄 유지 실망스럽다" vs "낙태 남용 소지 농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176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터뷰
81	2020.10.06	여성신문	'낙태 14주까지만 허용'? 분노한 여성계 "즉각 행동 나설 것"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32	인터뷰
82	2020.10.07	조선일보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성폭행 임신은 24주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07/M37M7LEMDBC5ZJDQJ6TGEEXX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인터뷰
83	2020.10.06	서울신문	여성계 "女 자기결정권 회복 못해... 처벌조항 다 삭제해야" 반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7008010&wlog_tag3=naver	인터뷰
84	2020.10.07	프레시안	여성은 처벌을 피하려 출산하지도, 처벌을 안받으니 임신하지도 않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060300321450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기고(심층 인터뷰)
85	2020.10.07	한국일보	여당서도 "낙태죄 유지는 역사적 퇴행"... 정부안 반대 목소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710130005163?did=NA	인터뷰
86	2020.10.07	YTN	[뉴스큐-퀵터뷰]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여전히 문제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071656366401	심층인터뷰
87	2020.10.07	연합뉴스 TV	[이슈워치] '임신 14주 낙태 허용' 오늘 입법 예고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07015300641?did=1825m	인터뷰
88	2020.10.07	경향	"여성 권리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 여성계 거세게 반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0071715001	단순보도 (외 11건)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89	2020.10.07	KBS	임신 14주 이내 낙태...“새로운 처벌 기준” VS “태아 생 명권 무시” https://news.kbs.co.kr/news/view. do?ncd=5020164&ref=A	인터뷰
90	2020.10.07	한국일보	'낙태죄' 14주-24주 기준 모호... 병원-상담기관 오가 다 처벌될 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0100716320004044?did=NA	인터뷰
91	2020.10.07	YTN	"낙태죄 폐지" vs "낙태 반대" 입장 차 여전히 팽팽 https://www.ytn.co.kr/_ ln/0103_202010071958266614	인터뷰
92	2020.10.07	JTBC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단체 '개악' 반 발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 aspx?news_id=NB11972824	인터뷰
93	2020.10.08	KBS	[최강시사] 모나페 “14주까지는 되고 15주부터는 안 된다? 부적절해” https://news.kbs.co.kr/news/view. do?ncd=5020772&ref=A	심층인터뷰
94	2020.10.08	KBS	[현장영상]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기자회견 https://news.kbs.co.kr/news/view. do?ncd=5021062&ref=A	단순보도 (외 46건)
95	2020.10.08	오마이뉴스	낙태 동의한 남성은 무죄, 여성만 유죄...“왜 여성이 다 책임지나” http://omn.kr/1pfx	심층인터뷰
96	2020.10.13	한국일보	'낙태죄 완전폐지' 시동 건 권인숙에 박수친 여성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A202010131912000272?did=NA	단순보도 (외 1건)
97	2020.10.13	JTBC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낙태죄 개정안'에 잇단 비판 목소리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 aspx?news_id=NB11973584	인터뷰
98	2020.10.14	머니투데이	"낙태 전면 폐지" 천주교 신자들이 외쳤다, 왜?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0101412033989552	단순보도 (외 27건)
99	2020.10.15	여성신문	"문재인 정부, 후퇴 말고 전진하라" 청소년·청년 100 인 ‘낙태죄 폐지’ http://www.womennew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203190	단순보도 (외 2건)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100	2020.10.23	베이비뉴스	[1터뷰] 정부 입법예고안은 위헌, 낙태죄 폐지 요구한다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https://youtu.be/O13A9kRbm9U	심층인터뷰
101	2020.10.26	여성신문	청와대 앞 1인 시위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59	단순보도
102	2020.10.29	이데일리	여성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는 여성노동권 전제조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4486625937840&mediaCodeNo=257&OutLnkChk=Y	단순보도 (외 2건)
103	2020.11.05	한겨레	복지부, 낙태죄 의견수렴 부실 비판에도 '졸속 간담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68670.html	단순보도 (외 9건)
104	2020.11.15	경향	"낙태죄 존치 문제인 정부 규탄" 여성단체 집회에 보수단체 '맞불집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1151914001	단순보도 (외 1건)
105	2020.11.17	헤럴드경제	단독] 경찰, 靑 앞 '낙태죄 폐지 회견' 내사 착수...집회-회견 '기준' 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17000242	인터뷰
106	2020.11.17	노컷뉴스	경찰, '낙태죄 폐지' 회견단체 '집시법 위반' 내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388	인터뷰
107	2020.11.24	닷컴페이스	아직도 낙태죄 폐지하는 게 점점해? 낙태죄에 관한 모든 것 퇴근했으니까, 썸머쇼 ep.2 https://youtu.be/FyL7U3wWWs	심층인터뷰
108	2020.11.25	KBS	"낙태죄 전면 폐지해야"...여성계는 왜 정부안 반대하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6715&ref=A	인터뷰
109	2020.11.27	민중의소리	'낙태죄 존치' 정부안 결국 국회로, 분노한 여성들 "이제 국회의 시간" https://www.vop.co.kr/A00001529350.html	단순보도 (외 3건)
110	2020.11.30	내일신문	국회로 넘어간 '낙태죄 폐지' ... 여성계는 1인 시위 시작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9235	단순보도 (외 1건)
111	2020.12.02	한겨레	기자회견에 집시법 적용?... "낙태죄 폐지 활동가 탄압"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2476.html	단순보도 (외 6건)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112	2020.12.03	한겨레	‘뒤통수’ 때린 국회…“공청회 진술인 75%가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2709.html	단순보도 (외 4건)
113	2020.12.08	한겨레	국회 밖 공청회에선 “낙태죄 폐지는 친구·어머니·나의 문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3301.html	단순보도 (외 10건)
114	2020.12.09	오마이뉴스	낙태죄 폐지,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한 첫걸음 http://omn.kr/1qwoo	심층인터뷰
115	2020.12.10	미디어스	"차별금지법 없는 세계인권선언의 날 맞아 참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5	단순보도 (외 1건)
116	2020.12.20	서울신문	“폐지한다고 끝이 아니다… 낙태도 ‘의료 서비스’ 안착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1010002&wlog_tag3=naver	심층인터뷰
117	2020.12.21	한겨레	포털서 ‘임신중지’ 문의했다 성범죄 노출… 청소년 의료·상담 지원 시급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5232.html	인터뷰
118	2020.12.22	경향	낙태죄 사라지지만…‘임신중단 권리 논의’도 멈췄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2222052005	인터뷰
119	2020.12.24	연합뉴스	경찰, '청와대 앞 퍼포먼스' 낙태죄폐지 단체 2명 송치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32900004?input=1195m	단순보도 (외 5건)
120	2020.12.27	한겨레	D-5일…낙태죄 없는 2021년, ‘새로운 세계’가 온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6049.html	단순보도 (외 1건)
121	2020.12.27	SBS	새해 '낙태죄' 폐지되는데…법 없어 현장 혼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293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터뷰
122	2020.12.30	한국일보	2021년 사라지는 낙태죄 ... 여성계 "유산 유도제 미프진부터 도입하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3009530002070?did=NA	단순보도 (외 5건)
123	2020.12.30	일요신문	2021년 1월 1일 0시 ‘낙태죄’ 불법 딱지 뺐지만 합법도 아닌 까닭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8715	인터뷰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124	2020.12.30	연합뉴스 TV	'낙태죄' 역사속으로...입법공백 속 논란은 계속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230025600641?did=1825m	인터뷰
125	2020.12.31	MBN	"처벌의 시대 끝났다"...낙태죄, 내일부터 효력 상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86796	단순보도 (외 18건)
126	2020.01.02	YTN	1년 반 지났어도 '낙태죄 공백'...새해부터 예고된 혼란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020518177405	인터뷰
127	2021.01.20	한국일보	"불법이니 수술비는 현금만" 낙태죄 사라져도 바뀐 건 없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09140004871?did=NA	인터뷰
128	2021.01.21	일다	'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 https://www.ildaro.com/8947	심층인터뷰
129	2021.01.27	한겨레	임신중지는 개인 취향? '궤변' 펼친 산부인과 의사회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562.html	인터뷰
130	2021.03.08	노컷뉴스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 곳곳 기자회견..."여성 권리 확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512146	단순보도 (외 16건)
131	2021.04.11	더팩트	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처벌 없었다고 끝이 아니다 http://news.tf.co.kr/read/life/1853480.htm	인터뷰
132	2021.04.11	미디어오늘	"임신중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80	단순보도 (외 6건)
133	2021.06.30	비즈한국	'낙태수술 건강보험 적용',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151	인터뷰
134	2021.07.07	메디컬 투데이	'교육·상담료' 신설...인공임신중절 건보 적용 논의 시작되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4493	단순보도 (외 3건)
135	2021.07.29	메디컬 타임즈	시민단체, 낙태약 신속 허가 촉구..."가교시험 불필요"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2018	단순보도 (외 1건)
136	2021.09.03	약사공론	모낙페, 안전성·유효성 입증된 유산유도제 허가 신속 처리해야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5252&category=F	단순보도 (외 5건)

순번	날짜	언론사	보도 제목	비고
137	2021.10.04	JTBC	[밀착카메라] "낙태약 급해요"...법 공백에 음지서 '위험한 거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738	인터뷰
138	2021.10.12	한겨레	9개월 지났지만...안전한 임신중지, 왜 아직도 어렵나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4875.html	단순보도 (외 5건)
139	2021.10.14	메디컬타임즈	임신중절약 허가 기한 한달 앞...올해 상용화 가능성은?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3491	인터뷰
140	2021.11.04	한국일보	"13만 원이 없어서 중국산 약 먹다..." 낙태죄 폐지 1년, 위기의 여성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314070003978?did=NA	인터뷰
141	2021.11.24	한겨레	임신중절약 연내 도입 불투명..."미프진 38만원에 양도" 밀거래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0579.html	인터뷰
142	2021.12.24	한겨레	'낙태죄' 처벌 여성 첫 복권...여성단체 "혜택 아니라 당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4665.html	인터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 아카이브

(2017. 9. 28. ~ 2021. 12. 31.)

펴낸곳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펴낸날 2022년 9월 28일

편집 박아름, 장채원

디자인 홍수영

페이스북 @SafeAbortionOnKorea

트위터 @safe_abortion_

이메일 safeabortionforall@gmail.com